연구총서 19-B-05

K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II)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Study on Actual Situations and Countermeasures of Unlawful Practices of Law (II)

Focusing on the Reality of Corruption Committed by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and Its Countermeasures

황지태, 이천현, 임정호, 신동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머리말

몇 년 전 홍콩을 방문하여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에서 다년간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반부패연구 전문가를 만나 염정공서가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관해 물은 적이 있었다. 그는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하나는 중국 정부의 개입 심화와 관련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패범죄의 지능화에 따른 수사의 어려움에 대한 것이었다. 그가 언급한 부패범죄 지능화의 대표적 사례는 '지연된 대가'의 형식으로 위장된 부패행위였다. 이는 청탁자에게 제공해준 혜택의 대가를 당장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받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전관예우란 것도 '지연된 대가'의 형식으로 위장된 부패행위의 일종이다. 적지 않은 판사나 검사들은 전관예우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전관예우는 전관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직의 판사나 검사들이 전관변호사들에게 특혜를 줄 때에만 성립 가능한 것이니 그렇게 말할 만도 하다. 전관예우가 없다고 주장하는 판사나 검사들은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른다. "나는 전관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도 없고, 선물을 받은 적도 없으며, 심지어 밥을 얻어먹은 적조차도 없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 당장의 이득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전관예우 관행이 구조적으로 지속된다면, 그것은 현직의 판사와 검사들이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이득을 얻게 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얻는 것은 장기적인 차원의 사법 불신인 것이다.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은 결국 현직 판사나 검사들이 전관변호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없으나, 의뢰인들의 잘못된 인식이나 착각 혹은 법조브로커들의 농간에 의해 전관변호사를 더 선호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과거 교육계에서 촌지가 성행했을 때 교사에게 경쟁적으로 촌지를 제공했던 학부모들을 탓하는 논리를 닮았다. 하지만, 촌지를 제공하는 학부모의 특징 중 하나는 적극적으로 촌지를 제공하면서도 속으로는 교사를

능멸하고 교육제도를 불신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관변호사를 선호하고 적극적으로 선임하는 의뢰인은 결국 내심으로는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를 경멸하고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해 불신하고 비웃게 된다.

적지 않은 판사와 검사들이 주장하듯이, 전관변호사에 대한 특혜는 존재하지 않으나 단지 의뢰인들이 속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 혹시라도 사실이라면, 전관 특혜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의뢰인들이 더 이상 속지 말라고 대대적인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의뢰인들의 사법에 대한 능멸과 불신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일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를 반복할 뿐이다.

혹자들은 전관변호사들이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더 많은 수임료를 받는 것은 특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전관으로서의 연륜에서 비롯된 '능력'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시간이 지날수록 연륜과 능력이 증대되면서 전관변호사의 사건수임이 더 많아지고 수임료도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거듭 밝혀지고 과거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미 드러나 왔듯이, 전관변호사들의 사건수임 건수와 수임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혹은 때로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아주 일관되고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능력'이라면 발생하기 어려운 현상이며 '특혜'라야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언급할 만한 것은 이른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어떤 입법안이 거론될라치면 거의 항상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용어 중의 하나가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퇴직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입법화하고 있는 규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자윤리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이해충돌 문제이기도 하므로, 이해충돌 방지의 차원에서도 규제될 명분이 있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면 모를까.

전관예우의 미래는 어떠할까? 많은 사람들이 전관예우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으며, 끝내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들도 적지 않다. 점쟁이가 아니라서 전관예우가 언제 사라질지 예언은 못하지만, 변호사시장의 구조적 변화 차원에서 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전관예우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정도는 장담할 수 있다. 경쟁의 심화로 변호사들의 평균적인 수입 수준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전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비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비중과 전관의 혜택에 대해 특히 더 거부감이 많은 여성 변호사들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것이다.

전관예우란 용어의 적절성 문제부터 해서 할 이야기는 많지만, 나머지 이야기들은 본문에서 하기로 하겠다. 이 자리에서는 평소에 생각을 해두기는 했으나 미처 본문에는 대체로 적지 못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골라서 적어본 것이다.

매우 꼼꼼한 공동연구진들 덕택에 연구책임자가 많은 혜택을 얻었다. 1년 동안 함께 고생해 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이천현 박사님, 임정호 박사님, 이주현 전문조사원님, 국민대학교의 신동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정성진 인턴연구원님께도 감사드린다.

2019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위원 황 지 태

목 차

국문요약 ····· 1

제1장 황지태

서 론 ····· 13

제1절 본 연구의 배경 및 취지 ····· 15
1. 전관비리 문제의 심각성 대 전관예우의 존재 부정 ····· 16
2. 필요한 사실 확인과 문제 해결방식의 궤적 검토 ····· 17

제2절 보고서의 구성 ····· 18
1. 전관비리 관련 조사연구 부분 ····· 18
2. 전관비리 방지의 역사 및 현재 ····· 19

제2장 황지태

선행 조사연구 검토 및 실태조사의 방법론 ····· 21

제1절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정의에 관한 논의 ····· 23
1. 전관예우라는 용어의 적절성: 전관예우/전관비리 ····· 24
2. 법조계 전관예우(전관비리)로 한정 ····· 24
3. 본 연구의 전관변호사 개념 정의 방법 ····· 25
4. 전관예우(전관비리) 정의 ····· 28

제2절 전관예우에 관한 선행 조사연구 검토 ····· 28
1. 전관예우의 존재와 심각성에 대한 최근 의식조사연구 결과 ····· 29
2. 전관예우 효과의 존재에 대한 실증조사연구 결과 ····· 37

제3절 선행 조사연구 평가 및 본 조사연구의 방향 설정 ····· 50

1. 선행 조사연구들에 관한 평가 ····· 50
2. 본 조사연구의 방향 설정 ····· 55

제3장 황지태·신동준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 59

제1절 조사개요 및 방법 ····· 61
1. 변호사 선임 경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 61
2. 설문조사의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조사과정 ····· 62
3. 부가적 심층면접 조사 ····· 64

제2절 기초변인 응답결과 ····· 65
1.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65
2. 소송사건의 특성 ····· 70

제3절 전관변호사 선임 관련 응답결과 분석 ····· 73
1. 전관변호사 소개와 선택 ····· 73
2. 광의의 전관변호사 특성 분석 ····· 79
3. 의뢰인들이 인식하는 전관변호사의 범위와 혜택 ····· 83
4. 선임계 미제출 및 전화변론 관련 응답 ····· 87

제4절 전관변호사의 수임료에 관한 분석 ····· 89
1. 전체 변호사의 기본 수임료 및 사건별 수임료 ····· 89
2. 전관변호사들의 기본 수임료 비교 ····· 92
3. 추가비용 지급 여부에 관한 분석 ····· 94
4. 추가 비용 포함 의뢰인의 총비용 분석 ····· 100

제5절 전관변호사에 대한 의뢰인들의 평가 ····· 105
1. 전관예우의 존재 인정 및 선호에 관한 인식 ····· 105
2. 전관예우의 미래에 관한 인식 ····· 109
3. 전관예우에 대한 의뢰인들의 인지부조화 ····· 113

제6절 심층면접 결과 ····· 114
1. 심층면접 개요 ····· 114
2. 심층면접 주요 내용 정리 및 시사점 ····· 114

제7절 의뢰인 대상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20
1. 여러 가지로 측정한 전관변호사 선임 비율 ····· 120
2. 의뢰인들의 판검사출신 변호사 선호 정도 ····· 122
3. 전관변호사의 조건에 따른 평균 수임료 차이 ····· 123
4. 전관변호사에 대한 추가 지급비용 ····· 124
5. 종합적 판단 ····· 124

제4장 신동준·황지태

현직 변호사 대상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 127

제1절 조사개요 및 방법 ····· 129
1. 조사대상과 방법 ····· 129
2. 조사과정 ····· 130
제2절 기초변인 응답결과 ····· 131
1. 표본의 기본적 특성 ····· 131
2. 응답 변호사들의 법조 경력 ····· 135
제3절 전관예우 인지 및 경험에 관한 응답결과 분석 ····· 141
1. 전관예우의 존재 인정에 관한 인식 ····· 141
2. 최근 10년 이내 전관예우 경험 여부 ····· 144
3. 전관예우 경험 상세 분석 ····· 149
4. 전관변호사의 수임료에 관한 의견 ····· 152
5. 선임계 미제출에 관한 의견 ····· 155
6. 전화 변론에 관한 의견 ····· 158
7. 공식 수임료 외 추가 로비 비용에 관한 의견 ····· 161
제4절 전관선임의 유리함과 의뢰인의 전관선호에 관한 의견 ····· 165
1. 전관변호사 선임의 유리함에 관한 의견 ····· 165
2. 의뢰인들의 전관변호사 선호에 관한 의견 ····· 168
제5절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의견 ····· 171
1. 현행 전관예우 방지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 ····· 171
2. 향후 도입해야 할 전관예우 방지책에 관한 의견 ····· 177

3. 전관예우 방지책의 기본 방향성에 관한 응답 ····· 184
제6절 변호사 응답결과와 의뢰인 응답결과 비교 ····· 187
1. 전관예우에 대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인식 차이: 동일문항 비교 ··· 187
2. 전관변호사 비율과 관련된 변호사와 의뢰인들 사이의 응답 격차 ··· 190
제7절 변호사 대상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93
1. 변호사들의 최근 전관예우 경험 비율 ····· 193
2.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경험 ····· 194
3. 전관예우 대책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의견 ····· 195
4. 의뢰인 조사와 변호사 조사 간의 주요 응답 차이 ····· 196
5. 종합적 판단 ····· 197

제5장 이천현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변천 ····· 199

제1절 서론 ····· 201
제2절 정부수립~노태우 정부(1948~1993년) ····· 202
1. 서론 ····· 202
2. 개업지 제한제도 도입 (1973년, 변호사법 개정) ····· 203
3. 변호사법 개정 동향 ····· 206
제3절 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1993~2003년) ····· 207
1. 서론 ····· 207
2. 제도 도입 ····· 218
3. 입법적 시도 ····· 228
4. 사법개혁 논의 ····· 228
제4절 노무현 정부(2003~2008년) ····· 231
1. 서론 ····· 231
2.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231
3. 제도 도입 ····· 234
4. 입법적 시도 ····· 248
제5절 이명박 정부(2008~2013년) ····· 249

1. 서론 ····· 249
2. 제도 도입 ····· 250
3. 정책적 시도 ····· 265
제6절 박근혜 정부(2013~2016년) ····· 267
1. 서론 ····· 267
2. 제도 도입 ····· 273
3. 정책적 노력 ····· 280
제7절 문재인 정부(2017~현 재) ····· 283
1. 서론 ····· 283
2. 제도 개선: 변호사법 개정(2017년) ····· 284
3. 정책적 시도 ····· 285
제8절 소 결 ····· 289

제6장 임정호

최근 입법 동향 정밀 분석 (19-20대 국회 입법안) ····· 293

제1절 연구의 목적 ····· 295
제2절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동향 전반 ····· 296
1. 입법방식: 규제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 296
2. 범위 ····· 297
제3절 변호사법 개정안 ····· 298
1. 개관 ····· 298
2. 분류 방법 ····· 309
3. 분류 결과 ····· 310
4. 수임행위 제한에 따른 유형분류 ····· 311
5. 수임행위 제한 이외의 방식에 따른 제한 방법 ····· 322
6. 소결: 규제강화 입법방식 경향의 지속 ····· 323
제4절 공직자윤리법 ····· 325
1. 개관 ····· 325
2. 분류 방법 ····· 340

3. 분류 결과 ····· 341
4. 경향성: 취업제한 기간 연장에의 치중 ····· 341
5. 한계와 대책: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취소 규정과의 균형 모색 ··· 342
제5절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344
1. 의의 ····· 344
2. 내용 ····· 345
3. 한계 ····· 346
4. 소결: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특징 ····· 348
제6절 소위 후관예우 방지 목적 법률안 ····· 349
1. 의의 ····· 349
2. 관련 법률안 ····· 350
제7절 종합 ····· 351

제7장 이천현·임정호
전관예우 관련 해외 입법례 검토 ····· 353

제1절 영미법계 국가 ····· 355
1. 미국 ····· 355
2. 영국 ····· 363
제2절 시니어 법관제도 ····· 365
1. 의의 ····· 365
2. 미국 연방 차원의 시니어법관 ····· 365
3. 우리나라의 현행 원로법관 제도와의 구별 ····· 370
4. 검토 ····· 371
제3절 독일의 관련 법률 ····· 372
1. 서론 ····· 372
2. 법률규정 ····· 372
3.「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행동강령」····· 375
제4절 일본 ····· 376
1. 서론 ····· 376

2. 법률규정 ····· 377
제5절 소 결 ····· 382

제8장 황지태·이천현·임정호
결론 및 정책 제언 ····· 385

제1절 요약 및 결론적 논의 ····· 387
1. 전반적인 요약 ····· 387
2. 조사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한 결론적 논의 ····· 391
제2절 정책적 제언 ····· 392
1. 의의 ····· 392
2. 법률의 개정 방향: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 393

참고문헌 ····· 403

Abstract ····· 415

부록 ····· 427

표 차례

[표 2-1] 전관예우 존재에 대한 동의 (2018년도 조사) ····· 30
[표 2-2] 판·검사 출신 전관예우의 존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 (2007년도 조사) ··· 32
[표 2-3]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임 제한에 대한 법조 직역별 의견 차이 (2007년도 조사) ··· 33
[표 2-4] 전관예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35
[표 2-5] 전관예우 존재를 판단한 근거 (2018년도 조사) ····· 36
[표 2-6] 03-06년, 4년간 6개 지역 구속/보석사건 수임 10위 중 전관변호사 비율 ····· 38
[표 2-7] 대구지역 전관변호사와 일반변호사의 보석사건 수임건수 비교 (2004-05년 자료) ··· 39
[표 2-8] 경남지역 전관변호사와 일반변호사의 보석사건 수임건수 비교 (2005년 자료 추정) ··· 39
[표 2-9] 호남지역 전관변호사와 일반변호사의 보석사건 수임건수 비교 (2005년 자료) ··· 39
[표 2-10] 대구 A전관변호사의 4년간 구속·보석사건 수임건수 및 연도별 랭킹 (2003-06년) ··· 40
[표 2-11] 경남 전관변호사들의 구속적부심 승소율 비교 (2003년-2005년 자료) ····· 41
[표 2-12] 광주지역 전관변호사들의 구속적부심 승소율 비교 (2003년-2005년 자료 이용) ··· 42
[표 2-13] 전관예우 변호사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2013년도 연구, 2000년-2007년 자료) ··· 44
[표 2-14] 변호사가 전직 판사일 경우 유무죄에 미치는 영향 (2008년도 판결사건 표본) ··· 45
[표 2-15] 판사 출신 변호사가 피의자 구속여부에 미치는 영향 (2008년 접수사건 표본) ··· 46
[표 2-16] 광주지역 향판 전관출신 C변호사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 (2014년-2015년 자료) ·· 48
[표 2-17] 부산·창원 향판 전관 변호사들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 (2014년-2015년 자료) ··· 48
[표 2-18] 대구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들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 (2014년-2015년 자료) ···· 49
[표 3-1]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전관예우 실태 설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 63
[표 3-2] 의뢰인들의 성별과 연령대 ····· 65
[표 3-3] 의뢰인들의 거주지역 ····· 66
[표 3-4] 의뢰인들의 학력 ····· 67
[표 3-5] 의뢰인들의 직업 ····· 68
[표 3-6] 의뢰인들의 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 69
[표 3-7] 소송사건의 종류 ····· 70
[표 3-8] 소송사건 발생 시기 ····· 71
[표 3-9] 사건종류별 변호사 소개 경로 ····· 72
[표 3-10] 소송 종류에 따른 전관 변호사 제안 경험 ····· 73

[표 3-11] 소송 종류에 따른 전관 변호사 제안 단계 ····· 74
[표 3-12] 소송 종류에 따른 전관 변호사 제안 수락 여부 ····· 75
[표 3-13] 남녀 의뢰인별 선임 변호사의 전직 구분 ····· 76
[표 3-14] 소송의 종류에 따른 전관출신 변호사 선임의 차이 ····· 76
[표 3-15] 의뢰인들의 판·검사출신 변호사 선호 정도를 나타내는 비교표 ····· 78
[표 3-16] 변호사 모집단 분포와 두 조사결과 응답분포 간의 차이 검증 ····· 79
[표 3-17] 선임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퇴직 후 선임까지의 기간 ····· 80
[표 3-18] 선임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퇴직 당시 직위 ····· 80
[표 3-19] 소송사건별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퇴직 당시 직위 ····· 81
[표 3-20] 퇴직 직전 근무 지역과 소송사건 지역과의 연관성 ····· 82
[표 3-21] 소송사건별 퇴직 직전 근무 지역과 소송사건 지역과의 연관성 ····· 82
[표 3-22] 소송사건 종류별 의뢰인들이 인식한 전관변호사 여부 ····· 83
[표 3-23] 전관변호사 선임 의뢰인들의 타인 추천 전관변호사 수용 여부 ····· 84
[표 3-24] 타인 추천 전관변호사 수용 의뢰인들의 자기 변호사 전관 인정 여부 ····· 84
[표 3-25] 소송사건별 전관예우 혜택 긍정 여부 ····· 85
[표 3-26] 소송사건별 전관예우 혜택 정도 ····· 85
[표 3-27] 소송사건별 전관예우 혜택을 받은 단계 ····· 86
[표 3-28] 사건별 선임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 ····· 87
[표 3-29] 변호사 출신별 선임계 제출 여부 ····· 88
[표 3-30] 사건별 선임 변호사의 전화변론 여부 ····· 88
[표 3-31] 선임변호사 전관여부에 따른 선임 변호사의 전화 부탁 여부 ····· 89
[표 3-32] 소송사건별 변호사 수임료 비교 ····· 90
[표 3-33] 사건별 선임 변호사의 주관적인 수임료 수준 ····· 91
[표 3-34]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나머지 변호사들에 대한 주관적 수임료 수준 차이 ····· 91
[표 3-35]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기타 변호사들 간의 수임료 비교 ····· 93
[표 3-36] 전관변호사의 우대 조건에 따른 수임료 비교 ····· 94
[표 3-37] 변호사 출신별 추가비용을 요구받은 경험 ····· 95
[표 3-38] 사건별 추가비용을 요구받은 경험 ····· 95
[표 3-39] 사건별 추가비용 지급 경험 ····· 96
[표 3-40] 변호사 출신별 추가비용 지급 경험 ····· 96
[표 3-41] 추가로 지급한 비용의 분포 ····· 97
[표 3-42]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기타 변호사 선임 의뢰인들 간의 추가비용 비교 ····· 98
[표 3-43] 전관변호사의 우대 조건에 따른 추가비용 비교 ····· 99
[표 3-44] 전체 변호사 총수임료 (추가비용 포함 의뢰인 총비용) ····· 100

[표 3-45] 전관 여부와 사건 종류에 따른 총수임료 ····· 101
[표 3-46] 전관 변호사의 퇴직 시 직위와 사건 종류에 따른 총수임료 ····· 102
[표 3-47] 전관 변호사의 퇴직 시 직위와 퇴직 기간에 따른 총수임료 ····· 103
[표 3-48] 전관 변호사의 퇴직 시 직위/사건 종류/퇴직 기간에 따른 총수임료 ····· 104
[표 3-49] 소송사건 종류에 따른 전관예우 관행의 존재에 대한 인식 ····· 105
[표 3-50] 선임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 관행의 존재에 대한 인식 ····· 106
[표 3-51] 소송사건 종류에 따른 전관변호사 선임의 유리함에 대한 인식 ····· 106
[표 3-52] 선임 변호사 출신별 전관변호사 선임의 유리함에 대한 인식 ····· 107
[표 3-53] 소송사건 종류에 따른 향후 전관변호사 선임 의향 ····· 108
[표 3-54] 선임 변호사 출신별 향후 전관변호사 선임 의향 ····· 108
[표 3-55] 소송사건 종류에 따른 전관예우 방지대책 효과에 대한 인식 ····· 109
[표 3-56] 선임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 방지대책 효과에 대한 인식 ····· 110
[표 3-57] 소송사건 종류에 따른 전관예우의 부정성에 대한 인식 ····· 110
[표 3-58] 선임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의 부정성에 대한 인식 ····· 111
[표 3-59] 소송사건 종류에 따른 전관예우 존폐에 대한 예측 ····· 111
[표 3-60] 선임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 존폐에 대한 예측 ····· 112
[표 3-61] 소송사건 종류에 따른 전관예우 감소 예측 ····· 112
[표 3-62] 선임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 감소 예측 ····· 113
[표 4-1] 현직 변호사 대상 전관예우 실태 설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 130
[표 4-2] 응답 변호사들의 성별과 연령대 ····· 131
[표 4-3] 응답 변호사들의 근무지역 ····· 132
[표 4-4] 소속 사무실 규모 ····· 133
[표 4-5] 소속 변호사의 지위 ····· 134
[표 4-6] 법조계 입문 경로 ····· 135
[표 4-7] 법조 입문 경력과 변호사 경력 ····· 136
[표 4-8] 판·검사직 경험 ····· 136
[표 4-9] 판·검사직 경험과 퇴직 이후 기간 ····· 137
[표 4-10] 판·검사직 경험과 퇴직 당시 직위 ····· 138
[표 4-11] 최근 5년간 수행했던 형사사건의 비율 ····· 139
[표 4-12] 판·검사직 경험여부와 최근 5년간 수행했던 형사사건의 비율 ····· 140
[표 4-13] 최근 5년간 수행했던 형사사건의 비율의 집단별 평균 ····· 141
[표 4-14] 성별 전관예우 관행 존재 인정 ····· 142
[표 4-15] 연령대별 전관예우 관행 존재 인정 ····· 142
[표 4-16]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 관행 존재 인정 ····· 143

[표 4-17]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기타 변호사의 전관예우 존재 인정 정도 차이 ····· 144
[표 4-18] 성별 전관예우 경험 여부 차이 ····· 144
[표 4-19] 연령대별 전관예우 경험 여부 차이 ····· 145
[표 4-20]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 경험 여부 ····· 145
[표 4-21]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기타 변호사의 전관예우 경험 차이 ····· 146
[표 4-22] 판검사출신 변호사 퇴직 시 직위에 따른 전관예우 경험 여부 ····· 146
[표 4-23] 법조계 입문 경로에 따른 전관예우 경험 여부 ····· 147
[표 4-24] 변호사 사무실 규모에 따른 전관예우 경험 여부 ····· 148
[표 4-25] 최근 5년 형사사건 수임 비중에 따른 전관예우 경험 여부 ····· 148
[표 4-26] 전관예우 경험 시기와 사건 유형 ····· 149
[표 4-27] 사건유형에 따른 전관예우 혜택 수준 ····· 150
[표 4-28] 사건유형 재분류에 따른 전관예우 혜택 수준 차이 검증 결과 ····· 151
[표 4-29] 사건 유형에 따른 전관예우 혜택 단계 ····· 152
[표 4-30] 변호사 출신 구별에 따른 전관변호사 보수 수준에 대한 생각 ····· 152
[표 4-31]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전관변호사 보수 수준에 대한 생각 ····· 153
[표 4-32] 사건 유형에 따른 전관변호사 보수 수준에 대한 생각 ····· 154
[표 4-33] 변호사 출신에 따른 선임계 미제출 변론에 대한 의견 ····· 155
[표 4-34]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선임계 미제출 변론에 대한 의견 ····· 156
[표 4-35] 변호사 출신에 따른 선임계 미제출 사례 경험 유무 ····· 157
[표 4-36]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선임계 미제출 사례 경험 유무 ····· 157
[표 4-37] 선임계 미제출 변론 문제 발생에 대한 생각과 선임계 미제출 사례 경험 ···· 158
[표 4-38] 변호사 출신에 따른 전화변론의 존재에 대한 의견 ····· 159
[표 4-39]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전화변론에 대한 의견 ····· 159
[표 4-40] 변호사 출신에 따른 전화변론 사례 경험 유무 ····· 160
[표 4-41]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전화변론 사례 경험 유무 ····· 160
[표 4-42] 전화 변론 행위 발생과 최근 5년 이내 전화변론 사례 경험 ····· 161
[표 4-43] 변호사 출신에 따른 추가 로비비용 지급의 존재에 대한 의견 ····· 162
[표 4-44]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추가 로비비용 지급의 존재에 대한 의견 ····· 163
[표 4-45] 변호사 출신에 따른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 경험 유무 ····· 163
[표 4-46]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추가 로비비용 지급사례 경험 유무 ····· 164
[표 4-47] 추가 비용 요구 행위 발생과 최근 5년 이내 추가비용 사례 경험 유무 ····· 164
[표 4-48] 전관변호사 선임이 소송에 유리한지에 대한 생각 ····· 165
[표 4-49] 변호사출신별 변호사 선임의 유리함에 대한 판단 차이 ····· 167
[표 4-50] 전관예우 경험 유무별 변호사 선임의 유리함에 대한 판단 차이 ····· 168

[표 4-51] 의뢰인들의 전관변호사 선호도에 대한 변호사들의 생각 ····· 169
[표 4-52] 변호사출신별 의뢰인들의 전관 선호에 대한 판단 차이 ····· 170
[표 4-53] 전관예우 경험 유무별 의뢰인들의 전관 선호에 대한 판단 차이 ····· 170
[표 4-54] 퇴직전 근무지사건 수임제한 1년 규정의 전관예우 방지효과에 대한 의견 ··· 172
[표 4-55] 퇴직전 근무지사건 수임제한 1년 규정 연장의 기간에 대한 의견 ····· 173
[표 4-56] 변호사법 이외의 현행 전관예우 방지책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인식 여부 ··· 174
[표 4-57] 여러 가지 전관예우 방지책의 효과성에 대한 생각 ····· 175
[표 4-58] 변호사 출신에 따른 현행 전관예우 방지책에 대한 전반적 의견 ····· 176
[표 4-59]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현행 전관예우 방지책에 대한 전반적 의견 ····· 177
[표 4-60] 전관예우 방지와 관련한 규제 법률 제·개정 필요 여부 ····· 178
[표 4-61] 변호사출신별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제 법률 제·개정 필요 여부 의견차 ····· 179
[표 4-62] 전관예우 경험별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제법률 제·개정 필요 여부 의견차 ··· 180
[표 4-63]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여부 ····· 181
[표 4-64] 변호사출신별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여부 의견 차이 ····· 183
[표 4-65] 전관예우 경험별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여부 의견 차이 ··· 184
[표 4-66]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 방지대책의 기본 방향 ····· 185
[표 4-67] 판검사출신 변호사 퇴직 시 직위별 전관예우 방지대책의 기본 방향 ····· 186
[표 4-68] 전관예우 경험 유무별 전관예우 방지대책의 기본 방향 ····· 187
[표 4-69] 전관예우 관행 정도에 대한 변호사집단과 의뢰인들(소송경험자) 간 인식 차이 ···· 188
[표 4-70] 전관변호사 선임에 대한 변호사집단과 의뢰인들 간 인식 차이 ····· 189
[표 4-71] 전관예우 방지책 효과에 대한 변호사집단과 의뢰인들 간 인식 차이 ····· 189
[표 4-72] 의뢰인조사와 변호사조사에서의 판검사출신 변호사 비율 응답 차이 ····· 190
[표 4-73] 의뢰인조사와 변호사조사에서의 최근 퇴임 전관변호사 비율 차이 ····· 191
[표 4-74] 의뢰인조사와 변호사조사에서의 전관변호사들의 퇴임 시 직위 차이 ····· 192
[표 5-1] 의무위반행위와 제재 ····· 227
[표 5-2] 1998-1999년 변호사법 개정안 ····· 228
[표 5-3]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조비리 근절방안(1999.12) ····· 230
[표 5-4] 법조윤리협의회 규정 변화 ····· 239
[표 5-5]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방해 등과 제재 ····· 241
[표 5-6]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의무 규정 변화 ····· 242
[표 5-7]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의무위반과 제제 ····· 246
[표 5-8]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금지 규정 변화 ····· 247
[표 5-9] 변호인선임서 미제출과 제제 ····· 248
[표 5-10] 2003-2007년 변호사법 개정안 ····· 248

[표 5-11] 취업제한제도 강화 내용(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 259
[표 5-12] 취업심사대상자 구분 ····· 261
[표 5-13] 업무취급제한제도 내용과 제재 ····· 263
[표 5-14] 업무취급 제한대상자와 내용 ····· 264
[표 5-15] 2008-2011년 변호사법 개정안 ····· 265
[표 5-16] 전관예우 작동 구조 ····· 271
[표 5-17] 대검찰청 개혁방안(2018.6) ····· 281
[표 5-18] 검사출신 전관변호사의 몰래변론 관련 징계처분 현황 ····· 288
[표 5-19] 제도개선권고(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2019) ····· 289
[표 5-20]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변천 ····· 290
[표 6-1] 19대·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 중 전관예우 방지 대책 관련 개정안 ····· 299
[표 6-2]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관예우 방지 대책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의 분류 ····· 310
[표 6-3]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 312
[표 6-4] 변호사법 제31조 ····· 314
[표 6-5]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 규정 ····· 316
[표 6-6] 공직자윤리법 중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정 ····· 331
[표 6-7] 19대·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중 전관예우 방지 대책 관련 개정안 ····· 333
[표 6-8]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관예우 방지 대책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분류 ····· 340
[표 6-9]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취소 관련 규정 ····· 342
[표 6-10]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관예우 방지대책 관련 법안의 경향성 ··· 351
[표 7-1] 법관 관련 우리나라와 미국의 초점 차이 ····· 357
[표 7-2] 미국 주 법원의 법관의 연령 제한 관련 ····· 360
[표 7-3] 현행 원로법관의 법적근거 ····· 370
[표 7-4] 법관과 변호사 관련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이슈 ····· 371
[표 7-5] 일본 국가공무원법상의 취업·행위규제 ····· 378
[표 7-6] 퇴직공직자의 행위규제 ····· 380
[표 8-1] 변호사법상 수임자료제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395
[표 8-2] 변호사법상 수임자료제출 등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의무불이행의 처벌 방안 ··· 396
[표 8-3] 변호사법상 로펌에 대한 처벌 ····· 396
[표 8-4] 변호사법상 로펌에 대한 처벌 방안 ····· 397

[표 8-5] 변호사 자격 관련 제재 개정 방안 ····· 399
[표 8-6]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한 전관예우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 401

주표 차례

[주표 1]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임 제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 (2007년도 조사) · 33

그림 차례

[그림 2-1] 전관예우 주요 발생단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 37
[그림 3-1]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설문조사의 표본추출 및 실사의 과정 ····· 64
[그림 3-2] 응답 의뢰인들이 선임한 변호사들의 전직 구별 ····· 121
[그림 3-3] 변호사 모집단과 표본조사에서의 판검사출신 변호사 비중 차이 ····· 122
[그림 3-4] 전관변호사의 조건에 따른 기본 수임료 차이 ····· 123
[그림 4-1] 현직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의 표본추출 및 실사의 과정 ····· 130
[그림 4-2] 설문응답 변호사들의 최근 전관예우 경험자 비율 ····· 194
[그림 4-3] 성별·연령별·출신별 전관예우 경험률 ····· 195
[그림 4-4] 가장 최근 전관예우 경험 사건의 구성비 ····· 195
[그림 4-5] 현행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1년 규정 연장 필요성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 ··· 196
[그림 4-6] 적정한 수임제한 기간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 ····· 196
[그림 4-7] 의뢰인 조사와 변호사 조사의 전관변호사 퇴임 기간 비교 ····· 197
[그림 7-1] 2017년 기준 한국 법관과 미국 연방 법원 소속 법관 중 재직자 평균 연령 ···· 369
[그림 8-1] 규제정도에 따른 전관예우 방지 방법 분류 ····· 393

국문요약

1. 연구 개요

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조비리에 관한 2년차 연구과제 중 두 번째 연구로,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실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전관예우 현상의 실태 파악 조사연구 방법으로는, 변호사들과 소송의뢰인들(변호사 선임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일부 심층면접 조사 포함)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관비리에 관한 직·간접적인 경험은 물론, 전관변호사의 수임료에 관한 정보, 의뢰인들의 전관 선호 정도, 전관예우 방지책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전관비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의 변천사를 다루고, 가장 최근의 국회에서의 입법 동향을 상세히 다루었으며, 미국과 영국,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입법례에서 참조하기도 하였다.

2. 선행 조사연구 검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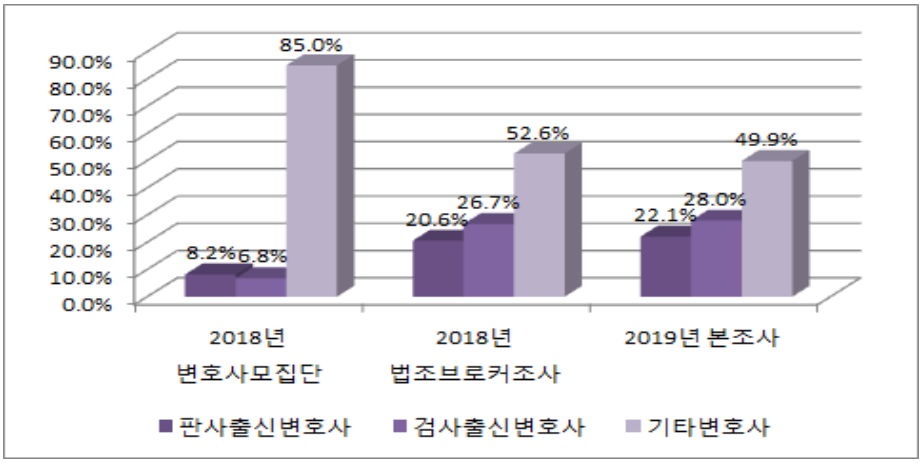
1)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특히 전관비리가 실재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의 양은 많지 않지만, 그 연구영역은 매우 광범위할 수 있다. 전관비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재판, 경찰수사, 검찰수사,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 발생단계 및 특혜의 존재 검증, 수임건수 및 수임료 조사 등의 조사대상)이 다양하고, 방법론(설문조사, 심층면접, 판결문 분석, 보석이나 구속 관련 자료 분석 등)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연구양이긴 하나,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을 어느 정도 검증한 연구들은 존재해도 그것의 존재를 간접적인 수준에서라도 부정할 증거를 보여주는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2) 전관예우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고 중요한 조사연구 결과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연구 영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실증조사 연구의 양이 부족하여, 전관예우 현상의 존재를 여러 영역에서 좀 더 충분히 확증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 조사 연구는 방법론적 수월성으로 인해 판사가 개입하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고, 검사가 개입하는 영역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데,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연구들도 필요하다고 본다.

3. 의뢰인 대상 조사결과 요약

1) 의뢰인들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높은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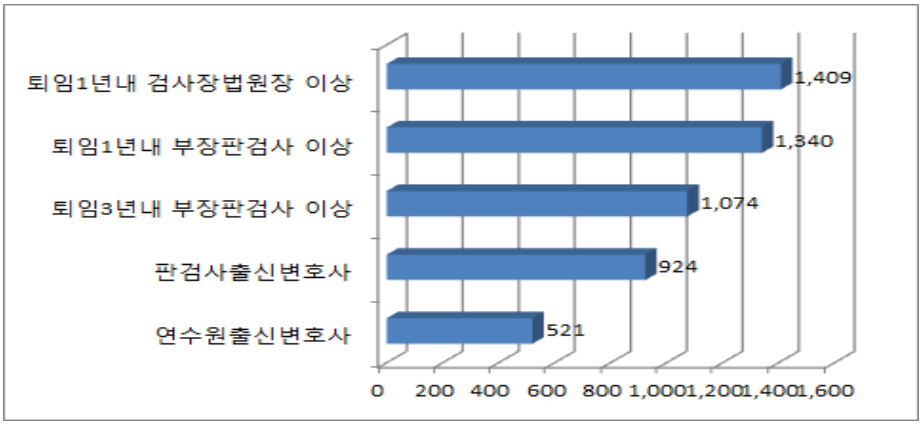
[요약그림 1] 변호사 모집단과 표본조사에서의 판검사출신 변호사 비중 차이 (제3장 참조)



2018년 법조브로커 실태조사에서 의뢰인들이 선임했던 판검사출신 변호사는 47.4%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0.1%로 나타났다. 2018년도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판검사출신 변호사는 15%에 불과하다. 모집단에서 15%에 지나지 않는 판검사출신 변호사가 의뢰인 표본에서는 약 50%로 나타났다는 것은 의뢰인들이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매우 선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수임건수가 기타 변호사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2) 의뢰인들이 보고한 전관변호사의 평균 수임료

[요약그림 2] 전관변호사의 조건에 따른 기본 수임료 차이 (제3장 참조)



평균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판검사출신 변호사만 되어도 연수원출신 변호사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으며, 퇴임 1년 이내의 고위직 출신 전관변호사들의 경우엔, 연수원출신 변호사들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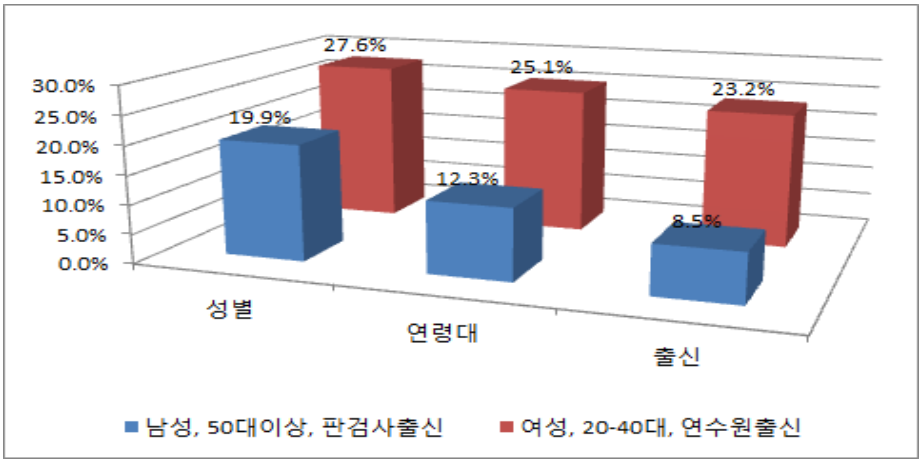
3) 의뢰인 조사를 종합해 보면, 전관변호사들은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에 비해 평균적인 수준에서 ① 수임건수가 많고, ② 기본 수임료가 비싸며, ③ 추가수입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결합하면,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평균 수입과 기타 변호사들의 평균 수입 사이에는 매우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4. 변호사 대상 조사결과 요약

1)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사례 경험률 - 최근 10년 내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21.8%, 5년 내는 20.6%, 1년 이내에 경험했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5.6%였다. 변호사 시장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여성 변호사, 젊은 변호사, 비전관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경험률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변호사들의 불만은 쉽게 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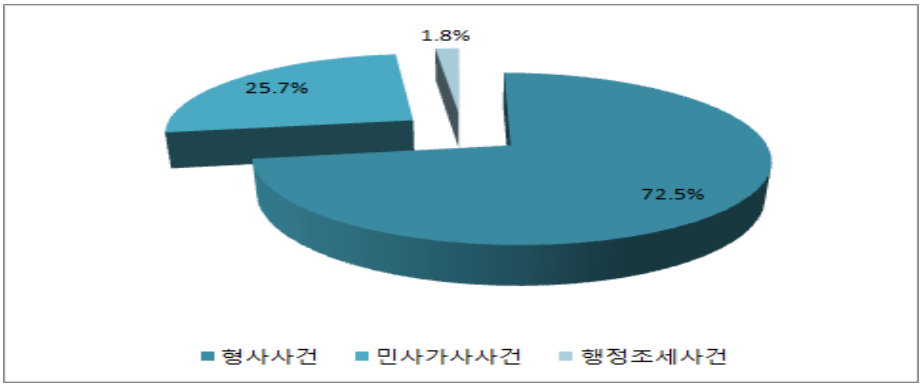
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요약그림 3] 현직 변호사들의 성별·연령별·출신별 전관예우 경험률 비교 (제4장 참조)



2) 전관예우 관행의 형사사건 비중

[요약그림 4] 현직 변호사들이 응답한 가장 최근 전관예우 경험 사건의 구성비 (제4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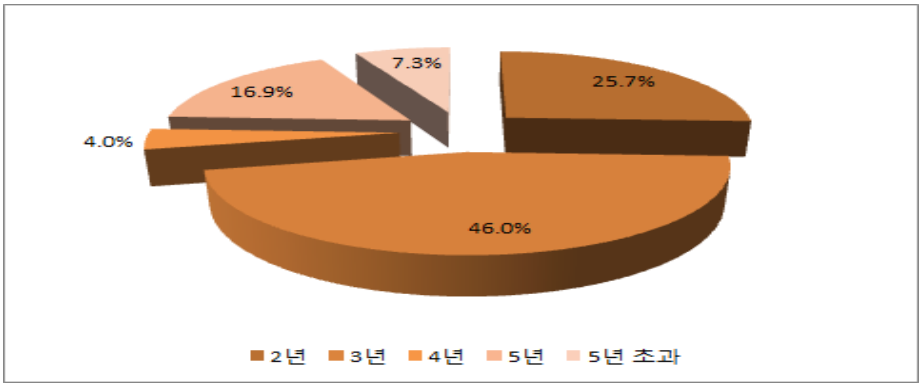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경험은 주로 형사사건(72.5%)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형사사건 중에서는 재판 단계(1,2,3심 합쳐서 34.2%)보다는 검찰 수사단계(51.9%) 등 재판 전 단계에서 더 많이 경험되었다고 한다. 조사 및 연구의 방법론적 수월성 때문에 선행조사연구들에서 전관예우 현상은 많은 경우에 판사출신 변호사의 영역에서 연구되어 오곤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증이 어려운 검사출신 변호사의 영역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으나, 이 결과는 형사사건에서의 전관예우 관행과 검사출신 전관변호사의 질적·양적 비중도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현행 변호사법 수임제한 1년 규정 연장에 관한 의견

[요약그림 5] 현행 변호사법 수임제한기간을 대체할 적정한 기간에 대한 의견 (제4장 참조)



설문 참여 변호사의 70.8%는 현행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 연장 기간은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5.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변천사 요약

1)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70여 년 간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입법적 노력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전관비리에 대한 문제인식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적 개선 노력은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 국민적 요구와 함께 눈부신 경제발전에 따른 사법시장 규모도 커지기 시작하면서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2) 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입법적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 2016년 〈정○○ 게이트〉에 나타난 바와 같이 – 전관예우 문제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상황이다.

3) 전관예우 문제는 대법원, 법무부(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관비리 근절대책은 주로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법무부(대검찰청)의 보다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청되는 상황이라 할만하다.

6. 최근 입법동향 정밀분석 결과 요약 : 최근 법안들의 경향성

[요약표 1] 제19대 및 제20대 국회 발의 전관예우 방지대책 관련 법안들의 경향성 (제6장 참조)

법안 제목	경향성/특징	비고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시간적 제한 연장 중심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공직퇴임변호사 등에 대한 시간적 제한 연장 중심	-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최고위급 법관 출신 공직퇴임변호사 한정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전관예우 포기 유도	-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경력법관에 대한 시간적 규제 설정	전관예우에 상응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 목적 법안

1) 변호사법 개정안의 경우 수임행위의 제한과 관련하여, 주로 수임행위에 있어서 시간적 제한을 늘리거나 당해 제한과 관련된 제재를 강화하는 맥락에서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 외 수임행위에 있어서 대상적 제한이나 방법적 제한과 관련된 법안들도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2)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경우 주로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시간적 제한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발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이 전관예우 방지대책에만 제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최고위급 법관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예우를 통하여 공직퇴임변호사가 누릴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사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유도하는 법안도 일부 발의된 바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전관예우 방지대책에 상응하는 측면이 있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대책도 일부 발의된 바 있다. 이 역시 시간적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대상적 제한 내지 방법적 제한과 함께 보다 입체적으로 구조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7. 관련 해외 입법례 검토 요약

1)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은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사법적 체계를 바탕으로 전관예우 문제가 전혀 혹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어떠한 시사점을 얻기 어렵다.

2)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시사 받을 수 있는 것은 판사나 검사들에 대한 정년보장과 급여보장을 통해서 이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8.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조사연구결과 등을 통한 결론적 논의

1) 전관예우의 존재와 심각성에 관한 판단 : 선행 조사연구에 대한 참조 및 본 조사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전관예우 혹은 전관비리 현상은 존재하며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전관변호사들은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에 비해 평균적인 수준에서 ① 수임건수가 많고, ② 기본 수임료가 비싸며, ③ 추가수입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 확인이 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이다.

2) 뚜렷하게 나타나는 수임건수와 수임료 등의 차이는, 일부의 판검사들 혹은 일부의 인사들이 주장하듯이, 전관변호사에 대한 예우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법조브로커에게 속아서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편견과 기만의 효과도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영향력은 부수적이라고 판단된다.

3) 혹시라도, 편견과 기만의 효과에 의해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어리석게도 전관변호사들을 찾아가서 더 많은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면, 실제 전관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를 해서 그것을 적극 홍보하여 의뢰인들을 계몽하는 정책이라도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4) 선행 조사연구에 대한 참조, 본 조사연구의 결과,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의 변천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전관예우가 좀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영역은 형사소송 영역 및 검사들의 활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관비리 근절대책은 주로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 왔는데, 이에 법무부(대검찰청)의 보다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청되는 상황이라 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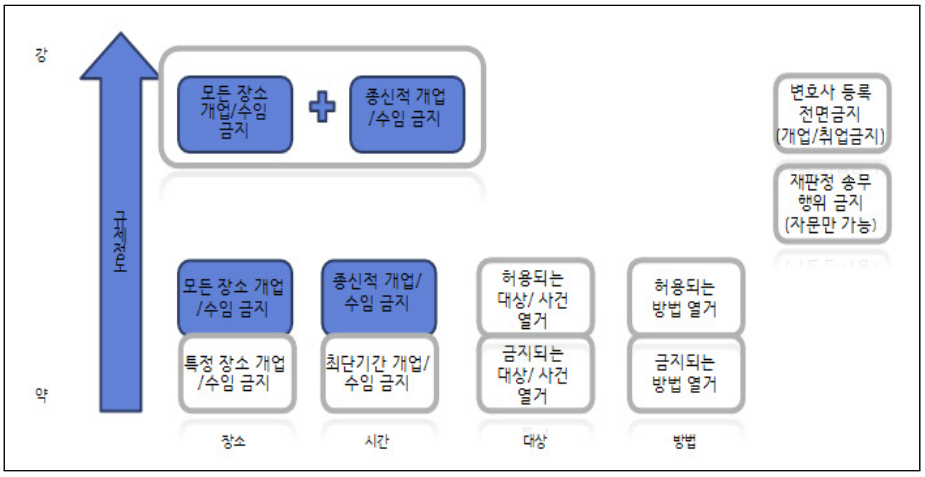
5) 재판까지 가지 않는 단계에서 주로 승부가 나는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전관 효과는 주로 검사들의 기소재량권과 관련하여 발생한다고 사료된다. 판결은 판결문에 분명한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불기소 결정은 불분명한 이유로도 내려질 수 있다. 이것이 검사출신 전관변호사들의 위력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제시

1) 변호사법의 개정 방향의 분류 도식 : 변호사법을 통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규제를 규제강도에 따라 총괄하여 나누어 보면, 그림과 같이 도식화해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는 화살표 방향으로 규제의 강도가 높은 대책을 의미하고,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도 시행 가능한 대책들이다.

[요약그림 6] 전관변호사들에 대한 규제정도에 따른 전관예우 방지 방법 분류 (제8장 참조)



2) 변호사법상의 장기적 차원의 근절 대책 : 외국의 사례들에서처럼, 평생법관제나 평생검사제 등을 전제로 하여, 전직 판검사들이 아예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당장 실현하기에는 한계와 장애가 많다.

3) 변호사법사상 중·단기적 차원의 대책

① 시간적·장소적·대상적 제한의 특정과 처벌강화 : 그간 국회에서 발의되어 왔던 개정안들에 준하여, 수임행위에 있어 특정한 제한을 직접 열거하는 방안(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하는 등)과 그러한 규제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등)들은 자주 거론되어 왔던 것으로 새롭게 제안할 만한 내용이 아니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② [방법적 제한1] 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필요성 : 이는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현직 변호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조치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든 위반 사실이 발각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각인케 하는 억제효과로서 필요하다고 본다.

③ [방법적 제한2] 수임자료제출 위반행위자 및 법무법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

성 : 현행 변호사법은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행위와 관련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당해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전관예우 방지대책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는 방법적 제한의 강화(형사처벌 규정 신설)를 고려하고,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④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의무 위반 관련 변호사 자격 제재의 현실화 필요성 :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관련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규정 위반자에 대한 변호사 자격 관련 제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변호사법상 변호사 자격 관련 규정을 직접 개정하거나 또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관련 규정 위반자가 공직퇴임변호사인 경우에 한하여 벌금형을 배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⑤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 추가 필요성 : 변호사법상 제재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즉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개업 또는 취업 이전 단계에서, 법조윤리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법상 수임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인식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절차가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4)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

① 취업제한에 있어서 시간적 제한의 장기화 필요성 :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에서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직접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퇴직일로부터 5년간 퇴직 전 5년간으로 시간적 제한을 강화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② 변호사 등록 취소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 : 변호사법상의 변호사 등록 취소 관련 규정의 적용을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취업제한 기간 관련 위반행위를 범하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하여 벌금형을 배제하는 방식을 입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5) 법률 제·개정 외의 정책 제언: 통계적 정책검증 수단 확보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정책 역시도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하고, 정책의 수정 및 정책의 효과성 검증 역시도 실증자료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판결과 관련한 자료, 기소/불기소와 관련된 자료 등 법원과 검찰이 소유한 대규모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전관효과의 존재와 그 변화 추이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다. 단, 이 때 분석이 용이해지려면, 변호사에 관한 정보(전관여부, 전관 퇴임시기와 퇴임시 직위 등에 관한 정보)가 형사사법포털(KICS)에 통계적으로 입력되어야 한다. 그러한 입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관예우 방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 현상의 추이 파악을 통한 정책 검증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서 론

황 지 태

제1장

서 론

제1절 | 본 연구의 배경 및 취지

본 연구는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두 번째 연구이다. 2018년도에는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이번에는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 제1년차(2018년) :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
- **제2년차(2019년) :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

전체 연구로서의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의 기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2018년도 보고서(황지태·김정연·정지혜·강우예, 2018)[1]를 참조하면 될 것이고, 여기서는 올해 연구과제의 취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우선 올해 연구의 주제이자 전체 연구의 부제에 전관예우라는 용어와 전관비리라는 용어를 병행해서 사용한 이유부터 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관예우라는 용어가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본다. 전관예우라는 용어는 퇴임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는 용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관비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한 용어라고 판단한다. 다만, 전관예우라는 용어가 워낙 오랫동안

1) 황지태·김정연·정지혜·강우예, 2018,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7-10. 참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고, 본 연구에서와 같이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설문지 등에 전관비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응답자들이 겪을 혼란에 대비하여 부득불 전관예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즉, 전관비리라는 용어가 전관예우보다 좀 더 적절한 용어라 판단하지만, 설문 응답자들과 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코자 한다는 말이다.

1. 전관비리 문제의 심각성 대 전관예우의 존재 부정

전관비리 혹은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는 우리나라 법조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 법조비리 사건 폭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대전 법조비리 사건은 법조 브로커 문제임과 동시에 전형적인 전관비리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최근에 이르러서도 전관예우와 관련한 사건과 보도 및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00억대 수임료 취득 변호사 논란에서부터 시작하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하는 전화변론 문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천 만 원씩 받는다고 뒷소문이 나 있는 이른바 도장값[2] 문제 등 전관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이다.

판사나 혹은 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전체 변호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전관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부류들, 즉 고위직으로 퇴임하여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비중은 더욱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수의 변호사들이 정상적인 수임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사건을 수임하고, 그 수임료도 턱없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명목으로 추가비용까지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2)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상고이유서에 도장만 찍어주고 수천 만 원을 받은 사례에서 나온 용어다. 사건의 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장만 빌려주고 거액을 받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수에 비해 상고사건이 워낙 많아서 기각되는 사건이 대부분인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변론을 하면 적어도 기각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 시장의 공공연한 소문으로 나돌아왔고, 이에 급기야 변론조차도 하지 않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명의만 빌려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발생하면서 도장값이란 말이 생긴 것이다. 2015년에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이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 2015년 3월 26일자, "하창우 변협 회장 '전직 대법관 도장값 3000만원 폭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32611148270676 (2019년 11월 11일 확인)

이에, 전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물론이거니와 현직 판사와 검사들 중의 적지 않은 이들은 전관예우가 아예 존재하지조차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들은 전관예우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마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돈을 싸들고 전관변호사를 찾아다니는 게 전관예우 현상의 실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한편에서는 심각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기를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 필요한 사실 확인과 문제 해결방식의 궤적 검토

그동안 전관비리 혹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많은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으나[3], 그 무수한 논의들에 비해서는 실제로 행해진 것은 상대적으로 초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앞서 언급했던 '전관비리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관예우 존재 자체의 부정'의 양립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즉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아우성 때문에 관련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 그런 문제는 과장된 것이며 더 나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며 버티기 때문에 그 무수한 논의들은 종종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귀결되곤 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의견 대 의견의 대립의 형국으로 지속된다면, 지지부진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지도 모른다. 진짜 현실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그 심각성이 과연 어느 정도이고, 그로 인해 생기는 폐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가늠이 정확하다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본 연구의 취지가 무엇인지 짐작케 할 것이다. 우선 전관예우 현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의견 또는 소문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와 관련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무엇을 시도해왔는지 점검해 보면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일이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본 연구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3) 본고의 제5장과 제6장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부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본 연구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현상을 검증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전관예우에 관한 연구 영역은 의외로 넓고 다양해서,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전관예우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 때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은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은 그대로 이용하고, 기존 조사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물들을 보충하여 '사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필요한 사실 확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관예우 혹은 전관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한 대응방식들을 철저히 점검해 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고, 그 때마다 어떤 방비책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오고갔으며, 그 논의의 결과들은 어떠했는지를 시대별로 상세히 알아보고, 특히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보는 앞서 언급했던 사실 확인 정보들과 결합하여 현 시점에서 필요한 방안이나 혹은 개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제2절 |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전관비리의 실태파악과 관련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의 궤적 분석 및 현시점에서의 개선 방안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중 실태파악과 관련된 부분은 제2장과, 제3장, 제4장에 해당하고, 제도의 역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은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에 해당된다.

1. 전관비리 관련 조사연구 부분

실태파악과 관련된 부분 중 제2장에서는 전관예우 현상에 대해 지금까지 실시된

중요한 선행 조사연구들을 수집하여 소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그 연구들에서 누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본 연구에서 집중해서 검증할 내용들을 선정하면서 전반적인 조사연구의 방향성을 잡는 내용을 담았다.

제3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변호사 선임 경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이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패널자료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른 종류의 연구와는 달리, 전관예우에 관한 실증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방법이 적용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조사결과에는 지금까지 제시된 적이 없는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되어, '사실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제4장에서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법조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는 전관비리 혹은 전관예우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관련하여 전관예우에 관한 연구 전체의 중요한 고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법조3륜 중에 전관예우 혹은 전관비리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왔다고 할 수 있는 변호사 집단에 대해 전관예우에 대한 경험 및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전관비리 방지의 역사 및 현재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의 궤적 분석 및 현시점에서의 개선 방안과 관련된 부분 중 제5장에서는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의 변천사를 다루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호황을 맞으면서 사법시장 규모도 커지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전관비리 등 법조비리 문제가 불거져왔음을 지적하면서, 정부 변화를 기준으로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변천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전관예우 혹은 전관비리에 대한 최근 입법 동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았다. 제6장은 크게 보면 제5장의 흐름과 연결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최근의 입법 동향 부분을 떼어내서 돋보기로 보듯이 크게 확대하여 자세히 살펴본 것이다. 아무래도 가장 최근의 흐름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해서이다.

제7장에서는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전관예우 관련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

해 보면서, 그들로부터 배울 점이 있는지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의 영미법계 국가들을 포함하여 독일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앞서의 모든 논의들을 종합하여 현 시점에 필요한 전관예우 방지책의 기본 방향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Ⅱ)

선행 조사연구 검토 및 실태조사의 방법론

황 지 태

제2장

선행 조사연구 검토 및 실태조사의 방법론

본 연구에는 전관예우(전관비리)에 관한 실태조사가 포함된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가 어떠한 내용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본 연구 전체,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관예우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전관비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한 실태조사가 아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전관예우에 관한 선행조사 연구들의 미진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성격과 함께 앞으로 실행되어야 할 추가적 실태조사 연구들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자 하였다. 왜 그러한 지는 뒤에 이어질 선행 조사연구 검토 및 그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 내의 실태조사는 본 연구의 결론부에서 제시하게 될 정책적 제언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서의 위상을 갖지만, 그 근거의 전부를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은 여러 선행 연구들과 본 조사연구의 내용을 최대한 종합하여 제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절들에서 전관예우(전관비리)에 대한 정의 문제부터 차례로 다루겠다.

제1절 |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정의에 관한 논의

전관예우에 관한 정의 문제는 본 연구의 전체적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실태조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전관예우 현상을 측정해야 하고, 그 측정을 위해서라도 전관예우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다[4].

1. 전관예우라는 용어의 적절성: 전관예우/전관비리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전관예우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 용어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한 연구 중에는 전관예우를 전관비리(前官非理)라고 표현한 경우가 있다(황지태 외, 2016: 211-216)[5]. 해당 연구에서는 전관비리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여긴 것이다. 2018년도 하반기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총괄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법조계 전관예우라는 용어는 전직 법조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를 전관에 대한 정당한 대우로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전관예우가 아닌 전관비리 용어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기도 하였다(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총괄분과위원회, 2018: 3).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제안에 공감한다. 그래서 본 보고서의 부제에 전관비리라는 표현을 병기하여 사용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관예우라는 용어가 워낙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고, 본 연구에서와 같이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설문지 등에 전관비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응답자들이 겪을 혼란에 대비하여 부득불 전관예우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전관비리라는 용어가 전관예우보다 좀 더 적절한 용어라 판단하지만, 설문 응답자들과 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코자 한다는 말이다.

2. 법조계 전관예우(전관비리)로 한정

전관예우에 관한 논의를 하다보면 나오는 지적들 중에 하나로 "전관예우가 반드시 법조계에 한정되는가?" 하는 반문을 듣곤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보통 전관예우

---

4) 이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가 어느 계절에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계절을 측정한다고 하면, 계절의 경계선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가 봄이고 언제까지가 여름인지 그 경계선을 인위적으로라도 결정해야 한다.

5) 황지태·김경찬·서울시립대학교, 2016,『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211-216. 참조.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왜 전관예우 대신 전관비리라는 용어를 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하면 법조계를 떠올린다. 주로 법조계 위주로 이 용어가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전관예우하면 머릿속에 전직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전직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전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법조계 이외에도 가능하고 실제로도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6], 넓은 의미의 전관예우는 법조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관예우(전관비리)에 관한 연구이기 이전에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법조비리에 관한 2개년 연구 중 2년차 연구)이다. 법조비리의 하위 유형으로서의 전관예우를 연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연구의 영역을 법조계 이외의 전관예우까지 확장해 보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법조계 전관예우(전관비리)"만을 취급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전관예우 혹은 전관비리라는 용어는 그 앞에 법조계란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더라도 모두 "법조계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줄임말이라고 간주하면 된다.

3. 본 연구의 전관변호사 개념 정의 방법

가. 전관변호사의 범위 문제

전관예우(전관비리)에 대한 정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어느 범위까지를 전관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뒤에서 보게 될 전관예우에 관한 선행 조사연구들을 보더라도, 각 조사연구들에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정의하는 전관의 개념과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통의 평균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전관 개념과 법조계에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관 개념 사이에도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 넓게는 단순히 전직이 판사나 검사인 변호사를 전관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주 좁게는 퇴직한 지 1년이나 6개월 이내의 고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만을 전관으로 제한하여 보는 시각도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전관예우 실태조사에서는 전관예우를 "전관변호사가 수사나

6) 전관예우는 이해충돌(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의 한 가지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해충돌은 법조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부당한 특혜를 받거나, 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현상"으로 정의한 바 있다(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34). 전관변호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설문지에 적시하지 않았지만,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는, "사법절차(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포함)에서 판사·검사·헌법재판관·경찰관 등의 관련 공직에서 퇴직하여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변호사"를 "전관변호사"로 칭하고 있다(Ibid, 31). 한편, 현행 변호사법 제31조의 변호사 수임제한과 관련된 법조문에서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개업을 한 자(공직퇴임변호사)"로 전관변호사를 규정하고 있다.[7] 현행 변호사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관변호사는 대부분 (특별한 전제조건이 없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와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연구에서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전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전관 개념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실질적인 전관'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 때문이다. 다시 말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해도 그들 모두가 실질적인 의미로서의 전관변호사인 것은 아니며, 전관예우 효과는 그 중에서도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자면, 퇴직 시 지위가 검사장급이거나 법원장급은 되어야 한다든가, 퇴직 후 1년 혹은 심지어 6개월만 지나면 이른바 전관효과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퇴임 후 현재까지의 기간이 짧아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식의 의견들이다. 실제로, 그 같은 의견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뒤에 소개할 선행 조사연구들을 보더라도, 퇴직 전 지위가 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전관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들은 전관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전관 효과의 유무를 가를 정도의 변수는 아니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가령, 1년 후에 전관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관효과가 1년 후에 급격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영향력의 상대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상당한 기간 동안 끈질기게 존속함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확실히 존재한다. 그 때문에,

---

7) 현행 변호사법 제31조 ③의 내용은 전관변호사라는 개념으로 명시하여 정의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사실상 전관변호사를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전관 개념을 특정 조건으로 너무 엄격하게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측정과 관련된 전관변호사 규정 방법

그렇다면, 전관변호사의 범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특히 실태조사에서의 측정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

일단 현직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관예우 인식 관련 설문에서는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판사 혹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8]" 정도로 전관변호사를 규정해 보았다([부록 2] 참조). 이는 실질적인 전관효과 논란을 어느 정도 감안한 정의 방식이다. 인식 관련 조사에서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들의 경험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실제 전관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정의를 어느 정도 따르면서도 동시에 이와는 다른 방식의 규정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이란 표현은 "계절" 구분과 마찬가지로, 경계가 모호해서 정확한 측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전관변호사의 범위를 공직퇴임변호사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에서부터 특정 조건이 단계적으로 추가되어 가장 협소한 의미의 전관변호사 개념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송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질문 항목에 판사 혹은 검사 출신 여부를 묻는 질문은 물론이고, 선임 변호사의 공직퇴임 이후 선임된 시기까지의 기간을 묻는 질문, 그리고 퇴직 시의 직위를 묻는 질문을 모두 포함하면([부록 1] 참조), 각 질문에 대한 응답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조건의 전관변호사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판·검사 출신 변호사 전체 집단, 퇴직 후 3년 미만의 부장검사·부장판사 이상 직급 출신의 변호사 집단, 퇴직 후 1년 미만의 검사장·법원장 이상 직급 출신의 변호사 집단 등으로 자유롭게 재분류가 가능하도록 설문지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각 집단별로 수임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각

8) 원론적으로는 변호사법에서처럼 장기복무 군법무관이나 기타 공무원직이 포함될 수 있으나 설문조사에서는 조사의 편의상 실질적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판사와 검사에 한정하였다.

단계별 전관효과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선험적으로 전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거나 넓히는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4. 전관예우(전관비리) 정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전관예우 혹은 전관비리에 관한 정의를 내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전관예우는 부적절한 용어로 전관비리라는 용어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오래된 언어 관행을 고려하여 두 가지 용어를 병용한다.
② 본 연구는 법조비리라는 대주제로 출발한 연구이기 때문에, 법조계 분야 이외의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③ 본 연구에서의 전관예우(전관비리)는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의 과정 또는 결과에서 혜택을 받는 현상" 정도로 정의한다.
④ 이 때 공직퇴임변호사에는 원칙적으로 장기복무 군법무관이나 기타 법조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편의상 현실적으로 공직퇴임변호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로 한정한다.
⑤ 실질적인 전관효과의 차원에서 전관변호사의 범위가 퇴임 후 기간 퇴임 전 직위 등 몇몇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어디까지가 전관변호사인지를 선험적으로 미리 규정하지 않고 조건에 따른 전관효과의 정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념화한다.

제2절 | 전관예우에 관한 선행 조사연구 검토

전관예우에 관한 선행연구들에는 적지 않은 문헌연구들과 함께 전관예우에 관한 여러 종류의 실태조사 연구들이 있다. 이 중 문헌연구의 경우에는 뒤에 이어질 법률 검토와 관련된 장들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언급하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현

시점에 요구되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의미 있는 내용으로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 하에 선행 조사연구 위주로 그 내용들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전관예우의 존재와 심각성에 대한 최근 의식조사연구 결과

전관예우(전관비리) 현상의 실재 여부 및 그 실태를 엄격한 방법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사실 아주 어려운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쉽게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그에 관한 의식조사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그래서 그 종류가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조사연구에서 참고하고자 하는 선행조사연구는 주로 실증조사가 될 것이며, 의식조사 연구는 최근의 의미 있는 연구 위주로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가. 전관예우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인식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전관예우에 관한 조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에서는, 〈표 2-1〉에 인용한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에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Ibid,: 35-36).

언뜻 보면, 질문 자체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질문에는 전관예우 현상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실제 응답결과에서도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판사들의 경우(N=271명), 응답 인원의 54.2%가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판사들은 전관예우의 존재를 가장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들도(N=63명) 34.9%가 같은 응답을 하였고,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도 33.9%가 동일한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법원의 판사를 제외할 경우,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다. 특히, 변호사와 변호사사무원들은 압도적인 비율의 다수(변호사의 75.8%[9], 변호사사무원의 79.1%)가 전관예우 현상의 실제

9) 참고로, 2013년에 행해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대상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 변호사

존재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서 전관예우 현상을 부정하는 의견이 결코 적지 않게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표 2-1] 전관예우 존재에 대한 동의 (2018년도 조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1)
법조직역 종사자 (1,391)	**법원-판사**	271	**23.2**	**22.5**	**54.2**
	법원-일반직원	292	37.7	31.2	31.2
	검찰-검사	63	42.9	22.2	34.9
	검찰-일반직원	170	66.5	25.9	7.6
	변호사	438	**75.8**	**9.4**	**14.8**
	변호사사무원	153	**79.1**	**11.1**	**9.8**
	기타	4	0.0	75.0	25.0
일반국민		1,014	**41.9**	**24.2**	**33.9**

※ 자료출처: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법원행정처. p35, p36. 재구성.

1) 해당 응답지의 전체 원문은 이러하다.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전관변호사나 법조 브로커들이 당사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당사자들을 일부 호도하는 것이다." (Ibid.: 34)

그러한 응답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이 조사에서의 질문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질문에서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지에는 다음과 같은 부연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즉 "이는 전관변호사나 법조 브로커들이 당사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당사자들을 일부 호도하는 것이다"(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34)라는 설명이다.

이 부분을 잘 따져보면, 이 조사에서 "전관예우 현상은 없다"라고 판단한 사람들 중에는 "절차나 결과에 있어 특혜는 없지만 전관변호사와 나머지 변호사들 사이의

의 90.7%가 "전관예우는 존재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네이버뉴스 연합뉴스, 2013년 6월 11일자, "변호사 80% 전관예우 관행 안 없어진다"는 제목의 기사 참조. (2019년 10월 18일 확인), https://news.naver.com/main/tool/print.nhn?oid=001&aid=0006308124]
또한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2014년도 조사에서는 89.5%가 동일한 응답을 한 바 있다. [아주경제, 2014년 8월 18일자, "변호사 89.5% 전관예우 여전히 존재" (2019년 10월 18일 확인), https://www.ajunews.com/view/20140818141040120]
2018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이들 조사결과는 질문 방식에 따라 전관예우를 인정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추정컨대, 2018년 조사의 질문에서 전관예우의 개념을 좁혀놓은 이유 때문에 2013년도 및 2014년도 조사결과보다 낮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상당한 수입 차이는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부정은 미묘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중 하나는 "절차와 결과의 특혜도 없고 전관-비전관 사이의 (상당한 수준의) 수임료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대적 부정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전관-비전관 사이의 커다란 수임료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는 절차와 결과의 특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의 농간에 의해) 발생하는 착시현상 또는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10]이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두 가지 중 어떤 것에 속하느냐에 따라,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혜도 없고 수임료 차이도 없다는 주장이라면 딱히 뭐라고 할 말도 없겠지만, 실제 특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임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입장이라면, 실제로 특혜가 없다는 것을 경험적·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주력하고 그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의뢰인들이 더 이상 속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대책 정도는 세워야 할 것이다.

나. 전관예우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

앞서 소개했던 최근 조사의 결과를 과거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전관예우 현상의 존재에 관한 과거의 일반인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해보자면 다음 〈표 2-2〉에 인용한 바와 같다.

이 표는 2007년도에 수행된 조사연구의 결과(최인섭·황지태, 2007)인데, 당시 조사에서 이 표와 관련된 질문은 "귀하의 생각에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했을 경우, 동료였거나 후배였던 판사나 검사들이 특례를 주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Ibid.: 152). 이는 앞서 2018년도의 조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에서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질문이고 그 응답지도 상당히 다르다.

10) 효과 없는 가짜 약을 먹은 환자가 긍정적인 믿음만으로 회복되는 현상이다.

[표 2-2] 판·검사 출신 전관예우의 존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 (2007년도 조사)

단위: 명(%)

전관예우의 존재와 작동 여부에 대한 응답	분포
거의 모든 경우에 그렇다	459 (30.6)
그런 경우가 더 많다	852 (56.8)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64 (4.3)
거의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다	21 (1.4)
모름/무응답	104 (6.9)
계	1,500 (100.0)

※ 자료출처: 최인섭·황지태, 2007,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Ⅰ) [1] 사법개혁과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일반인 대상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자면, 2007년도에 어떤 식으로든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무려 87.4%(〈표 2-2〉에서 30.6%+56.8%)였던 것에 비해 2018년도에는 41.9%(〈표 2-1〉 참조)로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007년도 조사에서 5.7%(〈표 2-2〉에서 4.3%+1.4%)였던 것이 2018년도에는 33.9%(〈표 2-1〉 참조)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도 조사에서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어느 정도 유도한 감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차이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 적어도 10년 전에 비해서는,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이 호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인식의 호전은 과거에 비해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일반인들의 의견은 그렇다 치고, 그럼 법조계의 의견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2007년도에 행해진 조사에서는 법조전문가들에 대해 전관예우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은 없었지만, 다음 〈표 2-3〉에 인용한 내용과 같은 조사결과는 남아 있다.

표에 나타난 응답분포는 "퇴직한 법관(검사 포함)이 (변호사로 개업할 때) 자신의 최종근무지에서 관할하는 사건을 일정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따른 것이다. 이 질문은 전관예우의 존재 여부를 직접 묻는 질문은 아니지만,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상당 부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크게 연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포를 전관예우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하고 그 응답분포를 최근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본다.[11]

〈표 2-3〉을 보면, 무엇보다도 판사의 경우 전관변호사 수임제한을 찬성하는 비율이 30%로, 반대하는 비율이 70%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표 2-1〉에서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응답한 판사의 비율이 23.2%였고, 전관예우 현상의 존재를 부정한 판사의 비율이 54.4%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표에 나타난 결과는 꽤 유사한 것이다.

변호사집단 의견의 경우에, 그 유사성은 더욱 크다. 2007년도 조사에 전관변호사 수임제한에 찬성했던 변호사의 비율이 78.3%였었는데, 2018년 조사에서 전관변호사가 실재한다고 본 변호사의 비율이 75.8%로 나타나고 있다. 검사들의 경우에도, 2007년도 조사결과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할 만하다.

[표 2-3]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임 제한에 대한 법조 직역별 의견 차이 (2007년도 조사)

단위: 명(%)

응답 범주 재분류	전문가 집단 구분				유의도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찬성	**9 (30.0)**	30 (62.5)	**36 (78.3)**	47 (85.5)	.000***
반대	**21 (70.0)**	18 (37.5)	**10 (21.7)**	8 (14.5)	
계	**30(100.0)**	48(100.0)	**46(100.0)**	55(100.0)	179(100)

*** : p〈0.001

※ 자료출처: 황지태, 2007,『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Ⅰ) [2] 사법개혁의 방향과 중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193. 원문의 수치 오류 수정 후 인용.

---

11) 참고로, 다음 〈주표 1〉은 "퇴직한 법관(검사 포함)이 (변호사로 개업할 때) 자신의 최종근무지에서 관할하는 사건을 일정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이 표의 내용을 앞의 소개한 〈표 2-2〉의 내용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표 2-2〉에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7.4%이고, 전관변호사 수임제한에 찬성하는 의견은 비율은 94.2%로 서로 거의 유사한 비율이다. 또한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일반인의 비율은 5.7%였는데, 전관변호사 수임제한에 반대하는 의견은 5.6%로 이 역시 서로 일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긴밀한 연관성을 볼 때, 〈표 2-3〉의 결과 역시, 전관예우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와 상당히 유사할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주표 1]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임 제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 (2007년도 조사)

단위: 명(%)

응답 범주	무응답 포함 분포	무응답 제외 분포
찬성	1,356 (90.4)	1,356 (94.2)
반대	84 (5.6)	84 (5.8)
모름/무응답	60 (4.0)	-
계	1,500(100.0)	1,440 (100.0)

※ 자료출처: 최인섭·황지태, 2007,『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Ⅰ) [1] 사법개혁과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96. 원문의 도표 변형(수치합산) 후 인용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하자면, 일반인들과는 다소 다르게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주요 주체들의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판사들과 변호사들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에서는 거의 혹은 전혀 변화가 없다. 10년 전에 비해, 여전히 판사들은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변호사들은 전관예우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다. 전관예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

판사집단과 변호사집단의 의견차이, 혹은 판·검사집단과 변호사집단 사이의 의견차이는 전관예우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다음 〈표 2-4〉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2-4〉는 앞서 소개했던 2018년도 조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에 포함된 내용으로, 앞의 〈표 2-1〉에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표를 보면, 판사와 검사들은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고(판사집단 36.3%, 검사집단 33.3%), 이에 비해 변호사들과 일반 국민들은 대다수가 전관예우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변호사집단 65.1%, 일반 국민 64.0%)을 알 수 있다.

이 부분만 보아도 판·검사집단과 변호사집단의 의견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지만, 실제 의견 차이는 이보다도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표에 나타난 응답분포는 전관예우를 인정한 응답자들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판·검사집단, 그 중에서도 특히 판사집단은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표 2-1〉에서 보았다. 즉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비율 자체가 특히 낮은데(23.2%), 그 낮은 비율의 인정자들 중에서도 전관예우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소수(36.3%)였던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 2018년도 조사에서 조사에 응한 판사들 중에서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인정한 판사는 8.4%에 지나지 않는다는 계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2] 이에 비해, 변호사들은 49.4%[13] 이상이 전관예우의 심각성을 인정

12) 역산식: [63×0.363]/271×100=8.42(%). 271명 중 23명 정도로 추정.
13) 역산식: [332×0.651]/438×100=49.35(%), 438명 중 216명 정도로 추정.

하고 있으니, 그 격차가 매우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 2-4] 전관예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2018년도 조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관존재 인정자)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법조직역 종사자 (766)	**법원-판사**	63	**28.6**	**31.9**	**36.3**
	법원-일반직원	110	13.7	34.7	51.6
	검찰-검사	27	22.2	44.4	33.3
	검찰-일반직원	113	9.2	35.8	55.0
	변호사	332	**1.2**	**26.5**	**65.1**
	변호사사무원	121	**0.0**	**25.4**	**66.1**
	기타	0	0.0	0.0	0.0
일반국민		425	**4.9**	**31.1**	**64.0**

※ 자료출처: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법원행정처. p43. p44. 원문의 도표 및 그래프 변형 후 인용

라. 전관예우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응답주체별 근거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39)를 다음 〈표 2-5〉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인용해 볼 때, 일반국민들의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의 근거는 간접적인 반면, 법조인들의 인식 근거는 좀 더 경험에 의거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를 보면, 일반 국민들의 경우, 41.2%가 뉴스를 통해 전관예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39.3%가 영화나 드라마 혹은 풍문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에, 실제 사건 처리과정에서 경험(7.3%)하거나 주변에서 경험한 사실을 직접 듣고(12.0%) 알게 된 비중은 적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판사나 검사 등을 포함한 법조직역종사자들은 실제 사건처리과정에서의 경험(51.6%)과 주변에서 경험한 사실을 직접 들은 경우(39.2%)가 압도적이었고, 대신 뉴스(5.5%)나 영화, 드라마, 풍문 등(2.9%)의 비중은 낮았다.

[표 2-5] 전관예우 존재를 판단한 근거 (2018년도 조사)

단위: %

구분	실제 사건 처리과정에서 경험	주변 경험한 사실을 직접 들음	뉴스에서 보았다	영화, 드라마, 풍문 등을 통해	기타
일반국민	7.3	12.0	**41.2**	**39.3**	0.2
법조직역종사자	**51.6**	**39.2**	5.5	2.9	0.9

※ 자료출처: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법원행정처. p39. 재구성.

이 결과를 근거로 판단해 보면, 국민들의 인식은 법조직역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하지 못하고 피상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판사나 검사들, 그 중에서도 특히 판사들이 전관예우의 문제를 국민들의 왜곡된 인식의 문제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다. 즉 국민들의 대부분은 전관예우를 직접 경험할 일이 적으며, 그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은 간접적인 경험만으로 예단하는 것이며 정확한 진실을 알지는 못한다는 논리이다. 뒤에서 보겠지만,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 이러한 논리가 과연 옳은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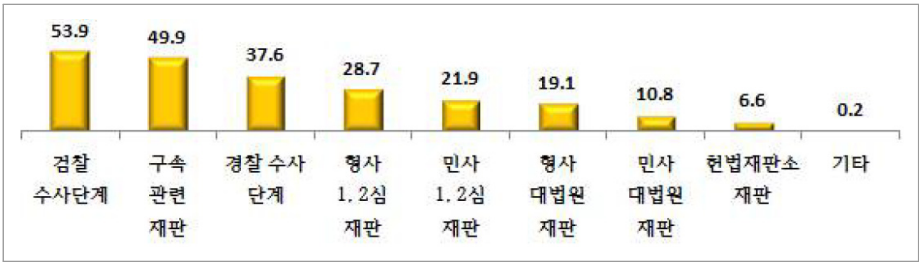
마. 전관비리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단계에 대한 인식

앞서 언급했던 최근의 조사결과 중 전관예우 주요 발생단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관한 내용(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46)을 마지막으로 다시 인용해 보자면, 다음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일반인 응답자들(N=425)을 대상으로 복수응답을 허용한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은 전관예우가 주로 발생하는 단계가 검찰 수사단계(53.9%)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구속 관련재판(49.9%), 경찰수사단계(37.6%) 등이며, 재판(형사 1,2심 재판 28.7%, 민사 1,2심 재판 21.9% 등)은 그 다음 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14]

14) 퍼센트의 합이 100%를 넘는 것은 복수응답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림 2-1] 전관예우 주요 발생단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2018년도 조사, 단위: %)



※ 자료출처: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법원행정처. p46.

이 결과는 인식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 객관성을 아직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정말로 그러한 지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검증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잠정적으로 참이라고 가정하고 판단해 보자면, 전관비리가 발생하는 단계는 주로 재판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관예우 효과의 존재에 대한 실증조사연구 결과

앞서 살펴본 전관예우 관련 인식조사에서 판·검사들, 그 중에서도 특히 판사들 중에는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판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판사 집단의 이러한 인식은 최근 조사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에는 전관변호사와 연수원출신 변호사 사이에 수임료 차이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인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추정컨대 대부분은 "수임료 차이는 인정하되 특혜는 없다"는 인식일 가능성이 높다. 즉 법조브로커들이 농간을 부려서 수임료의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으로 재판이나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일 것이다. 그리고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중 판사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판사들은 어쩌면 경찰단계나 검찰단계에 대해서는 몰라도 적어도 판사들이 개입하는 과정에는 특혜가 없다고 보는 입장일 수도 있다.

그러한 입장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인식조사를 백만 번 해도 판가름 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인식의 차원이 아닌 경험적 실증의 차원에서 전관예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들을 찾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수임료 차이의 실존 문제에서부터 수사나 재판 과정과 결과에서의 특혜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고 시도했던 의미 있는 주요 선행 조사연구들을 과거의 연구부터 현재의 연구들까지 시간 순으로 소개하고자 한다[15].

가. 2006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조사자료

2006년 10월 19일과 10월 20일,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 노회찬 국회의원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역 및 부산·울산·창원지역, 같은 해 10월 24일에는 광주·전주·제주지역의 전관 변호사들의 보석사건, 구속사건 등의 사건수임건수, 구속적부심 승소율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노회찬, 2006a, 2006b, 2006c).

1) 유력 전관변호사들과 일반변호사들의 사건수임수/사건수임률 비교

우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대구지역, 경남지역, 호남지역의 지역 내 보석사건 및 구속사건 수임 10위 이내의 개인 변호사들 중 전관(판사·검사) 출신 변호사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대구지역은 약 80% 내외(노회찬, 2006a: 1), 부산지역과 울산지역은 약 60%대, 창원은 약 80%대였고(노회찬, 2006b: 4-5), 광주 약 60%대, 전주 약 35%대, 제주 약 50%대(노회찬, 2006c: 4)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자료들은 전관변호사들의 사건 수임률이 기타 변호사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의 한 형태이다.

[표 2-6] 03-06년, 4년간 6개 지역 구속/보석사건 수임 10위 중 전관변호사 비율

단위: 건 (%)

	대구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구속사건	**29/34 (85%)**	16/27 (59%)	22/33 (67%)	**25/30 (83%)**	20/34 (59%)	14/41 (34%)	17/31 (55%)
보석사건	**32/41 (78%)**	17/26 (65%)	17/27 (63%)	**29/35 (83%)**	27/43 (63%)	15/42 (36%)	18/39 (46%)

※ 자료출처: 노회찬, 2006a: p1, 노회찬, 2006b: p4-5. 노회찬, 2006c: p4의 자료 종합 재구성.

15) 그러한 연구들이 많다고 하기는 어려워도, 그렇다고 아주 적은 것만도 아니다. 참고로,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효하게 증명한 실증적인 연구는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들 각 지역에서 보석 및 구속사건 수임 10순위 내 전관변호사들의 보석사건 수임건수는 대구의 경우 일반 변호사들을 포함한 전체 변호사 평균보다 약 14배(다음 〈표 2-7〉 참조), 부산은 약 12배, 창원 약 12배(해당 전관 변호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들과 비교했을 경우엔 약 47배), 울산 약 7배(그 다음 〈표 2-8〉 참조)인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는 약 5배, 전주와 제주는 약 3배 정도(마지막 도표 〈표 2-9〉 참조)였다고 한다.

[표 2-7] 대구지역 전관변호사와 일반변호사의 보석사건 수임건수 비교 (2004-05년 자료)

	2004년도	2005년도	평균
보석사건 총건수	354건	299건 (335명)	327건 (1인당 1건)
톱10 전관변호사의 수임건수	**232건 (7명)**	**226건 (9명)**	**229건 (1인당 14건)**

※ 자료출처: 노회찬, 2006a, "노회찬의원 보도자료: 대구지역 전관변호사 사건 수임률, 일반변호사의 14배에 달해", 2006년 10월 19일자. p2.

[표 2-8] 경남지역 전관변호사와 일반변호사의 보석사건 수임건수 비교 (2005년 자료 추정*)

	부산	창원	울산
보석사건 건수	528건(325명) 1인당 1.6건	209건(140명) 1인당 1.5건	431건(72명) 1인당 6건
톱10 전관변호사의 보석사건 건수	**58건(3명) 1인당 19건**	**153건(8명) 1인당 19건**	**121건(3명) 1인당 40건**
나머지 변호사의 보석사건 건수	470건(323명) 1인당 1.5건	56건(132명) 1인당 0.4건	310건(69명) 1인당 4.5건

※ 자료출처: 노회찬, 2006b, "노회찬의원 보도자료: 부산·울산·창원 향판, 변호사로 떼돈 벌고 다시 법원으로 복귀하고", 2006년 10월 20일자. p3.

* 인용자 주: 보도자료 앞부분의 구속적부심 승소율 분석의 경우엔 2003년-2005년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수임건수 비교에 있어서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수치를 감안할 때, 2003년-2005년의 3년 기간 합산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추정컨대 2005년도 자료를 이용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로, 같은 해 호남지역의 경우엔 2005년도 자료를 사용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2-9] 호남지역 전관변호사와 일반변호사의 보석사건 수임건수 비교 (2005년 자료)

	광주	전주	제주
보석사건 건수	819건(211명) 1인당 3.9건	521건(99명) 1인당 5.3건	173건(30명) 1인당 5.8건
톱10 전관변호사의 보석사건 건수	**96건(5명) 1인당 19.2건**	**64건(4명) 1인당 16건**	**52건(4명) 1인당 13건**
나머지 변호사의 보석사건 건수	723건(206명) 1인당 3.5건	457건(95명) 1인당 4.8건	121건(26명) 1인당 4.7건

※ 자료출처: 노회찬, 2006c, "노회찬의원 보도자료: 광주·전주·제주 향판, 형사사건 싹쓸이하고 다시 법원으로 등장", 2006년 10월 24일자. p3.

위에서 살펴본 표들을 보면, 각 지역 내의 톱10 전관 변호사들의 보석사건 수임건수가 일반 변호사들보다 크게 많음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비교방법에는 다소의 부당함이 아주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 보석 및 구속사건 수임건수가 가장 많은 전관변호사들 위주로 1인당 평균 수임건수를 계산하면 당연히 그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톱10 내 속하는 비전관출신 변호사의 수임건수 역시도 전체 평균보다 몇 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전주지역과 제주지역의 경우엔 이 방법 적용이 상대적으로 좀 더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톱10 내에 진입한 전관 변호사들의 비중이 정상분포[16]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 특히 대구지역과 창원지역에서의 소수 전관 변호사들의 압도적인 사건 독식 현상(〈표 2-6〉 참조)은 전관비리의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기에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음 〈표 2-10〉은 대구지역 일부 전관 변호사의 구속사건·보석사건 독식 및 전관효과의 실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표라고 할 수 있다.

[표 2-10] 대구 A전관변호사의 4년간 구속·보석사건 수임건수 및 연도별 랭킹 (2003-06년)

이름	최종직위	개업일	수임사건 종류	연도별 랭킹건수
A	대구지법 부장판사	2002년	구속사건	03년1위(154건), 04년2위(108건), 05년2위(78건), 06년5위(22건)
			보석사건	03년2위(73건), 04년1위(49건), 05년2위(32건), 06년1위(18건)

※ 자료출처: 노회찬, 2006a, "노회찬의원 보도자료: 대구지역 전관변호사 사건 수임률, 일반변호사의 14배에 달해", 2006년 10월 19일자. p2.
* 인용자 주: 보도자료 원문에는 B변호사와 C변호사도 기재되어 있으나, A변호사의 자료를 잘못 복사하여 붙인 것으로 추정되어 인용에서 제외하였다.

표에 나타난 A변호사는 "대구지역에서 태어나 20년간 대구지역 법원에서만 일하다가, 대구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 2003년-2006년 4년간 연속으로 구속사건 및 보석사건 톱10에 들었다"(노회찬, 2006a: 3)고 한다. 연도별 사건 수임건수의 추이를 보면,

16)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변호사 수는 2만명 수준(정확히는 20,554명)이고(황지태 외, 2018: 99), 대한변협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개업을 한 전직 판·검사 출산 변호사는 약 3천명(판사출신 1,679명, 검사출신 1,403명)이다(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총괄분과위원회, 2018: 1). 즉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변호사들 중에서 전직 판·검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가량 된다.

변호사 1년차의 사건수임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가 해가 지날수록 그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세간에서 흔히 거론되는 전관의 약발이 퇴임 1년 후에 가장 좋다는 이야기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자료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록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건수임수가 줄어들기는 해도 4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건수임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전관 효과가 꽤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유력전관 변호사들과 일반변호사들의 구속적부심 승소율 비교

2006년 보도자료에서 노회찬 의원은 "전관출신 변호사들은 수임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구속적부심 승소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노회찬, 2006b: 3, 노회찬, 2006c: 2).

먼저, 〈표 2-11〉은 당시 부산, 창원, 울산지역에서의 전관 변호사 구속적부심 승소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자료와 관련해 노회찬 의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창원·울산 전관 변호사들의 구속적부심 사건 275건의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부산 전관의 석방률은 59.6%, 창원 전관 석방률 62.3%, 울산 전관 석방률 61.9%로 세 지역 모두 일반 변호사의 석방률보다 높았"음을 보여주었다(노회찬, 2006b: 3).

[표 2-11] 경남 전관변호사들의 구속적부심 승소율 비교 (2003년-2005년 자료)

	승	패	합계	**전관변호사 석방률**	지법 평균 석방률
부산	62건	42건	104건	**59.6%**	53.5%*
창원	33건	20건	53건	**62.3%**	43.9%
울산	73건	45건	118건	**61.9%**	54.6%

※ 자료출처: 노회찬, 2006b, "노회찬의원 보도자료: 부산·울산·창원 향판, 변호사로 떼돈 벌고 다시 법원으로 복귀하고", 2006년 10월 20일자. p3.
* 부산의 경우, 2005년도 수치를 인용

다음으로, 〈표 2-12〉는 당시 광주지역에서의 전관 변호사 구속적부심 승소율을 보여주고, 이를 광주지역 평균 석방률과 비교한 자료이다.

이 자료와 관련해 노회찬 의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광주지역 전관 변호사들의 구속적부심 사건 119건의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전관 변호사의 석방률은 57.1%로 광주지법 평균 석방률보다 높았"음을 보여주었다(노회찬, 2006c: 2-3).

[표 2-12] 광주지역 전관변호사들의 구속적부심 승소율 비교 (2003년-2005년 자료 이용)

	승	패	합계	**전관변호사 석방률**	지법 평균 석방률
광주	68건	51건	119건	**57.1%**	47.4%

※ 자료출처: 노회찬, 2006c, "노회찬의원 보도자료: 광주·전주·제주 향판, 형사사건 싹쓸이하고 다시 법원으로 등장", 2006년 10월 24일자. p2.

현 시점에서도 적지 않은 전·현직 판사들이 전관예우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단지 국민들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36-41).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의뢰인들의 선호 현상으로 인해 설령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수와 수임액수가 많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실제 '예우'(다른 말로, 전관 변호사가 개입했을 때 생기는 처분의 실제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구속적부심 승소율 차이는 실제 '예우'도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승소율 차이가 '예우'가 아닌 다른 종류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최소한의 합리적 설명도 제기된 적이 없는 상태라면 더욱 그러하다.

나. 2013년-2014년 최한수의 연구 결과

2013년도 12월, 조선일보 Weekly Biz에 최한수의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내용이라고 소개된 기사[17]에서는 전관예우 변호사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도표로 게재된 바 있다. 참고로, 최한수의 박사학위논문(Hansoo Choi, 2014[18])은 2014년도에 발간되었고 학위논문의 제3장(Revolving Door Attorneys and the power of Connections: Evidence from Korea)에서 전관예우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이 위 기사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기는 하나,

17) 조선일보, 2013년 12월 14일자, "전관 변호사 쓸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 15% 높아지고, 실형 2년 줄어든다"는 제목의 기사, http://weekly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3/2013121301841.html (2019년 6월 26일 확인)

18) Hansoo Choi, 2014, *Essays on Business Groups and the Judiciary in South Korea*, a doctoral thesis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이 논문은 전관예우에 대한 분석을 본격적인 주제로 다룬 논문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사법영역에서 재벌을 포함한 기업집단들에게 주어지는 우대 현상을 분석한 논문이다. 그 분석 과정(제3장, Revolving Door Attorneys and the power of Connections: Evidence from Korea)에서 부수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관문제를 다룬 것이다.

그 논문에는 조선일보에 게재된 것과 동일한 도표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논문의 초고 중 일부가 기사에 소개된 것이 아닌가 싶다. 박사논문 원문의 도표[19]보다는 기사의 도표 해석이 훨씬 쉽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사의 도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기사에 소개되었던 도표인 〈표 2-13〉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도표에서 전관변호사(Revolving Door Attorneys[20])는 퇴임한 지 1년 이내의 과거 부장판사 혹은 부장검사 이상 고위직 출신 변호사[21]를 의미한다(Hansoo Choi, 2014: p82). 2000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범행기간은 1993년-2006년) 판결 선고를 받은 화이트칼라 범죄자 270명의 해당 사건들에 대한 분석 결과(Ibid., p66), 부장판사 내지 부장검사 이상의 직위로 퇴임한 지 1년 이내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했을 경우 나머지 변호사들에 비해 집행유예[22] 가능성은 높아지고(비전관 실형 확률 41%, 전관 실형 확률 26%) 형량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표 2-13〉의 첫째 줄 내용 혹은 Ibid., p82). 그리고 판·검사 출신 변호사라 하더라도 고위직이 아니었을 경우 혹은 퇴임한 지 1년을 초과했을 경우엔 집행유예 및 형량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표 2-13〉의 둘째 줄 및 넷째 줄 내용 혹은 Ibid., p81-p83), 퇴임 1년 이내의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다뤄질 경우에도 전관효과가 사라진다는 분석결과(Ibid., p88-p89)를 보여주었다.

---

19) 논문에서 기사에 나온 도표와 그나마 가장 유사한 내용은 논문 p82의 'Table 3-9. The Impact of Revolving door attorneys on Sentences'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도표도 기사의 도표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참고로, 원 논문의 Table 3-11과 Table 3-12 등도 기사의 도표와 유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표들이다.

20) 논문의 저자가 임의로 그렇게 번역한 것이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전관변호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관변호사에 해당되는 용어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21) "Lawyers with senior judge and senior public prosecutor experience who takes cases within the first year of retirement", (Hansoo Choi, 2014: p82).

22) 원문에는 변수가 'imprisonment'로 되어 있다. 이는 구속으로 번역될 수도 있으나, 논문 내용상 구속 재판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분석 자료가 판결문이기 때문에 구속-불구속 여부는 알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표 2-13] 전관예우 변호사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2013년도 연구, 2000년-2007년 자료)

사건수임시기	구분	집행유예가능성	형량
퇴직후 1년 이내	**고위직 출신**	**+15% 포인트**	**-22개월**
	평판사(검사)출신	N.S.[1)]	N.S.
	고위직이면서 10대로펌소속	**+18% 포인트**	**-33개월**
퇴직후 1년 이후	전체	N.S.	N.S.

※ 자료출처: http://weekly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3/2013121301841.html, 위클리비즈조선, 2013년 12월 14일자 (2019년 6월 26일 확인)

* 인용자 주: 이 도표가 실린 잡지에는 출처가 최한수씨 박사학위논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문으로 "Revolving door attorneys and the Power of Connections"가 링크되어 있으나 2019년 6월 현재 원문으로의 링크는 실행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최한수 박사의 박사학위논문(Hansoo Choi, 2014)의 제3장에는 "Revolving door attorneys and the Power of Connections"라는 장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표와 동일한 형태의 도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인용자 주: 원래 기사에서는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없다'는 내용, 즉 Not Significant(N.S.)의 의미일 것이다.

최한수의 시도와 같이 판결문 분석을 통해 전관 변호사 수임 사건과 일반 변호사 수임 사건 사이의 집행유예 선고율이나 형량의 차이 등을 비교한 연구는 그 후로도 최근까지 간간히 이어지고 있음을 뒤에 이어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다. 2014년 이지은·홍석민의 연구 결과

이지은과 홍석민은 2014년에 "판사와 변호인 간 사회적 자본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이지은·홍석민, 2014), 이 논문 내용 중에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판사직 전관 여부가 유무죄 판결이나 구속 여부, 형량 등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연구의 자료로는 2008년도에 서울 소재 5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 단독부 사건 23,620건 중에서 계통표집으로 추출한 하급심 형사 판결문 521건 중 실제 수집된 414건의 판결문이 이용되었다고 한다(Ibid., p143-p144). 참고로, 이 논문에서 규정한 전관은 담당 사건 변호사의 전직 판사 여부(즉, 전직 검사여부는 별도의 변수로 삼지 않았다는 의미임)였고(Ibid., p144), 판사 퇴임 전 직위가 고위직이었는지 여부와 판사직 퇴임 시기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었다.

[표 2-14] 변호사가 전직 판사일 경우 유무죄에 미치는 영향 (2008년도 판결사건 표본)

		유무죄 여부		계
		무죄	유죄	
전관여부[1]	아니다	**7**	335	342
		2.00%	98.0%	100%
	그렇다	**9**	23	32
		28.1%	71.9%	100%
계		16	358	374
		4.3%	95.7%	100%

x^2=48.596 (df=1) p<.001

※ 자료출처: 이지은·홍석민, 2014, "판사와 변호인 간 사회적 자본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형사정책』 제26권 제3호, p146. 표본 및 연구방법론에 관한 내용은 p143-145 참조.

1) 인용자 주: 해당 논문에서 규정하는 전관은 전직 판사를 의미하며, 고위직 판사 여부와 퇴임 시기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논문에서 유무죄와 구속여부(실은 집행유예 여부)에서는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들과 나머지 변호사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만, 형량에 있어서는 사건 수임 변호사가 단순히 전직 판사였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는 징조가 발견되지는 아니 하였다(Ibid., p147).

먼저, 이 논문에서 담당 변호사의 판사직 전관여부가 사건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표 〈표 2-14〉를 보면, (퇴임시 고위직 여부 및 퇴임시기와 상관없이도) 판사직 전관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을 때 1심 무죄선고율은 28.1%(32건 중 9건)으로, 판사직 전관이 아닌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했을 때의 1심 무죄선고율 2.0%(342건 중 7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표집오류에 의해 우연하게 나올 만한 격차는 결코 아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담당 변호사의 판사직 전관여부가 사건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표 〈표 2-15〉를 보면, (퇴임시 고위직 여부 및 퇴임시기와 상관없이도) 판사직 전관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을 때 피의자 불구속률은 82.6%(23건 중 19건)으로, 판사직 전관이 아닌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했을 때의 불구속률 59.4%(335건 중 199건)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주 현격한 격차라고까지 말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연히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격차라고 할 만하다.

[표 2-15] 판사 출신 변호사가 피의자 구속여부에 미치는 영향 (2008년 접수사건 표본)

		유무죄 여부		계
		무죄	유죄	
전관여부[1]	아니다	**199**	136	335
		59.4%	40.6%	100%
	그렇다	**19**	4	23
		82.6%	17.4%	100%
계		218	140	358
		60.9%	39.1%	100%

x^2=4.867 (df=1) p<.05

※ 자료출처: 이지은·홍석민, 2014, "판사와 변호인 간 사회적 자본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형사정책』 제26권 제3호, p146. 표본 및 연구방법론에 관한 내용은 p143-145 참조.

* 인용한 논문에서 '구속'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어 집행유예 등 없이 구금되는 경우를 의미한다(Ibid., p 144).

1) 인용자 주: 해당 논문에서 규정하는 전관은 전직 판사를 의미하며, 고위직 판사 여부와 퇴임 시기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임.

참고로, 이 표에서 해석상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피의자 구속의 의미이다. 이 논문의 각주에서는 구속을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어 집행유예 등 없이 구금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Ibid., p144). 결국 여기서의 구속은 앞서 살펴본 최한수의 논문(Hansoo Choi, 2014)에서의 집행유예 가능성, 그리고 뒤에서 살펴볼 노회찬의 2016년 보도자료(노회찬, 2016a; 노회찬, 2016b)에서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앞서 살펴본 노회찬의 2006년도 보도자료(노회찬, 2006b; 노회찬, 2006c)에서의 구속적부심 승소율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이 논문이나 최한수의 논문에서와 같이 판결문을 자료로 사용할 경우에 알 수 있는 것은 집행유예 판결 여부이다. 즉 구속적부심 승소 여부나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 여부 등은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없다.

한편, 이 논문과 앞서 살펴보았던 최한수의 논문은 모두 판결문을 분석자료로 삼았는데, 최한수의 논문에서는 전관 여부에 따른 형량의 차이가 나타났던 반면,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두 논문의 결과를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분석 과정에서 전관 변호사를 측정변수로 정의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최한수의 논문에서는 고위직 판검사 출신으로 퇴임한지 1년 이내의 변호사를 전관 변호사로 규정한 데 비해, 이 논문에서

는 퇴직 전 직위와 퇴임 후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판사 출신만으로 전관 변호사를 규정했다는 차이가 있다. 물론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한 차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정의가 엄격하게 이루어질수록 전관 효과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공산이 크긴 하다.

라. 2016년 정의당 노회찬 의원 조사자료

2016년 10월 6일, 그리고 2016년 10월 16일에 정의당 소속 노회찬 국회의원은 광주지역, 그리고 부산 및 대구지역 고등·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역의 향판[23] 전관 변호사 수임사건 판결문 241건(노회찬, 2016a), 부산·창원지역 및 대구지역의 향판 전관 변호사 수임사건 판결문 161건(노회찬, 2016b)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먼저, 10월 6일의 광주지역 관련 보도자료(노회찬, 2016a)에서는 광주지역에서 14년간 판사직을 역임했던 C판사가 2014년 초 퇴임 후 1년 동안 수임했던 형사판결사건 82건(Ibid., p3)의 집행유예 판결비율을 비슷한 시기의 광주지법·광주고법 전체 처리 사건들 중 집행유예 사건 비율과 비교하였다. 〈표 2-16〉을 보면, "C변호사가 맡은 광주지법 1심 형사사건 중 49%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2014년 광주지법 전체 1심 형사사건 집행유예 비율인 28.5%보다 20%나 높은 수치"였다(Ibid., p4). 또한 "C변호사가 맡은 2심 형사사건에서는 집행유예의 비율이 41%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4년 광주지법·광주고법 전체 2심 형사사건 집행유예 비율인 13.1%보다 3.1배나 높은 수치"였다(Ibid., p4).

23) 향판이란 서울과 지방을 오가지 않고 퇴임 때까지 한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를 말한다. 대다수 판사가 지방보다 서울 등 수도권 법원 근무를 희망하는 데 비해 수도권에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자 대법원이 평생 지방 근무를 원하는 판사들을 인사이동에서 제외해 그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해서 제도화된 관행이 향판제도이다.

[표 2-16] 광주지역 향판 전관출신 C변호사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 (2014년-2015년 자료)

구분	1심	2심
광주지법·광주고법 전체 처리사건 중 집행유예 사건 비율 (2014. 1. 1. ~ 2014. 12. 31.)	28.5%	13.1%
C 변호사가 퇴임 후 1년간 처리한 사건 중 집행유예 사건 비율 (2014. 3. 1. ~ 2015. 2. 28.)	**48.7%**	**41.4%**

※ 자료출처: 노회찬, 2016a,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성산) 노회찬 보도자료: 광주 지역 향판 전관변호사 수임사건 241건 분석결과 공개", 2016년 10월 6일자. p4.

* 인용자 주: C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에서 7년, 광주지방법원 산하 지원에서 4년, 광주고등법원에서 3년 근무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로 퇴직일은 2014년 2월이었다(해당 보도자료, p2).

다음으로, 부산·창원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사건 분석(노회찬, 2016b)은 그 대상이 2014년 이후 부산지법·부산고법 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 3명이 퇴임 후 1년간 부산지역 법원에서 선고 받은 형사사건 판결문 총 47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표 2-17〉을 보면, "분석 대상 1심 판결 중 42.85%(14건 중 6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2심 판결 27.27%(33건 중 9건)에서 집행 유예 판결이 내려졌"(Ibid., p2)는데, "이는 2014-년-2015년 부산·창원지역 법원 평균 1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24.4%)과 2심 집행유예 비율(10.96%)를 최대 2.48배 웃도는 수치"(Ibid., p3)였다.

[표 2-17] 부산·창원 향판 전관 변호사들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 (2014년-2015년 자료)

심급	구분	집행유예 판결 비율
1심	**향판 전관 변호사 3인*의 개업 후 1년간 평균**	**42.85%**
	부산·창원지역 법원 2014~2015년	24.40%
2심	**향판 전관 변호사 3인*의 개업 후 1년간 평균**	**27.27%**
	부산·창원지역 법원 2014~2015년	10.96%

※ 자료출처: 노회찬, 2016b,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성산) 노회찬 보도자료: 부산·창원지역 및 대구지역 향판 전관변호사 수임사건 판결문 161건 분석결과 공개", 2016년 10월 11일자. p3.

* 인용자 주: 원 도표에는 4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도자료의 앞부분을 보면 부산·창원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3인의 대상 판결 총 47건을 다룬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4인은 오타로 추정됨. (뒤에 나왔던 대구지역의 4인과 혼동한 듯함)

위와 같은 보도자료에서, 대구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사건 분석은(노회찬, 2016b) 그 대상이 2014년 이후 대구지법·대구고법 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 4명이 퇴임 후 1년간 대구지역 법원에서 선고 받은 형사사건 판결문 총 114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표 2-18] 대구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들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 (2014년-2015년 자료)

심급	구분	집행유예 판결 비율
1심	**향판 전관 변호사 4인*의 개업 후 1년간 평균**	**45.2%**
	대구지법·산하 지원·대구고법 2014~2015년 평균	31.4%
2심	**향판 전관 변호사 4인*의 개업 후 1년간 평균**	**28.4%**
	대구지법·산하 지원·대구고법 2014~2015년 평균	10.6%

※ 자료출처: 노회찬, 2016b,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성산) 노회찬 보도자료: 부산·창원지역 및 대구지역 향판 전관변호사 수임사건 판결문 161건 분석결과 공개", 2016년 10월 11일자. p5.
* 인용자 주: 대구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4인의 대상 판결 총 114건을 다루었다고 함.

그 결과가 요약된 〈표 2-18〉을 보면, 분석 대상 1심 판결 중 45.2%(42건 중 19건)에서, 2심 판결 28.4%(74건 중 21건)에서 집행 유예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는 2014-년-2015년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산하 지원의 1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31.4%)과 2심 집행유예 비율(10.6%)을 최대 2.8배 웃도는 수치"(Ibid., p5)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2016년도에 노회찬 의원실에서 분석한 판결문 조사 결과들은 대구, 경남 광주지역의 몇몇 소수 향판 전관 변호사들의 사례들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모든 전관 변호사들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없지 않으나, 적어도 일부 향판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이른바 전관예우 혐의를 분명하게 제기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 비율의 차이를 전관예우 이외의 다른 논리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낼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는 전관예우의 실체를 입증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 선행 조사연구 평가 및 본 조사연구의 방향 설정

앞서 살펴보았던 전관예우에 관한 선행 조사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전관예우에 관한 모든 실증적 조사연구들을 전부 망라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관예우에 관한 조사연구의 절대 수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소개했던 정도의 선행 조사연구들만으로도 과거 조사들의 특징과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이에 먼저 선행 조사연구들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고, 그 평가를 토대로 본 연구과제에서 수행할 조사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1. 선행 조사연구들에 관한 평가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조사연구들의 특징과 한계를 세세하게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나,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전관예우에 관한 실증연구들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차지하게 될 본 조사연구의 위상과 그에 따른 본 연구의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참조가 될 만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다섯 가지 정도만을 부각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가. 전관예우에 관한 조사연구의 광범위성

앞서 살펴본 몇 가지 선행연구들만 살펴보고도 알아낼 수 있는 전관예우에 관한 조사연구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전관예우에 관한 조사연구의 영역이 대단히 광범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는 의식조사와 실태조사가 나뉜다. 그 중에서 더 어려우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인데, 그래서 의식조사는 차치하고서라도 실태조사에 국한하여 이야기한다고 해도, 전관예우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영역과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일단 전관비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 넓다. 1,2,3심 재판은 물론이거니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단계,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 전관비리가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실제로 전관변호사

에 대한 절차적 혹은 결과적 특혜의 존재 여부를 실증하는 연구들이 각각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속적부심에서의 전관 특혜 가능성 연구, 보석 과정에서의 전관예우 현상에 관한 연구, 재판과정 및 결과에 관한 연구, 전관변호사 여부나 전관변호사의 조건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등 각 영역에 대한 연구 하나씩만으로도 그 검증에 꽤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연구주제가 된다는 말이다.

그와 동시에 전관예우 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론적 다양성을 들 수 있다. 특정 지역의 수임자료를 토대로 연구할 수도 있고, 재판 결과 혹은 판결문 자료 등을 토대로 연구할 수도 있으며, 의뢰인 설문조사나 심층면접,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나 심층면접 등의 방법으로 연구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연구자의 방법론적 창의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종류의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론을 다양한 영역과 조합하면, 실로 무수한 조합이 가능하다.

그 다양한 연구들 하나하나만으로는 전관예우 현상의 전반적인 실태를 모두 아울러 진단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축적된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종합하여 판단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나. 전관예우에 관한 법조직역별 의견 차이

우리나라 전관예우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들을 보면, 최신 자료이든 과거 자료이든 법조 직역별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판사 직역과 변호사 직역 사이의 의견 차이이다. 넓게 보자면 판·검사 집단과 변호사 집단 사이의 의견 차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가장 극적인 의견 차이는 역시 판사와 변호사들 사이의 차이이다.

앞의 선행 조사연구에서도 확인 했듯이, 판사 집단은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에조차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재미있는 것은 판사 직역은 10년 전에도 사실상 마찬가지 양상을 내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변호사 집단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법조 직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을 인정하는 정도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10년 전에도 마찬가지

였고, 4-5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전관예우의 존재를 실증하는 연구결과들이 누적될 경우 줄어들 만도 하지만, 놀랍게도 장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전관예우 현상을 엄밀하게 실증하는 실증조사 연구가 쉽지 않고 그에 따라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 의식조사였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소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선행 실태조사 연구결과들에서 보았듯이, 비록 많은 양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전관변호사의 효력을 실증하고자 했던 조사나 연구들이 없지 않고, 그 조사·연구결과들은 대부분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지지하는 것들이다. 그 조사연구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검증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어떠한 실증조사에서도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유리하게 나온 적은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관예우가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다. 실증적 연구의 부족

전관예우에 관한 조사 연구 중 대부분은 의식조사이고, 전관예우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실증하는 연구는 없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24]. 실증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는 바로 앞의 논의와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판사집단 중 많은 비중의 판사들이 전관예우가 없다고 주장하는 배경과도 무관치 않을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떤 정도로든 증명해주는 연구들은 있어도, 전관예우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조사결과는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들을 유지하는 데 근거로 사용되는 논리는 존재하는 것 같다.

그 중 하나가 전관예우 조사의 상당 부분이 의식조사라는 점, 그 중에서도 일반인

24) 본 연구에서도 인정하는 바이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선행연구(사법정책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2019,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 p23)에서도 인정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의식의 경우, 전관예우의 존재를 직접 경험이 아니라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인정한다는 점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전관예우는 실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견 혹은 그럴듯한 주장 내지 착각일 뿐이라는 것이며, 의식조사 결과는 전관예우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믿음이다.

그 논리에 따르면, 전관예우의 존재를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조차도 단지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 있다. 전관에 대해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주체는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판사와 검사의 입장이 아닌 변호사가 그것을 알 리 없고 단지 간접적인 추론을 통해 그럴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이른바 전관변호사들이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에 많은 수임료를 받는 현상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실제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전관예우 현상이 있다고 잘못 믿어서 혹은 법조브로커나 일부 몰지각한 전관변호사의 농간에 속아서 쓸데없이 돈을 더 주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주장이 실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전관예우가 없다고 말해야 전관예우가 없어진다"[25]고 까지 말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기본적으로 직업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들이기도 하지만, 전관예우에 관한 실증조사 연구의 상대적 부족 현상을 빌미로 나타난 주장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실증조사 연구의 축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함의를 던져준다.[26]

라. 전관예우 논의의 법원 편향성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가장 많은 법조 직역은 앞서 확인한 바 있듯이 판사 집단인데, 전관예우에 관한 논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도

---

25) 2019년 6월 20일에 열린 사법정책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 심포지엄에서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실제로 했던 말이기도 하다. 의뢰인들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잘못 믿어서 전관변호사에게 돈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관예우는 없다고 홍보해야 전관예우가 없어진다는 논리이다.

26) 심지어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들의 논리를 옹호하는 실증연구를 해야 마땅하다. 그들의 논리대로 의뢰인들이 전관효과가 실재한다는 착각에 의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 말대로 전관예우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실제로 전관예우는 효과가 없으니 더 이상 쓸데없는 돈을 쓰지 말라는 대국민 홍보라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로 판사와 관련된 영역들이다.

일단 전관예우에 관한 실증조사가 검사들의 영역보다 판사들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더 많다. 아니, 검사들의 영역에서 실증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노회찬 의원의 조사결과들은 물론이고, 학계에서 이루어진 몇 가지 실증연구들도 주로 판사의 판결 영역이지 검사의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관예우에 관한 세미나나 연구들은 법원행정처 등 판사와 관련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적어도 검사와 관련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경우보다는 많아 보인다.

판사의 영역에서 전관예우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중성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조사결과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관예우는 경찰수사단계나 검찰단계에서도 판사의 영역 못지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검사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단계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실증조사가 판사의 영역에 더 치우친 이유는 상대적인 조사연구의 방법론적 수월성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즉 판사의 영역이 검사의 영역보다 전관예우 특혜의 존재 가능성을 검증해 내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실증조사가 판사 영역에 치우쳐 나타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이다.

판사가 결정하는 단계는 재판도 그렇고 영장실질심사도 그렇고 그 결과가 비교적 뚜렷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판결은 판결문이란 형식으로 다른 기록들보다도 분명하게 남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변호사의 전관 여부를 추적하여 재판에 미치는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라도 실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비해, 경찰 수사단계나 검찰 수사 단계 또는 기소 단계에서의 전관예우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그 단계에서는 관련 기록 자체가 남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남더라도 판결문과 같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선행 조사연구들을 두루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전관예우 논의의 법원 편향성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는 검찰과 관련된 단계에서의 전관예우 현상이 적거나 심각하지 않아서가 아님을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마. 조건에 따른 전관효과의 변화에 관한 연구의 미진

이 문제는 전관예우에 관한 정의 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이기도 하다. 전관변호사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전관변호사는 아니며 퇴직 전의 직급이나 변호사 개업 후의 시간 등 조건에 따라 전관효과가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데 이 문제를 풍부한 내용으로 실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물론 선행연구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한 경우도 있고, 전관변호사의 조건에 따른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 시도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 경우들은 전관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연구이거나(즉 어디부터 전관변호사라고 해야 할지를 나누는 기준에만 주로 집중하여, 전관변호사 영향력의 단계가 있다는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조건에 따른 전관효과의 정도차이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연구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행연구들은 조건에 따른 전관효과의 변화 가능성을 연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2. 본 조사연구의 방향 설정

이상 살펴보았던 선행 조사연구들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토대로 본 연구과제에서 수행할 조사연구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의 기본적 틀을 글로 나타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가. 선행 조사연구의 계승과 보완

전관예우에 관한 연구 영역이 의외로 넓고 다양하므로,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전관예우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대신 본 실태조사에서는 가급적이면 선행 조사연구들에서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조사방법론의 적용을 시도하면서 선행 조사연구들에서 미진했던 몇 가지 점들을 선택적으로 보충하는 방향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에 따라 조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선행조사연구와 유사한 조사를 반복하기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연구에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의 조사연구를 하려하는데, 하나는 변호사 선임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현직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다. 이 중 전관예우와 관련한 조사연구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로는 의뢰인들에 대한 선택적 집중연구[27]이다. 그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제3장에서 전개하기로 한다.

나. 전관예우의 존재 실증을 위한 전략 구상

전관예우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전관예우의 실재 여부 등 구체적인 실태를 증명할 수 있는 실증조사연구이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을 깊게 들여다보았을 때 전관예우의 실재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단계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전관예우에 대한 실증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의뢰인들이 전관변호사를 선호하는지 여부와 그 정도 파악, 2) 전관변호사가 실제로 비전관변호사보다 수임료 등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지 여부와 그 차이의 정도 파악, 3) 수임료 차이가 나타날 경우 그 차이가 전관변호사에 대한 실질적 특혜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의 제시이다. 이러한 단계 구분은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주로 적지 않은 수의 판사들이 가진 논리)에 대한 효과적 반박과 연관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본 조사연구에서는 이를 모두 아우르고자 하는 장치를 만들고자 하였다.

다. 법원 편향성 보정 및 조건에 따른 전관효과의 변화 연구

앞서 지적했던 전관예우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들의 법원 혹은 판사 편향성 문제는 많은 경우 방법론적 난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검사와 관련되는 영역에 대한 보충을 많지는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더 추가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변호사 선임 경험이 있는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판사출신 변호사와 검사출신 변호사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그러한 노력은 조사연구에서 뿐만

27) 변호사를 선임했던 경험이 있는 의뢰인들만 별도로 모아서 그들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연구를 의미한다. 변호사를 선임했던 경험이 있는 의뢰인 대상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는 많은 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포함된 소수의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었다.

아니라 본 연구 전체적인 방향과 결론적 논의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검사출신 전관예우에 대한 대응책은 판사출신 전관예우에 대한 대응책보다도 적게 제기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본 조사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전관효과의 차원에서 전관변호사의 범위가 퇴임 후 기간, 퇴임 전 직위 등 몇몇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어디까지가 전관변호사인지를 선험적으로 미리 규정하지 않고 조건에 따른 전관효과의 정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념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건에 따른 전관효과의 정도차이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가령, 퇴임 전 직위와 변호사 개업 이후의 경과 기간의 조합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의 지불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 액수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 혹은 조사기법에 대해서는 다음 제3장과 제4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황지태·신동준

제3장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제1절 | 조사개요 및 방법

1. 변호사 선임 경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전관예우에 관한 선행 조사연구들 중에 변호사 선임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조사들은 일반인 조사의 과정에서 포착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을 하기에는 변호사 선임 경험자들의 표본수가 너무 적다는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가장 최근 조사의 예를 들자면(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일반인 응답자 전체 1,014명 중에서 "2010년 이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아본 경험자"가 116명, 그리고 "2010년 이후 민사나 행정, 파산 사건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1명이었다(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102-103). 그런데, 질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사건은 훨씬 더 적을 수도 있고[28], 그에 따라 전관변호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 역시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그 조사에서 형사재판 중 전관변호사 내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3명, 심지어 그 중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명의 30.8%인 4명(Ibid,: 109)에 지나지 않았고, 민사재판 중 전관변호사 내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8명, 그 중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응답은 18명의 27.8%인 5명((Ibid,: 127)에 지나지 않았

28) 특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수준은 천차만별이고,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중 많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만한 사건들이 아닐 수도 있다.

다, 이 정도의 표본수를 가지고서는 전관예우를 경험한 의뢰인들에 대한 그 어떤 통계분석을 하더라도 사실상 어떤 의미 있는 결과도 도출해 낼 수 없다.

그와 같은 난점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조사에서 수행한 실태조사의 방법은 변호사 선임 경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이다. 이는 국내 여러 리서치회사들이 보유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단순무작위 표집이나 인구비례 표집 등의 확률표집방법 대신, 인위적으로 변호사 선임경험자들만을 선별[29]해서 그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조사업계에서 종종 사용되는 방법이고, 2018년 법조브로커에 관한 실태조사(황지태·김정연·정지혜·강우예, 2018)에서도 이용한 방법인데, 전관예우 실태조사에 이 방법을 적용한 것은 아마도 유래가 없을 것이며 본 조사연구가 최초가 아닐까 싶다.

단, 의뢰인 대상 실태조사에서는 고관 출신의 대형 로펌 소속 고액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주된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법인이 제외되기 때문에,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다고 소문[30]이 난 전관변호사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미리 알려두고자 한다.

2. 설문조사의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조사과정

다음 표는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전관예우 실태 설문조사의 개요이다.

모집단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던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이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사람들은 제외하였다. 변호사를 선임했던 경험에는 따로 기간 제한을 두지는 않았고, 대신 설문지에 기간에 관한 문항을 넣어[31] 분석 목적에 따라 시간적 조건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9) 스크린 문항을 통해, 변호사 선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걸러내는 방법이다. 스크린 문항은 응답 사례를 노린 마구잡이 응답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2단계로 구성하였다([부록1]의 설문지에서 SQ1 문항과 SQ2 문항).

30) 가령,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보통 다른 변호사 수임료의 최대 수십 배에 달한다. 특히 사건 수임 상위 7명은 대부분 현재 대형 로펌에서 최상급 의전을 받고, 연봉을 10억 원 이상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이른바 '제왕적 전관'으로 불리며 전관예우 근절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출처 : 동아일보, 2014년 4월 23일자, "대법관 출신 7명이 상고심 275건 수임… 2명은 일주일에 1건꼴"이라는 제목의 기사 등을 참조하기 바람,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23/95176248/1 (2019년 10월 20일 확인)

31) 이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최근 경험에 국한하여 모집단을 설정할 경우 과거와 현재의 비교는 포기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집틀은 조사업체들이 보유한 온라인 패널(Access Pannel)을 토대로 한 것이고, 표집방법은 확률표집이 아닌 선별적 표집방법이라 임의추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표본의 크기는 애초에는 500명+알파로 정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표본이 늘어나서 최종적으로는 700명의 표본을 확보하게 되었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패널조사이고, 조사기간은 2019년 9월 11일에서 2019년 9월 27일까지 16일 동안이었으며, 조사대행은 온라인 패널조사 전문업체인 트랜드리서치에 위임하였다. 참고로,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이다.

[표 3-1]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전관예우 실태 설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구분	내용
모집단	· 국내 변호사 선임 경험 성인 남녀 (국선변호사 제외)
표집틀	· Access Panel
표집방법	· 임의추출 방법
표본크기	· 700명
표본오차(95%신뢰수준)	· ±3.7%
조사방법	· 온라인 패널 조사
조사일시	· 2019.9.11 ~ 2019.9.27

다음의 그림은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온라인 패널조사가 진행된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제1단계는 조사업체에서 보유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패널 풀(pool)에 등록된 수십여 만 명의 사람들에게 E-메일을 발생하는 것이다. 제2단계에서는 이들에게 변호사 선임 경험 여부를 물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해 나간다. 제3단계에서는 조사 해당자를 설정하고, 제4단계에서는 이들을 온라인 사이트로 이동케 하여, 제5단계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한다.

[그림 3-1]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설문조사의 표본추출 및 실사의 과정

- 1단계: ACCESS PANEL에서 메일 발송
- 2단계: 변호사 선임 경험 여부 스크리닝(screening)
- 3단계: 조사 해당자 결정
- 4단계: 설문 사이트로 이동
- 5단계: 조사 참여
- 6단계: 설문 완료
- 7단계: 목표 표본 완료시까지 1단계~6단계를 반복
- 8단계: 전체 조사 완료

목표 표본이 완성될 때까지 이런 식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목표 표본이 완료되면 전체 조사를 종료하는 것이다.

3. 부가적 심층면접 조사

설문조사는 다수의 응답을 일반화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유리한 것이 분명하지만, 어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에는 모자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심층면접을 추가할 수 있다면, 어떤 연구자라도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변호사 선임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선행 조사연구에서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 과정의 특성을 활용하여 그들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인 확률 표집 과정에서는 전관예우를 경험했던 의뢰인들을 따로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본 조사는 액세스 패널(Access Panel) 안에서 이루어진 조사이기 때문에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만, 제한된 연구기간 내에서, 응답자들이 심층면접에 할애할 시간 소비의 문제에 의해서든, 자기 공개를 꺼려 나서기 싫어하는 심리적 문제에 의해서든 심층면접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경향성은 확실한 장애물이긴 하였다.

그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심층면접자와의 접촉은 가능했고, 그 심층면접 결과를 설문조사 결과 보고에 이어 덧붙이고자 한다.

제2절 | 기초변인 응답결과

변호사 선임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 기초적인 응답결과로는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소송 사건의 기본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 성별과 연령대 및 거주지역

변호사 선임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를 살펴보면, 다음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2] 의뢰인들의 성별과 연령대

단위: 명[횡축%](종축%)

성별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남성	18 [4.0] (40.0)	119 [26.3] (49.4)	**172** **[38.0]** **(74.8)**	144 [31.8] (78.3)	453 [100.0] (64.7)
여성	27 [10.9] (60.0)	122 [49.4] (50.6)	58 [23.5] (25.2)	40 [16.2] (21.7)	247 [100.0] (35.3)
계	45 [6.4]	241 [34.4]	230 [32.9]	184 [26.3]	700 [(100.0)]

x^2=61.859 (df=3), p<.001

이 중 응답자들의 성별을 보면, 표본 전체의 수인 700명 중에서 남성은 453명(64.7%), 여성은 247명(35.3%)으로, 남성 표본수가 좀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6.4%[45명], 30대가 34.4%[241명], 40대 32.9%[230명], 50대 이상이 26.3%[184명]으로 나타났다[32].

32) 참고로, 2018년도 법조브로커 조사에서의 의뢰인 대상 조사와 비교해 보면(황지태·김정연·정지

응답자들의 거주지를 보면, 서울 거주자가 700명 중 356명, 50.9%로 실제 서울 거주인구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3-3] 의뢰인들의 거주지역

단위: 명(%)

거주지역	성별		
	남성	여성	계
서울	**219(48.3)**	**137(55.5)**	**356(50.9)**
부산	32 (7.1)	18 (7.3)	50 (7.1)
인천	24 (5.3)	7 (2.8)	31 (4.4)
대구	20 (4.4)	6 (2.4)	26 (3.7)
대전	18 (4.0)	10 (4.0)	28 (4.0)
광주	10 (2.2)	5 (2.0)	15 (2.1)
울산	3 (0.7)	- (-)	3 (0.4)
세종	1 (0.2)	1 (0.4)	2 (0.3)
경기	82(18.1)	47(19.0)	129(18.4)
강원	3 (0.7)	2 (0.8)	5 (0.7)
충남	6 (1.3)	1 (0.4)	7 (1.0)
충북	5 (1.1)	3 (1.2)	8 (1.1)
전남	1 (0.2)	1 (0.4)	2 (0.3)
전북	9 (2.0)	5 (2.0)	14 (2.0)
경남	13 (2.9)	1 (0.4)	14 (2.0)
경북	5 (1.1)	2 (0.8)	7 (1.0)
제주	2 (0.4)	1 (0.4)	3 (0.4)
계	453(100.0)	247(100.0)	700(100.0)

서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에 약간 못 미치지만[33], 표본에서는 실제 거주인구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 사실과 연동하여, 이 표본에서 다른 지역들이

혜·강우예, 2018: 101), 남녀 분포는 대략 유사하고, 성별 분포의 경우 20대 표본이 적은 점에서는 서로 비슷하지만 그 외 나머지 연령대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작년 조사에 비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3) 2018년 대한민국 전체 추계인구는 51,606,633명이고,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9,704,546명이다. 정확히는 18.3%인 것이다.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또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참조. (2019년 10월 20일 확인)

차지하는 비율은 실제 거주인구비율보다 대체로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경기도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지만[34], 표본에서는 18.4%(129명)로 거주 인구보다 적게 나타났다. 경기도가 이럴진대, 다른 지역들은 더 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35].

의뢰인 응답자들의 거주지역 분포는 2018년도 법조브로커 조사(황지태·김정연·정지혜·강우예, 2018: 102)에서와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 소송 진행 여력을 갖춘 인구와 소송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법조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도 본다.

나. 학력, 직업, 소득수준

〈표 3-4〉는 응답자의 학력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 본 것이다.

[표 3-4] 의뢰인들의 학력

단위: 명(%)

학력 (재학 및 중퇴 포함)	성별		
	남성	여성	계
중졸 학력 이하	4 (0.9)	-	4 (0.6)
고졸 학력 이하	20 (4.4)	14 (5.7)	34 (4.9)
대학 학력 이상	**429 (94.7)**	**233 (94.3)**	**662 (94.6)**
계	453 (100.0)	247 (100.0)	700 (100.0)

남성과 여성 모두 대학 학력 이상인 경우가 94% 이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모집단의 분포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의뢰인 표본에서 고학력

34) 2018년 경기도의 추계인구는 13,031,356명이다. 따라서 2018년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경기도 인구의 비율은 25.3%이다. 국가통계포털 참조.

35) 2018년 부산 인구는 13.2%(3,400,027명), 강원도 인구는 2.9%(1,520,816명)인데(국가통계포털 참조), 표본에서는 각각 7.1%, 0.7%에 지나지 않는 등 서울시 이외에는 사실상 모두 과소표집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가 과잉 대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역시 2018년 법조브로커 조사(Ibid.: 103)에서와 거의 유사한 분포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뢰인 응답자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사무 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각각 38%와 31.3%로 다수를 차지한다. 남성 의뢰인의 35.8%, 여성 의뢰인의 42.1%가 사무 종사자이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분류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남성 의뢰인 30.2%, 여성 의뢰인 33.2%이다.

[표 3-5] 의뢰인들의 직업

단위: 명(%)

직업	성별		
	남성	여성	계
관리자	74 (16.3)	11 (4.5)	85 (12.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7** **(30.2)**	**82** **(33.2)**	**219** **(31.3)**
사무종사자	**162** **(35.8)**	**104** **(42.1)**	**266** **(38.0)**
서비스종사자	25 (5.5)	14 (5.7)	39 (5.6)
판매종사자	9 (2.0)	4 (1.6)	13 (1.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 (1.5)	0 (0.0)	7 (1.0)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14 (3.1)	2 (0.8)	16 (2.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 (0.9)	-	4 (0.6)
단순노무 종사자	5 (1.1)	3 (1.2)	8 (1.1)
군인	2 (0.4)	1 (0.4)	3 (0.4)
가정주부	0 (0.0)	22 (8.9)	22 (3.1)
기타	14 (3.1)	4 (1.6)	18 (2.6)
계	453 (100.0)	247 (100.0)	700 (100.0)

관리자는 12.1%로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중 대다수는 남성이다. 앞서 학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업적으로도 의뢰인 응답자는 중상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에도 가정주부의 비율은 여성 표본에서 8.9%에 불과하다.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400만원~600만원이 27.6%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인다. 그 다음이 600만원~800만원으로 19.7%에 해당한다. 대체로 볼 때, 변호사 선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다수는 우리나라 평균 월평균 가구소득[36]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0만원~400만원이 18.3%, 800만원~1,000만원은 15.6%로 그 다음으로 구성비가 높은 범주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의뢰인은 표본에서 2.6%에 불과하다.

[표 3-6] 의뢰인들의 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명(%)

소득	성별		
	남성	여성	계
200만원 미만	10 (2.2)	8 (3.2)	18 (2.6)
200-400만원 미만	79 (17.4)	49 (19.8)	128 (18.3)
400-600만원 미만	**121** **(26.7)**	**72** **(29.1)**	**193** **(27.6)**
600-800만원 미만	**91** **(20.1)**	**47** **(19.0)**	**138** **(19.7)**
800-1000만원 미만	72 (15.9)	37 (15.0)	109 (15.6)
1000-1500만원 미만	46 (10.2)	17 (6.9)	63 (9.0)
1500만원 이상	27 (6.0)	17 (6.9)	44 (6.3)
무응답	7 (1.5)	-	7 (1.0)
계	453 (100.0)	247 (100.0)	700 (100.0)

36) 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가구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47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참조.

2. 소송사건의 특성

가. 소송사건의 종류 및 소송 발생 시기

조사대상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의 종류는 가사사건을 포함한 민사사건이 57.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 여성 의뢰인이 61.5%로 남성 의뢰인 54.7%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병행된 경우로 24.6%였으며, 형사사건은 14.7%로 형사사건의 경우는 남성이 17.2%로 여성 10.1%보다 더 많았다. 조세사건을 포함한 행정사건은 2.9%에 불과했다.

남녀별 소송 사건에 대한 교차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순수 형사사건의 남성 비중, 그 다음으로는 민사 및 가사사건에서의 여성 비중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7] 소송사건의 종류

단위: 명(%)

소송사건의 종류	성별		
	남성	여성	계
형사사건	78 (17.2)	25 (10.1)	103 (14.7)
민사사건(가사사건 포함)	**248** **(54.7)**	**152** **(61.5)**	**400** **(57.1)**
형사사건·민사사건 병행	108 (23.8)	64 (25.9)	172 (24.6)
행정사건(조세사건 포함)	17 (3.8)	3 (1.2)	20 (2.9)
기타	2 (0.4)	3 (1.2)	5 (0.7)
계	453 (100.0)	247 (100.0)	700 (100.0)

x^2=11.983 (df=4), p<.05

소송 발생 시기에 따라 분류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5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2~5년 전 사건이 4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년 이내의 사건이 31.9%에 해당한다. 최근 5년 이내 사건의 합은 79.4%(700건 중 566건)에 달한다. 이에 비해, 6~10년

전 사건은 12.7%, 10년 이상이 지난 사건은 7.9%를 차지했다.

이렇듯 최근 사건의 비중과 사례수가 제법 충분하기 때문에, 본 조사자료에 조건을 부여해서 분석할 경우[37], 소송의 기간이 특정된 다른 연구들과의 비교가 용이해질 것이다.

[표 3-8] 소송사건 발생 시기

단위: 명(%)

소송 발생 시기	성별		
	남성	여성	계
1년 이내의 사건	**131 (28.9)**	**92 (37.2)**	**223 (31.9)**
약 2년-5년 전 사건	**218 (48.1)**	**115 (46.6)**	**333 (47.6)**
약 6년 10년 전 사건	61 (13.5)	28 (11.3)	89 (12.7)
10년 이상 지난 사건	43 (9.5)	12 (4.9)	55 (7.9)
계	453 (100.0)	247 (100.0)	700 (100.0)

x^2=8.502 (df=3), p<.05

나. 변호사 소개 경로

다음으로 소송사건의 종류를 '형사소송포함 사건'[38]과 '민사사건/행정사건'[39]으로 분류하여 변호사 선임 경로에 따른 빈도와 비율을 살펴보겠다.

전체 응답자의 42%에 해당하는 294명의 의뢰인들이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답했다. 소송사건의 종류에 따라 보면 민사사건/행정사건의 경우 47.8%가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형사소송포함 사건은 33.1%였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변호사 선임 경로는 23.4%에 해당하는 가족이나 친지의

37) 가령, 2018년에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연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에서는 응답 대상자를 최근 4년 동안의 사건으로 한정하였는데(Ibid.: 101), 그런 연구와 비교할 때에는 본 조사결과에서의 5년 이내의 사건들만 뽑아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면, 1년 이내의 사건만 골라서 비교하면 된다.

38) 〈표 3-7〉에서의 '형사사건'(103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병행'(172건)을 합친 것이다.

39) 〈표 3-7〉에서의 '민사사건'(400건), '행정사건'(20건), '기타'(5건)를 모두 합친 것이다.

소개이다. 전체 23.4%로 형사사건 포함 사건 중에서는 22.9%, 민사사건/행정사건 중에서는 23.8%였다. 이 두 경로는 결국 가족, 친지, 친구, 지인 등 개인적인 관계망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 둘을 합쳐서 총 65.4%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 사무실 직원(6.6%), 경찰(0.9%), 검찰청/법원 직원이나 교정 공무원(3.7%) 등을 포함한 변호사 소개 경로는 모두 합쳐서 10.2%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소개 경로는 민사소송 보다는 상대적으로 형사소송에서 좀 더 많아 보인다.

[표 3-9] 사건종류별 변호사 소개 경로

단위: 명(%)

변호사 소개 경로	소송사건의 종류 (재분류)		
	형사소송 포함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계
신문, 광고, 간판 등	37 (13.5)	50 (11.8)	87 (12.4)
가족, 친지 소개	**63 (22.9)**	**101 (23.8)**	**164 (23.4)**
친구, 지인 소개	**91 (33.1)**	**203 (47.8)**	**294 (42.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소개	28 (10.2)	18 (4.2)	46 (6.6)
사건 관련해서 만난 경찰 소개	2 (0.7)	4 (0.9)	6 (0.9)
사건 관련해서 만난 검찰청 직원, 법원 직원, 교정 공무원 등 소개	14 (5.1)	12 (2.8)	26 (3.7)
각종(법률 관련) 상담기관 소개	32 (11.7)	31 (7.3)	63 (9.0)
기타	8 (2.9)	6 (1.4)	14 (2.0)
계	275 (100.0)	425 (100.0)	700 (100.0)

x^2=25.750 (df=7), p<.01

제3절 | 전관변호사 선임 관련 응답결과 분석

1. 전관변호사 소개와 선택

가. 전관변호사 선임을 제안 받은 경험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그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4.6%로 제안 경험이 '없다'는 응답(45.4%)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송사건의 종류로 구분해 보면, 형사소송 포함 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제안을 받았다는 응답이 62.5%[40]로 더 많은 반면, 민사사건/행정사건은 그런 경험이 없다는 응답과 있다는 응답이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3-10] 소송 종류에 따른 전관 변호사 제안 경험

단위: 명(%)

전관변호사를 제안 받은 경험	소송사건의 종류 (재분류)		
	형사소송 포함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계
있음	**172 (62.5)**	210 (49.4)	382 (54.6)
없음	103 (37.5)	215 (50.6)	318 (45.4)
계	275 (100.0)	425 (100.0)	700 (100.0)

x^2=11.617 (df=1), p<.01

나. 전관변호사 제안을 받은 단계

전관 변호사 선임 제안을 받은 단계를 살펴보면, 분쟁발생 후 소송제기 전 단계에서가 55.2%로 다수를 차지했다.

40) 순수 형사사건에서는 58.3%가 그러한 제안을 받았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병행한 경우에는 65.1%가 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관한 별도의 도표는 생략하고자 한다.

[표 3-11] 소송 종류에 따른 전관 변호사 제안 단계

단위: 명(%)

전관 변호사 전관 변호사 제안 단계	소송사건의 종류 (재분류)		
	형사소송 포함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계
분쟁발생 후 소송제기 전	**68 (39.5)**	**143 (68.1)**	**211 (55.2)**
경찰 조사	32 (18.6)	19 (9.0)	51 (13.4)
검찰 조사 (영장청구 포함)	**42 (24.4)**	**24 (11.4)**	**66 (17.3)**
영장실질검사/구속적부심	9 (5.2)	3 (1.4)	12 (3.1)
1심 재판	15 (8.7)	16 (7.6)	31 (8.1)
항소심 재판	6 (3.5)	4 (1.9)	10 (2.6)
대법원 재판	0 (0.0)	1 (0.5)	1 (0.3)
계	172 (100.0)	210 (100.0)	382 (100.0)

x^2=35.889 (df=6), p<.001

다음으로는 검찰 조사 단계로 17.3%였으며, 그 다음은 경찰 조사 단계로 13.4% 등의 순이었다.

소송사건의 종류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민사든 형사든 소송제기 전에 제안 받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나, 민사사건/행정사건의 경우(68.1%)가 특히 더 그렇다고 할 수 있겠다. 단, 이 표에서 민사 및 행정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와 검찰조사 단계, 심지어 영장심사 단계에 대한 응답이 나온 것은 응답자의 착각이 아닌가 싶다.

다. 전관 변호사 제안 수락 여부

전관 변호사 선임 제안을 받았을 때 52.6%에 해당하는 다수는 그 제안을 수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00명 전체 표본 중에서는 28.7%를 차지한다.

소송사건 종류로 살펴보면, 형사소송 포함 사건에서는 58.1%[41]가 전관 변호사 제안

을 수락하였고, 민사사건/행정사건은 48.1%가 수락했다. 단, 두 종류의 사건 범주에서의 통계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표 3-12] 소송 종류에 따른 전관 변호사 제안 수락 여부

단위: 명(%)

전관 변호사 제안 수락	소송사건의 종류 (재분류)		
	형사소송 포함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계
있음	100 (58.1)	101 (48.1)	201 (52.6)
없음	72 (41.9)	109 (51.9)	181 (47.4)
계	172 (100.0)	210 (100.0)	382 (100.0)

x^2=3.826 (df=1), N.S

라. 최종 선택한 변호사의 전직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선임한 변호사들의 전직을 물었을 때, 판검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34%로 가장 많았다. 판사출신 변호사는 22.1%, 검사출신 변호사는 28%로 가장 넓은 의미의 전관변호사로 분류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50%가 약간 넘었으며, 판사출신과 검사출신 중에서는 검사출신 변호사의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판검사출신인지 모른다는 응답이 15.9%에 이르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하여 결과를 적절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앞서 〈표 3-11〉과 〈표 3-12〉에서 누군가로부터 전관변호사를 제안 받아서 그 제안을 수락한 의뢰인들은 총 201명으로 전체 700명의 28.7%라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의뢰인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판검사출신 변호사는 그 비율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41)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순수 형사사건에서는 66.7%가 제안을 받아들였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병행한 경우에는 53.6%가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상세분류에서 사건종류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다. 그에 관한 별도의 도표는 생략하고자 한다.

[표 3-13] 남녀 의뢰인별 선임 변호사의 전직 구분

단위: 명(%)

변호사 구별	성별		
	남성	여성	계
판사출신 변호사	**106 (23.4)**	**49 (19.8)**	**155 (22.1)**
검사출신 변호사	**132 (29.1)**	**64 (25.9)**	**196 (28.0)**
판검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	152 (33.6)	86 (34.8)	238 (34.0)
모름/구별못함	63 (13.9)	48 (19.4)	111 (15.9)
계	453 (100.0)	247 (100.0)	700 (100.0)

x^2=4.664 (df=3), N.S

한편, 형사소송포함 사건의 경우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58.5%[42]로 더 컸지만, 민사사건/행정사건의 경우는 판검사출신 변호사가 44.7%[43]에 머물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나, 형사사건에서 판검사출신 변호사가 선임되는 비율이 기타 사건에서의 선임 비율보다 높다고 할 만하다.

[표 3-14] 소송의 종류에 따른 전관출신 변호사 선임의 차이

단위: 명(%)

변호사 구별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 포함사건	민사사건 행정/기타사건	계
판검사출신 변호사	**161 (58.5)**	190 (44.7)	351 (50.1)
비전관출신 변호사/ 혹은 미상	114 (41.5)	235 (55.3)	349 (49.9)
계	275 (100.0)	425 (100.0)	700 (100.0)

x^2=12.792 (df=1), p<.001

42)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순수 형사사건에서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37.9%, 판사출신 변호사가 28.2%를 차지하였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병행한 경우에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33.1%, 판사출신 변호사가 20.9%를 차지하였다. 상세분류에서 사건종류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다. 그에 관한 별도의 도표는 생략하고자 한다.

43) 참고로, 민사사건(가사사건 포함)에서는 연수원출신 변호사의 비중이 36.8%로 가장 높았고, 행정사건(조세사건 포함)에서는 연수원출신 변호사의 비중이 50.0%로 가장 높았다. 도표생략.

마. 의뢰인들의 판검사출신 변호사 선호도

의뢰인들이 선택한 변호사들의 전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앞서도 살펴본 바 있다. 이 응답분포는 2018년도에 수행된 법조브로커 관련 설문조사[44] 결과 나타난 응답분포(황지태·김정연·정지혜·강우예, 2018: 113)와 거의 유사하다. 본 조사에서 22.1%로 나타나고 있는 판사출신 변호사는 2018년 조사에서 20.6%였고, 본 조사에서 28.0%인 검사출신 변호사는 작년 조사에서 26.7%였던 것이다.

그런데, 2018년도 변호사 모집단 분포를 보면, 판사출신 변호사는 8.2%(20,554명 중 1,679명), 검사출신 변호사는 6.8%(1,403명)에 지나지 않는다(2018년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들 중 개업 변호사 기준). 이 분포를 작년과 올해 두 가지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의뢰인들이 실제 모집단 분포에 비해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 중에서도 검사출신 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모집단에서 6.8%에 지나지 않는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의뢰인은 2018년도와 올해 조사 모두에서 27%-28% 수준에 이르렀고, 판사출신 변호사는 모집단에서 8.2%를 차지하지만 의뢰인들의 21%-22%가 이들을 선임했다고 응답했던 것이다. 이와 극히 대조적으로, 연수원 출신 변호사 등 나머지 변호사들은 모집단에서 85%를 차지하지만, 의뢰인들에 의해 선택되는 정도는 50% 내외[45]인 것으로 판단된다. 모집단의 분포와 설문결과의 응답분포 사이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커다란 격차는 의뢰인들이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을 매우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

44) 2018년도 조사에서의 관련 설문 문항과 응답척도(황지태·김정연·정지혜·강우예, 2018: p363. 문7. 참조)는 본 조사와 설문 문항과 응답척도([부록 I]의 설문지 문5. 참조)와 완전히 동일하다.
45) 의뢰인들이 변호사의 전직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포함해서 계산한 수치이다.

[표 3-15] 의뢰인들의 판·검사출신 변호사 선호 정도를 나타내는 비교표

단위: 명(%)

구분	2019년 본(전관예우) 조사	2018년 법조브로커 조사[1]	2018년 기준 변호사 모집단 분포
판사출신 변호사	155 (22.1)	64 (20.6)	1,679[2] (8.2)
검사출신 변호사	**196 (28.0)**	**83 (26.7)**	**1,403[2] (6.8)**
기타 변호사	238 (34.0)	93 (29.9)	17,472[4] (85.0)
모름, 구별 못함	111 (15.9)	70 (22.5)	
계	700 (100.0)	310 (100.0)	20,554 (100.0)

1) 황지태·김정연·정지혜·강우예, 2018,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Ⅰ):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113. 참조.
2) 2018년도 9월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개업을 한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총괄분과위원회, 2018,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안": p1. 참조.
3) 2018년도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개업 회원 등록 변호사 총수(전체 25,250명 중 휴업 또는 미개업자 4,696명 제외, 2018년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황지태·김정연·정지혜·강우예, 2018,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Ⅰ):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99. 참조.
4) 두 자료를 조합한 계산식으로 산출, 19,472명=20,554명-(1,679명+1,403명)

물론 설문조사 결과가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두 차례 조사결과의 높은 일관성은 조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 준다[46]. 다음의 표는 작년과 올해 조사결과의 유사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표 하단의 검증 결과를 보면, 올해 조사에서의 판·검사출신 변호사 분포와 작년 조사에서의 판·검사출신 변호사 분포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모집단 분포와 두 가지 조사결과에서의 응답분포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고 있음도 확인된다[47].

46) 단 한 번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는 오류일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 반복된 조사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신뢰도가 높은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뢰도(信賴度, reliability)는 "반복되는 측정에서 어느 정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를 뜻한다"(홍두승, 1993, 『社會調査分析』: 119).
47) 그 차이가 워낙 커서 통계적 검증이 필요하지조차 않을 정도이긴 하다.

[표 3-16] 변호사 모집단 분포와 두 조사결과 응답분포 간의 차이 검증

단위: 명(%)

구분	A. 2019년 본(전관예우) 조사	B. 2018년 법조브로커 조사	C. 2018년 기준 변호사 모집단 분포
판·검사출신 변호사	**351 (50.1)**	**147 (47.4)**	**3,082 (15.0)**
기타 변호사 (모름 포함)	349 (49.9)	163 (52.6)	17,472 (85.0)
계	700 (100.0)	310 (100.0)	20,554 (100.0)

※ AB 조합 도표의 Pearson Chi-Square Value(x2) = 0.638, df=1, N.S. (Sig. 2-sided=0.425)
※ AC 조합 도표의 Pearson Chi-Square Value(x2) = 6.175E2, df=1, p<0.000
※ BC 조합 도표의 Pearson Chi-Square Value(x2) = 2.455E2, df=1, p<0.000

2. 광의의 전관변호사 특성 분석

단순하게 판검사출신이라는 기준만으로 가장 넓은 의미의 전관변호사를 규정할 경우, 그 비율이 약 50% 정도라는 사실을 앞서 확인하였다. 하지만, 의뢰인들이 이들 모두를 전관변호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누군가에게 전관변호사라고 추천 받아서 실제로 선임한 의뢰인들이 28.7%였다는 사실과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특성을 세분화함으로써 의뢰인들이 통상적으로 전관변호사라고 인식하는 변호사들의 조건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분석에 이용하고자 한다.

가.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퇴임 기간 및 퇴직 시 직위

선임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퇴직 후 선임시기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퇴직 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가 3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18.5%였다. 나머지 기간들은 13~15%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판검사출신 전체로 볼 때, 퇴임 후 3년 미만은 63.0%(351명 중 221명), 2년 미만은 44.4%(156명)으로 계산된다. 이 중 판사출신 변호사의 경우는, 3년 미만이 68.4%(155명 중 106명), 2년 미만이 52.9%(155명 중 82명)로, 검사출신에 비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표 3-17] 선임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퇴직 후 선임까지의 기간

단위: 명(%)

퇴직 후 선임까지 걸린 기간	변호사 구별		
	판사출신 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계
1년 미만	30 (19.4)	20 (10.2)	50 (14.2)
1년 이상 2년 미만	**52** **(33.5)**	**54** **(27.6)**	**106** **(30.2)**
2년 이상 3년 미만	24 (15.5)	41 (20.9)	65 (18.5)
3년 이상 5년 미만	20 (12.9)	28 (14.3)	48 (13.7)
5년 이상	21 (13.5)	32 (16.3)	53 (15.1)
모름	8 (5.2)	21 (10.7)	29 (8.3)
계	155 (100.0)	196 (100.0)	351 (100.0)

x^2=11.293 (df=5), p<.05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선임 변호사의 퇴직 당시 직위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대다수는 부장판사(63.2%)나 부장검사(60.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평판사가 16.1%, 평검사가 21.9%였다. 선임변호사의 퇴직 당시 직위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또는 그 이상이었다는 응답도 2%가 나왔다.

[표 3-18] 선임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퇴직 당시 직위

단위: 명(%)

퇴직 당시 직위	변호사 구별		
	판사출신 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계
평판사, 평검사	25 (16.1)	43 (21.9)	68 (19.4)
부장판사, 부장검사	**98** **(63.2)**	**118** **(60.2)**	**216** **(61.5)**
감사장, 법원장	16 (10.3)	14 (7.1)	30 (8.5)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또는 그 이상	4 (2.6)	3 (1.5)	7 (2.0)
모름	12 (7.7)	18 (9.2)	30 (8.5)
계	155 (100.0)	196 (100.0)	351 (100.0)

x^2=3.349 (df=4), N.S

선임 변호사의 퇴직 당시 직위를 소송사건의 종류 별로 살펴보면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 포함 사건이나 그 외 사건이나 부장판사나 부장검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형사소송 포함 사건의 경우 선임 변호사 퇴직 당시 직위가 부장판사나 부장검사인 경우가 64.6%였고, 그 외 민사사건/행정사건/기타의 경우는 58.9%로 형사사건 포함 사건에서 그 비중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소송사건별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퇴직 당시 직위

단위: 명(%)

퇴직 당시 직위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포함	민사/행정/기타	계
평판사, 평검사	32 (19.9)	36 (18.9)	68 (19.4)
부장판사, 부장검사	104 (64.6)	112 (58.9)	216 (61.5)
감사장, 법원장	13 (8.1)	17 (8.9)	30 (8.5)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또는 그 이상	2 (1.2)	5 (2.6)	7 (2.0)
모름	10 (6.2)	20 (10.5)	30 (8.5)
계	161 (100.0)	190 (100.0)	351 (100.0)

x^2=3.311 (df=4), N.S

나. 퇴직 직전 근무지역과 소송사건 지역과의 연관성

선임 변호사의 퇴직 직전 근무한 지역과 의뢰인의 소송사건이 진행된 지역 사이의 연관성을 물었을 때, 매우 많다는 응답이 23.6%, 약간 있다는 응답이 5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합하여 74.3%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소송 사건이 진행된 지역에서 퇴직한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이다.

판사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매우 많다는 응답이 27.7%, 약간 있다는 응답이 45.8%로 그 합은 73.5%였고,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경우엔, 매우 많다는 응답이 20.4%, 약간 있다는 응답이 54.6%로, 그 합은 75%였다. 대체로 볼 때, 선임 변호사가 판사출신이었는지 검사출신이었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퇴직 직전 근무 지역과 소송사건 지역과의 연관성

단위: 명(%)

퇴직 직전 근무 지역과 소송사건 지역과의 연관성	변호사 구별		
	판사출신 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계
매우 많다	43 (27.7)	40 (20.4)	83 (23.6)
약간 있다	71 (45.8)	107 (54.6)	178 (50.7)
별로 없다	34 (21.9)	43 (21.9)	77 (21.9)
전혀 없다	7 (4.5)	6 (3.1)	13 (3.7)
계	155 (100.0)	196 (100.0)	351 (100.0)

x^2=3.781 (df=3), N.S

소송사건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형사소송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들의 경우, 매우 많다는 응답이 30.4%[48]인데 비해, 민사 등 기타 소송에서는 17.9%[49]로 차이가 나타났다. 약간 있다는 응답에서는 서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민사 등 기타 소송에서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21] 소송사건별 퇴직 직전 근무 지역과 소송사건 지역과의 연관성

단위: 명(%)

퇴직 직전 근무 지역과 소송사건 지역과의 연관성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 포함사건	민사/행정/기타	계
매우 많다	49 (30.4)	34 (17.9)	83 (23.6)
약간 있다	77 (47.8)	101 (53.2)	178 (50.7)
별로 없다	30 (18.6)	47 (24.7)	77 (21.9)
전혀 없다	5 (3.1)	8 (4.2)	13 (3.7)
계	161 (100.0)	190 (100.0)	351 (100.0)

x^2=8.051 (df=3), p<.05

48) 순수 형사사건에서는 매우 많다는 응답이 36.8%를 차지하였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병행한 경우에는 매우 많다는 응답이25.8%를 차지하였다. 관련 도표는 생략.

49) 민사사건(가사사건 포함)에서는 18.8%, 행정사건(조세사건 포함)에서는 0%로 나타났다. 관련 도표는 생략.

전반적으로 볼 때, 선임 변호사의 퇴직 직전 근무한 지역과 의뢰인의 소송사건이 진행된 지역 사이의 연관성은 형사사건 혹은 형사와 민사가 병행된 사건에서 민사 등 기타 소송에서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3. 의뢰인들이 인식하는 전관변호사의 범위와 혜택

가. 의뢰인들이 인식하는 전관변호사의 범위

의뢰인들에게 자신이 선임한 판검사출신 변호사가 전관변호사라고 보는지를 물었을 때, 61%(214명)가 그렇다고 답을 했고, 27.4%는 아니라고, 11.7%는 모른다고 답을 했다. 소송사건 종류로 나누어 보면, 형사소송 포함 사건의 경우 67.1%가, 민사/행정/기타 사건의 경우 55.8%가 전관변호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소송사건 종류별 의뢰인들이 인식한 전관변호사 여부

단위: 명(%)

전관변호사 인식 여부	소송사건 종류		
	형사소송 포함사건	민사/행정/기타	계
그렇다	108 (67.1)	106 (55.8)	214 (61.0)
아니다	34 (21.1)	62 (32.6)	96 (27.4)
모름	19 (11.8)	22 (11.6)	41 (11.7)
계	161 (100.0)	190 (100.0)	351 (100.0)

x^2=6.050 (df=2), p<.05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판검사출신 변호사임과 동시에 전관변호사라고 인정한 214명은 전체 응답자 700명 중 30.6%에 해당하는데, 이 비율은 앞의 〈표 3-12〉에서 누군가로부터 전관변호사를 추천 받고 그 추천을 받아들인 의뢰인들의 비율인 28.7%(700명 중 201명)와 대략 유사하다. 〈표 3-22〉에서의 214명과 〈표 3-12〉에서의 201명 사이에 중첩된 응답자들이 다수일 가능성은 높다.

다음에 제시한 두 개의 표를 보면, 그 214명과 201명 중 해당 응답이 완벽하게

겹치는 의뢰인이 159명(214명 중에서는 74.3%, 201명 중에서는 79.1%)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3-23] 전관변호사 선임 의뢰인들의 타인 추천 전관변호사 수용 여부

단위: 명(%)

타인 추천 전관변호사 제안의 수용	선임 변호사가 전관변호사라고 인정한 의뢰인에 한정		
	빈도	백분률	유효백분률
그렇다	159	74.3	79.1
아니다	42	19.6	20.9
결측값	13	6.1	
계	214	100.0	100.0

[표 3-24] 타인 추천 전관변호사 수용 의뢰인들의 자기 변호사 전관 인정 여부

단위: 명(%)

선임 변호사의 전관 인정	타인 추천 전관변호사 제안 수용 의뢰인에 한정		
	빈도	백분률	유효백분률
그렇다	159	79.1	85.9
아니다	17	8.5	9.2
모르겠다	9	4.5	4.9
결측값	16	8.0	
계	201	100.0	100.0

나. 전관변호사로 인한 혜택 인지

자신의 사건이 "전관예우"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그렇다는 응답은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응답한 351명 중 46.4%[50]로 아니라는 응답 34.5%보다 많았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9.1%였다. 사건 종류 별로 보면, 형사소송 포함 사건의 경우 전관예우의 혜택을 보았다는 응답이 56.5%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민사/행정/기타 사건의 경우는 혜택을 보았다는 응답(37.9%)이 아니라는 응답(39.5%)보다 적었다.

50)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전관변호사라고 인정한 201명의 의뢰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엔 그 비율이 71.5%로 상승한다.

[표 3-25] 소송사건별 전관예우 혜택 긍정 여부

단위: 명(%)

전관예우 혜택 여부	소송사건 종류		
	형사소송 포함사건	민사/행정/기타	계
그렇다	**91 (56.5)**	72 (37.9)	163 (46.4)
아니다	46 (28.6)	75 (39.5)	121 (34.5)
모름	24 (14.9)	43 (22.6)	67 (19.1)
계	161 (100.0)	190 (100.0)	351 (100.0)

x^2=12.241 (df=2), p<.01

전관예우의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혜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물었을 때 55.8%가 절차상 각종 편의뿐만 아니라 중요 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였다고 응답했다. 절차상 편의였다는 응답은 30.7%였고, 막연하게나마 혜택을 본 것 같다는 응답은 13.5%였다. 소송사건의 종류 별로 나누어 보면, 형사소송 포함 사건의 경우 중요한 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8.2%로 민사/행정/기타 사건의 52.8%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표 3-26] 소송사건별 전관예우 혜택 정도

단위: 명(%)

전관예우 혜택 정도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 포함사건	민사/행정/기타	계
절차상 각종 편의/중요 결정사항에 영향	**53 (58.2)**	**38 (52.8)**	**91 (55.8)**
절차상 편의	25 (27.5)	25 (34.7)	50 (30.7)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어떤 식이로든 혜택을 보았다는 느낌	13 (14.3)	9 (12.5)	22 (13.5)
계	91 (100.0)	72 (100.0)	163 (100.0)

x^2=.999 (df=2), N.S

전관예우의 혜택을 어느 단계에서 받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33.1%가 1.2심 재판에서, 24.5%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22.1%가 경찰 수사단계에서라고 답했다. 1·2심 재판 이전 단계를 모두 합산할 경우엔, 그 비율이 총합은 64.4%에 달하고, 판사의 판단 영역이 아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수사단계까지의 비율 총합은 46.6%에 이른다. 그리하여 검사의 영향력이 미치는 단계와 판사의 영향력이 미치는 단계를 대략 나누어 보자면, 반반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소송사건 종류에 따른 차이는 대체로 크지 않았으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나온 응답 중 경찰-검찰 수사단계, 구속 관련 심사 단계에 대한 응답은 적지 않은 응답자들의 착오[51]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는 아마도 재판 이전 단계에서 받은 어떤 혜택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표 3-27] 소송사건별 전관예우 혜택을 받은 단계

단위: 명(%)

전관예우 혜택 단계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포함사건	민사/행정/기타	계
경찰 수사단계	19 (20.9)	17 (23.6)	36 (22.1)
검찰 수사단계	22 (24.2)	18 (25.0)	40 (24.5)
구속 관련 심사	21 (23.1)	8 (11.1)	29 (17.8)
민·형사 등 1,2심 재판	**29** **(31.9)**	**25** **(34.7)**	**54** **(33.1)**
민·형사 등 대법원 재판	-	4 (5.6)	4 (2.5)
계	91 (100.0)	72 (100.0)	163 (100.0)

x^2=8.536 (df=4), N.S

51) 뒤에 나올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의뢰인들 중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4. 선임계 미제출 및 전화변론 관련 응답

가. 선임계 미제출 여부

의뢰인 응답을 토대로 볼 때,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경우는 74.4%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인 5.9%보다 훨씬 많았다. 모른다는 응답은 19.7%였다. 모른다는 응답까지 선임계 제출로 간주할 경우, 선임계 제출 총 비율은 94.1%에 달하며,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선임계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형사소송 포함 사건이 민사/행정/기타 사건보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비율이 약간 더 적게 나타났다.

[표 3-28] 사건별 선임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

단위: 명(%)

선임계 제출 여부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포함	민사/행정/기타	계
제출함	222 (80.7)	299 (70.4)	521 (74.4)
제출하지 않음	**14** **(5.1)**	**27** **(6.4)**	**41** **(5.9)**
모름	39 (14.2)	99 (23.3)	138 (19.7)
계	275 (100.0)	425 (100.0)	700 (100.0)

x^2=9.901 (df=2), p<.01

선임한 변호사의 출신에 따른 응답 결과를 보면, 판검사출신의 경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6.3%[52]로 나머지 변호사들의 5.4%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52) 판사출신 변호사는 3.9%(6명), 검사출신 변호사는 8.2%(16명)이다.

[표 3-29] 변호사 출신별 선임계 제출 여부

단위: 명(%)

선임계 제출 요부	선임변호사 전관여부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미상	계
제출함	291 (82.9)	230 (65.9)	521 (74.4)
제출하지 않음	**22 (6.3)**	**19 (5.4)**	**41 (5.9)**
모름	38 (10.8)	100 (28.7)	138 (19.7)
계	351 (100.0)	349 (100.0)	700 (100.0)

x^2=35.211 (df=2), p<.001

교차표 카이자승 검증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만, 이는 선임계 미제출 여부 때문이 아니라 모른다는 응답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선임계 미제출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높다고 말하기엔 부족하다.

나. 전화변론 여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친분이 있는 판사나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관련 부탁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의뢰인들 중 17.3%(700명 중 121명)가 그렇다는 응답을 했다. 부탁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5.6%,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37.1%였다.

특히 형사소송 포함 사건의 경우 전화를 걸어 사건관련 청탁을 했다는 응답이 23.3%[53]였다. 민사/행정/기타 사건의 경우는 13.4%가 부탁을 했다고 답하였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다.

[표 3-30] 사건별 선임 변호사의 전화변론 여부

단위: 명(%)

전화변론 여부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포함사건	민사/행정/기타	계
부탁함	**64 (23.3)**	57 (13.4)	121 (17.3)
부탁하지 않음	109 (39.6)	210 (49.4)	319 (45.6)
모름	102 (37.1)	158 (37.2)	260 (37.1)
계	275 (100.0)	425 (100.0)	700 (100.0)

x^2=12.894 (df=2), p<.01

53) 순수 형사소송에서는 18.4%,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병행된 경우엔 26.2%에 달했다.

참고로, 앞의 〈표 3-28〉과 〈표 3-29〉에서 자신의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의뢰인은 총 41명(700명 기준 5.9%)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 그 41명 중에서 전화변론을 한 변호사, 즉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동시에 전화로 변론한 변호사는 모두 6명(700명 기준으로 0.9%)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5명은 판검사출신 변호사(판사출신 2명, 검사출신 3명)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관련 도표는 생략).

한편, 선임한 변호사가 판검사출신 변호사일 경우, 친분이 있는 판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관련 부탁을 했다는 응답은 29.3%[54]로, 선임변호사가 판검사 출신이 아니거나 판검사 출신인지 모르겠다는 경우인 5.2%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3-31] 선임변호사 전관여부에 따른 선임 변호사의 전화 부탁 여부

단위: 명(%)

전화변론 여부	선임변호사 전관여부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미상	계
부탁함	**103 (29.3)**	18 (5.2)	121 (17.3)
부탁하지 않음	126 (35.9)	193 (55.3)	319 (45.6)
모름	122 (34.8)	138 (39.5)	260 (37.1)
계	351 (100.0)	349 (100.0)	700 (100.0)

x^2=74.762 (df=2), p<.001

제4절 | 전관변호사의 수임료에 관한 분석

1. 전체 변호사의 기본 수임료 및 사건별 수임료

가. 변호사 수임료 분포와 평균 수임료

선임 변호사의 수임료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3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28.1%인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었다.

54) 판사출신 변호사는 31.6%, 검사출신 변호사는 27.6%이다.

형사소송 포함 사건과 민사/행정/기타 사건 사이의 수임료 수준 범주에 따른 차이는 아주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형사소송 포함 사건의 수임료가 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차표 분석 결과에서 그 차이는 통계적(카이자승 검증)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임료를 만원 단위 평균값으로 계산해 보면, 전체 선임 변호사의 평균 수임료는 723만원 정도이다. 형사사건이 포함된 소송에서는 830만원[55] 정도로 나타났고, 민사소송 등에서는 655만원[56] 정도가 평균으로 계산되었다. 이 두 집단 사이의 평균 수임료 차이는 통계적(t-검증)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표 3-32] 소송사건별 변호사 수임료 비교

단위: 명(%), 만원

선임변호사 수임료 수준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포함	민사/행정/기타	계
200만원 미만	16 (5.8)	63 (14.8)	79 (11.3)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7 (24.4)	130 (30.6)	197 (28.1)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4** **(37.8)**	**144** **(33.9)**	**248** **(35.4)**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57 (20.7)	52 (12.2)	109 (15.6)
2000만원 이상	31 (11.3)	36 (8.5)	67 (9.6)
계	275 (100.0)	425 (100.0)	700 (100.0)
평균(단위:만원) **(표준편차)**	829.6 (751.113)	654.7 (718.648)	723.4 (736.026)

χ^2=24.128 (df=4), p<.001
t=3.091 (df=698), p<.01

55) 순수 형사사건 759만원(N=103명), 형사와 민사 병행 사건이 872만원(N=172명) 수준이다. 이 둘 사이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관련 도표는 생략함.

56) 민사사건(가사포함)은 평균 640만원(N=400명), 행정사건(조세포함)은 평균 885만원(N=20명), 기타사건은 평균 940만원(N=5)으로 나타났다. 표본 크기 차이 때문에, 이들 사이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관련 도표 생략.

나. 주관적으로 평가한 수임료 수준

당시 소송 사건의 수임료가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에 비해 어땠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약 과반수는 통상적인 수준이었다고 답했고(51%), 낮은 수준이었다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높았다는 응답과 매우 높았다는 응답은 형사소송 포함 사건의 경우 27.6%와 12%, 민사/행정/기타 사건의 경우는 24.5%와 2.8%로 형사소송 포함 사건에서 수임료가 통상적 수준보다 더 높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사건별 선임 변호사의 주관적인 수임료 수준

단위: 명(%)

수임료 수준 인식 정도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포함	민사/행정/기타	계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보다 낮음	34 (12.4)	56 (13.2)	90 (12.9)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	**121** **(44.0)**	**236** **(55.5)**	**357** **(51.0)**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보다 높음	76 (27.6)	104 (24.5)	180 (25.7)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보다 매우 높음	33 (12.0)	12 (2.8)	45 (6.4)
모름	11 (4.0)	17 (4.0)	28 (4.0)
계	275 (100.0)	425 (100.0)	700 (100.0)

x^2=26.959 (df=4), p<.001

위 결과가 변호사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4]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나머지 변호사들에 대한 주관적 수임료 수준 차이

단위: 명(%)

수임료 수준 인식 정도	변호사의 종류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 변호사	계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보다 낮음	35 (10.0)	55 (15.8)	90 (12.9)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	151 (43.0)	**206** **(59.0)**	357 (51.0)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보다 높음	**123** **(35.0)**	57 (16.3)	180 (25.7)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보다 매우 높음	39 (11.0)	6 (1.7)	45 (6.4)
모름	3 (0.9)	25 (7.2)	28 (4.0)
계	351 (100.0)	349 (100.0)	700 (100.0)

x^2=78.598 (df=4), p<.001

표를 보면,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이 나머지 변호사들에 비해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보다 높거나 혹은 매우 높다는 응답이 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2. 전관변호사들의 기본 수임료 비교

가.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나머지 변호사 사이의 수임료 비교

앞부분의 정의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소위 전관변호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공직퇴임변호사(본 연구에서는 판사출신 및 검사출신 변호사로 한정)라는 조건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전관변호사들의 수임료를 비교해 볼 때, 먼저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나머지 변호사들로 나누어 비교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의 표를 보면, 우선 판사출신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료는 약 936만원(N=155명)이고,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료는 915만원(N=196명)으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이 두 집단의 평균 수임료는 대체로 엇비슷한데, 통계적으로 평균 수임료의 차이를 검증해 보면(두 집단 사이의 t검증),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판사나 검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주로 연수원출신인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료는 527만원(N=238명), 출신 미상의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료는 510만원(N=111명)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 사이의 평균 수임료도 역시 대체로 엇비슷하며, 통계적 검증 결과(두 집단 사이의 t검증), 여기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4집단 사이에 수임료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ANOVA 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도 그럴 것이, 앞의 두 집단(판·검사출신 변호사)과 뒤의 두 집단(기타 변호사 및 미상) 사이의 평균 수임료 차이가 대강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평균 수임료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집단 중 판사출신 변호사 집단과 검사출신 변호사 집단이 동질적이어서 하나로 묶일 수 있고, 나머지 변호사 집단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데, 앞의 두 집단(판·검사출신 변호사)과 뒤의 두 집단(기타 변호사

및 미상 집단) 사이의 평균 수임료 차이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가장 단순한 전관변호사 규정만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표 3-35]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기타 변호사들 간의 수임료 비교

단위: 만원, 명

구분	평균(만원)	사례수(명)	표준편차	t검증[1]	ANOVA[2]
판사출신 변호사	**935.68**	**155**	**807.739**	**t=0.243 df=349 N.S.**	F=18.792 df1=3 df2=696 **p<0.000**
검사출신 변호사	**914.68**	**196**	**801.007**		
기타 변호사 (판검사출신 외)	527.08	238	590.531	t=0.245 df=347 **N.S.**	
모름/구별못함	510.21	111	618.357		

1) t검증 결과, 판사출신 변호사와 검사출신 변호사의 수임료 차이는 없고, 기타 변호사와 미상의 경우에도 수임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ANOVA 검증 결과, 네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단, 판사출신과 검사출신 사이의 차이가 없고, 기타 변호사와 미상 사이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나머지 집단(기타 변호사 및 미상)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N.S. : Not Significant

나. 전관변호사의 조건에 따른 수임료 비교

가장 넓은 의미의 전관변호사(판·검사출신 변호사)라고 해도, 다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관변호사는 아니라는 세간의 평가를 고려해서, 다음에서는 전관변호사의 조건에 따라 수임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어떤 의미로든 전관변호사가 될 수 없는 집단, 즉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료는 522만원(N=34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판·검사출신 변호사 집단 전체의 평균 수임료는 924만원(N=351명)으로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의 평균에 거의 두 배에 가까웠다. 여기에 조건을 더 붙여서, 퇴직한 지 3년 이내이면서 퇴직 시의 직위가 부장검사 내지 부장판사 이상인 집단을 따로 추려보면, 그 평균 수임료가 1,074만원(N=167명)으로 전체 판·검사출신 변호사 집단보다도 100만원 넘게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조건을 더 좁혀서, 퇴직한 지 1년 이내이면서 동시에 부장검사 내지 부장판사 이상인 집단의 평균 수임료를 계산하면, 1,340만원(N=37명)으로 더 상승하고, 퇴임 1년 이내에 퇴직 시 직위가 검사장급 이상이나 법원장 이상인 경우엔 그 평균이 1,409만원(N=11)으로 좀 더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6] 전관변호사의 우대 조건에 따른 수임료 비교

단위: 만원, 명

구분	평균(만원)	사례수(명)	표준편차
기타 변호사 (연수원 출신/미상)	521.71	349	598.681
판검사출신 변호사 전체	**923.95**	**351**	**802.903**
퇴임 3년 이내 부장판검사 이상	1,074.17	167	905.035
퇴임 1년 이내 부장판검사 이상	1,340.00	37	1240.679
퇴임 1년 이내 검사장 법원장 이상	**1,409.09**	**11**	**1362.685**

3. 추가비용 지급 여부에 관한 분석

가. 추가비용 제안에 관한 응답결과

선임 변호사 또는 그 소개자로부터 공식적인 변호사보수 이외에 법원 혹은 검찰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700명 중 125명, 조사대상자들 중 17.9%의 의뢰인들이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추가비용을 요청 받은 경우가 다수는 아니더라도 결코 낮은 비율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판·검사출신의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던 경우는 29.1%[57]로 전관이 아니거나 전관인지 모르는 변호사를 선임했던 경우의 6.6%보다 역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이다. 물론 대다수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82.1%가 추가 비용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추가비용을 요구 받은 경우는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가 다수인 것이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변호사 수임료 이외에 추가비용을 요청하는 경우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에게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지만,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에게서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57) 판사출신 변호사 28.4%, 검사출신 변호사 29.6%.

[표 3-37] 변호사 출신별 추가비용을 요구받은 경험

단위: 명(%)

추가비용을 요구받은 경험	변호사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미상	계
있다	**102 (29.1)**	23 (6.6)	125 (17.9)
없다	249 (70.9)	326 (93.4)	575 (82.1)
계	351 (100.0)	349 (100.0)	700 (100.0)

x^2=60.234 (df=1), p<.001

소송사건 종류별로 보면 형사소송 포함 사건의 경우가 25.8%[58]로 민사/행정/기타 사건의 12.7%보다 약 2배 정도의 비율로 추가 비용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사건별 추가비용을 요구받은 경험

단위: 명(%)

추가비용을 요구받은 경험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포함사건	민사/행정/기타	계
있다	**71 (25.8)**	54 (12.7)	125 (17.9)
없다	204 (74.2)	371 (87.3)	575 (82.1)
계	275 (100.0)	425 (100.0)	700 (100.0)

x^2=19.570 (df=1), p<.001

나. 추가비용 제공에 관한 응답결과

추가비용을 요구받았을 때, 실제로 추가 비용을 지급했는지를 살펴보면, 제공했다는 응답이 66.4%(제안 받은 125명 기준, 700명 전체 기준으로는 11.9%)로 다수를 차지했다. 형사사건 포함 사건의 경우 67.6%로 약간 더 그러한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사건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58) 순수 형사소송의 경우 21.4%,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병행된 경우 28.5%.

[표 3-39] 사건별 추가비용 지급 경험

단위: 명(%)

추가비용 지급 경험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포함사건	민사/행정/기타	계
있다	48 (67.6)	35 (64.8)	83 (66.4)
없다	23 (32.4)	19 (35.2)	42 (33.6)
계	71 (100.0)	54 (100.0)	125 (100.0)

x^2=.107 (df=1), N.S

추가비용을 제안 받았던 125명의 의뢰인들 중에서 판·검사출신의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던 의뢰인 102명 중 74명(72.5%)[59]은 실제로 추가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351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1.1%이다. 이에 비해, 나머지 변호사들은 23명 중 9명(39.1%)이 추가비용을 지급했다. 기타 변호사 전체 349명을 기준으로 보면 2.6%에 불과하다. 결국, 추가비용을 지급한 의뢰인의 비율은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들이 기타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들보다 거의 10배(21.1% 대 2.6%)였던 것이다.

[표 3-40] 변호사 출신별 추가비용 지급 경험

단위: 명(%)

추가 비용 지급 경험	변호사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미상	계
있다	**74** **(72.5)**	9 (39.1)	83 (66.4)
없다	28 (27.5)	14 (60.9)	42 (33.6)
계	102 (100.0)	23 (100.0)	125 (100.0)

x^2=9.395 (df=1), p<.01

59) 판사출신 변호사 75.0%, 검사출신 변호사 70.0%.

다. 지급한 추가 비용

의뢰인들이 추가로 지급한 비용 수준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9.3%인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었다. 추가비용의 평균은 약 314만원 정도이다.

추가 지급 비용에서 형사소송 포함 사건(평균 364만원)이 민사/행정/기타 사건(평균 244만원) 보다 대체로 금액이 더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표 3-41] 추가로 지급한 비용의 분포

단위: 명(%)

추가로 지급한 비용 수준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포함	민사/행정/기타	계
100만원 미만	4 (8.3)	**9** **(25.7)**	13 (15.7)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7 (14.6)	**9** **(25.7)**	16 (19.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 **(31.2)**	7 (20.0)	22 (26.5)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7 (14.6)	4 (11.4)	11 (13.3)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9 (18.8)	3 (8.6)	12 (14.5)
1000만원 이상	6 (12.5)	3 (8.6)	9 (10.8)
계	48 (100.0)	35 (100.0)	83 (100.0)
평균(단위:만원) **표준편차**	364.2 (320.928)	244.1 (268.554)	313.6 (304.128)

x^2=8.062 (df=5), N.S
t=1.800 (df=81), N.S

라. 전관변호사 추가 비용 비교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들 중 추가비용을 지급한 의뢰인들이 추가비용으로 지급한 비용은 평균 287만원(N=33명)이고,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경우엔 평균 374

만원(N=41명)으로, 검사출신 변호사들에게 소요된 추가비용이 백만 원 정도 더 높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판사나 검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주로 연수원출신인 변호사들)의 경우 평균 추가비용은 143만원(N=6명), 출신 미상의 변호사들의 평균은 117만원(N=3명)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 사이의 평균도 역시 대체로 엇비슷하며, 통계적 검증 결과(두 집단 사이의 t검증), 여기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3-42]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기타 변호사 선임 의뢰인들 간의 추가비용 비교

단위: 만원, 명

구분	평균(만원)	사례수(명)	표준편차	t검증[1]	ANOVA[2]
판사출신 변호사	**286.97**	**33**	**276.648**	**t=-1.194 df=72 N.S.**	F=1.727 df1=3 df2=79 **N.S.**
검사출신 변호사	**374.39**	**41**	**339.507**		
기타 변호사 (판검사출신 외)	142.50	6	96.112	t=0.402 df=7 **N.S.**	
모름/구별못함	116.67	3	76.376		

1) t검증 결과, 판사출신 변호사와 검사출신 변호사의 차이는 없고, 기타 변호사와 미상의 경우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ANOVA 검증 결과, 네 집단 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음. 이는 기타 변호사들 각각의 사례수가 너무 적어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전체 4집단 사이에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ANOVA 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비용의 평균값의 차이가 적지 않아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출신 미상의 변호사들 중 추가비용이 소요된 사례수가 각각 너무 적어서이다. 사례수가 너무 적으면 유효한 통계적 검증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들 두 집단(연수원 출신 및 출신 미상의 변호사들)의 사례의 수가 제법 있었다면, 평균 차이는 유의미했을 것이라 본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최소한 판검사출신 변호사 추가비용과 기타 변호사 추가비용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해야 옳다. 우선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은 사례나 비중, 그 액수가 절대 작은 것이 아니다. 이에 비해 기타 변호사들의 경우엔 그 액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사례 수가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에 비해 훨씬 적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두 집단(판검사출신과 기타 출신) 사이에는 이미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보이는 표의 윗부분에서와 같이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하나로 묶고, 나머지 집단을 하나로 묶어서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면 좀 더 분명해진다.

우선 연수원출신 변호사 집단의 평균 추가비용은 134만원(N=9명)으로 계산된다. 이에 비해 판·검사출신 변호사 집단 전체의 추가비용 평균은 335만원(N=74명)으로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의 평균보다 두 배가 넘는 액수라는 것이 확인된다. 이렇게 두 집단을 묶어서 평균차이를 검증해 볼 경우엔, 기타 변호사 집단의 사례 수가 합산에 의해 증가하면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난다[60].

퇴직 3년 이내의 퇴직 시 직위가 부장판검사 이상인 집단을 따로 추려보면, 그 평균 추가비용은 399만원(N=49명)으로 전체 판·검사출신 변호사 집단보다 약간 더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퇴임 1년 이내에 퇴직 시 직위가 검사장급 이상이나 법원장 이상인 경우엔 그 평균이 425만원(N=4)으로 좀 더 상승하였다.

[표 3-43] 전관변호사의 우대 조건에 따른 추가비용 비교

단위: 만원, 명

구분	평균(만원)	사례수(명)	표준편차
기타 변호사 (연수원 출신/미상)	133.89	9	86.015
판검사출신 변호사 전체	**335.41**	**74**	**314.042**
퇴임 3년 이내 부장판검사 이상	399.39	49	340.401
퇴임 1년 이내 부장판검사 이상	383.33	15	279.409
퇴임 1년 이내 검사장 법원장 이상	**425.00**	**4**	**427.200**

60) 두 집단은 등분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등분산 가정을 하지 않는 t검증을 행할 경우, 자유도가 42.674으로 조정되면서 t값이 4.341로 나오는데, 이 때 $p<.001$ 수준에서 두 집단 사이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추가 비용 포함 의뢰인의 총비용 분석

가. 추가비용 포함 총수임료(의뢰인 총비용) 비교

여기서 "총수임료"는 당시 소송사건의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와 그 외에 '법원 혹은 검찰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변호사 또는 소개자에게 지급한 추가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먼저 평균을 비교해 보면, 연수원 출신이거나 출신 미상인 변호사의 총수임료는 521.71만원인 반면,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994.66만원으로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도 비전관 변호사는 599.521인 반면 전관 변호사는 852.338로, 전관변호사의 총수임료 편차 역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값으로 보아도 전관 변호사가 700만원으로 비전관 변호사의 400만원에 비해 300만원이 더 많다. 1사분위값도 500만원 대 200만원으로 300만원이 더 많고, 특히 상위 25%에 해당하는 3사분위값은 전관 변호사가 1,300만원으로 비전관 변호사의 500만원보다 800만원이 더 많다.

[표 3-44] 전체 변호사 총수임료 (추가비용 포함 의뢰인 총비용)

전관 여부	사례수	평균(만원)	표준편차	중간값 (50%)	1사분위 (25%)	3사분위 (75%)
연수원출신 변호사 혹은 미상	349	525.17	599.521	400	200	500
판검사 출신 변호사	351	**994.66**	852.338	700	500	1300

이는 기본 수임료의 차이(〈표 3-36〉 참조)보다 더 벌어진 것인데, 연수원출신 변호사는 추가비용으로 인한 증가가 거의 없는 반면, 판검사출신 변호사는 추가비용에 의해 총수임료가 좀 더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나. 전직 판검사 여부에 따른 총수임료(의뢰인 총비용) 비교

전관이 아닌 변호사와 전관 변호사의 총수임료를 소송사건 종류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먼저 전관이 아닌 연수원 출신이거나 출신이 미상인 변호사가 형사사건이 포함된 사건을 맡았을 경우 총수임료 평균이 564.61만원이었다. 이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형사사건이 포함된 사건을 맡았을 때의 평균 총수임료인 1125.89만원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중간값을 비교해 보면 전관이 아닌 변호사는 477.5만원인 반면 전관 변호사는 850만원으로 역시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1사분위값도 300만원과 500만원, 3사분위값 또한 512.5만원과 1,500만원으로 그 차이가 크다.

[표 3-45] 전관 여부와 사건 종류에 따른 총수임료

전관여부	사건 종류	사례수	평균(만원)	표준편차	중간값 (50%)	1사분위 (25%)	3사분위 (75%)
연수원 출신 변호사나 미상	형사사건 포함	114	564.61	567.089	477.5	300	512.5
	민사/행정 사건	235	506.03	614.903	400	200	500
판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사건 포함	161	**1125.89**	874.806	850	500	1500
	민사/행정 사건	190	883.47	816.834	550	400	1000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을 수임했을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포함된 사건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전관 변호사와 전관이 아닌 변호사의 총수임료 차이가 컸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총수임료 평균은 883.47만원인 반면 판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는 506.03만원에 그친다. 중간값 역시 550만원 대 400만원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가 150만원 더 많았으며, 1사분위값과 3사분위값도 각각 400만원 대 200만원, 1,000만원 대 500만원으로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총수임료가 연수원 출신이거나 출신이 미상인 변호사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전관의 퇴직 시 직위에 따른 총수임료(의뢰인 총비용) 비교

다음으로 전관 변호사의 퇴직시 직위와 수임 사건 종류에 따라 총수임료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앞서 〈표 3-44〉의 "판검사출신 변호사" 즉 전관 변호사 전체 통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표에서 잘 나오듯이 퇴직 시 직위가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이상, 혹은 검사장이나 법원장 이상일 때의 총 수임료가 전관 변호사 전체 보다 여러 지표에서 일관되게 더 많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이상의 직위로 퇴직한 전관 변호사의 경우 수임 사건이 형사사건을 포함했을 때 평균 총수임료가 1,260.99만원으로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일 때의 989.40만원보다 약 270만원이 더 많다.

중간값도 1,000만원 대 600만원, 1사분위값 600만원 대 500만원, 3사분위값 1,700만원 대 1,225만원으로 역시 형사사건 포함한 사건의 총수임료가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의 총수임료보다 더 많았다.

[표 3-46] 전관 변호사의 퇴직 시 직위와 사건 종류에 따른 총수임료

퇴직 시 직위	사건 종류	사례수	평균(만원)	표준편차	중간값 (50%)	1사분위 (25%)	3사분위 (75%)
부장 판검사 이상	형사사건 포함	119	**1260.99**	925.212	1000	600	1700
	민사/행정 사건	134	989.40	833.983	600	500	1225
검사장 법원장 이상	형사사건 포함	15	1180.00	640.814	1000	700	1500
	민사/행정 사건	22	1129.55	1225.59	875	275	1625

반면 검사장이나 법원장 이상의 직위로 퇴직했을 때는 형사사건이 포함된 경우의 수임료가 1,180만원으로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의 1,129.59만원 보다 약간 더 많긴 하지만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간값과 1사분위값은 형사사건 포함인 경우가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의 경우보다 더 크긴 하지만, 3사분위값은 오히려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의 경우가 약간 더 크다. 특이할 점은 검사장이나 법원장 이상으로 퇴직한 변호사가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을 맡았을 경우, 총수임료의 표준편차가 형사사건 포함한 사건을 맡았을 경우보다 거의 2배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검사장이나 법원장 이상의 직위로 퇴임한 변호사들 간의 총수임료 편차가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의 경우 훨씬 더 큼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례수가 각각 15와 22로 작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라. 전관 퇴직 후의 기간에 따른 총수임료(의뢰인 총비용) 비교

〈표 3-47〉은 전관변호사의 퇴직 시 직위와 언제 퇴직했는지 그 기간에 따른 총수임료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선임한 변호사가 퇴직 시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이상의 직위였을 경우를 보면, 퇴임한지 3년 이내일 때 총수임료 평균은 1,191.36만원이었지만, 퇴임한지 1년 이내일 때는 1,495.41만원으로 300만원 정도가 더 많았다. 표준편차를 보면 퇴임 1년 이내일 때가 퇴임 3년 이내일 때보다 일관되게 더 크다. 중간값도 900만원 대 1,200만원으로 역시 300만원이 더 많았다. 1사분위값은 500만원과 515원으로 별 차이가 없지만, 상위 25%에 해당하는 3사분위값은 퇴임 3년 이내일 때는 1,800만원이지만, 퇴임 1년 이내일 때는 2,000만원으로 200만원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퇴직 시 검사장이나 법원장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변호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퇴임 3년 이내일 때 총수임료 평균은 1,177.08만원이지만, 퇴임 1년 이내일 때는 1,563.64만원으로 약 400만원 정도가 더 많았다. 중간값 역시 퇴임 3년 이내일 때는 800만원이지만 퇴임 1년 이내일 때는 1,500만원으로 700만원이 더 많다. 1사분위값도 300만원 대 500만원, 3사분위값도 1,875만원과 2000만원으로 역시 퇴임 3년 이내일 때보다 퇴임 1년 이내일 때 총수임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7] 전관 변호사의 퇴직 시 직위와 퇴직 기간에 따른 총수임료

퇴직 시 직위	퇴임 기간	사례수	평균(만원)	표준편차	중간값 (50%)	1사분위 (25%)	3사분위 (75%)
부장 판검사 이상	**3년 이내**	167	1191.36	964.259	900	500	1800
	1년 이내	37	**1495.41**	1271.265	1200	515	2000
검사장 법원장 이상	**3년 이내**	24	1177.08	1153.443	800	300	1875
	1년 이내	11	**1563.64**	1335.120	1500	500	2000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이상이었던 변호사와 검사장이나 법원장 이상이었던 변호사의 평균 총수임료를 비교해 보면, 퇴임 3년 이내일 때 1,191.36만원과 1,177.08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퇴임 1년 이내일 때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이상이었던 변호사는 1,495.41만원인데 검사장과 법원장 이상이었던 변호사는 1,563.64만원으로 총수임료가 약간 더 많긴 하지만, 역시 큰 차이는 아니다. 중간값, 1사분위값, 3사분위값을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며 퇴직 3년 이내일 때는 오히려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중간값과 1사분위값이 더 크다.

마. 총수임료(의뢰인 총비용)에 대한 종합적 비교

〈표 3-48〉은 전관 변호사의 총수임료 통계를 퇴직 시 직위, 수임 사건 종류, 퇴직 기간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평균 총수임료를 보면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이상 출신으로 퇴직한지 1년 이내의 변호사가 형사사건이 포함된 사건을 수임하였을 경우 1,634.58만원으로 가장 금액이 컸다. 총수임료 중간값도 1,450만원으로 검사장이나 법원장 이상 출신 변호사가 형사사건이 포함된 사건을 맡았을 경우와(1,500만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이상 출신 범주 안에서는 단연 큰 액수이다.

총수임료 평균이 가장 작은 범주는 퇴직한지 3년 이내의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이상 출신 변호사가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을 수임했을 경우이다. 이때 총수임료는 평균 1,008.36만원으로, 퇴직한지 3년 이내인 검사장이나 법원장 이상 출신 변호사가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을 수임했을 때의 총수임료 평균 1,020만원 보다 약간 더 적다.

[표 3-48] 전관 변호사의 퇴직 시 직위/사건 종류/퇴직 기간에 따른 총수임료

퇴직 시 직위	사건 종류	퇴직 기간	사례수	평균 (만원)	표준편차	중간값 (50%)	1사분위 (25%)	3사분위 (75%)
부장 판검사 이상	형사 사건 포함	3년 이내	81	1385.65	1027.204	1000	600	2000
		1년 이내	24	**1634.58**	1214.517	1450	725	2000
	민사/ 행정 사건	3년 이내	86	1008.36	867.697	599.5	500	1500
		1년 이내	13	1238.46	1382.35	500	250	2000
검사장 법원장 이상	형사 사건 포함	3년 이내	9	1438.89	686.375	1500	800	2000
		1년 이내	6	1550.00	441.588	1500	1325	2000
	민사/ 행정 사건	3년 이내	15	1020.00	1358.676	400	200	1000
		1년 이내	5	1580.00	2052.31	500	200	3500

상위 25%에 해당하는 3사분위값이 가장 큰 범주는 퇴직한지 1년 이내인 검사장이나 법원장 이상 출신 변호사가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을 수임했을 경우로 3,500만원이다. 하지만 퇴직시 검사장이나 법원장 이상이었던 변호사의 각 범주는 사례수가 지나치게 작은 경향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5절 | 전관변호사에 대한 의뢰인들의 평가

1. 전관예우의 존재 인정 및 선호에 관한 인식

가. 전관예우의 존재와 만연 정도

의뢰인들에게 현재 우리나라에 전관예우 관행이 얼마만큼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7%는 매우 많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고, 약간 존재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 뒤를 이어 38.4%에 이르렀다. 약간 있음과 매우 많음을 합치면, 95.1%에 달한다. 이에 비해, 전혀 없다는 의견은 0.4%에 불과했고, 별로 없다는 의견도 4.4%에 지나지 않았다. 형사소송이나 민·형사 병행 사건 등 형사소송 포함 사건에서는 전관예우가 만연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했다.

[표 3-49] 소송사건 종류에 따른 전관예우 관행의 존재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전관예우 관행 존재에 대한 인식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포함사건	민사/행정/기타	계
매우 많음	**173 (62.9)**	**224 (52.7)**	**397 (56.7)**
약간 있음	92 (33.5)	177 (41.6)	269 (38.4)
별로 없음	10 (3.6)	21 (4.9)	31 (4.4)
전혀 없음	-	3 (0.7)	3 (0.4)
계	275 (100.0)	425 (100.0)	700 (100.0)

x^2=8.564 (df=3), p<.05

선임 변호사의 출신별로 보면,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경우 매우 많다는 의견은 52.1%로 나머지 변호사의 경우(61.3%)보다 오히려 적었다.

[표 3-50] 선임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 관행의 존재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전관예우 관행 존재에 대한 인식	변호사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미상	계
매우 많음	**183 (52.1)**	**214 (61.3)**	**397 (56.7)**
약간 있음	153 (43.6)	116 (33.2)	269 (38.4)
별로 없음	14 (4.0)	17 (4.9)	31 (4.4)
전혀 없음	1 (0.3)	2 (0.6)	3 (0.4)
계	351 (100.0)	349 (100.0)	700 (100.0)

x^2=8.128 (df=3), p<.05

나. 전관변호사 선임 효과에 대한 인식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리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44.4%가 매우 유리하다고 응답했고, 45.6%가 약간 유리하다고 응답하여, 의뢰인의 총 90%가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떤 정도로든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표 3-51] 소송사건 종류에 따른 전관변호사 선임의 유리함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전관변호사 선임에 대한 인식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포함사건	민사/행정/기타	계
매우 유리	135 (49.1)	176 (41.4)	**311 (44.4)**
약간 유리	119 (43.3)	200 (47.1)	**319 (45.6)**
별 차이 없음	18 (6.5)	39 (9.2)	57 (8.1)
약간 불리	1 (0.4)	9 (2.1)	10 (1.4)
매우 불리	2 (0.7)	1 (0.2)	3 (0.4)
계	275 (100.0)	425 (100.0)	700 (100.0)

x^2=8.699 (df=4), N.S

별 차이 없다는 의견은 8.1%였고, 오히려 불리하다는 의견은 극소수 의견으로 0.4%가 존재하긴 하였다.

소송사건의 종류별 실질적인 응답 차이는 없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은 어떤 종류의 소송사건에서든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임 변호사의 출신별로 보면,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경우 매우 유리하다는 의견은 41.6%로 나머지 변호사의 경우(47.3%)보다 적었다. 다만,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표 3-52] 선임 변호사 출신별 전관변호사 선임의 유리함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전관변호사 선입에 대한 인식	변호사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미상	계
매우 유리	146 (41.6)	165 (47.3)	311 (44.4)
약간 유리	170 (48.4)	149 (42.7)	319 (45.6)
별 차이 없음	28 (8.0)	29 (8.3)	57 (8.1)
약간 불리	6 (1.7)	4 (1.1)	10 (1.4)
매우 불리	1 (0.3)	2 (0.6)	3 (0.4)
계	351 (100.0)	349 (100.0)	700 (100.0)

x^2=3.288 (df=4), N.S

다. 향후 전관변호사 선임 의향

혹시라도 향후에 비슷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전관변호사를 선임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1.4%가 매우 많다고 응답했고, 55.6%가 약간 있다고 응답하였다. 의뢰인의 총 77%가 어떤 식으로든 향후 전관변호사 선임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의향은 총 86.1%(그 중 31.6%는 적극적)가 향후 선임의사를 밝힌 형사사건이 포함된 사건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표 3-53] 소송사건 종류에 따른 향후 전관변호사 선임 의향

단위: 명(%)

전관변호사 선임 의향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포함사건	민사/행정/기타	계
매우 많음	**87 (31.6)**	63 (14.8)	150 (21.4)
약간 있음	150 (54.5)	239 (56.2)	389 (55.6)
별로 없음	31 (11.3)	101 (23.8)	132 (18.9)
전혀 없음	7 (2.5)	22 (5.2)	29 (4.1)
계	275 (100.0)	425 (100.0)	700 (100.0)

x^2=38.717 (df=3), p<.001

다음 〈표 3-54〉에서, 선임 변호사의 출신별로 보면,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경우 전관변호사를 다시 선임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은 31.1%로 나머지 변호사의 경우(11.7%)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타 변호사 선임 의뢰인들 중 향후 전관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별로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4.4%인 데 비해, 판검사출신 변호사 선임 의뢰인들은 13.4%만이 그러한 응답을 한 사실과 맞물린 결과이다.

[표 3-54] 선임 변호사 출신별 향후 전관변호사 선임 의향

단위: 명(%)

전관변호사 선임 의향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포함사건	민사/행정/기타	계
매우 많음	**109 (31.1)**	41 (11.7)	150 (21.4)
약간 있음	189 (53.8)	200 (57.3)	389 (55.6)
별로 없음	47 (13.4)	85 (24.4)	132 (18.9)
전혀 없음	6 (1.7)	23 (6.6)	29 (4.1)
계	351 (100.0)	349 (100.0)	700 (100.0)

x^2=52.037(df=3), p<.001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하나로 묶을 경우,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던 의뢰인들의 84.9%가 전관변호사를 다시 선임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기타 변호사를 선임했던 의뢰인들은 69%가 선임 의사를 밝혀, 선임 의사의 정도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2. 전관예우의 미래에 관한 인식

가. 전관예우 방지대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의뢰인들에게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전관예우 방지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었다(45.5%)는 응답보다는 효과가 없었다(54.5%)는 응답이 약간 더 많았다.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치렀던 의뢰인들(59.3%)이 형사소송 또는 민·형사 병행 소송을 치렀던 의뢰인들(47.3%)보다 많아서 집단 간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다.

[표 3-55] 소송사건 종류에 따른 전관예우 방지대책 효과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전관예우 방지대책 효과에 대한 인식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포함사건	민사/행정/기타	계
매우 효과 있었음	**40 (14.5)**	34 (8.0)	74 (10.6)
대체로 효과 있었음	**105 (38.2)**	139 (32.7)	244 (34.9)
별로 효과 없었음	93 (33.8)	**197 (46.4)**	290 (41.4)
전혀 효과 없었음	37 (13.5)	**55 (12.9)**	92 (13.1)
계	275 (100.0)	425 (100.0)	700 (100.0)

x^2=14.569 (df=3), p<.01

선임 변호사의 출신별로 보면,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들은 전관예우 방지책의 효과가 있었다(58.1%)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기타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들은 효과가 없었다(67.3%)는 응답이 더 많아, 집단 별 의견차이가 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3-56] 선임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 방지대책 효과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전관예우 방지대책 효과에 대한 인식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포함사건	민사/행정/기타	계
매우 효과 있었음	**59 (16.8)**	15 (4.3)	74 (10.6)
대체로 효과 있었음	**145 (41.3)**	99 (28.4)	244 (34.9)
별로 효과 없었음	114 (32.5)	**176 (50.4)**	290 (41.4)
전혀 효과 없었음	33 (9.4)	**59 (16.9)**	92 (13.1)
계	351 (100.0)	349 (100.0)	700 (100.0)

x^2=55.432 (df=3), p<.001

나.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당위성 인식

의뢰인들에게 전관예우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없어져야 한다는 응답(91.9%)이 거의 절대 다수였다. 형사소송이 포함된 사건의 의뢰인들은 91.6%,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의 의뢰인들은 92%가 전관예우는 없어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두 집단 간 의견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만하다.

[표 3-57] 소송사건 종류에 따른 전관예우의 부정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전관예우의 부정성에 대한 인식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포함사건	민사/행정/기타	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252 (91.6)**	**391 (92.0)**	**643 (91.9)**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23 (8.4)	34 (8.0)	57 (8.1)
계	275 (100.0)	425 (100.0)	700 (100.0)

x^2=.030 (df=1), N.S

선임 변호사의 출신별로 보아도,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들(90.3%)과 기타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들(93.4%)의 거의 대다수가 모두 전관예우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 보였다. 절대 수치만으로 보면 미미한 의견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표 3-58] 선임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의 부정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전관예우의 부정성에 대한 인식	변호사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미상	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317 (90.3)**	**326 (93.4)**	**643 (91.9)**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34 (9.7)	23 (6.6)	57 (8.1)
계	351 (100.0)	349 (100.0)	700 (100.0)

x^2=2.243 (df=1), N.S

다. 전관예우의 미래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관행이 멀지 않은 미래에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 의뢰인의 72%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의견은 사건 종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3-59] 소송사건 종류에 따른 전관예우 존폐에 대한 예측

단위: 명(%)

전관예우의 존폐에 대한 예측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포함사건	민사/행정/기타	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78 (28.4)	118 (27.8)	196 (28.0)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197 (71.6)**	**307 (72.2)**	**504 (72.0)**
계	275 (100.0)	425 (100.0)	700 (100.0)

x^2=.030 (df=1), N.S

선임 변호사의 출신별로 보면,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들은 68.9%가, 기타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들은 75.1%가 멀지 않은 미래에 전관예우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을 표출하였다. 두 집단 사이의 의견 차이는 유효하지 않다.

[표 3-60] 선임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 존폐에 대한 예측

단위: 명(%)

전관예우의 존폐에 대한 예측	변호사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미상	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109 (31.1)	87 (24.9)	196 (28.0)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242** **(68.9)**	**262** **(75.1)**	**504** **(72.0)**
계	351 (100.0)	349 (100.0)	700 (100.0)

x^2=3.257 (df=1), N.S

앞의 질문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전관예우 관행이 멀지 않은 미래에 감소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 의뢰인의 51.1%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지만, 48.9%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소송사건의 종류별로 보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치른 의뢰인들의 경우 52.5%가 줄어들 것이라 보았고, 형사사송이나 민·형사 병행 소송을 치른 의뢰인들은 50.9%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두 집단 사이의 의견 차이는 미미하여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 3-61] 소송사건 종류에 따른 전관예우 감소 예측

단위: 명(%)

전관예우 감소 예측	소송사건의 종류		
	형사소송포함사건	민사/행정/기타	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함	135 (49.1)	**223** **(52.5)**	358 (51.1)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140** **(50.9)**	202 (47.5)	342 (48.9)
계	275 (100.0)	425 (100.0)	700 (100.0)

x^2=.763 (df=1), N.S

선임 변호사의 출신별로 보면,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들은 54.4%가 전관예우의 감소 의견을 나타내 보였으나, 기타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들은 52.1%가 전관예우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드러냈다.

[표 3-62] 선임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 감소 예측

단위: 명(%)

전관예우 감소 예측	변호사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미상	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함	**191 (54.4)**	167 (47.9)	358 (51.1)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160 (45.6)	**182 (52.1)**	342 (48.9)
계	351 (100.0)	349 (100.0)	700 (100.0)

x^2=3.018 (df=1), N.S

이 경우에도, 집단 간 의견 차이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 전관예우에 대한 의뢰인들의 인지부조화

앞 소절들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의뢰인들의 인식은 당위(Sollen)와 존재(Sein) 사이의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상태라고 할만하다. 한편으로는, 〈표 3-57〉과 〈표 5-58〉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관예우 현상은 없어져야 할 부정적 현상이라고 거의 대부분(91.8%)이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표 3-59〉에서 〈표 3-62〉까지 확인한 것처럼, 대부분 그것이 쉽게 없어지지도(72%), 쉽게 감소하지도(48.9%)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거기서 더 나아가, 〈표 3-51〉에서 〈표 3-54〉까지의 표에서 보았듯이,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하다고 보며(90%), 상당수의 의뢰인들은 앞으로도 전관변호사를 선임할 의향이 있다(78%)고 인정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지부조화는 인지 주체의 심리적 고통이 수반될 정도의 인지부조화는 아닌 듯하다. 당위와 관련된 죄책감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는 이상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누구나 전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별

다른 심적 갈등 없이도 선택할 수 있다. 의뢰인들의 이 같은 인식은 전관예우 문제가 좀처럼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6절 | 심층면접 결과

설문조사에서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전관변호사 선임 경험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진술을 해줄 사람을 물색한 결과, 응답자가 선뜻 나서지 아니한 관계로 의뢰인 심층면접은 결과적으로 한 사례에 머물렀다. 비록 한 사례이긴 하나,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심층면접 내용의 일부를 정리하여 기록해 두고자 한다.

1. 심층면접 개요

2019년 9월 11일부터 9월 27까지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진행 시작 시점부터 2019년 10월 중순까지 다시 한 번 접촉하여 심층면접에 응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보았다. 그 결과, 10월 20일까지 심층조사에 응하겠다는 응답자에 대해, 10월 23일 오후 7시부터 9시경까지 조사업체 내의 회의실에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2. 심층면접 주요 내용 정리 및 시사점

가. 소송내용 및 변호사 선임 과정

심층면접 사례는 개인 차원의 소송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소송이었다. 온라인조사 설문과 심층면접에 응한 사람은 그 회사에서 소송을 위임했던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통해, 본연구의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개인 의뢰인들뿐만 아니라 기관을 대리한 의뢰인들도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 : 이게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 건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고요. ...(중략)... 물품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물품대금 지급이 안 돼서 발생이 된 그런 건이었죠.
질문자 : 그러니까 다니시는 회사에서 그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거군요.
응답자 : 처음에는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법조인이라든지 이런 사내 변호사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되게 막연했었어요. 그런데 건설사 쪽 같은 경우는 사내 변호사가 다 있으니까, 고문변호사가 다 있으니까 요리조리 잘 피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국선변호사 이런 것도 알아볼까 하다가 이왕이면 그런 비용 들여서 승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부터 전부 다 해서 다 만나보고 그렇게 했죠.
질문자 : 회사에서 (소송) 위임을 한 거군요.
응답자 : 네, 제가 정식으로 위임을 받아서 위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보러 다니는데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회사 대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표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대표의 가족 친지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이것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

응답자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본인의 사건이 형사소송이었다고 응답했지만, 심층면접 결과 사실은 민사소송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의뢰인들 중 일부 혹은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잘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질문자 : (설문지응답 결과를 보고) 형사고발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응답자 : 이것은 뭘로 구별하죠? 민사단독1과 이렇게 돼 있네요.
질문자 : 아, 민사였군요.
응답자 : 네.
질문자 : 민사 (형사) 구별은 잘 안 되시고요?
응답자 : 왜냐하면 제가 사실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그나마 이것도 진행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들이고
질문자 : ...(전략)... 민사, 형사를 잘 몰라서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응답자 : 맞아요. 지금도 헷갈려요.

응답자는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찾던 중, 아버지의 소개로 전직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소개를 해준 아버지도 직접 아는 변호사는 아니었고, 건너건너 아는 사이였던 것 같다.

질문자 : 변호사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응답자 : 변호사 사실 제가 여기 이쪽 와서 다 상담 받고 했었어요. ...(중략)... 그것을 알아보는 것을 거의 일주일 내내 계속 교대나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아버지께서 그러면 아버지가 잘 아는 저기가 있는데 나이가 지긋하시지만 예전에 그래도 부장판사 출신이시고 하시니까 굉장히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럼 한번 만나보겠다, 일단. 그래서 만나보겠다 해서 제가 사무실 한 번 찾아갔었죠.
질문자 : 아버님이 소개하실 때 ...(중략)...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니죠?**
응답자 :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질문자 :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에요?
응답자 : 잘 몰라요.
질문자 : 그러니까 건너건너 아시는
응답자 : 네, 건너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다는데 한번 만나 볼래라는 게 저희 아버지가 운 처음 띄워본 거였고

여러 경로로 찾아보았던 다른 변호사들보다 최종적으로 선임한 이 변호사가 특히 더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그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다른 변호사들보다 훨씬 강했다는 것이었다.

질문자 : 다른 변호사들은 돈을 많이 부르면서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겠다. 해봐야 안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이길 거다 이렇게 확신을 줬다는 거죠?
응답자 : (변호사가 말하길) 너희가 잘못한 게 없으니 너네는 분명히 이긴다. 100% 이긴다.

나. 전관변호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인지 수준

이 사례에 나타난 전관변호사는 언론에서 종종 거론되는 전형적인 유형의 전관변호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인 느낌상) 퇴임한지도 어느 정도는 된 듯하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의 전직 퇴임 시기 및 전직 근무처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그에 대해 별 관심도 없었다.

질문자 : 부장판사 출신인데 퇴임한 지 얼마 되었는지는 모르시죠?
응답자 :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질문자 : 그분이 혹시 ○○지검에서 일하신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것은 모르시죠?

응답자 : 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또한, 대형 로펌에 속한 변호사가 아닌 조그마한 사무실의 변호사였다. 민사소송임에도 성공보수를 따로 챙긴 것도 아니다.

질문자 : 그분이 큰 로펌은 아니죠? 작은, 사무실 가보셨어요?
응답자 : 네, 가봤죠.
질문자 : 그렇게 안 크죠? 2명 있나요?
응답자 : 세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자 : 성공보수 얘기 그분은 얘기 안 했어요?
응답자 : 그런 것은 따로 안 드렸어요.

심지어 해당 변호사가 제시한 소송 금액은 의뢰인이 물색해보았던 다른 변호사들이 제시한 변호사들의 소송 금액보다도 작았다고 한다.

질문자 : 여러 군데 다녀보신 거죠, 선임하려고?
응답자 : 여러 군데 다녔죠.
질문자 :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불렀나요?
응답자 : 그런데 금액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불렀던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분이 제일 쌌어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질문자 : 다른 사람들보다?
응답자 : 네.
질문자 : 보통 어느 정도 불렀나요?
응답자 : 예를 들면 이분이 1,000만 원 있다고 치면 많이 나오는 데는 1,500~1,600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소송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고, 각 재판에서 1천만 원씩 도합 2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한다.

질문자 : (소송은) 이겼어요?
응답자 : 네, 둘 다(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고.
질문자 :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변호사인가요?
응답자 : 네, 같은 변호사로 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니까 그간에 하신 게 있었으니까
질문자 : 1심에서 어느 정도 내셨나요, 비용이?

응답자 : 그때 1,000만 원 조금 넘게 냈어요.
질문자 : 그리고 2심도 또 1,000만 원 넘게
응답자 : 네, 그것도 비용은 똑같이.
질문자 : 합쳐서 2,000만 원 정도
응답자 : 네, 그런 것 같아요.
질문자 : (소송기간이) **꽤 걸렸죠?**
응답자 : 네,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어요. 이것 진행하는 동안은 제 생각은 (1심, 2심 합쳐서) 거의 1년 걸렸지 싶은데요, 기억이.

혹시라도 부장판사 출신의 선임 변호사가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거나 혹은 자신이 담당 판사를 잘 안다는 식으로 자랑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질문자 : 이분이 혹시 자기 아는 판사한테 전화 걸거나 그런 얘기 안 했죠? 내가 좀 아는데 그렇게 자랑하신 적은 없죠?
응답자 : 네. 그렇게는 말 안 하시지 않을까요?

다만, 변호사가 법정에서 판사에게 거의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의뢰인에게 담당 판사가 잘 하는 친구이니 걱정 말라는 말을 했다고는 하였다.

질문자 : (변호사가) **변론하실 때 판사석에 있는 판사들이랑...**
질문자 : 얘기 많이 했나요?
응답자 : 안 해요. 얘기는 안 했는데
질문자 : 변호사님이 판사랑 별로 얘기 안 해요?
응답자 : 네, 잘 안 했어요.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친구(=판사)는 잘하는 친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기억나요.

다. 전관변호사 선임의 유리함에 대한 인식 및 판단 근거

앞선 응답을 보면, 심층면접 응답자가 선임한 전관변호사는 딱히 전관변호사로서 두드러진 어떤 특징을 나타내 보였다고 하기엔 어려운 면이 있다. 더 나아가 의뢰인 입장에서 전관변호사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가령, 퇴임 시기나 퇴임지 등)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숨기지 않았다.

무슨 이유로 유리했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대답은 다소 모호했다. 그것은 어떤 느낌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평판 문제이기도 했다. "부장판사 출신은 그래도 든든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친구와 지인, 직장동료나 상사들로부터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유리하다", "잘했다", "괜찮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질문자 : 아무튼 이것(전관변호사 선임) **때문에 재판에 유리했다고 생각을 하나요?**
응답자 : 네.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했었거든요.
질문자 : 부장판사 출신, 부장판사라는 직함도 잘 모르셨죠?
응답자 : 몰랐죠.
질문자 : 그런데 부장판사 출신이 좀 더 낫다는 얘기는 누가, 아버님이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
응답자 : 아버지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실 때 부장판사 출신이니까 뭔가 그래도 좀 든든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운을 떼셨던 거로 기억해요.
질문자 : 또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는 없고요?
응답자 : 그런 것은 있죠.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을 한 후에 직장동료들이라든지 상사라든지 뭔가 보고가 들어가든 아니면 이런 것 진행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잖아요. 다들 자기들 만의 사례들이 있고,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든 뭐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변호사 선임은 되었냐?" 그래서 "네,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어떤 유명하신 분이냐?" 그래서 "적당히 괜찮은 것 같다. OOO 부장판사 출신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좀 괜찮지 않냐,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냐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럼 잘 고른 것 맞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 약간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은 그때 대화를 통해서 좀

조금 막연하긴 하지만, 전관출신 변호사가 비전관 출신에 비해 일을 처리하는 방식 등에 있어서 뭔가 달라보였다는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이 의뢰인은 이 소송이 생애 첫소송이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심층면접 응답자는 앞으로도 소송이 발생하면 또 다시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응답자 :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물론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출신인

분들과 출신이 아닌 분들이 이런 것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는 방식이라든지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게 약간 달랐거든요. 그리고 진행하면서

질문자 : 이분이 다른 분들과 달랐다고 느끼는 거죠?

응답자 : 네, 그런 것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번에 다시 어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내지는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떤 변호사를 쓸 거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에 뭐 했는지 알아보고 그 사람 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선임할 것 같아요.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데나 막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라. 면접 결과의 시사점

아쉽게도 심층면접은 사례가 많지 않았을 뿐더러 그나마도 전형적인 전관예우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전형적인 전관변호사의 사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부장판사출신'(혹은 '부장검사출신') 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도, 의뢰인들이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호하기도 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제7절 | 의뢰인 대상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변호사 선임 경험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들 중에서 특기할 만한 부분들을 뽑아서 다시 한 번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여러 가지로 측정한 전관변호사 선임 비율

① 판검사출신 변호사 선임 비율 - 700명의 응답자들 중에서 전직이 판사이거나 검사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의뢰인들은 50.1%(351명)이었다. 판사출신은 22.1%(155명), 검사출신은 28.0%(196명)이었다.

② 의뢰인이 전관변호사라고 인식한 변호사 비율 –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판검사 출신임과 동시에 전관변호사라고 인정한 의뢰인들은 30.6%(214명)이었다.

③ 의뢰인이 전관혜택을 받았다고 인정한 변호사 비율 – 실제로 전관혜택을 받았다고 인정한 의뢰인들은 700명 기준으로 23.3%(163명)였다.

④ 전관변호사를 제안 받고 수락한 의뢰인의 비율 – 누군가로부터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28.7%(700명 중 201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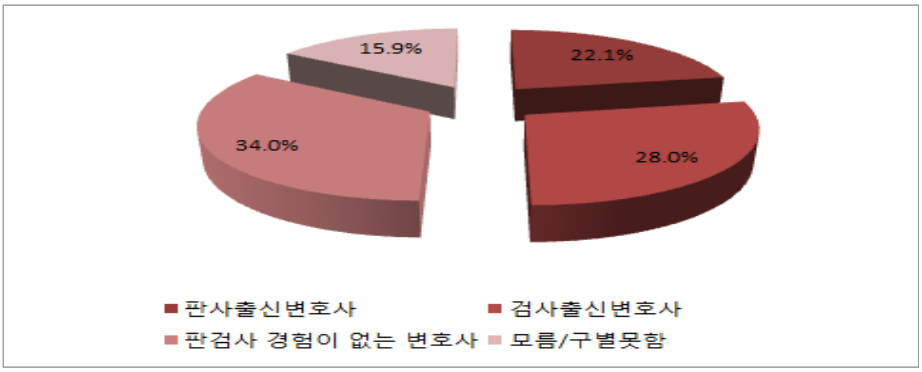
⑤ 부장판사·부장검사 이상 변호사 선임 비율 – 퇴직 시 직위가 부장판사 내지 부장검사 이상의 직위였다고 명백하게 기억한 경우는 36.1%(253명)였다.

⑥ 퇴임 3년 이내 부장판검사 이상 변호사 선임 비율 – 퇴직 시 부장판검사 이상으로 퇴임한 지 3년 이내인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23.9%(167명)였다.

⑦ 퇴임 1년 이내 부장판검사 이상 변호사 선임 비율 - 퇴직 시 부장판검사 이상으로 퇴임한 지 1년 이내인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5.3%(37명)였다.

⑧ 퇴임 1년 이내 검사장·법원장 이상 변호사 선임 비율 - 퇴직 시 검사장이나 법원장 이상으로 퇴임한 지 1년 이내인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1.6%(11명)였다.

[그림 3-2] 응답 의뢰인들이 선임한 변호사들의 전직 구별



위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 중에서 의뢰인들에 의해 "전관변호사"로 인정되는 대략적인 비율은 약 30% 정도(주관적 인정 28.0%, 전관변호사 추천 수락 28.7%)로, 이는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로 퇴임한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36.1%)보다 약간 낮은 비율이

다. 한편, 전관혜택이 있었다고 인정한 비율(23.3%)은 퇴임 3년 이내 부장판검사 이상 변호사 선임 비율(23.9%)과 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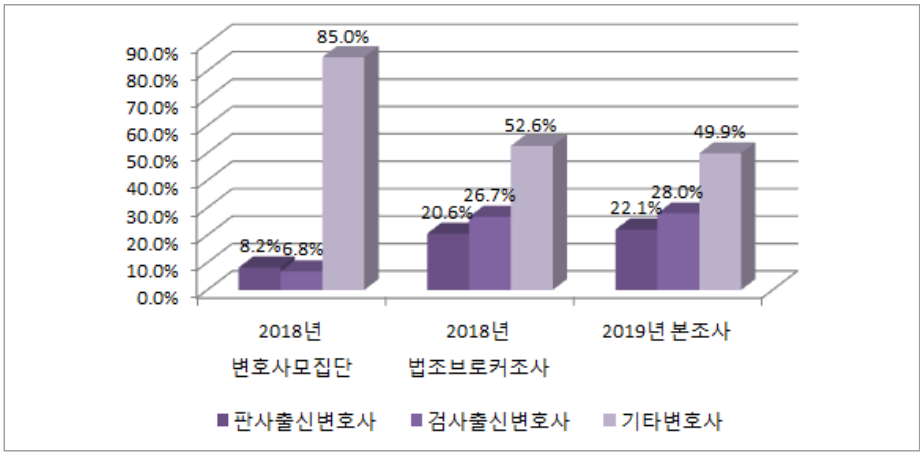
2. 의뢰인들의 판검사출신 변호사 선호 정도

① 2년 연속 표본의 약 50%대 판검사출신 변호사 선임 응답 - 2018년 법조브로커 실태조사의 표본에서 의뢰인들이 선임했던 변호사 중 판검사출신 변호사는 47.4%(310명 중 147명, 판사출신 20.6%, 검사출신 26.7%)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0.1%로 나타나 일관되게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② 2018년 기준 변호사 모집단에서의 판검사 비율 - 2018년도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개업 회원 등록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출신 변호사는 15%(판사출신 8.2%, 검사출신 6.8%)에 불과하였다.

③ 변호사 모집단과 표본에서의 판검사출신 변호사 비중의 차이에 대한 설명 - 모집단에서 15%에 지나지 않는 판검사출신 변호사가 의뢰인 표본에서는 2년 연속으로 약 50%로 나타났다는 것은 의뢰인들이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매우 선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수임건수가 기타 변호사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판사출신 변호사와 검사출신 변호사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검사출신 변호사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았다.

[그림 3-3] 변호사 모집단과 표본조사에서의 판검사출신 변호사 비중 차이



3. 전관변호사의 조건에 따른 평균 수임료 차이

①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료 - 의뢰인 응답자들의 기억에 따르면, 연수원 출신 변호사 또는 의뢰인들이 그 출신을 모른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료는 521.71만원(사례수 349명)으로 보고되었다.

②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료 - 판검사출신 변호사 351명의 평균 수임료는 923.95만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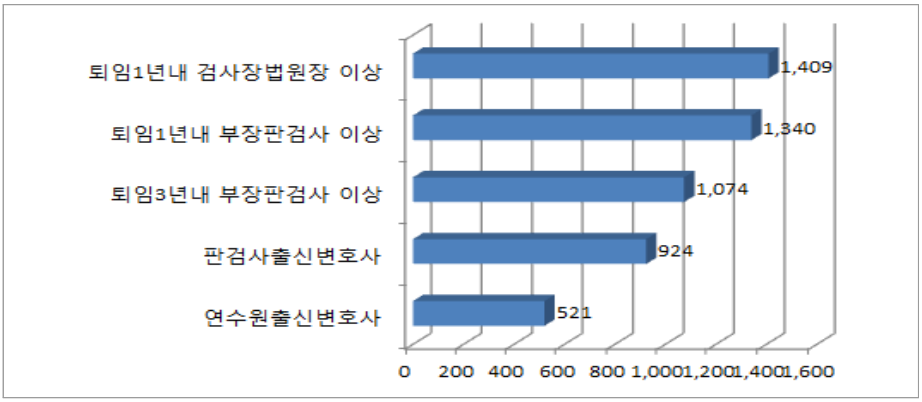
③ 퇴임 3년 이내 부장판검사 이상의 평균 수임료 - 퇴직 시 직위가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이상이고 퇴임한 지 3년이 안 된 변호사들(167명)의 평균 수임료는 1,074.17만원이었다.

④ 퇴임 1년 이내 부장판검사 이상의 평균 수임료 - 퇴직 시 직위가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이상이고 퇴임한 지 1년이 안 된 변호사들(37명)의 평균 수임료는 1,340만원이었다.

⑤ 퇴임 1년 이내 검사장 내지 법원장 급 이상의 평균 수임료 - 퇴직 시 직위가 검사장 이상 혹은 법원장 이상이고 퇴직한 지 1년이 안 된 변호사들(11명)의 평균 수임료는 1,409.09만원이었다.

[그림 3-4] 전관변호사의 조건에 따른 기본 수임료 차이

(단위: 만원)



평균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판검사출신 변호사만 되어도 연수원출신 변호사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으며, 퇴임 1년 이내의 고위직 출신 전관변호사들의

경우엔, 연수원출신 변호사들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던 것이다.

4. 전관변호사에 대한 추가 지급비용

① 추가비용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의뢰인 비율 - 공식적인 변호사 보수 이외에 법원 혹은 검찰에 로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받은 의뢰인들은 17.9%(125명)이었고, 실제로 이를 제공하기까지 한 의뢰인들은 11.9%(700명 중 83명)였다.

② 추가비용의 전관변호사 집중 - 추가비용을 제공했다고 응답한 83명 중 74명(89.2%)은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들이었다.

③ 추가비용 평균 및 집단별 평균 추가비용 - 추가비용 평균은 313.6만원(N=83명)이었고, 연수원출신 변호사의 평균 추가비용은 133.89만원(N=9명),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평균 추가비용은 335.41만원(N=74명), 퇴임 3년 이내 부장판검사 이상 변호사는 399.39만원(N=49명), 퇴임 1년 이내 검사장·법원장 이상 변호사는 425만원(N=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전관 여부에 따른 의뢰인 총비용 - 기본 수임료에 추가비용까지 합산하여 의뢰인이 소요한 총비용을 계산하면, 전관 여부에 따른 격차가 더욱 커진다. 판검사출신 변호사에 대한 총비용 평균은 995만원으로 이들의 기본 수임료(924만원)보다 높아진다. 퇴임 1년 이내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총비용 평균은 1,495만원(기본 수임료 평균 1,340만원), 퇴임 1년 이내 검사장·법원장 이상 변호사의 총비용 평균은 1,563만원(기본 수임료 1,409만원)에 달했다.

5. 종합적 판단

이 장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전관변호사들은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에 비해 평균적인 수준에서 ① 수임건수가 많고, ② 기본 수임료가 비싸며, ③ 추가수입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결합하면,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평균 수입과 기타 변호사들의 평균 수입 사이에는 매우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전관에 대한 특혜 없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다만,

심층면접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뢰인들의 막연한 전관변호사 선호가 이러한 현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뢰인들이 막연한 선호만으로 본장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요컨대, 본장의 분석결과를 통해, 실제로 수사나 재판 등의 과정에서 전관변호사에 대한 특혜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전관변호사와 기타 변호사들 간의 사건 수임건수, 수임료 등에서 커다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다.

현직 변호사 대상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신동준·황지태

제4장

현직 변호사 대상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제1절 | 조사개요 및 방법

법조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는 전관비리 혹은 전관예우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관련하여 전관예우에 관한 연구 전체의 중요한 고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조사연구들에서 보았듯이, 법조계 직역 중 현직 판사나 검사들 중에서는 처음부터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그 심각성은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대신, 본 연구에서는, 조사 예산 등 다른 요인들까지 고려해서, 법조3륜 중에 전관예우 혹은 전관비리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왔다고 할 수 있는 변호사 집단에 대해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과 방법

다음 표는 현직 변호사 대상 전관예우 실태 설문조사의 개요이다.

모집단은 전국의 개인 또는 법인 소속 변호사이다. 표집틀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고, 표집방법으로는 2019년도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기준, 지역별, 소속별 비례할당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500사례이고,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과정의 여러 난점을 고려해 온라인조사(E-mail 조사 등)와 팩스조사 등을 병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9월 11일에서 2019년 10월 17일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변호사 접촉과 설문면접이 일반인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 실무는 의뢰인 설문조사를 맡았던 트랜드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참고로,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이다.

[표 4-1] 현직 변호사 대상 전관예우 실태 설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개인 또는 법인 소속 변호사
표집틀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표집방법	·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기준 지역별, 소속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500명
표본오차(95%신뢰수준)	· ±4.4%
조사방법	· 면접조사 (온라인, 팩스 조사 병행)
조사일시	· 2019.9.11 ~ 2019.10.17

2. 조사과정

조사과정의 전체 흐름을 보자면,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4-1] 현직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의 표본추출 및 실사의 과정

- 1단계: 지역별, 소속별 할당
- 2단계: 조사 대상 리스트 확보
- 3단계: 사전 전화 연락
- 4단계: 약속 시간 및 조사 방법 결정
- 5단계: 조사 참여
- 6단계: 설문 완료
- 7단계: 목표 표본 완료시까지 1단계~6단계를 반복
- 8단계: 전체 조사 완료

제1단계는 지역별, 소속[61]별로 할당하는 것이다. 제2단계에서는 조사 대상 리스트를 확보하고, 제3단계와 제4단계에서 조사 해당자들이 속한 변호사 사무실로 사전

61) 개인변호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유한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공증인가 합동, 공동법률사무소 등으로 구별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내 회원현황에 의거한 것이다. http://www.koreanbar.or.kr/pages/introduce/stat.asp (2019년 11월 1일자 확인.)

전화 연락을 한 후 약속 시간과 면접 답변, E-mail 답변 등 조사방법을 결정하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2절 | 기초변인 응답결과

1. 표본의 기본적 특성

가. 응답 변호사들의 성별과 연령

조사에 응답한 변호사 500명 중 남성이 377명으로 75.4%이고 여성이 123명으로 24.6%이다.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203명으로 가장 많은 40.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159명인 40대로 31.8%이다.

[표 4-2] 응답 변호사들의 성별과 연령대

단위: 명[횡축%](종축%)

성별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남성	1 [0.3] (12.5)	120 [31.8] (59.1)	**131** **[34.7]** **(82.4)**	82 [21.8] (94.3)	43 [11.4] (100.0)	377 [100.0] (75.4)
여성	7 [5.7] (87.5)	83 [67.5] (40.9)	28 [22.8] (17.6)	5 [4.1] (5.7)	-	123 [100.0] (24.6)
계	8 [1.6] (100.0)	203 [40.6] (100.0)	159 [31.8] (100.0)	87 [17.4] (100.0)	43 [8.6] (100.0)	500 [100.0] (100.0)

x^2=80.983 (df=4), p<.001

성별에 따라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성 변호사의 경우 30대가 120명 31.8%, 40대가 131명 34.7%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 변호사의 경우는 30대가 83명 67.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은 남성 변호사의 경우 33.2%에 달하는 반면, 여성 변호사는 50대 5명(4.1%)에 불과하다.

나. 응답 변호사들의 근무지역

다음으로 조사에 응답한 변호사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76.4%(382명)가 서울에 집중되어있다.

[표 4-3] 응답 변호사들의 근무지역

단위: 명(%)

근무지역	성별		
	남성	여성	계
서울	**283 (75.1)**	**99 (80.5)**	**382 (76.4)**
부산	16 (4.2)	2 (1.6)	18 (3.6)
인천	11 (2.9)	1 (0.8)	12 (2.4)
대구	11 (2.9)	3 (2.4)	14 (2.8)
대전	7 (1.9)	4 (3.3)	11 (2.2)
광주	10 (2.7)	1 (0.8)	11 (2.2)
울산	3 (0.8)	1 (0.8)	4 (0.8)
경기	21 (5.6)	7 (5.7)	28 (5.6)
강원	3 (0.8)	0 (0.0)	3 (0.6)
충북	3 (0.8)	0 (0.0)	3 (0.6)
전북	4 (1.1)	1 (0.8)	5 (1.0)
경남	4 (1.1)	2 (1.6)	6 (1.2)
제주	1 (0.3)	2 (1.6)	3 (0.6)
계	377 (100.0)	123 (100.0)	500 (100.0)

다음으로 경기 지역에 5.6%(28)가 있으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광역시에 2.2%~3.6%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지역은 3~6명 정도의 수준이다. 이러한 지역별 분포에서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설문에 응답한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일부는 경기 지역과 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 소수의 변호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소속 사무실 규모 및 지위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들은 대부분이 개인 사무실이나 2~3인의 소규모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인 사무실은 159명으로 31.8%, 2~3인 사무실은 158명으로 31.6%이다. 4~5인 사무실에 소속된 변호사는 67명으로 13.4%에 해당한다. 따라서 응답한 변호사 중 5인 이하의 소규모 사무실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거의 7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표 4-4] 소속 사무실 규모

단위: 명(%)

소속 사무실 규모	성별		
	남성	여성	계
1인	**131 (34.7)**	**28 (22.8)**	**159 (31.8)**
2-3인	**117 (31.0)**	**41 (33.3)**	**158 (31.6)**
4-5인	47 (12.5)	20 (16.4)	67 (13.4)
6-9인	28 (7.4)	15 (12.2)	43 (8.6)
10-19인	15 (4.0)	11 (8.9)	26 (5.2)
20-49인	15 (4.0)	3 (2.4)	18 (3.6)
50-99인	5 (1.3)	0 (0.0)	5 (1.0)
100인 이상	19 (5.0)	5 (4.1)	24 (4.8)
계	377 (100.0)	123 (100.0)	500 (100.0)

x^2=14.612 (df=7), p<.05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 변호사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율은 34.7%로 22.8%인 여성 변호사에 비해 더 많고, 20인 이상의 비교적 큰 규모의 사무실에 소속된 경우 역시 남성 변호사가 10.3%로 여성 변호사의 6.5%보다 더 많다.

응답 변호사 중에 단독 개업 변호사가 217명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남성 변호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3%가 단독 개업 변호사인 반면, 여성 변호사 중 단독 개업 변호사는 28.5%에 그친다. 다음으로 많은 수의 변호사가 속한 범주는 117명 23.4%인 '일반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상근변호사'이다. 설문에 응답한 여성 변호사의 경우는 33.3%로 28.5%인 단독 개업 변호사보다도 더 많다.

[표 4-5] 소속 변호사의 지위

단위: 명(%)

사무실 내 지위	성별		
	남성	여성	계
단독 개업 변호사	**182 (48.3)**	**35 (28.5)**	**217 (43.4)**
공동 개업 변호사	28 (7.4)	7 (5.7)	35 (7.0)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 대표변호사 또는 구성원 변호사	44 (11.7)	8 (6.5)	52 (10.4)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 소속 변호사	32 (8.5)	11 (8.9)	43 (8.6)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 (0.5)	0 (0.0)	2 (0.4)
단독 또는 공동 개업 변호사 사무실에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	10 (2.7)	11 (8.9)	21 (4.2)
일반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상근변호사	**76 (20.2)**	**41 (33.3)**	**117 (23.4)**
국가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상근변호사	3 (0.8)	7 (5.7)	10 (2.0)
국선전담변호사	0 (0.0)	1 (0.8)	1 (0.2)
국가기관 위촉 변호사	0 (0.0)	1 (0.8)	1 (0.2)
비영리기관 변호사	0 (0.0)	1 (0.8)	1 (0.2)
계	377 (100.0)	123 (100.0)	500 (100.0)

x^2=47.774 (df=10), p<.001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 대표변호사 또는 구성원 변호사인 경우는 52명으로 10.4%,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 소속 변호사인 경우는 43명으로 8.6%이다. 남성 변호사의 경우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 대표변호사 또는 구성원 변호사는 11.7%인 반면, 여성 변호사의 경우는 6.5%에 그친다.

한편 단독 또는 공동 개업 변호사 사무실에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의 경우 8.9%인 반면 남성 변호사는 2.7%에 불과하고, 국가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상근 변호사 역시 여성 변호사는 5.7%인데 남성 변호사는 0.8%에 그치고 있다.

2. 응답 변호사들의 법조 경력

가. 법조계 입문 경로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들의 60.2%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 변호사 중에서는 더 많아서 240명으로 63.7%이고, 여성 변호사는 61명 49.6%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성 변호사 중에서는 절반에 해당한다.

[표 4-6] 법조계 입문 경로

단위: 명(%)

법조 입문경로	성별		
	남성	여성	계
사법시험 합격	**240 (63.7)**	**61 (49.6)**	**301 (60.2)**
변호사시험 합격 (로스쿨 출신)	125 (33.2)	62 (50.4)	187 (37.4)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6 (1.6)	0 (0.0)	6 (1.2)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6 (1.6)	0 (0.0)	6 (1.2)
계	377 (100.0)	123 (100.0)	500 (100.0)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한 변호사는 187명으로 37.4%에 해당하며, 여성 변호사 중에서는 62명으로 50.4%인 반면, 남성 변호사 중에서는 125명으로 33.2%에 그친다. 고등고사 사법과 합격을 통해서나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을 통해 법조계에 입문한 경우는 남성 변호사의 경우에만 각각 6명으로 전체 응답 변호사

중 2.4%에 불과하다.

나. 법조 입문 경력 및 변호사 경력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들이 법조계에 입문한지는 평균 13.27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변호사 경력은 평균 9.82년이다.

[표 4-7] 법조 입문 경력과 변호사 경력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법조입문경력	500명	0년 (1년 미만)	63년	**13.27**	11.247
변호사 경력	500명	0년 (1년 미만)	40년	**9.82**	7.180

※ 법조입문 경력은 조사시점 2019년-시험합격연도를 빼서 계산하였음

다. 판사직·검사직 역임 여부

다음의 표는 판사직 혹은 검사직 역임 여부에 관한 표이다. 판사직 경험이 있거나 검사직 경험이 있는 응답 변호사는 각각 25명과 22명이며, 모두 남성 변호사이다. 즉 설문에 응답한 여성 변호사 중 판사나 검사였던 변호사는 1명도 없다. 전체 응답 변호사 중 판사직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5%이고 검사직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4.4%로 거의 비슷한 비율이며, 모두 합하면 응답 변호사 중 9.4%가 판사직이나 검사직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4-8] 판·검사직 경험

단위: 명(%)

판· 검사직 경험 유무	성별		
	남성	여성	계
판사직 경험 있음	**25 (6.6)**	-	**25 (5.0)**
검사직 경험 있음	**22 (5.8)**	-	**22 (4.4)**
해당 없음	330 (87.5)	123 (100.0)	453 (90.6)
계	377 (100.0)	123 (100.0)	500 (100.0)

참고로, 제3장 〈표 3-15〉에서 인용했던, 2018년 기준 변호사 모집단 분포에서 판사출신 변호사가 8.2%, 검사출신 변호사가 6.8%, 도합 15%였던 것을 상기해 보면, 〈표 4-8〉의 변호사 표본에 나타난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비중(도합 9.4%)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일부가 응답 자체를 회피하여 비롯된 결과라고 추정된다.

다음으로 판검사직을 역임한 적이 있는 응답 변호사들의 분포를 퇴직 이후 기간에 따라 분류하여 보았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주는 퇴직한지 '10년 이상'으로 총 47명 중 32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퇴직한지 10년 이상 된 응답 변호사 중 판사직 역임한 경우는 19명, 검사직을 역임한 경우는 22명으로, 총 응답 변호사 중 68.1%에 해당한다. 이는 범주 자체가 가장 넓기 때문에 당연한 경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응답 누락에 의해서 그 비중이 좀 더 커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표 4-9] 판·검사직 경험과 퇴직 이후 기간

단위: 명(%)

퇴직 이후 기간	판·검사직 경험		
	판사직 경험	검사직 경험	계
1년 미만	-	1 (4.5)	**1** **(2.1)**
1년 이상 2년 미만	-	1 (4.5)	**1** **(2.1)**
2년 이상 3년 미만	1 (4.0)	1 (4.5)	**2** **(4.3)**
3년 이상 5년 미만	1 (4.0)	1 (4.5)	**2** **(4.3)**
5년 이상 10년 미만	4 (16.0)	5 (22.7)	9 (19.1)
10년 이상	19 (76.0)	13 (59.1)	32 (68.1)
계	25 (100.0)	22 (100.0)	47 (100.0)

퇴직한지 '1년 미만'과 '1년 이상 2년 미만'인 응답 변호사는 각각 검사 출신 1명에 불과하고, '2년 이상 3년 미만'과 '3년 이상 5년 미만'인 응답 변호사도 각각 판사

출신 1명과 검사 출신 1명에 그친다. 퇴직한지 3년 미만인 응답 변호사는 4명으로 전체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8.5%이고, 5년 미만을 모두 합쳐도 12.8%이다.

참고로, 제3장 〈표 3-17〉에서 제시했던 내용, 의뢰인들이 선임한 판사출신 변호사들 중 퇴임 후 3년 미만의 비중이 63.0%, 5년 미만이 76.6%였다. 이를 〈표 4-9〉와 비교해 보면, 그 격차가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겠다.

판검사직을 역임한 적이 있는 응답 변호사들의 퇴직 당시 직위를 '평판사, 평검사', '부장판사, 부장검사', '검사장, 법원장'으로 나누어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응답한 변호사 중 판검사직 경험이 있는 총 47명 중 법원장 이상은 1명 검사장 이상은 5명, 합하여 6명으로 12.8%에 해당한다. 부장판사였던 변호사는 18명, 부장검사였던 변호사는 8명으로 과반수 이상인 26명 55.3%가 이 범주에 해당한다.

[표 4-10] 판·검사직 경험과 퇴직 당시 직위

단위: 명(%)

퇴직 당시 직위	판·검사직 경험		
	판사직 경험	검사직 경험	계
평판사, 평검사	6 (24.0)	9 (40.9)	15 (31.9)
부장판사, 부장검사	**18** **(72.0)**	**8** **(36.4)**	**26** **(55.3)**
검사장, 법원장	1 (4.0)	5 (22.7)	6 (12.8)
계	25 (100.0)	22 (100.0)	47 (100.0)

x^2=6.950 (df=2), p<.05

평판사와 평검사였던 응답변호사는 각각 6명과 9명으로 31.9%이다. 따라서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이상의 직위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가 68.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표 역시, 제3장의 〈표 3-19〉와 비교해 보면, 평판사, 평검사출신 변호사 비중(31.9%)이 의뢰인이 선임한 판검사출신 변호사에서의 비중(19.4%, 〈표 3-19〉 참조)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도 뒤에 다시 언급하겠다.

라. 최근 5년간 수임했던 형사사건의 비율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수임했던 사건들 중 형사사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면, 한 번도 수임하지 않은 응답 변호사가 144명으로 28.8%이다. 특히 남성 변호사 중에서는 93명으로 24.7%인 반면, 여성 변호사 중에서는 51명으로 41.5%로, 여성 변호사가 남성 변호사에 비해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응답 변호사 중 최근 5년간의 형사사건 비율이 1~25%인 변호사는 남성 변호사 184명 48.8%, 여성 변호사 48명 39.0%, 총 46.4%로 빈도가 가장 크다. 26~50%는 총 87명으로 17.4%, 51~75%는 총 21명으로 4.2%, 76%이상은 총 16명으로 3.2%이다. 따라서 최근 5년간 형사사건을 25% 이하로 수임한 변호사가 대부분인 것으로(75.2%) 나타난다.

[표 4-11] 최근 5년간 수행했던 형사사건의 비율

단위: 명(%)

최근 5년간 수행했던 형사사건의 비율	성별		
	남성	여성	계
0%	**93 (24.7)**	**51 (41.5)**	**144 (28.8)**
1%-25%	**184 (48.8)**	**48 (39.0)**	**232 (46.4)**
26%-50%	71 (18.8)	16 (13.0)	87 (17.4)
51%-75%	19 (5.0)	2 (1.6)	21 (4.2)
76%-100%	10 (2.7)	6 (4.9)	16 (3.2)
계	377 (100.0)	123 (100.0)	500 (100.0)

x^2=16.813 (df=4), p<.01

〈표 4-12〉는 판사직에 있었는지 아니면 검사직에 있었는지에 따라 최근 5년간 수행했던 형사사건의 비율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본 것이다. 최근 5년간 한 번도 형사사건을 맡은 적이 없는 판사 출신 응답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응답 변호사는 각각 6명 24.0%와 5명 22.7%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판사 출신 응답 변호사의 경우는 최근 맡은 형사사건 비율이 1~25%인 경우가 13명 52.0%로 가장 그 수가 많았던 반면, 검사 출신

변호사는 76% 이상인 경우가 6명 27.3%로, 1~25%에 해당하는 변호사와 그 수가 같았다. 최근 맡은 형사사건 비율이 76% 이상인 판사 출신 응답 변호사는 한 명도 없다.

판사 출신 변호사 중에서는 최근 5년간 수행했던 형사사건의 비율이 25% 이하인 경우가 76.0%로 대다수인 반면, 검사 출신 변호사 중에서는 26% 이상인 경우가 50%에 달한다.

판검사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응답 변호사 중에서는 최근 5년간 형사사건을 한 건도 맡은 적이 없는 변호사가 133명 29.4%, 수임한 형사사건 비율이 1~25%인 경우가 47%이다. 따라서 이들 중 최근 5년간 맡은 형사사건 비율이 25% 이하인 변호사가 76.4%로 판사 출신의 응답 변호사의 경우와 비슷한 비중을 보여준다.

[표 4-12] 판·검사직 경험여부와 최근 5년간 수행했던 형사사건의 비율

단위: 명(%)

최근 5년간 수행했던 형사사건의 비율	판· 검사직 경험여부			
	판사직	검사직	해당없음	계
0%	**6 (24.0)**	5 (22.7)	**133 (29.4)**	144 (28.8)
1%-25%	**13 (52.0)**	6 (27.3)	**213 (47.0)**	232 (46.4)
26%-50%	5 (20.0)	**3 (13.6)**	79 (17.4)	87 (17.4)
51%-75%	1 (4.0)	**2 (9.1)**	18 (4.0)	21 (4.2)
76%-100%	0 (0.0)	**6 (27.3)**	10 (2.2)	16 (3.2)
계	25 (100.0)	22 (100.0)	453 (100.0)	500 (100.0)

x^2=46.094 (df=8), p<.001

최근 5년간 수행했던 형사사건 비율을 다시 응답 변호사의 여러 특성 별로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평균은 17.2%이다. 응답 변호사를 남성과 여성 변호사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남성 변호사의 평균이 17.9%, 여성 변호사의 평균이 15.1%로 남성 변호사의 평균이 약간 높다. 하지만 최대값을 보면 남성 변호사는 90%인데 여성 변호사가 100%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응답 변호사 중 최근 5년간 형사사건만 수임한 여성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다.

판검사 출신의 평균은 25.0%인데, 구체적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최근 맡은 형사

사건 비율의 평균이 38.8%인데 비해 판사 출신은 12.8%로 상대적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맡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경우는 평균이 16.4%로 판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표 4-13] 최근 5년간 수행했던 형사사건의 비율의 집단별 평균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평균	500명	0%	100%	17.2%	21.193
남성	377명	0%	90.0%	17.9%	20.660
여성	123명	0%	100%	15.1%	22.714
판검사출신(합)	47명	0%	90%	25.0%	30.010
판사출신	25명	0%	60%	12.8%	16.229
검사출신	**22명**	**0%**	**90%**	**38.8%**	**36.013**
연수원출신	453명	0%	100%	16.4%	19.931

제3절 | 전관예우 인지 및 경험에 관한 응답결과 분석

1. 전관예우의 존재 인정에 관한 인식

가. 성별·연령별 전관예우 존재 인정

현직 변호사들에게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판사 혹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의 과정 또는 결과에서 혜택을 받는 현상, 즉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응답을 받은 결과, '약간 있다'는 응답이 64.6%로 가장 많았고, '별로 없다'가 20.8%, '매우 많다'가 13.2% '전혀 없다'가 1.4%였다. 전관예우가 있다고 본 경우는 합계 77.8%로 대다수였고, '전혀 없다'라는 응답을 제외한 응답은 98.6%에 달했다.

남성 변호사들 중에서는 77.7%가 전관예우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고, 여성 변호사들은 78.1%가 그러하였다. 여성 변호사들이 남성 변호사들에 비해 '매우 많다'는 의견이 약간 더 많기는 하였으나, 크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다.

[표 4-14] 성별 전관예우 관행 존재 인정

단위: 명(%)

전관예우 관행 존재에 대한 인식	성별 구별		
	남성 변호사	여성 변호사	계
매우 많음	44 (11.7)	22 (17.9)	66 (13.2)
약간 있음	**249** **(66.0)**	**74** **(60.2)**	**323** **(64.6)**
별로 없음	80 (21.2)	24 (19.5)	104 (20.8)
전혀 없음	4 (1.1)	3 (2.4)	7 (1.4)
계	377 (100.0)	123 (100.0)	500 (100.0)

x^2=4.599 (df=3), N.S.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하는 비율(81.8%)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좀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큰 것은 아니어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표 4-15] 연령대별 전관예우 관행 존재 인정

단위: 명(%)

전관예우 관행 존재에 대한 인식	연령대 구별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매우 많음	23 (10.9)	**30** **(18.9)**	9 (10.3)	4 (9.3)	66 (13.2)
약간 있음	140 (66.4)	**100** **(62.9)**	52 (59.8)	31 (72.1)	323 (64.6)
별로 없음	44 (20.9)	27 (17.0)	25 (28.7)	8 (18.6)	104 (20.8)
전혀 없음	4 (1.9)	2 (1.3)	1 (1.1)	-	7 (1.4)
계	211 (100.0)	159 (100.0)	87 (100.0)	43 (100.0)	500 (100.0)

x^2=11.490 (df=9), N.S.

나.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 존재 인정

〈표 4-16〉에서 응답 변호사들의 출신에 따른 전관예우 존재 인정 정도를 보면,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타 변호사들의 79.7%가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한 데 비해, 판사출신 변호사들은 56%, 검사출신 변호사들은 63.6%만이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표 4-16]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 관행 존재 인정

단위: 명(%)

전관예우 관행 존재에 대한 인식	변호사 출신 구별			
	판사출신 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기타 변호사	계
매우 많음	1 (4.0)	3 (13.6)	62 (13.7)	66 (13.2)
약간 있음	13 (52.0)	11 (50.0)	299 (66.0)	323 (64.6)
별로 없음	10 (40.0)	8 (36.4)	86 (19.0)	104 (20.8)
전혀 없음	1 (4.0)	–	6 (1.3)	7 (1.4)
계	25 (100.0)	22 (100.0)	453 (100.0)	500 (100.0)

$x2$=12.410 (df=6), N.S.

다만, 위 표에서는 판사출신 변호사와 검사출신 변호사 각각이 표본이 작아서 집단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음 〈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검사출신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나머지 변호사들과 비교해 보면,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표 4-17]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기타 변호사의 전관예우 존재 인정 정도 차이

단위: 명(%)

전관예우 관행 존재에 대한 인식	변호사 출신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 변호사	계
매우 많음	4 (8.5)	62 (13.7)	66 (13.2)
약간 있음	24 (51.1)	**299** **(66.0)**	323 (64.6)
별로 없음	**18** **(38.3)**	86 (19.0)	104 (20.8)
전혀 없음	1 (2.1)	6 (1.3)	7 (1.4)
계	47 (100.0)	453 (100.0)	500 (100.0)

x^2=10.168 (df=3), p<.05

2. 최근 10년 이내 전관예우 경험 여부

가. 성별·연령별 전관예우 경험 여부

최근 10년 이내의 기간에 전관예우를 직접 경험[62]한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전체 응답 변호사 중 21.8%(500명 중 109명)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 변호사들은 27.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남성 변호사들은 19.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녀 간 응답차이가 아주 극적인 것은 아니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의견 차이는 나타났다.

[표 4-18] 성별 전관예우 경험 여부 차이

단위: 명(%)

10년 내 전관예우 경험 여부	성별 구별		
	남성 변호사	여성 변호사	계
경험	75 (19.9)	**34** **(27.6)**	109 (21.8)
미경험	**302** **(80.1)**	89 (72.4)	391 (78.2)
계	377 (100.0)	123 (100.0)	500 (100.0)

x^2=3.266 (df=1), p<.05

62) 본 연구의 설문 초고에서는 "상대편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상당한 정도로 의심되는 경우"로 부연설명을 했다가 최종 설문에서는 그 문구를 삭제하였다. 본인이 직접 저지른 행위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반드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대부분은 자신의 경험보다는 타인의 행위를 목격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대별로 전관예우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20/30대 변호사[63]가 25.6%로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40대 변호사 24.5%, 60대 이상 변호사 14%, 50대 변호사 11.5%의 순이었다.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으로 집단을 두 개로 나누어 볼 경우, 40대 이하 변호사 집단과 50 대 이상 변호사 집단의 전관예우 경험 비율의 차이가, 아주 극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4-19] 연령대별 전관예우 경험 여부 차이

단위: 명(%)

전관예우 경험 여부	연령대 구별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경험	**54 (25.6)**	**39 (24.5)**	10 (11.5)	6 (14.0)	109 (21.8)
미경험	157 (74.4)	120 (75.5)	**77 (88.5)**	**37 (86.0)**	391 (78.2)
계	211 (100.0)	159 (100.0)	87 (100.0)	43 (100.0)	500 (100.0)

x^2=9.448 (df=3), p<.05

나.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 경험 여부

변호사들의 출신에 따른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판사출신 변호사들은 8%(25명 중 2명), 검사출신 변호사들은 9.1%(22명 중 2명)가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나머지 변호사들은 23.2%가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표 4-20]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 경험 여부

단위: 명(%)

전관예우 경험 여부	변호사 출신 구별			
	판사출신 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기타 변호사	계
경험	2 (8.0)	2 (9.1)	105 (23.2)	109 (21.8)
미경험	23 (92.0)	20 (90.9)	348 (76.8)	391 (78.2)
계	25 (100.0)	22 (100.0)	453 (100.0)	500 (100.0)

x^2=5.382 (df=2), N.S.

63) 앞부분의 〈표 4-2〉에서 보았듯이, 표본에서 20대 변호사(1.6%, 8명)는 매우 적기 때문에(모집단에서도 20대 변호사는 극소수일 가능성이 높다), 20대 범주와 30대 범주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위 표에서는 판사출신 변호사와 검사출신 변호사 각각이 표본이 작아서 집단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음 〈표 4-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검사출신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나머지 변호사들과 비교해 보면,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표 4-21]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기타 변호사의 전관예우 경험 차이

단위: 명(%)

10년 내 전관예우 경험 여부	변호사 출신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 변호사	계
경험	4 (8.5)	**105** **(23.2)**	109 (21.8)
미경험	**43** **(91.5)**	348 (76.8)	391 (78.2)
계	47 (100.0)	453 (100.0)	500 (100.0)

x^2=5.374 (df=1), p〈.05

〈표4-22〉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만을 따로 퇴직 시 직위에 따라 구분하여 전관예우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것이다. 검사장이나 법원장이었던 변호사 6명 중 단 한명도 전관예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지 않았다. 평판사나 평검사 출신 변호사는 15명 중 단 1명(6.7%)이 전관예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23명 중 3명(11.5%)만이 전관예우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퇴직 시 직위와는 상관없이 전관예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대체로 매우 소수라고 할 수 있겠다.

[표 4-22] 판검사출신 변호사 퇴직 시 직위에 따른 전관예우 경험 여부

단위: 명(%)

10년 내 전관예우 경험 여부	판검사출신 변호사 퇴직 시 직위			
	평판사 평검사	부장판사 부장검사	검사장 법원장	계
경험	1 (6.7)	3 (11.5)	-	4 (8.5)
미경험	14 (93.3)	23 (88.5)	6 (100.0)	43 (91.5)
계	15 (100.0)	26 (100.0)	6 (100.0)	47 (100.0)

다. 기타 조건별 전관예우 경험 여부

법조계 입문 경로에 따라 구분해 보면, 우선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으로 법조계에 입문한 변호사는 6명 전원이, 그리고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으로 법조계에 입문한 변호사 6명 중 5명이 최근 10년 이내의 기간에 전관예우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이 두 범주는 빈도가 각각 6명으로 매우 낮아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한 변호사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한 변호사를 비교해 보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는 19.9%가,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혹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25.7%가 최근 10년 이내의 기간에 전관예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을 하여 변호사 시험 합격으로 법조계에 입문한 변호사가 전관예우 경험 사실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하지만, 크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다.

[표 4-23] 법조계 입문 경로에 따른 전관예우 경험 여부

단위: 명(%)

전관예우 경험 여부	법조계 입문 경로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시험 합격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계
경험	60 (19.9)	**48** **(25.7)**	-	1 (16.7)	109 (21.8)
미경험	241 (80.1)	139 (74.3)	6 (100.0)	5 (83.3)	391 (78.2)
계	301 (100.0)	187 (100.0)	6 (100.0)	6 (100.0)	500 (100.0)

x^2=4.022 (df=3), N.S.

다음 표에서 변호사 사무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무실 규모별로도 크게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4-24] 변호사 사무실 규모에 따른 전관예우 경험 여부

단위: 명(%)

전관예우 경험 여부	변호사 사무실 규모 (변호사 수 기준)						
	1인	2-3인	4-5인	6-9인	10-19인	20인 이상	계
경험	30 (18.9)	39 (24.7)	14 (20.9)	10 (23.3)	5 (19.2)	11 (23.4)	109 (21.8)
미경험	129 (81.1)	119 (75.3)	53 (79.1)	33 (76.7)	21 (80.8)	36 (76.6)	391 (78.2)
계	159 (100.0)	158 (100.0)	67 (100.0)	43 (100.0)	26 (100.0)	47 (100.0)	500 (100.0)

x^2=1.830 (df=5), N.S.

최근 5년 동안의 형사사건 수임 비중에 따른 전관예우 경험 여부를 살펴보자면, 최근 5년 내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 중에서는 8.3%만이 전관예우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형사사건 비중이 50%가 넘는 변호사들의 경우엔 30% 이상이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중간 비중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 변호사들의 경우엔, 대체로 20%대의 경험 비율을 보임으로써 각 집단 간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25] 최근 5년 형사사건 수임 비중에 따른 전관예우 경험 여부

단위: 명(%)

전관예우 경험 여부	최근 5년 간 형사사건 수임 비중					
	0%	1-25%	26-50%	51-75%	76-100%	계
경험	12 (8.3)	**59** **(25.4)**	**25** **(28.7)**	**8** **(38.1)**	**5** **(31.2)**	109 (21.8)
미경험	**132** **(91.7)**	173 (74.6)	62 (71.3)	13 (61.9)	11 (68.8)	391 (78.2)
계	144 (100.0)	232 (100.0)	87 (100.0)	21 (100.0)	16 (100.0)	500 (100.0)

x^2=23.677 (df=4), p<.001.

완벽하게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형사사건 수임 비중의 증가와 전관예우 경험은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3. 전관예우 경험 상세 분석

가. 가장 최근 전관예우 경험 시점과 사건의 종류

가장 최근에 경험한 전관예우가 어떤 종류의 소송사건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물은 결과, 형사사건에서 전관예우를 경험한 변호사는 72.5%로 나타난 것에 비해, 가사사건을 포함한 민사사건에서 그러한 경험을 한 변호사는 25.7%로 그보다 크게 낮았고, 조세사건 포함한 행정사건에서 그러한 경험을 한 변호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낮은 1.8%에 불과하였다. 형사소송사건이 거의 4분의 3 수준이고, 나머지는 민사사건으로 거의 4분의 1 수준이며, 행정사건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수준이다[64].

10 년 이내에 전관예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9명의 변호사 중에 그러한 경험이 1년 이내였다고 답한 변호사는 28명(25.7%)이었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39명(35.8%), 전관예우를 경험한지 2~5년 되었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36명(33.0%)이었으며,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변호사는 6명(5.5%)이었다.

[표 4-26] 전관예우 경험 시기와 사건 유형

단위: 명(종축%)[횡축%]

사건의 유형	전관예우 경험 시기				
	1년 이내	2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계
형사사건	**20 (71.4)**	**31 (79.5)**	**25 (69.4)**	**3 (50.0)**	**79 (72.5)**
민사사건 (가사사건 포함)	7 (25.0)	7 (17.9)	11 (30.6)	3 (50.0)	28 (25.7)
행정사건 (조세사건 포함)	1 (3.6)	1 (2.6)	0 (0.0)	0 (0.0)	2 (1.8)
계	28 (100.0) [25.7]	39 (100.0) [35.8]	36 (100.0) [33.0]	6 (100.0) [5.5]	109 (100.0) [100.0]

전관예우 경험이 있다고 한 변호사의 94.5%는 5년 이내의 경험이었던 것이다.

64) 제3장의 〈표 3-7〉에서 의뢰인들의 소송사건 비율을 보면, 민사사건 비중은 민·형사 병행 사건이 아닌 순수 민사사건만 따져도 절반이 넘고(57.1%), 행정사건은 3% 정도였다. 따라서 행정사건의 경우엔, 사건의 비중 자체가 워낙 적어서 전관예우 경험 비율도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다. 하지만, 민사소송사건의 경우엔 전체 비중에 비해 전관예우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분명하다.

나. 전관예우의 혜택 수준

다음으로 가장 최근에 경험한 전관예우의 혜택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였는지를 사건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행정사건(조세사건 포함)의 경우는 총 2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에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가사사건 포함)만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겠다.

두 경우 모두 절차상 편의를 받는 정도였고 중요 결정사항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의 경우 44.3%가, 민사사건의 경우 57.1%가 이 범주에 해당한다. 한편 절차상 각종 편의는 물론이고 중요 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였다는 응답이 형사사건의 경우는 38%나 되고,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25%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보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라고 막연히 응답한 경우는 형사사건 17.7%, 민사사건 17.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4-27] 사건유형에 따른 전관예우 혜택 수준

단위: 명(%)

전관예우 혜택 수준	소송사건 유형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계
절차상 편의와 중요 결정에 영향	30 (38.0)	7 (25.0)	1 (50.0)	38 (34.9)
절차상 편의에 영향	**35** **(44.3)**	**16** **(57.1)**	-	**51** **(46.8)**
어떤 식으로든 혜택 받았다는 느낌	14 (17.7)	5 (17.9)	1 (50.0)	20 (18.3)
계	79 (100.0)	28 (100.0)	2 (100.0)	109 (100.0)

언뜻 보면, 형사사건과 나머지 사건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다음 〈표 4-28〉에서와 같이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을 합쳐서 형사사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4-28] 사건유형 재분류에 따른 전관예우 혜택 수준 차이 검증 결과

단위: 명(%)

전관예우 혜택 수준	사건 유형 재분류		
	형사사건	민사/행정사건	계
절차상 편의와 중요 결정에 영향	30 (38.0)	8 (26.7)	38 (34.9)
절차상 편의에 영향	**35** **(44.3)**	**16** **(53.3)**	**51** **(46.8)**
어떤 식으로든 혜택 받았다는 느낌	14 (17.7)	6 (20.0)	20 (18.3)
계	79 (100.0)	30 (100.0)	109 (100.0)

x^2=1.238 (df=2), N.S.

다. 전관예우의 혜택의 단계

가장 최근에 경험한 전관예우의 혜택이 어느 단계에서 있었는지 사건 유형별로 구분해 보았다. 먼저 형사사건의 경우는 검찰 수사 단계였다는 응답이 5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 2심 재판 단계였다는 응답이 30.4%로 절반이 넘는 경우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관예우 해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형사사건에서는 65.8%(79명 중 52명)가 재판 이전 단계였던 것이다.

한편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의 경우는, 절대 다수인 80.0%가 1, 2심 재판 단계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민사소송/행정소송에서는 1, 2심 단계가 절대 다수인 것이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검찰수사단계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응답이 나온 게 이상한 것이다[65].

대법원 재판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경우는 형사사건 3건, 민사사건 1건, 행정사건 1건에 불과한데, 대법원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5) 각종 착오에 의한 응답 오류이거나 민·형사 병행사건이기 때문에 나온 응답일 수도 있다.

[표 4-29] 사건 유형에 따른 전관예우 혜택 단계

단위: 명(%)

전관예우 혜택 단계	사건 유형 재분류		
	형사사건	민사/행정사건	계
경찰 수사단계	3 (3.8)	-	3 (2.8)
검찰 수사단계	**41 (51.9)**	4 (13.3)	45 (41.3)
구속 관련 재판	8 (10.1)	-	8 (7.3)
1,2심 재판	24 (30.4)	**24 (80.0)**	48 (44.0)
대법원 재판	3 (3.8)	2 (6.7)	5 (4.6)
계	79 (100.0)	30 (100.0)	109 (100.0)

x^2=24.557 (df=4), p<.001

4. 전관변호사의 수임료에 관한 의견

가. 판검사출신 여부에 따른 전관변호사 보수 평가

전관변호사가 받는 보수가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혹은 수임료)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변호사의 52.8%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37%였다. 어떤 정도로든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89.8%인 데 반해, 보통(4.6%)이거나 낮은 수준(0.4%)이라고 응답한 변호사는 5%에 지나지 않았다.

[표 4-30] 변호사 출신 구별에 따른 전관변호사 보수 수준에 대한 생각

단위: 명(%)

통상적 변호사 보수에 비해 전관변호사 보수 수준	변호사 출신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 변호사	계
낮은 수준	-	2 (0.4)	2 (0.4)
보통 수준	4 (8.5)	19 (4.2)	23 (4.6)
약간 높은 수준	**27 (57.4)**	**158 (34.9)**	**185 (37.0)**
매우 높은 수준	**11 (23.4)**	**253 (55.8)**	**264 (52.8)**
모름	5 (10.6)	21 (4.6)	26 (5.2)
계	47 (100.0)	453 (100.0)	500 (100.0)

x^2=19.234 (df=4), p<.01

전관변호사의 보수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나머지 변호사들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두 집단 모두 전관변호사의 보수가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보다 높다고 본 점에서는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꽤 큰 차이가 나타났던 것이다. 즉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경우엔, 57.4%가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을 한 것에 비해, 기타 변호사들은 55.8%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던 것이다.

나.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전관변호사 보수 평가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전관변호사 보수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10년 이내에 전관예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는 전관변호사의 보수 수준이 통상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5.2%에 달한 데 비해, 전관예우를 경험한 적이 없는 변호사들은 같은 응답이 46.5%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두 집단 모두 전관변호사의 보수 수준이 통상 수준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31]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전관변호사 보수 수준에 대한 생각

단위: 명(%)

통상적 변호사 보수에 비해 전관변호사 보수 수준	전관예우 경험 유무		
	있음	없음	계
낮은 수준	0 (0.0)	2 (0.5)	2 (0.4)
보통 수준	4 (3.7)	19 (4.9)	23 (4.6)
약간 높은 수준	21 (19.3)	**164** **(41.9)**	185 (37.0)
매우 높은 수준	**82** **(75.2)**	182 (46.5)	264 (52.8)
모름	2 (1.8)	24 (6.1)	26 (5.2)
계	109 (100.0)	391 (100.0)	500 (100.0)

x^2=28.983 (df=4), p<.001

다. 전관예우 경험 사건 유형별 전관변호사 보수 평가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변호사들에게 한정하여 전관변호사가 받는 보수(수임료)는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수임료)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물었을 때, 그들이 경험한 사건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형사사건에서 전관예우를 경험한 변호사의 경우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75.9%,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19%로 합하여 94.9%가 전관변호사의 보수가 통상적인 보수보다 높다고 답하였다.

민사/행정사건에서 전관예우를 경험한 변호사의 경우에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75.0%,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17.9%로 합하여 92.9%가 전관변호사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전관예우를 경험한 변호사들의 경우, 형사소송 사건에서든 민사소송 사건에서든 행정소송 사건에서든 사건의 유형과는 무관하게 전관변호사가 통상적인 수임료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32] 사건 유형에 따른 전관변호사 보수 수준에 대한 생각

단위: 명(%)

통상적 변호사 보수에 비해 전관변호사 보수 수준	사건 유형 재분류		
	형사사건	민사/행정사건	계
보통 수준	3 (3.8)	1 (3.3)	4 (3.7)
약간 높은 수준	15 (19.0)	6 (20.0)	21 (19.3)
매우 높은 수준	**60** **(75.9)**	**22** **(73.3)**	**82** **(75.2)**
모름	1 (1.3)	1 (3.3)	2 (1.8)
계	79 (100.0)	30 (100.0)	109 (100.0)

x^2=.551 (df=3), N.S.

5. 선임계 미제출에 관한 의견

가. 선임계 미제출 변론의 존재에 대한 의견

현직 변호사들에게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로 발생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진 결과, 500명의 변호사 중 269명(53.8%)이 어느 정도로든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약간 있다'는 응답은 47.8%, '매우 많다'는 응답은 6%였다.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는 의견은 500명 중 231명(46.2%)이었으며, '별로 없다'는 응답이 40.6%, '전혀 없다'는 응답은 5.6%였다.

변호사의 출신별로 살펴보면,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매우 많다'가 4.3%, '약간 있다'가 31.9%로 도합 36.2%가 선임계 미제출의 존재를 인정한 것에 비해, 나머지 변호사들은 '매우 많다'가 6.2%, '약간 있다'가 49.4%로 그 합계가 55.6%에 달하였다. 다시 말해,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문제가 별로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기타 변호사들은 그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이다.

다만, 두 집단의 의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크게 두드러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그 차이가 아주 무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표 4-33] 변호사 출신에 따른 선임계 미제출 변론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선임계 미제출 변론의 존재	변호사 출신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 변호사	계
매우 많음	2 (4.3)	28 (6.2)	30 (6.0)
약간 있음	15 (31.9)	**224** **(49.4)**	239 (47.8)
별로 없음	**28** **(59.6)**	175 (38.6)	203 (40.6)
전혀 없음	2 (4.3)	26 (5.7)	28 (5.6)
계	47 (100.0)	453 (100.0)	500 (100.0)

x^2=7.770 (df=3), N.S.(.051)

전관예우 경험 유무에 따른 의견 차이를 보면, 그 경험 유무에 따른 (선임계 미제출 변론의 존재에 대한) 의견 차이가 훨씬 뚜렷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4]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선임계 미제출 변론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선임계 미제출 변론의 존재	전관예우 경험 유무		
	있음	없음	계
매우 많음	14 (12.8)	16 (4.1)	30 (6.0)
약간 있음	**69** **(63.3)**	170 (43.5)	239 (47.8)
별로 없음	21 (19.3)	**182** **(46.5)**	203 (40.6)
전혀 없음	5 (4.6)	23 (5.9)	28 (5.6)
계	109 (100.0)	391 (100.0)	500 (100.0)

x^2=33.771 (df=3), p<.001

전관예우를 경험한 변호사들은 63.3%가 선임계 미제출 변론이 '약간 있다'고 응답했고, 12.8%는 '매우 많다'고 응답했다. 76.1%가 선임계 미제출 변론의 존재를 인정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최근 10년 간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46.5%가 '별로 없다'고 응답했고, 5.9%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별로 혹은 전혀 없다는 의견의 합이 52.4%로 절반을 넘어섰다.

나. 선임계 미제출 사례 경험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선임계 미제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2%의 변호사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판검사출신 변호사들 중에서는 그러한 응답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한 응답은 모두 기타 변호사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험자의 비중이 워낙 작은 탓인지 두 집단 간의 의견차이가 통계적으로 검증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4-35] 변호사 출신에 따른 선임계 미제출 사례 경험 유무

단위: 명(%)

선임계 미제출 사례 경험	변호사 출신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 변호사	계
경험	–	**21 (4.6)**	**21 (4.2)**
미경험	47 (100.0)	432 (95.4)	479 (95.8)
계	47 (100.0)	453 (100.0)	500 (100.0)

x^2=2.274 (df=1), N.S.

전관예우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전관예우 경험 유무에 따른 선임계 미제출 사례 경험 유무의 차이가 훨씬 뚜렷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관예우를 경험한 변호사들은 16.5%(109명 중 18명)가 선임계 미제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던 것에 비해, 최근 10년 간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0.8%(391명 중 3명)[66]만이 선임계 미제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변호사들 중 16.5%는 선임계 미제출 변론 행위와 결합된 형태의 전관예우를 경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표 4-36]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선임계 미제출 사례 경험 유무

단위: 명(%)

선임계 미제출 사례 경험	전관예우 경험 유무		
	있음	없음	계
경험	**18 (16.5)**	3 (0.8)	21 (4.2)
미경험	91 (83.5)	388 (99.2)	479 (95.8)
계	109 (100.0)	391 (100.0)	500 (100.0)

x^2=52.527 (df=1), p<.001

66) 사실 선임계 미제출 변론 행위를 전관예우 관행의 한 형태라고 파악한 변호사였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전관예우 미경험자들 중에서 선임계 미제출 사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하나도 없어야 했을 것이긴 하다.

다. 선임계 미제출 사례 인식과 경험 사이의 관계

다음 표를 보면, 선임계 미제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 변호사는 모두 그러한 문제가 '매우 많다'거나 '약간 있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선임계 미제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한 변호사들은 그러한 문제의 발생 정도에 대한 의견에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실제 그러한 사례를 경험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문제 발생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일반적인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4-37] 선임계 미제출 변론 문제 발생에 대한 생각과 선임계 미제출 사례 경험

단위: 명(%)

선임계 미제출 경험 여부	선임계 미제출 변론의 문제 발생에 대한 생각				
	매우 많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계
있다	**6 (20.0)**	**15 (6.3)**	-	-	21 (4.2)
없다	24 (80.0)	224 (93.7)	**203 (100.0)**	**28 (100.0)**	479 (95.8)
계	30 (100.0)	239 (100.0)	203 (100.0)	28 (100.0)	500 (100.0)

x^2=31.301 (df=3), p<.001

6. 전화 변론에 관한 의견

가. 전화변론의 존재에 대한 의견

"친분 있는 판사/검사 등에게 전화로 변론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현직 변호사 500명 가운데 45.8%는 별로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45.2%는 약간 있음, 3.8%는 매우 많음으로 응답하여 응답자의 49%가 전화변론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별로는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59.6%가 별로 없다고 응답한 데 비해 기타 변호사의 46.4%가 약간 있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많다고 응답한 판검사출신 변호사는 한 명도 없는데 비해 기타 변호사의 4.2%가 매우 많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화변론의 존재에 대해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기타 변호사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8] 변호사 출신에 따른 전화변론의 존재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화변론의 존재	변호사 출신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 변호사	계
매우 많음	-	**19 (4.2)**	**19 (3.8)**
약간 있음	**16 (34.0)**	**210 (46.4)**	**226 (45.2)**
별로 없음	28 (59.6)	201 (44.4)	229 (45.8)
전혀 없음	3 (6.4)	23 (5.1)	26 (5.2)
계	47 (100.0)	453 (100.0)	500 (100.0)

x^2=5.689 (df=3), N.S.

한편 전관예우 경험에 따른 전화변론의 존재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전관예우를 경험한 변호사 가운데 66.1%가 전화변론이 약간 있다고 응답하였고, 10.1%가 매우 많다고 응답한 데 비해 전관예우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52.2%는 전화변론이 별로 없다고 응답하였고, 6.4%는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에 따른 의견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전관예우 경험을 하지 않은 변호사 가운데에서도 39.4%는 약간 있다, 2%는 매우 많다고 응답하여 전관예우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도 40% 이상 전화변론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9]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전화변론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화변론의 존재	전관예우 경험 유무		
	있음	없음	계
매우 많음	11 (10.1)	8 (2.0)	19 (3.8)
약간 있음	**72 (66.1)**	154 (39.4)	226 (45.2)
별로 없음	25 (22.9)	**204 (52.2)**	229 (45.8)
전혀 없음	1 (0.9)	25 (6.4)	26 (5.2)
계	109 (100.0)	391 (100.0)	500 (100.0)

x^2=47.759 (df=3), p<.001

나. 전화변론 사례 경험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전화변론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전화변론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 변호사들 중 4.4%로 나타났다.

[표 4-40] 변호사 출신에 따른 전화변론 사례 경험 유무

단위: 명(%)

전화변론 사례 경험	변호사 출신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 변호사	계
경험	**-**	**22 (4.9)**	**22 (4.4)**
미경험	47 (100.0)	431 (95.1)	478 (95.6)
계	47 (100.0)	453 (100.0)	500 (100.0)

x^2=2.388 (df=1), N.S.

판검사출신 변호사는 한 명도 전화변론 사례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데 비해 기타 변호사의 4.9%는 전화변론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관예우 경험에 따른 전화변론 사례의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전관예우를 경험한 변호사들 가운데 18.3%는 전화변론 사례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관예우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 가운데에서는 0.5%만이 전화변론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관예우 경험에 따라 전화변론 사례의 경험도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41]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전화변론 사례 경험 유무

단위: 명(%)

전화변론 사례 경험	전관예우 경험 유무		
	있음	없음	계
경험	**20 (18.3)**	2 (0.5)	22 (4.4)
미경험	89 (81.7)	**389 (99.5)**	478 (95.6)
계	109 (100.0)	391 (100.0)	500 (100.0)

x^2=66.472 (df=1), p<.001

다. 전화변론 사례 인식과 경험 사이의 관계

전화변론 사례 경험 유무에 따라 그 발생 정도에 대한 평가를 분류해 보면, 전화변론 사례를 경험한 변호사들의 대부분은 그러한 행위가 매우 많거나 약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난다.

[표 4-42] 전화 변론 행위 발생과 최근 5년 이내 전화변론 사례 경험

단위: 명(%)

전화변론 경험 여부	전화 변론 행위 발생				
	매우 많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계
있다	**4 (21.1)**	**17 (7.5)**	1 (0.4)	0 (0.0)	22 (4.4)
없다	15 (78.9)	209 (92.5)	**228 (99.6)**	**26 (100.0)**	478 (95.6)
계	19 (100.0)	226 (100.0)	229 (100.0)	26 (100.0)	500 (100.0)

x^2=27.511 (df=3), p<.001

반면 그러한 사례를 경험하지 않은 변호사 478명 중 그러한 행위가 약간 발생한다는 응답이 209명, 별로 없다는 응답이 228명이다. '매우 많음'과 '약간 있음'을 합하면 224명, '별로 없음'과 '전혀 없음'을 합하면 254명으로 전화변론 사례를 경험하지 않은 변호사들 중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변호사가 약간 더 많기는 하지만 특별한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도 역시 그러한 사례를 실제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현상의 반영인 것으로 보인다.

7. 공식 수임료 외 추가 로비 비용에 관한 의견

가.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의 존재에 대한 의견

"공식적인 변호사 보수 이외에 '법원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변호사 또는 소개자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 변호사의 56.6%는 별로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34.8%가 약간 있음에 응답, 8%는

매우 많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3] 변호사 출신에 따른 추가 로비비용 지급의 존재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의 존재	변호사 출신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 변호사	계
매우 많음	**-**	**8 (1.8)**	**8 (1.6)**
약간 있음	**15 (31.9)**	**159 (35.1)**	**174 (34.8)**
별로 없음	27 (57.4)	256 (56.5)	283 (56.6)
전혀 없음	5 (10.6)	30 (6.6)	35 (7.0)
계	47 (100.0)	453 (100.0)	500 (100.0)

x^2=1.942 (df=3), N.S.

이 가운데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57.4%가 추가 로비비용 지급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에 응답, 10.6%는 전혀 없다고 응답한 반면, 기타 변호사의 35.1%는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가 약간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많다고 응답한 경우도 1.8%에 해당된다. 전반적으로 판검사출신 변호사보다 기타 변호사들에게서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가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의 존재에 대한 인정 정도를 살펴보면, 전관예우를 경험한 변호사들 가운데 50.5%가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가 약간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관예우 경험이 없는 응답 변호사들 중에서는 30.4%만 약간 있다고 응답하였고 오히려 별로 없다는 응답이 60.9%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표 4-44]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추가 로비비용 지급의 존재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의 존재	전관예우 경험 유무		
	있음	없음	계
매우 많음	6 (5.5)	2 (0.5)	8 (1.6)
약간 있음	**55** **(50.5)**	119 (30.4)	174 (34.8)
별로 없음	45 (41.3)	**238** **(60.9)**	283 (56.6)
전혀 없음	3 (2.8)	32 (8.2)	35 (7.0)
계	109 (100.0)	391 (100.0)	500 (100.0)

x^2=32.472 (df=3), p<.001

즉, 전관예우를 경험한 변호사들 가운데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가 매우 많다고 응답한 경우 5.5%, 약간 있다고 응답한 50.5%를 합하면 56%가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는 반면, 전관예우 경험이 없는 변호사 중 '전혀 없다'고 응답한 8.2%를 포함하여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중이 69.1%로 전관예우 경험에 따라 추가 로비비용 지급 존재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나.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 경험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추가비용 사례의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직 변호사 500명 가운데 단지 3.0%만이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판검사출신 변호사 중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를 경험한 경우는 한 명도 없으며, 기타 변호사 가운데 3.3%가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4-45] 변호사 출신에 따른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 경험 유무

단위: 명(%)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 경험	변호사 출신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 변호사	계
경험	-	**15** **(3.3)**	**15** **(3.0)**
미경험	47 (100.0)	438 (96.7)	485 (97.0)
계	47 (100.0)	453 (100.0)	500 (100.0)

x^2=1.604 (df=1), N.S.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 경험을 살펴보면 전관예우를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10.1%가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관예우 경험이 없는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1%만이 추가 로비비용을 지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4-46]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추가 로비비용 지급사례 경험 유무

단위: 명(%)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 경험	전관예우 경험 유무		
	있음	없음	계
경험	**11 (10.1)**	4 (1.0)	15 (3.0)
미경험	98 (89.9)	**387 (99.0)**	485 (97.0)
계	109 (100.0)	391 (100.0)	500 (100.0)

x^2=24.090 (df=1), p<.001

다.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 인식과 경험 사이의 관계

추가 로비비용 지급 사례 경험 여부에 따라 로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보는지에 관한 의견을 교차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변호사 15명 중 그러한 행위가 매우 많이 발생한다는 응답이 4명, 약간 발생한다는 응답이 9명으로 대다수가 로비 명목의 추가비용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는 편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7] 추가 비용 요구 행위 발생과 최근 5년 이내 추가비용 사례 경험 유무

단위: 명(%)

추가비용지급 경험 여부	추가 비용 요구 행위 발생				
	매우 많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계
있다	**4 (50.0)**	**9 (5.2)**	2 (0.7)	0 (0.0)	15 (3.0)
없다	4 (50.0)	165 (94.8)	**281 (99.3)**	**35 (100.0)**	485 (97.0)
계	8 (100.0)	174 (100.0)	283 (100.0)	35 (100.0)	500 (100.0)

x^2=69.747 (df=3), p<.001

반면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변호사 485명 중에서는 매우 많다는 응답과 약간 있다는 응답이 합해서 각각 4명과 165명, 별로 없다는 응답과 전혀 없다는 응답이 각각 281명과 35명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역시 자신의 실제 경험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4절 | 전관선임의 유리함과 의뢰인의 전관선호에 관한 의견

1. 전관변호사 선임의 유리함에 관한 의견

가. 전반적 의견 및 소송사건 종류별 의견 차이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전반적 의견에서 보여주듯이 응답변호사의 9.8%가 매우 유리다고 답했으며 59.8%는 약간 유리하다고 대답했다. 합하면 69.6%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전관 변호사 선임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매우 불리하다는 답은 하나도 없었고 약간 불리하다는 응답이 2명 있었을 뿐이다.

변호사들 대다수가 전관변호사 선임이 소송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우 유리하다는 응답은 9.8%에 머물렀고 다수인 59.8%는 '약간' 유리한 정도라고 답한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표 4-48] 전관변호사 선임이 소송에 유리한지에 대한 생각

단위: 명(%)

전관변호사 선임이 소송애 유리한가	전반적 의견	사건 유형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매우 유리	**49 (9.8)**	**122 (24.4)**	36 (7.2)	24 (4.8)	28 (5.6)
약간 유리	**299 (59.8)**	**287 (57.4)**	244 (48.8)	201 (40.2)	220 (44.0)
별 차이 없음	**150 (30.0)**	**90 (18.0)**	219 (43.8)	273 (54.6)	250 (50.0)
약간 불리	**2 (0.4)**	**1 (0.2)**	1 (0.2)	2 (0.4)	2 (0.4)
계	**500 (100.0)**	**500 (100.0)**	500 (100.0)	500 (100.0)	500 (100.0)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소송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을 때, 특히 형사소송에서 전관변호사 선임이 매우 유리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유리하다'는 응답이 민사소송은 7.2%, 가사소송은 4.8%, 행정소송은 5.6%에 머문 반면, 형사소송은 24.4%에 달한다. '약간 유리하다'는 응답 역시 형사소송은 57.4%로 민사소송 48.8%, 가사소송 40.2%, 행정소송 44.0%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전관변호사를 선임해도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43.8%, 가사소송은 54.6%, 행정소송은 50%에 달하는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18%에 그친다. 따라서 응답변호사들은 특히 형사소송에서 전관변호사 선임이 특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은 약간 더 유리하며, 나머지 소송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의견분포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전관변호사 선임이 약간 불리하다는 응답은 모든 소송 종류에서 1~2건에 그쳤고, 매우 불리하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나. 변호사 출신별 의견 차이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한 의견을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나머지 변호사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와 같이 요약하여 나타내 볼 수 있다. 표에 나타난 평균점수는 전관변호사 선임이 '매우 유리하다'가 1점, '약간 유리하다' 2점, '별 차이 없다' 3점, '약간 불리하다' 4점, '매우 불리하다'를 5점으로 했을 때, 그 점수의 평균을 나타내 본 것이다. 따라서 평균 점수가 높으면 전관변호사 선임이 불리하다는 의견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평균 점수가 낮을수록 전관변호사 선임이 유리하다는 의견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또한, 평균이 2점에 가까우면 약간 유리하다는 의견이고, 3점에 가까우면 별 차이 없다는 의견이며, 1점에 가까우면 매우 유리하다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4-49] 변호사출신별 변호사 선임의 유리함에 대한 판단 차이

단위: 명(%)

변호사 출신 구별		전반적 의견	사건 유형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판검사출신 변호사	평균	2.298	2.043	2.468	2.596	**2.638**
	N	47	47	47	47	47
	편차	.5483	.5089	.6545	.6136	.5682
기타 변호사	평균	2.201	1.929	2.360	2.497	**2.433**
	N	453	453	453	453	453
	편차	.6146	.6681	.6139	.5936	.6082
출신별 차이 t값 (df=498)		1.040 N.S.	1.128 N.S.	1.144 N.S.	1.086 N.S.	2.219 p<.05

※ '매우 유리' 1점, '매우 불리' 5점으로 부여하여 계산한 것임.

표를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모든 소송의 종류에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평균점수보다 기타 변호사들의 평균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에 비해 나머지 변호사들이 전관변호사 선임을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의견 차이는 대부분의 소송사건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고, 의외로 행정소송에서만 두 집단 간 의견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행정소송의 경우엔 다른 소송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으므로(즉 전관변호사 선임이 유리하다는 의견 자체가 약한 편임), 이는 상대적인 의견 차이임에 유의하기 바란다.

다. 전관예우 경험 유무별 의견 차이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한 의견을 전관예우 사례 경험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와 같이 요약하여 나타내 볼 수 있다. 표에 나타난 평균점수 역시 앞의 표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것임은 물론이다.

[표 4-50] 전관예우 경험 유무별 변호사 선임의 유리함에 대한 판단 차이

단위: 명(%)

전관예우 경험 유무		전반적 의견	사건 유형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경험	평균	2.009	1.807	2.193	2.413	2.312
	N	109	109	109	109	109
	편차	.6454	.6452	.5524	.5807	.5884
미경험	평균	2.266	1.977	2.419	2.532	2.491
	N	391	391	391	391	391
	편차	.5869	.6540	.6268	.5978	.6070
경험차이 t값 (df=498)		−3.951 p<.001	−2.402 p<.05	−3.424 p<.01	−1.851 N.S.	−2.742 p<.01

※ '매우 유리' 1점, '매우 불리' 5점으로 부여하여 계산한 것임.

표를 보면, 전반적 의견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의 종류에서 전관예우를 경험한 변호사의 평균점수가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의 평균점수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에 비해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이 전관변호사 선임을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 차이는 가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의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의견 차이의 크기로만 보자면, 전반적인 의견을 논외로 할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의견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 의뢰인들의 전관변호사 선호에 관한 의견

가. 전반적 의견 및 소송사건 종류별 의견 차이

의뢰인들이 전관변호사를 어느 정도 선호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선호가 없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하며, '약간 선호'가 56.6%, '매우 선호'가 39.6%에 달하여 절대 다수의 변호사가 의뢰인들이 전관변호사를 선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51] 의뢰인들의 전관변호사 선호도에 대한 변호사들의 생각

단위: 명(%)

전관변호사 선호도에 대한 변호사들 생각	전반적 의견	사건 유형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선호 없음	**19 (3.8)**	**16 (3.2)**	101 (20.2)	146 (29.2)	126 (25.2)
약간 선호	**283 (56.6)**	**222 (44.4)**	291 (58.2)	286 (57.2)	294 (58.8)
매우 선호	**198 (39.6)**	**262 (52.4)**	108 (21.6)	68 (13.6)	80 (16.0)
계	**500 (100.0)**	**500 (100.0)**	500 (100.0)	500 (100.0)	500 (100.0)

이를 역시 소송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면, 특히 형사소송에서 의뢰인이 전관변호사를 선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선호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고, 매우 선호한다는 응답이 52.4%로 과반이 넘고 약간 선호한다는 응답도 44.4%에 이른다. 반면 선호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민사소송에서는 20.2%, 가사소송은 29.2%, 행정소송은 25.2%로 형사소송에 비해서는 꽤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에서도 의뢰인이 전관변호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모두 70% 이상으로 훨씬 많았다. 즉 전반적으로는, 모든 소송 유형에서 의뢰인들이 전관변호사를 선호한다고 보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형사소송에서 더 그러하다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변호사 출신별 의견 차이

의뢰인들이 전관변호사를 어느 정도 선호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판·검사출신 변호사와 나머지 변호사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와 같이 요약하여 나타내 볼 수 있다. 표에 나타난 평균점수는 전관변호사에 대해 '선호 없음'이 1점, '약간 선호'가 2점, '매우 선호' 3점으로 했을 때, 그 점수의 평균을 나타내 본 것이다. 따라서 평균 점수가 높으면 의뢰인들의 전관변호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뜻이고, 평균 점수가 낮을수록 선호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표 4-52] 변호사출신별 의뢰인들의 전관 선호에 대한 판단 차이

단위: 명(%)

변호사 출신 구별		전반적 의견	사건 유형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판검사출신 변호사	평균	2.255	2.298	1.851	1.787	1.809
	N	47	47	47	47	47
	편차	.4876	.4623	.6587	.6573	.6473
기타 변호사	평균	2.369	2.512	2.031	1.850	1.918
	N	453	453	453	453	453
	편차	.5594	.5667	.6442	.6342	.6345
출신별 차이 t값 (df=498)		−1.337 N.S.	−2.506 p<.05	−1.818 N.S.	−.642 N.S.	−1.127 N.S.

※ '선호 없음' 1점, '약간 선호' 2점, '매우 선호' 3점으로 부여하여 계산한 것임.

표를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모든 소송의 종류에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평균점수보다 기타 변호사들의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에 비해 나머지 변호사들이 의뢰인들 입장에서 전관변호사를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의견 차이는 대부분의 소송사건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 전관예우 경험 유무별 의견 차이

의뢰인들이 전관변호사를 어느 정도 선호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전관예우 사례 경험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 4-53〉에서와 같이 요약하여 나타내 볼 수 있다. 이 표에 나타난 평균점수 역시 앞의 표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것이다.

[표 4-53] 전관예우 경험 유무별 의뢰인들의 전관 선호에 대한 판단 차이

단위: 명(%)

전관예우 경험 유무		전반적 의견	사건 유형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경험	평균	**2.624**	**2.743**	**2.229**	1.945	**2.092**
	N	109	109	109	109	109
	편차	.5053	.4595	.5714	.6061	.5535

[표 4-53] (계속)

전관예우 경험 유무		전반적 의견	사건 유형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미경험	평균	**2.284**	**2.422**	**1.954**	1.816	**1.857**
	N	391	391	391	391	391
	편차	.5442	.5670	.6547	.6420	.6484
경험차이 t값 (df=498)		5.856 p<.001	5.435 p<.001	3.988 p<.001	1.879 N.S.	3.449 p<.01

※ '선호 없음' 1점, '약간 선호' 2점, '매우 선호' 3점으로 부여하여 계산한 것임.

표를 보면, 전반적 의견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의 종류에서 전관예우를 경험한 변호사의 평균점수가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의 평균점수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에 비해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이 의뢰인들 입장에서 전관변호사를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차는 가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의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의견 차이의 크기로만 보자면, 전반적인 의견을 논외로 할 경우, 형사소송에서의 의견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제5절 |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의견

1. 현행 전관예우 방지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

가. 현행 변호사법상의 전관예우 방지책에 대한 의견

판검사가 개업하면 퇴직 전 근무지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하는 현 변호사법 규정(변호사법 제31조)이 전관예우 방지대책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응답변호사들의 의견은 대체로 비슷하게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과 대체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13명(2.6%)과

245명(49.0%)으로 합하면 258명(51.6%)인데,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과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각각 17명(3.4%)과 225명(45.0%)으로 합하면 242명(48.8%)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약간 더 많기는 하지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과 그 수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54] 퇴직전 근무지사건 수임제한 1년 규정의 전관예우 방지효과에 대한 의견

단위: 명(종축%)[횡축%]

퇴직 전 근무지 사건 수임제한 기간 연장 필요 여부	퇴직 전 근무지 사건 수임제한 1년 규정 전관예우 방지 효과에 대한 생각				
	매우 효과있음	대체로 효과있음	별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계
기간연장 필요	**8 (61.5)**	**167 (68.2)**	**168 (74.7)**	**11 (64.7)**	**354 (70.8)**
기간연장 필요없음	5 (38.5)	78 (31.8)	57 (25.3)	6 (35.3)	146 (29.2)
계	13 (100.0) [2.6]	245 (100.0) [49.0]	225 (100.0) [45.0]	17 (100.0) [3.4]	500 (100.0) [100.0]

x^2=3.296 (df=3), N.S.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판·검사직 퇴직 후 수임제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물었을 때는, 70.8%에 해당하는 354명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앞서의 결과를 염두에 둘 때, 응답변호사들은 1년 동안 퇴직 전 근무지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현 제한 규정의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1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퇴직 전 근무지 사건 수임 제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 변호사와 필요 없다고 본 변호사를 나누어 보면, 수임제한 규정의 전관예우 방지 효과에 대해서 이 두 집단의 답변이 뚜렷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단,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현 1년 수임제한 규정에 대해서 대체로 '매우 효과 있음'과 '대체로 효과 있음'에 응답한 변호사와 '전혀 효과 없음'과 '별로 효과 없음'에 응답한 변호사의 수가 175명 대 179명으로 비슷한 반면, 기간 연장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그 수가 83명 대 63명으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는데, 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제도의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다면, 제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든 그렇지 않든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판검사 퇴직 후 수임제한의 기간 1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354명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 연장이 필요한지를 물었고, 그에 대한 결과가 〈표 4-55〉에 제시되었다. 먼저 3년으로 연장해야 된다는 응답이 4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년 25.7%, 그리고 5년 16.9%의 순이다.

[표 4-55] 퇴직전 근무지사건 수임제한 1년 규정 연장의 기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적정 기간	퇴직 전 근무지 사건 수임제한 1년 규정의 전관예우 방지효과에 대한 생각				
	매우 효과 있음	대체로 효과 있음	별로 효과 없음	전혀 효과 없음	계
2년	3 (37.5)	53 (31.7)	35 (20.8)	0 (0.0)	91 (25.7)
3년	4 (50.0)	81 (48.5)	74 (44.0)	4 (36.4)	163 (46.0)
4년	0 (0.0)	4 (2.4)	8 (4.8)	2 (18.2)	14 (4.0)
5년	0 (0.0)	25 (15.0)	33 (19.6)	2 (18.2)	60 (16.9)
5년 초과	1 (12.5)	4 (2.4)	18 (10.7)	3 (27.3)	26 (7.3)
계	8 (100.0)	167 (100.0)	168 (100.0)	11 (100.0)	354 (100.0)

수임제한 1년 규정의 전관예우 방지효과에 대한 생각에 따라 응답을 분류해 보면, '매우 효과 있음' ~ '전혀 효과 없음'의 4개 응답 범주에서 공통적으로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별로 효과 없음'과 '전혀 효과 없음'에서는 '5년'과 '5년 초과'에 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기간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연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나. 변호사법 이외의 현행 전관예우 방지책에 대한 의견

앞에서 언급한 변호사법의 규정 외에도 전관예우에 대한 현행의 방지책들 중에는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 공직자윤리법 내 전관예우 관련 조항, 그리고 원로법관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지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묻기 전에 우선 그 존재와 기능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응답결과를 보면, 법조윤리협의회, 공직자윤리법 내 전관예우 관련 법률 조항, 원로법관제 모두 안다는 응답과 모른다는 응답이 거의 반반인 것으로 나타난다.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해서 안다는 응답(51.8%)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많고, 원로법관제(47.6%)에 대해서는 약간 더 적은 정도이다.

[표 4-56] 변호사법 이외의 현행 전관예우 방지책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인식 여부

단위: 명(%)

인식 여부	변호사법 이외의 현행 전관예우 방지책		
	법조윤리협의회	공직자윤리법 내 전관예우 관련 조항	원로법관제
안다	259 (51.8)	250 (50.0)	238 (47.6)
모른다	241 (48.2)	250 (50.0)	262 (52.4)
계	500 (100.0)	500 (100.0)	500 (100.0)

위에서 언급한 방지책들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그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물은 결과는 다음 〈표 4-57〉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원로법관제가 효과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매우 효과 있다는 응답은 별로 없지만 대체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과 합하면 46.3%이다. 한편 법조윤리협의회와 공직자윤리법 내 전관예우 법률조항이 매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고, 대체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각각 40.9%와 39.2%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세부 전관예우 방지책 별로 보았을 때에도, 대체로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약간 더 많긴 하지만 효과가 있다는 응답과 그 비율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표 4-57] 여러 가지 전관예우 방지책의 효과성에 대한 생각

단위: 명(%)

전관예우 방지 효과	변호사법 이외의 현행 전관예우 방지책			[비교]	
	법조윤리 협의회	공직자윤리법 관련조항	원로법관제	현행 변호사법	전반적인 의견※
매우 효과있음	-	-	8 (3.4)	13 (2.6)	2 (0.4)
대체로 효과있음	106 (40.9)	98 (39.2)	102 (42.9)	245 (49.0)	225 (45.0)
별로 효과없음	143 (55.2)	146 (58.4)	123 (51.7)	225 (45.0)	261 (52.2)
전혀 효과없음	10 (3.9)	6 (2.4)	5 (2.1)	17 (3.4)	12 (2.4)
계	259 (100.0)	250 (100.0)	238 (100.0)	500 (100.0)	500 (100.0)

※ 현행 전관예우 방지책 전반에 대해 그 내용의 알고 모름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현행 변호사법을 포함한 모든 대책에 대한 의견이다.

참고로, 이들 세 가지 방지책에 대한 의견 분포를 앞서 살펴보았던 현행 변호사법에 대한 의견 분포와 비교해 보면, 그 응답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현행 변호사법의 효과에 대한 긍정도가 약간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방책에 대해 알고 모름에 상관없이 전반적인 수준에서 현행 변호사법을 포함한 현행의 모든 대책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 볼 경우, 역시 응답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 경우, 매우 효과 있다는 응답은 2명으로 거의 없었고, 대체로 효과 있다는 응답이 45%, 별로 효과 없다는 응답이 52.2%, 전혀 효과 없다는 응답이 2.4%로,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갈리긴 하지만,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조금 더 우세하였다.

다. 현행 전관예우 방지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차이

앞의 〈표 4-57〉의 오른편 끝부분에서 제시했던 현행 전관예우 방지책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 변호사의 출신별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를 보면,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68.1%가 '대체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기타 변호사 중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는 응답 비중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 눈에 봐도,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은 효과가 있다는 의견에 더 치우쳐 있는 데 비해, 기타 변호사들은 효과가 없다는 의견 쪽에 좀 더 치우쳐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표 4-58] 변호사 출신에 따른 현행 전관예우 방지책에 대한 전반적 의견

단위: 명(%)

전반적인 전관예우 방지 효과	변호사 출신 구별		
	판검사출신 변호사	기타 변호사	계
매우 효과있음	-	2 (0.4)	2 (0.4)
대체로 효과있음	**32** **(68.1)**	193 (42.6)	225 (45.0)
별로 효과없음	14 (29.8)	**247** **(54.5)**	261 (52.2)
전혀 효과없음	1 (2.1)	11 (2.4)	12 (2.4)
계	47 (100.0)	453 (100.0)	500 (100.0)

x^2=11.359 (df=3), p<0.5.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라 전관예우 방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우선 전관예우 경험이 있는 변호사 가운데 67.9%가 전관예우 방지책이 '별로 효과 없다'고 평가한 반면,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한 변호사의 50.9%는 방지책이 '효과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을 묶어서 볼 때, 전관예우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75.2%가 전관예우 방지책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전관예우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51.2%가 효과 있다고 응답하였던 것이다. 전관예우 경험에 따른 전관예우 방지책의 효과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관예우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관예우 방지책이 별로 효과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그보다는 좀 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59] 전관예우 경험 여부에 따른 현행 전관예우 방지책에 대한 전반적 의견

단위: 명(%)

전반적인 전관예우 방지 효과	전관예우 경험 유무		
	있음	없음	계
매우 효과있음	1 (0.9)	1 (0.3)	2 (0.4)
대체로 효과있음	26 (23.9)	**199** **(50.9)**	225 (45.0)
별로 효과없음	**74** **(67.9)**	187 (47.8)	261 (52.2)
전혀 효과없음	8 (7.3)	4 (1.0)	12 (2.4)
계	109 (100.0)	391 (100.0)	500 (100.0)

x^2=x2=35.528 (df=3), p<.001

2. 향후 도입해야 할 전관예우 방지책에 관한 의견

가. 전관예우 방지와 관련한 규제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

다음으로 전관예우 방지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그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도록 하겠다.

먼저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매우 필요'가 27.4%, '대체로 필요'가 62.0%로, 합하면 89.4%의 대다수의 변호사가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임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매우 필요'가 30%, '대체로 필요'가 61.2%로, 91.2%의 절대 다수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판부와 소송대리인 연고관계 진술 의무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23.4%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4.4%,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51.8%로, 이 유형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호사가 76.2%로 역시 다수를 차지한다.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확대 공개에 대해서도 대체로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18.4%로 역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26.2%와 54.6%, 합하여 80.8%로 다수이다.

선임계 미제출 변론, 전화변론 등 편법 강력 규제에 대한 의견은 '매우 필요'가 38.4%, '대체로 필요'가 56.0%로, 94.4%의 절대 다수의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퇴직 전 판검사의 고위직 여부에 따른 차등적 규제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22.4%,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66.8%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합해서 89.2%이다. 퇴직전 근무장소와 관련된 개업지의 장소적 제한에 대해서도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26.2%,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60.6%로, 합해서 역시 86.8%가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법조계 이외 영역의 고위공직자 대형로펌 취업규제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가 31.0%, '대체로 필요'가 60.0%이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91.0%로 매우 높게 나왔다.

[표 4-60] 전관예우 방지와 관련한 규제 법률 제·개정 필요 여부

단위: 명(%)

규제 유형	전관예우 방지와 관련한 규제 법률 제·개정 필요 여부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대체로 불필요	매우 불필요	계	평균점수※
1.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의 확대	137 (27.4)	310 (62.0)	51 (10.2)	2 (0.4)	500 (100.0)	1.836
2. 수임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150 (30.0)**	**306 (61.2)**	**41 (8.2)**	**3 (0.6)**	**500 (100.0)**	**1.794**
3. 재판부와 소송대리인 연고관계 진술 의무 도입	122 (24.4)	259 (51.8)	117 (23.4)	2 (0.4)	500 (100.0)	1.998
4.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확대 (수임료 등) 공개	131 (26.2)	273 (54.6)	92 (18.4)	4 (0.8)	500 (100.0)	1.938
5. 선임계 미제출 변론, 전화변론 등 편법 강력 규제	**192 (38.4)**	**280 (56.0)**	**27 (5.4)**	**1 (0.2)**	**500 (100.0)**	**1.674**
6. 퇴직 전 판검사의 고위직 여부에 따른 차등적 규제	112 (22.4)	334 (66.8)	53 (10.6)	1 (0.2)	500 (100.0)	1.886
7. 퇴직 전 근무장소와 관련된 개업지의 장소적(개업지) 제한	131 (26.2)	303 (60.6)	64 (12.8)	2 (0.4)	500 (100.0)	1.874
8. 법조계 이외 영역의 고위공직자 대형로펌 취업규제	**155 (31.0)**	**300 (60.0)**	**44 (8.8)**	**1 (0.2)**	**500 (100.0)**	**1.782**

※ '매우 필요' 1점, '매우 불필요' 4점으로 계산한 값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제시된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언뜻 보아도, 특히 선임계 미제출 변론 및 전화변론 등 편법 강력 규제, 수임

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그리고 법조계 이외 영역의 고위공직자 대형 로펌 취업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차이를 수치를 이용해 서열화해 보고 싶다면, 표의 맨 오른쪽에 표시한 평균점수를 이용해 볼 수 있다. 이들 평균점수는 해당 질문의 응답지에서 '매우 필요'를 1점, '대체로 필요'를 2점, '대체로 불필요'를 3점, '매우 불필요'를 4점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평균점수가 높아지면 법률 제·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점수가 낮아지면 법률 제·개정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자면, '선임계 미제출 변론 및 전화변론 등 편법 강력 규제'의 점수가 1.67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법조계 이외 영역의 고위 공직자 대형로펌 취업규제'가 1.782점, '수임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1.794 순이었다.

나. 변호사출신별·전관예우 경험 유무별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

먼저 변호사 출신별로 법률 제·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음 〈표 4-61〉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61] 변호사출신별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제 법률 제·개정 필요 여부 의견차

단위: 명(%)

변호사 출신 구별		규제 유형							
		규제1.	규제2.	규제3.	규제4.	규제5.	규제6.	규제7.	규제8.
판검사출신 변호사	평균	2.043	**2.170**	2.149	**2.277**	**1.957**	2.064	2.064	1.957
	N	47	47	47	47	47	47	47	47
	편차	.6241	.7319	.7796	.7718	.6241	.6045	.6394	.5089
기타 변호사	평균	1.815	**1.755**	1.982	**1.903**	**1.645**	1.868	1.854	1.764
	N	453	453	453	453	453	453	453	453
	편차	.5995	.5757	.6943	.6714	.5718	.5645	.6211	.6055
출신별 차이 t값 (df=498)		2.472 p<.05	**4.578** **p<.001**	1.547 N.S.	**3.580** **p<.001**	**3.539** **p<.001**	2.254 p<.05	2.195 p<.05	2.116 p<0.5

※ '매우 필요' 1점, '매우 불필요' 4점으로 계산한 것임.

표를 보면, '재판부와 소송대리인 연고 관계 진술 의무 도입'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과 나머지 변호사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이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관 변호사 수임 내역 확대 공개'(2.277점), '수임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2.170점), '재판부와 소송대리인 연고 관계 진술 의무 도입'(2.149점) 등의 순으로 공감도가 낮았다.

한편, 판검사출신 변호사들과 나머지 변호사들 사이에 의견 차이는 '수임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전관 변호사 수임 내역 확대 공개', '선임계 미제출 변론 및 전화변론 등 편법 강력 규제' 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경험에 따라 법률 제·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음 〈표 4-62〉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62] 전관예우 경험별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제법률 제·개정 필요 여부 의견차

단위: 명(%)

전관예우 경험 유무		규제 유형							
		규제1.	규제2.	규제3.	규제4.	규제5.	규제6.	규제7.	규제8.
경험	평균	**1.606**	**1.587**	1.844	1.817	1.468	1.752	1.716	1.697
	N	109	109	109	109	109	109	109	109
	편차	.5776	.6267	.7475	.7093	.5539	.6259	.6396	.6311
미경험	평균	**1.900**	**1.852**	2.041	1.972	1.731	1.923	1.918	1.806
	N	391	391	391	391	391	391	391	391
	편차	.5972	.5848	.6857	.6807	.5791	.5494	.6147	.5888
경험차이 t값 (df=498)		**-4.589** **p<.001**	**-4.110** **p<.001**	-2.598 p<.05	-2.088 p<.05	-4.241 p<.001	-2.785 p<0.1	-3.015 p<.01	-1.673 N.S.

※ '매우 필요' 1점, '매우 불필요' 4점으로 계산한 것임.

표를 보면, '법조계 이외 영역의 고위 공직자 대형로펌 취업규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관예우 경험 변호사들과 나머지 변호사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의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이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판부와 소송대리인 연고 관계 진술 의무 도입'(2.041점)에 대한 공감도가 낮았다.

한편, 전관예우를 경험한 변호사들과 나머지 변호사들 사이에 의견 차이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의 확대', '수임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 전관예우 방지와 관련한 기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전관예우 방지와 관련된 기타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필요성을 물어보았을 때, 변호사들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 강화와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18.6%,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72.4%로 91.0%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설치/운영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1.2%,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71.4%로 응답 변호사의 92.6%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정원 외 원로법관제도 도입 등 원로법관제도 보완·확대에 대해서는 86.0%가, 원로법관제도에 준하는 퇴직 검사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84.4%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앞서 두 제도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비율이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63]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여부

단위: 명(%)

제도 유형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여부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대체로 불필요	매우 불필요	계	평균점수※
1. 정원 외 원로법관제도 도입 등 원로법관제도 보완·확대	71 (14.2)	359 (71.8)	67 (13.4)	3 (0.6)	500 (100.0)	2.004
2. 원로법관제도에 준하는 퇴직 검사 관련 제도 도입	68 (13.6)	354 (70.8)	74 (14.8)	4 (0.8)	500 (100.0)	2.028
3.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강화	93 (18.6)	362 (72.4)	42 (8.4)	3 (0.6)	500 (100.0)	1.916
4.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106 (21.2)**	**357 (71.4)**	**34 (6.8)**	**3 (0.6)**	**500 (100.0)**	**1.857**

※ '매우 필요' 1점, '매우 불필요' 4점으로 계산한 값

각각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차이를 수치를 이용해 서열화해 보고 싶다면, 여기서도 역시 표의 맨 오른쪽에 표시한 평균점수를 이용해 볼 수 있다. 이들 평균점수는 해당 질문의 응답지에서 '매우 필요'를 1점, '대체로 필요'를 2점, '대체로 불필요'를 3점, '매우 불필요'를 4점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평균점수가 높아지면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점수가 낮아지면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자면, '전관예우 비리 신고센터 설치/운영'의 점수가 1.85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강화'가 1.916점 등의 순이었다.

그런데, 이 평균점수들을 〈표 4-60〉에서의 평균점수들과 비교해 보면, 이 표에 나타난 점수들이 〈표 4-60〉의 점수들보다 대체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대체로 필요하다고 보기는 하지만, 〈표 4-60〉에 나타난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공감한다는 것이다.

라. 변호사출신별·전관예우 경험 유무별 기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먼저 변호사 출신별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음 〈표 4-64〉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를 보면,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평균점수가 나머지 변호사들의 평균점수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점수부여의 논리상 이 표에서 점수가 낮다는 것은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표 4-61〉에서는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평균점수가 일관되게 높았다는 사실과 살짝 대비되는 것이기도 하다.

단순히 점수의 높고 낮음만으로 두 가지 표에 나타난 양상 전체를 해석해 보자면,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은 앞서 살펴본 (상대적으로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8개의 항목의 법률 제·개정 필요성과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설치운영에는 덜 찬성하지만, 〈표 4-64〉에 제시한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3개의 제도적 장치 도입에는 상대적으로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기타 변호사들의 경우엔, 강력한 조치에는 찬성하는 정도가 높은 대신,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치들에는 조금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표 4-64〉에서의 집단 간 평균점수의 차이는 (〈표 4-61〉과는 달리) 크다고 볼 수 없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이러한 제도적 장치 도입에 대해 더 적극적이라고까지 말할 수준은 아니다.

[표 4-64] 변호사출신별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여부 의견 차이

단위: 명(%)

변호사 출신 구별		제도 유형			
		원로법관제도 보완 및 확대	퇴직 검사관련 제도 도입	법조윤리협의회 기능강화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판검사출신 변호사	평균	1.957	2.000	1.851	1.979
	N	47	47	47	47
	편차	.5500	.5898	.5098	.6423
기타 변호사	평균	2.009	2.031	1.916	1.857
	N	453	453	453	453
	편차	.5485	.5596	.5380	.5231
출신별 차이 t값 (df=498)		−.611 N.S.	−.359 N.S.	−.793 N.S.	1.490 N.S.

※ '매우 필요' 1점, '매우 불필요' 4점으로 계산한 것임.

다음으로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경험 유무에 따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입에 대한 의견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표 4-65〉를 통해 보고자 한다.

표를 보면, '법조윤리협의회 기능강화'와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 항목에서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한 변호사들의 평균점수가 나머지 변호사들의 평균점수보다 낮고, '원로법관제 보완·확대'와 '퇴직검사 관련 제도 도입' 항목에서는 그 반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이 표에서 점수가 높다는 것은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쪽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단순히 점수의 높고 낮음만으로 해석해 보자면,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설치운영'과 '법조윤리협의회 기능강화'에는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보다 약간 더 찬성하지만, '원로법관제도 보완 및 확대'와 '퇴직검사 관련 제도 도입'에는 상대적으로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65] 전관예우 경험별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여부 의견 차이

단위: 명(%)

전관예우 경험 유무		제도 유형			
		원로법관제도 보완 및 확대	퇴직 검사관련 제도 도입	법조윤리협의회 기능강화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경험	평균	2.018	2.101	1.862	1.780
	N	109	109	109	109
	편차	.6802	.6932	.6004	.6140
미경험	평균	2.000	2.008	1.923	1.893
	N	391	391	391	391
	편차	.5064	.5188	.5156	.5101
경험차이 t값 (df=498)		.309 N.S.	1.534 N.S.	−1.050 N.S.	−1.948 N.S.(.052)

※ '매우 필요' 1점, '매우 불필요' 4점으로 계산한 것임.

단, 〈표 4-65〉에서의 집단 간 평균점수의 차이는 (〈표 4-62〉에서와는 달리) 크다고 볼 수 없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전관예우 경험 변호사들이 이런 제도적 장치 도입에 대해 더 소극적이라고까지 말할 수준은 아니다.

3. 전관예우 방지책의 기본 방향성에 관한 응답

가.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 방지정책의 우선성

전관예우 방지대책의 기본 방향을 크게 몇 가지로 잡아볼 경우, 장기적·근본적인 대책으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아예 출현조차 못하도록 '평생 법관제나 평생 검사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꼽아볼 수 있고, 대체로 현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의 제재 강화 조치로 '전관변호사 수임 제한 확대 및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을 꼽아볼 수 있으며,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처벌 대신 '전관예우 감시 및 예방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 등을 꼽아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향성 혹은 이에 덧붙여 각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타의 다른 방향성까지 합쳐서 가장 우선시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은 결과, 전체적으로는 '전관예우 감시 및 예방 기능 확대'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5.4%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전관변호사 수입제한 확대 및 위반 시 처벌강화' 역시 34.8%로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별로 살펴보면 판사출신 변호사는 전관예우 감시 및 예방 기능 확대를 가장 우선시할만하다는 응답이 44.0%, 검사출신 변호사는 5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기타 변호사는 전관변호사 수임 제한 확대 및 위반 시 처벌강화가 3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처벌보다는 예방 기능의 확대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비해, 나머지 변호사들은 처벌강화를 약간 더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뚜렷한 차이는 아니다.

[표 4-66] 변호사 출신별 전관예우 방지대책의 기본 방향

단위: 명(%)

전관예우 방지 대책 기본 방향	변호사 출신 구별			
	판사출신 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기타 변호사	계
평생법관제 혹은 평생 검사제 정착	5 (20.0)	5 (22.7)	128 (28.3)	138 (27.6)
전관변호사 수임 제한 확대 및 위반 시 처벌강화	**8 (32.0)**	**6 (27.3)**	**160 (35.3)**	**174 (34.8)**
전관예우 감시 및 예방 기능 확대	**11 (44.0)**	**11 (50.0)**	**155 (34.2)**	**177 (35.4)**
기타	1 (4.0)	0 (0.0)	10 (2.2)	11 (2.2)
계	25 (100.0)	22 (100.0)	453 (100.0)	500 (100.0)

x^2=4.111 (df=6), N.S.

판사나 검사직에 있다가 퇴직한 47명의 변호사들에 한정하여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대책의 기본 방향 중 무엇이 가장 우선시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이 46.8%의 전관예우 감시 및 예방 기능의 확대이고, 그 다음이 29.8%의 전관변호사 수임 제한 확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였다. 평생 법관제 혹은 평생 검사제 정착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1.3%로 가장 낮게 나왔다.

[표 4-67] 판검사출신 변호사 퇴직 시 직위별 전관예우 방지대책의 기본 방향

단위: 명(%)

전관예우 방지 대책 기본 방향	퇴직 시 직위			
	평판사 평검사	부장판사 부장검사	검사장 법원장	계
평생법관제 혹은 평생 검사제 정착	3 (20.0)	6 (23.1)	1 (16.7)	10 (21.3)
전관변호사 수임 제한 확대 및 위반 시 처벌강화	6 (40.0)	6 (23.1)	2 (33.3)	14 (29.8)
전관예우 감시 및 예방 기능 확대	**6 (40.0)**	**13 (50.0)**	**3 (50.0)**	**22 (46.8)**
기타	0 (0.0)	1 (3.8)	0 (0.0)	1 (2.1)
계	15 (100.0)	26 (100.0)	6 (100.0)	47 (100.0)

x^2=2.080 (df=6), N.S.

이를 퇴직 시 직위에 따라 분류해 보면,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로 퇴직했거나 검사장이나 법원장으로 퇴직한 변호사들이 전관예우 감시 및 예방 기능의 확대를 가장 우선시해야 할 대책을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표본수가 적은 상태에서 범주를 세분화하다보니 평판사 혹은 평검사 출신들과의 유의미한 수준의 의견차이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나. 전관예우 경험 유무에 따른 전관예우 방지대책의 우선성

전관예우 경험 유무에 따라 전관예우 방지대책의 기본 방향의 우선성에 대한 응답을 구별해 보면, 전관예우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전관변호사 수임 제한 확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에 우선성을 둔 경우가 35.8%로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해, 전관예우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은 '전관예우 감시 및 예방 기능 확대'에 우선성을 둔 경우가 38.1%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전관예우 유경험 변호사들 중에서 '평생 법관제 혹은 평생 검사제 정착'을 가장 우선시 한 변호사들은 33.9%, 전관예우 무경험 변호사들 중에서는 25.8%로 나타나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표 4-68] 전관예우 경험 유무별 전관예우 방지대책의 기본 방향

단위: 명(%)

전관예우 방지 대책 기본 방향	전관예우 경험 여부		
	있음	없음	계
평생법관제 혹은 평생 검사제 정착	37 (33.9)	101 (25.8)	138 (27.6)
전관변호사 수임 제한 확대 및 위반 시 처벌강화	**39** **(35.8)**	135 (34.5)	174 (34.8)
전관예우 감시 및 예방 기능 확대	28 (25.7)	**149** **(38.1)**	177 (35.4)
기타	5 (4.6)	6 (1.5)	11 (2.2)
계	109 (100.0)	391 (100.0)	500 (100.0)

x^2=9.396 (df=3), p<.05

이렇듯 두 집단 사이의 의견 차이는 꽤 뚜렷하여,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6절 | 변호사 응답결과와 의뢰인 응답결과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전관예우에 대한 변호사들의 응답결과들 중에는 의뢰인들의 응답결과들과 비교해 볼 만한 것들이 있다. 우선 설문문항 중에는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변호사 설문지와 의뢰인 설문지 모두에서 동일하게 구성된 문항들이 존재한다. 이에 덧붙여 동일한 문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을만한 문항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해 차례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전관예우에 대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인식 차이: 동일문항 비교

가. 전관예우의 존재에 대한 의견 차이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그런데 변호사 표본에서는 매우 많다는 응답이 13.2%인데

의뢰인 표본에서는 과반이 넘는 56.7%이다. 변호사 표본에서는 약간 있다는 응답이 64.6%로 가장 많았고, 의뢰인 표본에서는 38.4%에 머문다. 전관예우 현상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변호사의 경우 22.2%인 반면, 의뢰인 집단에서는 4.8%로 매우 소수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는 의뢰인들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집단 간 의견 차이는 워낙 뚜렷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표 4-69] 전관예우 관행 정도에 대한 변호사집단과 의뢰인들(소송경험자) 간 인식 차이

단위: 명(%)

현재 전관예우 현상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집단 차이	
	변호사	의뢰인
매우 많다	66 (13.2)	**397** **(56.7)**
약간 있다	**323** **(64.6)**	**269** **(38.4)**
별로 없다	**104** **(20.8)**	31 (4.4)
전혀 없다	7 (1.4)	3 (0.4)
계	500 (100.0)	700 (100.0)

x^2=256.422 (df=3), p<.001

나. 전관변호사 선임의 유리함에 대한 의견 차이

이러한 경향은 전관변호사 선임이 소송에서 유리한지에 대한 생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변호사 표본에서는 매우 유리하다는 응답이 9.8%에 머문 반면 의뢰인 표본에서는 44.4%에 이르고, 약간 유리하다는 응답이 변호사 표본에서는 59.8%로 많이 나왔고 의뢰인 표본에서도 45.6%로 많이 나온 편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 전관변호사 선임이 소송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사 보다 의뢰인이 그러한 생각을 훨씬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을 나타난다.

또한,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변호사 표본에서 30.0%나 나온 반면, 의뢰인 표본에서는 8.1%에 불과하다. 이렇듯 집단 간 의견 차이가 워낙 뚜렷해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표 4-70] 전관변호사 선임에 대한 변호사집단과 의뢰인들 간 인식 차이

단위: 명(%)

전관변호사 선임이 소송에서 유리한지에 대한 생각	집단 차이	
	변호사	의뢰인
매우 유리	49 (9.8)	**311** **(44.4)**
약간 유리	**299** **(59.8)**	**319** **(45.6)**
별 차이 없음	**150** **(30.0)**	57 (8.1)
약간 불리	2 (0.4)	10 (1.4)
매우 불리	0 (0.0)	3 (0.4)
계	500 (100.0)	700 (100.0)

x^2=214.054 (df=4), p<.001

다. 전관예우 방지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차이

전관예우 방지책의 효과에 대한 의견에서는 대체로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에서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71] 전관예우 방지책 효과에 대한 변호사집단과 의뢰인들 간 인식 차이

단위: 명(%)

전관예우 방지책 효과에 대한 인식	집단 차이	
	변호사	의뢰인
매우 효과있음	2 (0.4)	74 (10.6)
대체로 효과있음	**225** **(45.0)**	**244** **(34.9)**
별로 효과없음	**261** **(52.2)**	**290** **(41.4)**
전혀 효과없음	12 (2.4)	92 (13.1)
계	500 (100.0)	700 (100.0)

x^2=101.532 (df=3), p<.001

변호사 응답자 중 52.2%는 '별로 효과 없다', 2.4%는 '전혀 효과 없다'고 응답하여 도합 54.6%가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뢰인 응답자들도 합계만을 볼 경우 54.5%가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견의 정도에 있어서도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의뢰인들의 경우 '전혀 효과 없다'는 의견이 13.1%나 되는 데 비해, 변호사들은 같은 의견이 2.4%에 불과하였다. '매우 효과 있다'는 의견에 있어서도 의뢰인들은 10.6%가 응답한 것에 비해, 변호사들은 0.4%만이 그와 같은 의견을 표출하였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들에 비해 양극단적인 의견의 비중이 좀 더 높았던 것이다.

2. 전관변호사 비율과 관련된 변호사와 의뢰인들 사이의 응답 격차

가. 판검사출신 변호사 비율에 관한 응답 차이

본 장의 앞부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의뢰인들이 선임한 변호사들 중에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비율과 변호사조사에 응한 변호사들이 스스로 밝힌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비율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표 4-72〉로 비교해 보았듯이, 의뢰인들이 선임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들 중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비중은 50.1%에 달하는 데 비해, 변호사조사에 응한 변호사들이 스스로 밝힌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비율은 9.4%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표 4-72] 의뢰인조사와 변호사조사에서의 판검사출신 변호사 비율 응답 차이

단위: 명(%)

구분	의뢰인들이 선임한 변호사의 출신	변호사조사에 응한 변호사들의 출신	2018년 기준 변호사 모집단 분포※
판·검사출신 변호사	**351 (50.1)**	47 (9.4)	3,082 (15.0)
기타 변호사 (모름 포함)	349 (49.9)	**453 (90.6)**	**17,472 (85.0)**
계	700 (100.0)	500 (100.0)	20,554 (100.0)

※ 자료의 출처와 계산법은 제3장의 〈표 3-15〉 참조

변호사들이 직접 응답한 결과는 2018년 기준 변호사 모집단 분포에서의 판·검사출신 변호사 비율에 좀 더 가깝다면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실은 그보다도 약간은

더 낮은 비율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일부가 응답 자체를 회피하여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나. 최근 퇴임한 전관변호사의 비율 차이

다음에 정리한 표를 보면, 의뢰인들과 변호사들의 응답 차이는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비율에 그치지 않고, 가장 최근에 퇴임한 변호사의 비중에 있어서도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의뢰인들이 선임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 중 판·검사직 퇴임 후 변호사 선임 시기까지의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4.2%였는데, 변호사조사 결과에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응답한 퇴임 후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1%에 불과하였다. 3년 미만의 경우, 의뢰인 조사에서는 63%에 달했으나, 변호사 조사에서는 8.5%에 지나지 않았다. 5년 미만으로 볼 경우, 의뢰인 조사에서는 무려 76.6%에 이르렀던 것에 비해 변호사 조사에서는 단지 12.8%에 불과하여 그 격차가 극심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4-73] 의뢰인조사와 변호사조사에서의 최근 퇴임 전관변호사 비율 차이

단위: %

퇴직	의뢰인들이 선임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최근 퇴임 전관 비율※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응답한 최근 퇴임 전관 비율
1년 미만 비율	**14.2**	**2.1**
3년 미만 누적 비율	**63.0**	**8.5**
5년 미만 누적 비율	**76.6**	**12.8**

※ 의뢰인조사에서는 선임한 전관변호사의 전직 퇴임 기간을 모르는 경우가 4.1%였음에 유의

이와 같이 커다란 격차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함의하는 바는 분명하다. 이는 의뢰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뿐만 아니라, 같은 판·검사출신 변호사들 중에서도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관변호사들의 실제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퇴임한 지 얼마 안 되는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의뢰인들의 선호도가 그야말로 대단하다.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전관변호사들의 사건 수임건수는 평균적인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건수보다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위 표에 나타난 수치들은 현실보다는 좀 더 과장된 것일 수 있다는 점 정도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임한 전관변호사들의 전직 퇴임 시기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 등 의뢰인 조사결과에서의 응답 오류들이 있을 수 있고,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관변호사들이 변호사 조사에 참여한 비율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비율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무효화되지는 않을 것임은 확실하다.

다. 전관변호사들의 퇴임 시 직위에 대한 응답 차이

전관변호사들의 퇴임 전 직위와 관련해서는, 의뢰인들과 변호사들 사이의 응답 차이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다소의 차이가 없지는 아니하였다.

[표 4-74] 의뢰인조사와 변호사조사에서의 전관변호사들의 퇴임 시 직위 차이

단위: %

퇴직	의뢰인들이 선임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퇴임 시 특정직위의 비율※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응답한 퇴임 시 특정직위의 비율
평판검사의 비율	19.4	31.9
부장판검사 이상 누적 비율	72.0	68.1

※ 의뢰인조사에서는 선임한 전관변호사의 퇴임 전 직위를 모르는 경우가 8.5%였음에 유의

〈표 4-74〉를 볼 때, 의뢰인들이 선임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퇴임 시 직위가 평판사나 평검사였던 경우는 19.4%인데 비해,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응답한 퇴임 시 직위가 평판사나 평검사의 경우는 31.9%로 나타나, 의뢰인 조사에서의 평판검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이상인 경우 의뢰인들의 응답에서는 72%, 변호사들의 응답에서는 68.1%로 나타나

의뢰인들의 경우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그다지 큰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만하다.

참고로, 의뢰인 응답에서 합계가 100%가 안 되는 이유는 전관변호사의 퇴임 전 직위를 모른다는 응답에 의한 것인데, 혹시라도 모른다는 응답의 대부분이 평판사나 평검사인 경우라고 한다면 퇴임 전 직위에 있어 의뢰인들의 응답과 변호사들의 응답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평검사나 평판사의 지위에서 퇴임하는 사례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7절 | 변호사 대상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결과들 중에서 특기할 만한 부분들을 뽑아서 다시 한 번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들의 최근 전관예우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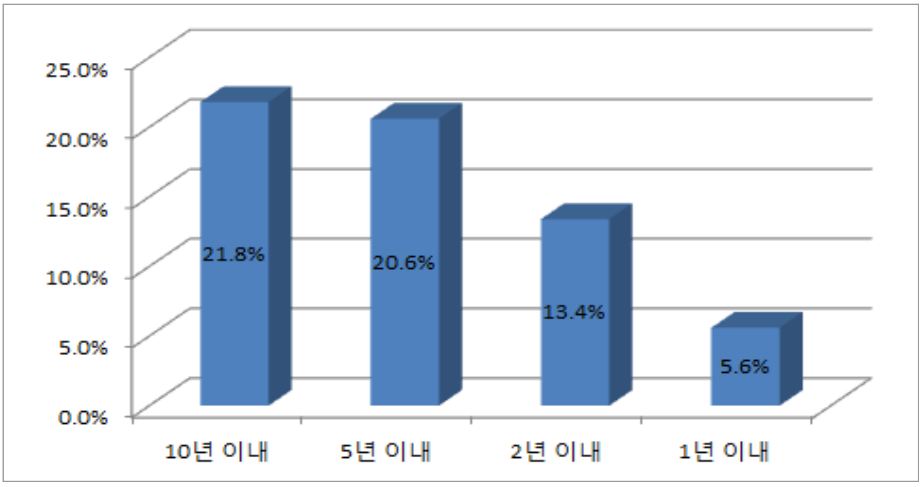
① 최근 10년 이내 전관예우 경험 비율 - 설문조사에 응답한 변호사 500명 중 최근 10년 이내에 전관예우 사례를 경험한 변호사는 109명으로 그 비율은 21.8%에 달했다.

② 최근 5년 이내 전관예우 경험 비율 – 최근 5년 이내에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103명으로 전체 응답 변호사 500명 중 20.6%에 해당된 것으로 타낚다.

③ 최근 2년 이내 전관예우 경험 비율 – 최근 2년 내에 전관예우를 경험한 변호사들은 67명으로 500명 중 13.4%이다.

④ 최근 1년 이내 전관예우 경험 비율 – 최근 1년 내 전관예우를 경험한 변호사들은 28명으로 500명 중 5.6%이다.

[그림 4-2] 설문응답 변호사들의 최근 전관예우 경험자 비율



2.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경험

① 성별 전관예우 경험 차이 – 여성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경험률은 27.6%로, 남성 변호사들의 경험률 19.9%보다 높게 나타났다.

② 연령대별 전관예우 경험 차이 –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변호사들은 25.1%(370명 중 93명)의 전관예우 경험률을 나타낸 데 비해, 50대 이상 변호사들은 12.3%(130명 중 16명)의 경험률을 나타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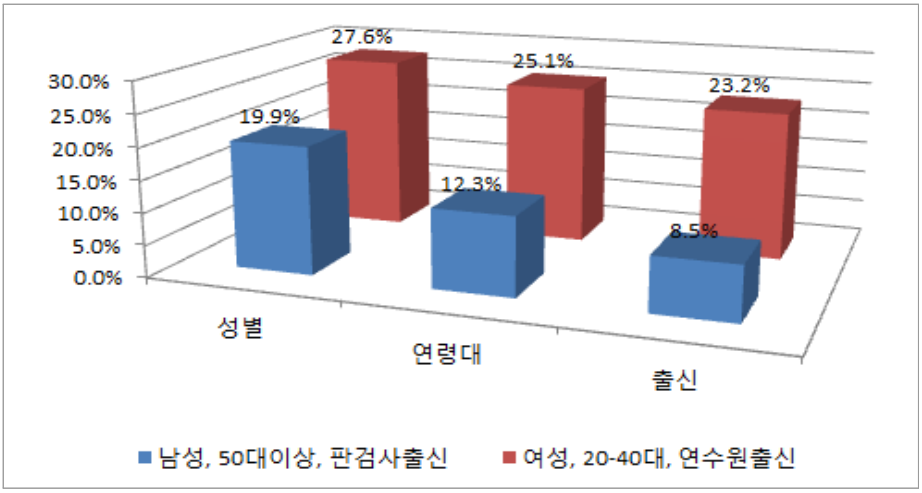
③ 변호사 출신별 경험 차이 –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은 8.5%의 전관예우 경험률을 보인 반면, 기타 변호사들은 23.2%의 경험률을 나타내 보였다.

④ 전관예우 경험 사건의 대다수는 형사소송 – 10년 내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경험하게 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장 최근 사건 기준으로 형사사건이 72.5%(109명 중 79명)이었고, 민사·가사사건이 25.7%(28명), 행정·조세사건이 1.8%(2명)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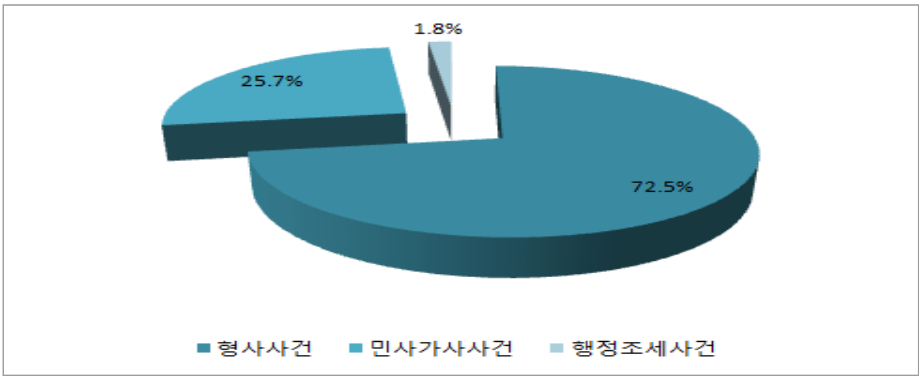
⑤ 형사사건 전관예우 경험 단계 절반 이상은 검찰 수사단계 – 형사사건에서 경험한 전관예우 혜택을 단계별로 보면, 검찰 수사단계가 51.9%로 가장 높았고, 재판 단계는 1,2,3심 모두 합쳐 34.2%에 지나지 않았다. 구속 관련 단계는 10.1%, 경찰 단계는 3.8%였다.

⑥ 선임계 미제출, 전화변론 등에 관한 인식과 경험 – 선임계 미제출은 변호사의 46.2%가 그 존재를 인정했고, 4.2%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전화변론은 49%의 변호사가 존재를 인정했고, 4.4%가 이를 경험했다고 한다.

[그림 4-3] 성별·연령별·출신별 전관예우 경험률



[그림 4-4] 가장 최근 전관예우 경험 사건의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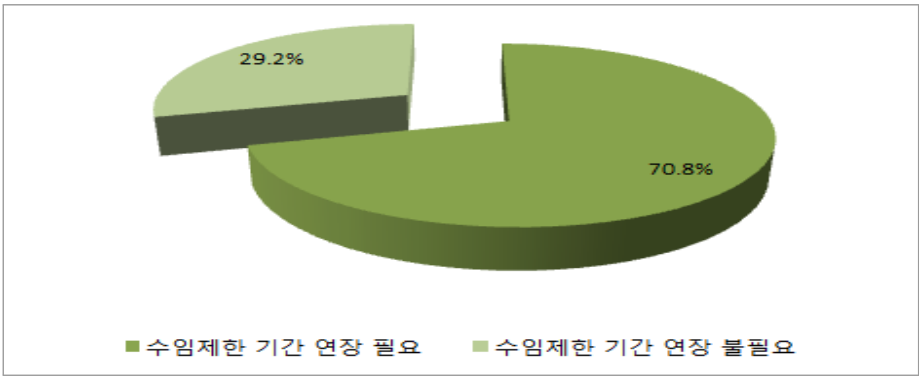
3. 전관예우 대책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의견

① 현행 변호사법 전관예우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 – 설문 참여 변호사의 70.8%는 현행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 연장 기간은 3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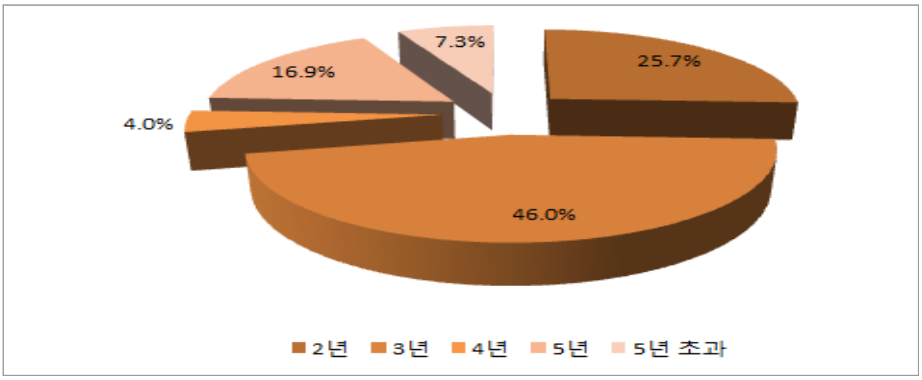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②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방지대책 우선 순위 - 여러 가지 전관예우 방지대책들 중에서 변호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책 세 가지는 '선임계 미제출 변론 및 전화 변론 등 편법에 대한 강력 규제', '법조계 이외 영역의 고위공직자 대형 로펌 취업 규제', '수임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의 순이었다.

[그림 4-5] 현행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1년 규정 연장 필요성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



[그림 4-6] 적정한 수임제한 기간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



4. 의뢰인 조사와 변호사 조사 간의 주요 응답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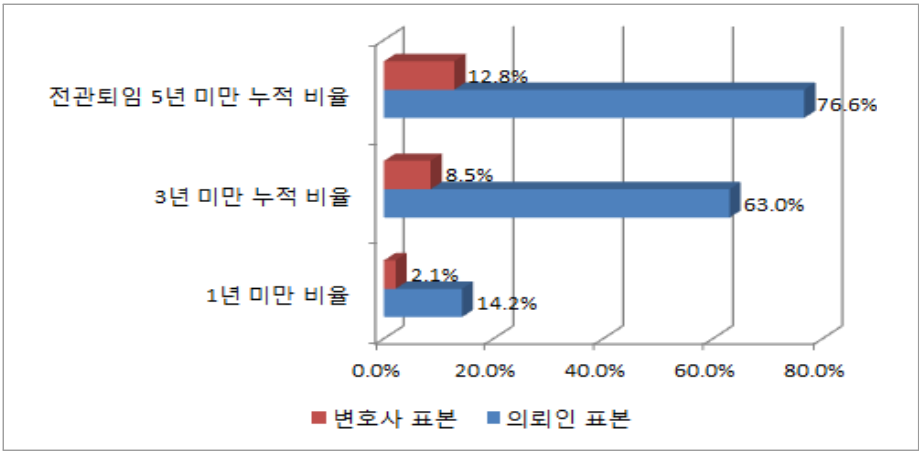
① 전관예우 관행의 존재에 관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견 차이 - 변호사든 의뢰인이든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점에서는 같으나(77.8% 대

95.1%), 의뢰인들은 변호사들에 비해 전관예우 관행이 훨씬 더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였다(매우 많다는 의견 56.7% 대 13.2%).

② 전관변호사 선임의 이득에 대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견 차이 – 변호사든 의뢰인이든 전관변호사 선임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69.6% 대 90%), 의뢰인들은 변호사들에 비해 전관변호사 선임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인식하였다(매우 유리하다는 의견 44.4% 대 9.8%).

③ 의뢰인조사와 변호사조사에서의 최근 퇴임 전관변호사 비율 차이 – 의뢰인 표본에서 전관 퇴임 1년 미만을 선임한 의뢰인은 14.2%인데 변호사 표본에서 퇴임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판검사출신 변호사는 2.1%였고, 3년 미만 누적 비율의 경우 의뢰인은 63%인데 변호사 표본에서는 8.5%였으며, 5년 미만 누적 비율의 경우 의뢰인은 76.6%인데 변호사 표본에서는 12.8% 불과하여 그 격차가 극심하였다.

[그림 4-7] 의뢰인 조사와 변호사 조사의 전관변호사 퇴임 기간 비교



5. 종합적 판단

이 장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① 과거(5년 이내 20.6%)는 물론 최근 1년 이내(5.6%)에도 전관예우를 경험한 바 있다는 변호사들이 존재하는데, ② 그 경험은 남성변호사보다는 여성변호사가, 나이든 변호사보다는 젊은 변호사가, 판·검사출신 변호사보다는 연수원출신 변호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③ 그러한

경험은 주로 형사사건(72.5%)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④ 형사사건 중에서는 재판 단계(1,2,3심 합쳐서 34.2%)보다는 검찰 수사단계(51.9%) 등 재판 전 단계에서 더 많이 경험되었다고 한다. 한편, ⑤ 의뢰인과 변호사의 응답을 교차하여 비교했을 때, 의뢰인이 선임한 전관변호사의 퇴임연한은 전관변호사 전체 퇴임연한보다도 대단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 중 하나는 형사사건에서의 전관예우 관행의 비중과 검사출신 전관변호사의 비중에 관한 것이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사 및 연구의 방법론적 수월성 때문에 전관예우 현상은 많은 경우에 판사출신 변호사의 영역에서 연구되어 오곤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증이 어려운 검사출신 변호사의 영역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하지만, 이 장에서 살펴본 결과는 형사사건에서의 전관예우 관행과 검사출신 전관변호사의 질적·양적 비중도 상당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변호사 시장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여성 변호사, 젊은 변호사, 비전관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변호사들의 불만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제3장의 소결에서 언급한 것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의뢰인들은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더 많이 선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같은 판검사출신 변호사들 중에서도 퇴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전관 변호사를 실제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선임하고 있다는 근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변천

이 천 현

제5장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변천

제1절 | 서론

전관예우(前官禮遇)는 1961년 우리말 큰사전에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라는 뜻으로 처음 등재되었으나,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퇴직한 판·검사가 수임한 사건을 후배인 현직 판·검사가 봐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변질되었다고 한다.[67]

이러한 의미 변화의 타당성은 전관예우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발생과 이에 대한 방지대책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1990년 후반까지 약 50여 년간은 전관예우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문제나 문제인식은 없었고 이에 따라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제도개혁은 없었던 시기로 생각된다. 물론 1973년에 '변호사 개업지 제한제도'가 도입되었기는 하지만 동 제도의 도입배경이나 사법시장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그다지 전관예우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호황을 맞이하면서 사법시장 규모도 커지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IMF 구제금융 직전)에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1997년)〉과 〈대전 법조비리 사건(1999년)〉이 밝혀지면서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또한 1993년 문민정부로의 이행과정 이후에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본격적으

67) 동아일보 2019-04-22(전관예우 실태 첫 객관적 분석… 통계자료 A4 70만장 분량)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22/95158685/1)(2019.11.08. 확인)

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약 10여년 동안에는 사법제도 전반의 변화(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 로스쿨 도입, 양형기준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법조일원화 등) 속에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책들이 입법적 · 제도적으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홍○○의 전관비리 사건〉과 〈정○○ 구명로비 사건〉 등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전관예우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발생은 종래 전관예우 근절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의 보강 · 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여전히 이 개선작업은 진행 중에 있다.

이하에서는 정부 변화를 기준으로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 정부수립~노태우 정부(1948~1993년)

1. 서론

정부수립 이후부터 노태우 정부까지(1948~1993년) 약 45여년 동안에는 1973년의 개정 「변호사법」에 개업제한제도가 도입된 경우 이외에는 전관예우 관련 특별한 제도 개혁은 찾아보기 어렵다.

1973년의 퇴임공직자의 개업지 제한제도의 도입은 - 비상국무회의에 상정 · 가결되어 시행된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지만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최초의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1989년에 위헌 판결을 받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약 20여건 제출되었으나 전관예우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개업지 제한제도 도입 (1973년, 변호사법 개정)

가. 도입

1973년 1월에 개정된 「변호사법」[68]에서는 판사 ·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지를 제한하는 개업지 제한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판사 · 검사 등은 변호사 업무개시의 신고 전 2년 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개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당시 변호사법 제8조 제5항 신설).

이것은 "판사나 검사 등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그 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정실개입의 위험을 배제하고,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한 것이다.[69]

〈변호사법(법률 제2452호, 1973.1.25. 개정 · 시행)〉

제8조 ① ~ ④ (생략)

⑤ 판사·검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군법무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경찰공무원의 재직기간이 통산하여 15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업무 개시의 신고전 2년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개업할 수 없다. 다만, 정년으로 퇴직하거나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전항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방법원에 설치된 각 지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퇴임공직자의 개업지 제한제도의 도입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도되었다고 한다. 개업지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법사위에 제안이 되자 서울지법단독판사 20여명이 모여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한다(1968년 11월 30일자 동아일보기사('판검사 변호사개업 지역제한안 법관들 크게 반발'). 이러한 현직 판사, 검사들의 반발로 인해 이 제도는 1973년에 들어와서야 국회에 통과된 것이라 해석되기도 한다.[70]

---

68) 법률 제2452호 (1973.01.25. 개정 · 시행).

69) 헌법재판소 1989.11.20. 선고 89헌가102 결정 참조(여기에서는 "또한 위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대상자를 관계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통산하여 15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중략) 중견판사 및 검사를 확보하기 위함도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의 하나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1973년 통과된 개업지 제한 변호사법 규정에 대한 저항은 1968년 11월 30일자 동아일보기사에서 볼 수 있다. '판검사 변호사개업 지역제한안 법관들 크게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이 법안이 국회법사위에 제안이 되자 서울민형사지법단독판사 2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이 개정법률안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당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사와 형사법원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 기사에는 단독판사뿐만 아니라 민형사지법 부장판사들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모인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직 판사, 검사들의 반발이 주효하였는지, 이 법안은 73년에 들어와서야 국회통과가 된 것이다.

이 규정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 스스로 개업을 하겠다는 판사, 검사들은 예상된 현실인데, 소신있는 판결을 하다가 재임용이 되지 않은 판사들에게도 이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소신판사들을 제약하는 악법으로도 작용을 하였다."

※ 출처: 위의 대한변협신문 2016-02-01

어떻든 1973년 개정 변호사법(법률 제2452호 (1973.01.25. 개정 · 시행))은 1973년 1월 19일 대통령이 발의하여 "제3회 비상국무회의"[71]에 상정 · 가결되어 시행된 특수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72][73]

또한, 특징적인 점은 "정년으로 퇴직하거나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개업지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다는 것이다(당시 법 제8조 제5항 단서).

나. 경과: 위헌 결정

1989년 7월 18일에 개업제한제도(당시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74]에 대하여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이 제청되었다.[75] 동 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인은 군법무관

70) 대한변협신문 2016-02-01([변협의 숨은 역사(33)] 전관변호사 개업제한의 역사(2), 박형연,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5)(2019.10.21.확인).

71)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국회(제5대 국회 법정임기: 1971.5.25.~1975.5.24.)가 해산되고 그 권한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하였다(중앙일보 1972-10-18,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비상 국무회의서 헌법조항 일부 수행|개헌안 11월 27일 내 국민투표 회부")(https://news.joins.com/article/1332760)(2019.10.21. 확인). 비상국무회의에 관한 것은 「비상국무회의법」(법률 제2348호, 1972.10.23. 제정 · 시행) 참조.

72) 의안번호 제BB0107호(1973.1.19. 대통령 제안, 1973.1.19. 의결)(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07612)(2019.10.23. 확인)

73)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대행하면서 단기간 중 엄청난 입법활동을 벌였는데, 비상국무회의법(법률 제2348호)을 시작으로 270건의 법률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고 한다(임병수, "법제처 50년의 발자취", 법제 1998년 8월호(http://www.moleg.go.kr/knowledge/publication/monthlyPublicationSrch?mpbLegPstSeq=129655)(2019.10.23. 확인).

74) 1973년 개정 변호사법(1973.01.25. 법률 제2452호) 제8조 제5항 및 제6항은 1982년 변호사법 개정(1982.12.31. 법률3594호)으로 – 동일한 내용으로 -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변경되었다.

출신인 오○○변호사였다. 오○○변호사는 1989년 1월 전역한 후 1989년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자격등록신청과 개업신고를 하였으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제청신청인이 그 개업신고전 2년이내에 서울지방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육군본부 법무감실에서 송무장교로 근무한 사실을 들어 그 등록 및 신고를 거부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변호사자격등록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89년 7월 18일에 법 제10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76]

헌법재판소는 1989년 11월에 '개업제한제도'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제한의 적정성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게 된다.[77] 위헌 결정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78]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5조).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종사할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는 개인의 직업적 활동을 하는 장소 즉 직장을 선택할 자유도 포함된다. 이러한 원칙은 변호사와 같이 자유로운 전문직의 경우라 하여 달리 취급될 수는 없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중요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 · 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2)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제한의 적정성 침해

법 제10조 제2항은 법조경력이 15년이 되지 아니한 변호사가 개업신고전 2년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 3년간 개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개업이 금지된 곳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 법률조항이 – 변호사의 개업지를 제한하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 특정사건으로부터 정실개입의 소지가 있는 변호사의 관

75) 서울고등법원(1989.7.18. 89카323 위헌여부 심판제청).

76) 헌법재판소 1989.11.20. 선고 89헌가102 결정 참조.

77) "법 제10조 제2항이 변호사의 개업지를 일정한 경우 제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그 입법취지의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수단이 그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것이고 나아가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로 개업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 제10조 제2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에 각 위반된다. 또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군법무관의 경우는 헌법 제39조 제2항의 경우에도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89.11.20. 선고 89헌가102 결정).

78) 이하의 위헌판결 내용은 〈헌법재판소 1989.11.20. 선고 89헌가102 결정〉의 내용을 요약 · 정리한 것이다.

여를 배제하여 법률사무의 공정성과 공신성을 확보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위 법률조항이 정한 개업지의 제한은 결국 정실배제라는 목적실현에도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3) 과잉금지 원칙 위배

법 제10조 제2항은 각 지방법원의 규모 및 사회환경에 따른 특성에 관한 합리적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개업지를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예컨대, 서울의 경우 정실개입의 개연성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비하여 개업지 제한의 범위는 오히려 국내에 근무하는 판사의 약 45퍼센트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는 국민에게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는 직업행사의 자유를 심히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이 미치는 최전방 소재의 군사법원에서 복무하던 군법무관이 전역하여 변호사로 개업하고자 할 때 서울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어느 곳에서도 개업할 수 없다는 점을 상정해보면 그 제한의 정도가 얼마나 부당하게 과잉한 것인가를 쉽사리 알 수 있다.

4) 평등의 원칙 위배

법 제10조 제2항은 변호사의 개업지를 제한하면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경찰공무원의 재직기간이 통산하여 15년에 달하는 경우와 정년으로 퇴직하거나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의 조항이 정한 개업지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그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업무에 친분관계로 인한 영향을 미칠 소지는 적어진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법 제10조 제2항은 재직경력이 긴 사람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 사람과 구별하여 그 개업지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변호사로서의 개업을 하고자 하는 동일한 처지에 있는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 할 것이다.

특히, 법 제10조 제2항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자에게도 적용될 때에는 –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즉시 개업하는 변호사의 경우 개업지를 선택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자는 전역후 변호사로 개업함에 있어 개업지의 제한을 받게 된다. 군법무관으로의 복무 여부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와는 달리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1989.11.20. 선고 89헌가102 결정 (요약 · 정리)

3. 변호사법 개정 동향

약 45여년 동안(1948~1993년)에 약 20여건의 변호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처리되었으나,[79] 상술한 1973년 개정법을 제외하고는 전관예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개정법률안은 없었다.

79) 이 가운데 총 6차례의 변호사법 개정이 이루어졌다(1962.4.3. 개정, 1962.9.24. 개정, 1971.12.2.8. 개정, 1973.1.25. 개정, 1973.12.20. 개정, 1982.12.31. 전부개정)(타법개정에 의한 개정 제외)

제3절 | 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1993~2003년)

1. 서론

가. 개요

김영삼 정부시기(1993.2.~1998.2.)에는 대법원의 변호사·검사의 판사실 출입제한 조치의 제도화(1993.7.) 이외에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특별한 제도적 노력은 없었다. 그러나 법조비리, 특히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대형 법조비리사건이 1997년과 1999년에 밝혀졌다. 1997년에 의정부 지역의 판사출신 변호사가 알선료를 주고 법원·검찰 직원과 경찰, 법무사 등으로부터 사건 수임을 알선 받은 이른바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 밝혀져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약 2년 후인 1999년 1월에 대전지검 검사출신인 변호사가 판·검사, 검찰·법원 직원, 경찰관 등 100여명으로부터 사건 수임을 알선받고 소개비를 준 이른바 〈대전 법조비리사건〉이 터졌다.

이 두 사건은 법조비리의 대표적 사건으로 뽑히고 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200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전관예우 근절을 포함한 법조개혁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에 먼저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대전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대중 정부시기(1998.2.~2003.2.)에는 위의 대형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법의 전면개정(2000.1)을 통해 법조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1999)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내놓기도 하였다.

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1997년)

이 사건은 의정부지역의 법조비리를 수사 중[80]이던 검찰이 1997년 10월 의정부지

80) 이○○ 변호사는 1995년 6월 변호사 개업이후 약 2년6개월 동안 210건의 사건을 수임하였고(의정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 70%를 수임하였다고 함), 그는 사건을 잘 끌어오는 사무장들에게 월급 외에 스카우트비로 5,000만원 ~ 1억원을 주었고 사무장들은 경찰서 유치장에 머무르며 사건을 싹쓸이 했다고 한다. 이러한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이○○ 변호사의 사무장을 구속하였는데 전·현직 판·검사 20여명의 이름이 적힌 수첩이 발견되었다(국민뉴스 2016-08-09)(① 반복되는 법조비리 일취월장 10년새 2배…입으로 말로만 '척결')(http://www.kookminnews.

방법원 주변에서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던 판사출신 이○○ 변호사(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끝으로 1995년 6월 의정부에서 변호사 개업)가 알선료를 주고 법원·검찰 직원과 경찰, 법무사 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변호사의 사무장 등 11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입건 하면서부터 드러났다.[81]

이○○ 변호사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1998.2.9.에 구속·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고 - 뇌물공여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1998년 6월). 항소심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나(1998년 10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2심 재판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2000년 6월).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이○○ 변호사에게 - 뇌물공여죄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비위사실이 확인된 판사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지원장을 포함한 38명의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들을 전원 교체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장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검찰도 대검차장의 사과와 함께 금전거래를 한 검사 등 2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12명에 대해 경고조치하였다. 그리고 대한변협은 이○○ 변호사를 제명한 것을 시작으로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 시작하였다.[82]

1) 사건 개요

피고인 이○○ 변호사는 ① 사건사무장인 공소외 A와 사이에 남양주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수사사건의 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선임료의 3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여, 1997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0월 13일경까지 62회에 걸쳐 소개비 합계 금 8,814만 원을 지급하면서 수사사건을 알선받았으며, ② 사무장인 공소외 B와 사이에 법원·검찰의 직원과 법무사 등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선임료의 2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여, 1995. 11. 21.부

---

com/news/view.php?idx=12418&mcode=m7mass27)(2019.10.22. 확인).

81) 법률신문 2000-09-01 ((법조포커스) 의정부법조비리사건 2년10개월만에 종지부)(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 2799)(2019.10.24. 확인)

82) 법률신문 2000-09-01 ((법조포커스) 의정부법조비리사건 2년10개월만에 종지부)(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799)(2019.10.24. 확인).

터 1997년 10월경까지 48회에 걸쳐 소개비 합계 금 5,070만 원을 지급하면서 수사 또는 소송사건을 알선받음으로써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83]

2) 제1심[84]

제1심은 – 다음과 같이 - 피고인 이○○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는, 사건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한 행위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은 뒤, 사건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하고, 그 알선을 한 자에게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85]

3) 제2심[86]

제2심에서는 – 다음과 같은 이유로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⑴ 이 사건에서도 뇌물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B를 통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을 소개받아 이를 수임하고 사건개요 및 관련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사건처리와 관련한 편의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공받으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금원공여의 취지가 수사사건을 소개해 준 대가뿐만 아니라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도 경찰관의 직무와 그 금원의 공여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

---

83) 대법원 2000.6.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재구성).
8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8.6.15. 선고 98고합44 판결.
85) 제1심 판결의 내용은 〈서울고등법원 1998.10.13. 선고 98노1690 판결〉 판결문 2~3면 참조.
86) 서울고등법원 1998.10.13. 선고 98노1690 판결.

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경찰관들에게 공여한 원심 판시의 각 금원은 모두 경찰관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87]

⑵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 변호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1항에서 따로 처벌하고 있는 이상, 같은 법 제90조 제2호에 규정된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의 의미는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사건의 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건을 알선한 자라는 의미로 풀이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위 법조문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은 뒤, 사건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하고, 그 알선한 자에게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88]

4) 대법원[89]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 다음과 같이 -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2심 재판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⑴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각각 피고인측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조사대상인 피의자들에게 피고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알선하고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경찰관들에게 수사사건의 알선 및 편의제공의 대가로서 금품을 제공한 이상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⑵ 변호사법 위반 관련[90]하여, 비변호사인 경찰관 등이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같은 법 제90조 제2호 후단

87) 위의 98노1690 판결문 3~4면.
88) 위의 98노1690 판결문 5면.
89) 대법원 2000.6.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90) 비변호사인 경찰관, 법원·검찰의 직원 등이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후단 소정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변호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비변호사들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경우 같은 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

소정의 알선에 해당하고, 따라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비변호사들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행위는 같은 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 위반죄를 구성한다(다수의견).

[다수의견]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대가로서의 보수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고,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1항에서 따로 처벌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비변호사인 경찰관, 법원 · 검찰의 직원 등이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같은 법 제90조 제2호 후단 소정의 알선에 해당하고, 따라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비변호사들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행위는 같은 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 위반죄를 구성한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제27조 제1항이 신설되고 그 위반행위를 같은 법 제90조 제3호에서 따로 처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같은 법 제90조 제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를 종전과 달리 보아 여기에는 비변호사에 대한 법률사건의 알선만이 해당되고, 변호사에 대한 법률사건의 알선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와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을 신설한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90조 제2호 후단의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에 아무런 무리가 없으며, 그 의미와 내용이 불명확한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91]

[반대의견]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후단의 알선의 대상에 변호사를 포함시키는 데에 찬성하기 어려운바, 그 이유는, 첫째 법규정의 문언이나 조문의 배열,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의 고유업무인 법률사건 등의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으로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과 제90조 제2호 후단의 규정이 있는데 전자는 정규 변호사에 대하여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 대하여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략) 이 경우 위 2개의 처벌조항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상상적 경합관계인지, 특별관계인지, 그냥 중첩적 관계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어느 견해에 의하여도 그 관계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으며, 그래서 입법상의 실수라거나 부적절한 입법으로 보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반드시 실수 등으로 돌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둘째 (중략) 형사사법에 있어 죄형법정주의 또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90조 제2호의 '알선'의 상대방에는 '변호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셋째 이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변호사가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직·간접으로 조장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여 필요성의 법리만으로 무리하게 법해석을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변호사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로부터 사건 수임을 알선받는다 함은 이 사건의 범행인 알선 전에 이미 알선행위를 한 자로부터 알선받는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뜻이고, '이러한 행위'는 '이러한 사건 또는 사무'라는 표현과는 달리 같은 법 제90조 제2호 전문의 행위 즉 '변호사 아닌 자가 대가를 결부시킨 법률사무 취급을 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로부터 알선받는다' 함은 '비변호사의 대가를 결부시킨 법률사무의 대리 등 취급행위를 알선한 자로부터 사건 수임을 알선받는다'는 의미로 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은 '그 정을 알면서' 수임을 알선받는 경우에야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임을 알선받는 변호사가 위에서 본 같은 법 제90조 제2호 중 전문의 법률사무를 스스로 취급한 행위 또는 후문의 변호사 아닌 자에게 알선행위를 한 자라는 정을 알고 수임 알선을 받은 경우에만 그 구성요건이 충족된다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알선자가 위에서 본 사무취급행위 또는 그 사무취급의 알선행위를 한 자라는 점이나 피고인이 그러한 정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옳다.

※ 대법원 2000.6.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5) 서울고등법원[92]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이○○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변호사가 경찰관이나 법원·검찰직원 등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변호사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93]

6) 소결

이 사건은 – 후술하는 - 〈대전 법조비리 사건〉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00년 1월 「변호사법」 개정[94]으로 법조공무원(재판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자신이 취급 중인 법률사건을 특정 변호사 등에게 소개하

91) 결국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0조 제2호와 같은 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동일한 법률에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2개의 처벌규정이 병존하는 셈이고, 이를 법조경합의 특별관계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바, 이는 변호사에 대한 법률사건의 알선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제27조 제1항을 신설하면서 그 적용 범위의 일부가 기존의 제90조 제2호 후단과 중복됨에도 이를 배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입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6.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문 일부).

92) 서울고등법원 2000.8.29. 선고 2000노1754 판결.

93) 법률신문 2000-09-01 ((법조포커스) 의정부법조비리사건 2년10개월만에 종지부)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799)(2019.10.24. 확인).

94) 법률 제6207호 (2000.1.28. 전부개정, 2000.7.29. 시행)

지 못하도록 하는 '법조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제도'와 법조브로커이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도입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법 제34조, 제36조, 제37조).

다. 대전 법조비리 사건 (1999년)

이 사건은 1999.1.7. 한 언론이 - 이○○ 변호사의 사무장이었던 A로부터 사건수임장부를 입수하여 - 부패사실(판·검사들과의 금품거래, 전관예우)을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출신 이○○ 변호사(대전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을 끝으로 1992년 6월 대전에서 변호사 개업)가 1994년부터 검찰, 법원 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 100여명으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소개비를 지급한 사건이다.[95]

이○○ 변호사는 1999.1.13.에 구속되었고 1999.1.29.에 변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죄 혐의로 기소되었다.[96] 피고인 이○○ 변호사는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2000년),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2001년). 이후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의 형이 확정되었다(2002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현직 검찰 직원 6명이 구속되고, 검사장 2명을 포함한 검사 6명은 사표 수리, 2명은 징계, 5명은 인사조치하는 한편, 판사 5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하였다. 법원 직원 11명, 경찰 21명, 교도관 4명에 대한 비위 사실도 해당기관에 통보되었다.[97]

1) 사건 개요

피고인 이○○ 변호사는 -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공동피고인 A와 B, 공소 외 C와 공모하여 - 1994년 2월 하순경부터 1997년 9월 하순경까지 총 202회에 걸쳐 총 100여

95) 1999년 1월 7일 대전MBC가 이○○ 변호사의 전사무장 김○로부터 입수한 사건 수임장부 632매를 공개하면서 판·검사, 검찰·법원 직원, 경찰관, 교도관 등 2백여명이 이○○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로 건당 20만~300만원씩 받았다고 보도하였다(서울신문 1999-02-02 ("수사발표문 요지"), 4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90202004005)(2019.10.24. 확인)

96) 중앙일보 1999-01-30 "이종기 변호사 기소까지"
(https://news.joins.com/article/3748698)(2019.10.24. 확인)

97) 월간조선 2000년 7월호,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李宗基 변호사는 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나, 언론의 보도와 판결 사이의 괴리는 누구 책임인가.)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 &nNewsNumb= 200007100073)(2019.10.24. 확인)

명의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의 일반 직원들, 대전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들, 교도관들, 일반인들에게서 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1,170만 원을 지급하고, 1995년 5월 초순경부터 1997년 5월 초순경까지 11회에 걸쳐 총 10명의 대전지방검찰청 일반 직원들과 대전 지역 경찰관들로부터 취급 중이었거나 취급하였던 수사사건의 수임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합계 640만원의 돈을 교부함으로써 경찰관이나 검찰 직원들의 수사 업무나 수사 보조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98]

2) 제1심[99]

제1심은 피고인 이○○ 변호사에게 변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변호사법 위반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과 법률 사건의 수임을 알선한 사람들이 대가 수수에 관하여 사전에 명시 또는 묵시의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법 제90조 제2항 관련),[100]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돈을 줄 것을 약속하고 변호사 아닌 사람에게서 법률 사건 수임의 알선을 받은 점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뇌물공여죄에 대하여는, 경찰 또는 검찰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들을 피고인 이○○ 변호사에게 소개한 것 이외에 같은 사건들에 관하여 달리 편의를 제공한 바가 없고,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이른바 사건 소개 행위 자체는 그 사건을 직접 수사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 변호사의 활동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개 행위 자체는 위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101]

---

98) 〈대전고등법원 2001.2.2. 선고 2000노117 판결〉 판결문 12~15면, 22~36면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99) 대전지방법원 2000.2.15. 선고 99고합37 판결.
100) 구 변호사법(2000.1.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01) 제1심 판결 내용은 〈대전고등법원 2001.2.2. 선고 2000노117 판결〉의 판결문 3면, 9면 참조.

3) 제2심[102]

제2심은 – 다음과 같이 - 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103]

⑴ 법 제90조 제2호 후문에 규정된 사람에게서 사건을 소개받은 변호사를 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려면 사건을 소개받기 이전에 약속 등이 있어야 한다(이러한 전제에 관한 한 제1심 판결의 판단은 옳다).

그러나 ① 대전 지역에서는 경찰관들, 교도관들, 법원·검찰청 직원들이나 사건 소개를 업으로 하는 일반인들(이하 "소개인들"이라 함)이 사건을 소개하면 그들에게 소송 착수금의 20% 정도를 사례비로 주는 관행이 있어 소개인들은 사건을 소개하면 사전에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착수금의 20% 내외를 사례비 명목으로 받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② 피고인도 그와 같은 관행이나 실정, 소개인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관행에 따라 착수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소개한 사람들에게 직접 주거나 자신이 고용한 사무장 등을 통하여 사례비로 지급하여 왔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소개인들은 사건을 변호사인 피고인 이○○에게 소개함으로써 대가 수수 약속의 청약을 한 것이고, 피고인 이○○와 그 사무장인 다른 피고인들은 그에 따라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청약자에 대한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행위(민법 제532조 참조)를 한 것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수임과 동시에 대가 수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결국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규정된 대가 수수 약속의 성립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데 터잡은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104]

⑵ 수사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이 그가 직접 수사하는 또는 수사하였던 사건의 당사자를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그 변호사에게서 어떤 청탁을 받거나 변호사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돈의 수수는 그

---

102) 대전고등법원 2001.2.2. 선고 2000노117 판결.

103) 함께 기소된 A 사무장에 대하여는 횡령죄 등을 추가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48만원을 선고하였고, B 사무장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위의 2000노117 판결).

104) 위의 2000노117 판결문 6~8면.

자체가 직무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그르치는 것으로서, 그가 담당하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계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돈이 당시 시행 중이던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한 대가라는 성질을 겸유(兼有)하고 있고, 돈을 받은 때가 이미 그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소한 이후로서 해당 공무원이 더 이상 그 사건의 추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돈은 뇌물임이 분명한 것이다. (더구나 위와 같은 수사 담당 공무원들은 위 사건을 송치한 경찰서 또는 기소한 검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신병 처리나 기소 여부의 결정, 공소 유지 등과 관련된 보완 수사 및 각종 자료의 추송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당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특히, 뇌물 범죄에서 말하는 직무 관련성이란 수수된 이익과 해당 공무원의 법령상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관련성을 뜻하는 것이지, 이익의 수수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현실로 행한 특정한 행위(이 경우는 법률 사건의 수임 알선 행위)와 그가 본래 담당하는 직무의 관련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105]

4) 대법원[106]

대법원은 - 다음과 같이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형이 확정되었다.

(1) 법 제90조 제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이익)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하며, 이러한 보수의 지급에 관한 약속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변호사인 피고인이 소개인들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으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관행에 편승하여 사례비를 지급하고 비변호사인 소개인들로부터 법률사건의

105) 위의 2000노117 판결문 10~11면.
106)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도970 판결.

수임을 알선받은 경우, 소개인들과 사이에 법률사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 지급에 관한 명시적이거나 적어도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107]

(2)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이익의 다과 ·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수사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이 그가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하였던 사건의 당사자를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의 수수는 뇌물이라 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대전검찰청의 일반직원 또는 대전지역의 경찰관들로부터 그들이 취급 중이거나 취급하였던 수사 사건의 수임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돈을 교부한 행위를 뇌물공여죄로 의율 ·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108]

5) 소결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사건이 항소심 진행 중인 2000년 6월 15일에 대법원은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109] 이에 따라 본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110]

---

107) 위의 2001도970 판결문 내용
108) 위의 2001도970 판결문 내용
109) 대법원 2000.6.15. 선고 98도3697 판결.
110) "구 변호사법 제90조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해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이익)를 알선을

〈대전 법조비리사건〉은 -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함께 - 후술하는 바와 같이 - 2000년 1월「변호사법」개정[111]을 통해 법조브로커이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과 법조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법 제34조, 제36조, 제37조).

한편, 대전법조비리 사건은 - 검사 6명과 판사 2명이 사표를 내게 한 사건으로서 - 검찰 집단에서 사상 초유의 "항명사태"를 가져온 사건으로서 이후 소장 검사의 집단행동 사태와 검찰개혁운동의 촉발제가 되었다. 즉 대전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사표를 종용받던 심재륜 고검장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검찰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1999.1.27.), 이 사건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수사 결과에 반발한 소장 검사들이 검찰 수뇌부의 퇴진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확보 등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고(1999.2.2.), 검찰은 심재륜 고검장을 근무지 이탈과 성명서 발표, 법조비리 등을 이유로 면직시켰다(1999.2.3.).[112][113]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한 여론 악화와 소장검사들의 항명파동을 수습하기 위해,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예산과 운영에 독립성을 부여한 '공직자비리조사처'를 검찰총장 산하에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법조개혁협의체'를 설치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비리 근절 및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1999.2.2.).[114]

2. 제도 도입

가. 변호사·검사의 법관면담절차 제도 마련(1993년, 대법원 지침)

대법원은 - 제2차 전국법원장회의(1993.06.07.)를 열어 - 법관과 변호사, 검사가 유착되어 있다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법관의 존엄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동안 일부 법원에서 실시해 온 변호사·검사의 판사실 출입제한 조치를

의뢰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6.15. 선고 98도3697 판결).

111) 법률 제6207호 (2000.1.28. 전부개정, 2000.7.29. 시행)

112) 심재륜은 이에 대하여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1999.3.19.), 2001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1999년 2월의 면직처분은 무효가 되었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면직처분취소]).

113) 사법감시센터, 김대중 정부 5년 검찰백서, 2003.3., 206~207면.

114) 사법감시센터, 김대중 정부 5년 검찰백서, 2003.3., 209면.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기 위하여,[115] 1993년 7월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면담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116] 법관집무실에서 법관과 면담을 원하는 변호사 및 검사는 관련절차에 따르도록 제도화하였다.

즉 법관집무실에서 법관과 면담을 원하는 변호사 및 검사는 면담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도 가능), 면담신청을 받은 법원사무관 등은 면담신청서를 법관에게 제출하고, 법관은 면담신청서의 '법관의 허가'란 중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동 지침 제2조). 그리고 법원사무관 등은 법관이 면담을 허가한 경우에는 면담신청인과 상대방에게, 면담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각 그 취지를 전화, 모사전송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 지침 제3조).

2006년 10월 동 지침은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117] - 당시 지침에는 '일반인들'의 법관집무실 출입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 법관을 방문하거나 면담하는 변호사, 검사 이외의 일반인은 출입대장에 성명, 직업, 방문대상 법관의 성명, 방문목적을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지침 제4조 신설).[118]

나. "특별재판부" 운영(1995년, 대법원 예규 마련)

1)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원은 - 퇴직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 1995년 7월 「특정형사사건 재배당에 관한 예규(재형 95-3)」[119]를 제정하여 "특별재판부"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120]

이 특별재판부는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퇴임 후 1년 이내에 수임한

115) 한겨레 1993-06-08일자 15면(변호사등 판사실 출입제한 전국법원에 확대 실시키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93-06-08&officeId=00028&pageNo=1)(2019.12.10. 확인)
116) 행정예규 제193호 (1993.07.03. 제정, 1993.07.12. 시행)
117) 행정예규 제681호 (2006.10.19. 개정, 2006.10.23. 시행)
118)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은 2006년 10월 개정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19) 재판예규 제430호 (1995.06.16. 제정, 1995.07.01. 시행)
120) 국회의원 김동철, 보도자료(2006-11-1) "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대법원", 12~15면 참조. (http://www.kdc2000.com/bbs/list.html?table=bbs_2&idxno=17171&page=31&total=764&sc_area=&sc_word=)(2019.10.21. 확인)

사건[121]에 대하여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이다(예규 제2조, 제3조). 즉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의해 배당된 사건에서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이미 선임되었거나, 배당 후 선임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 받은 담당재판부(합의부 및 단독판사)의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건에 대하여 재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재배당요구를 받은 사건배당의 주관자는 재배당요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하였다(예규 제4조 제1항・제2항).

특별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는 수석부장판사(단,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는 형사수석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가 없는 법원의 경우에는 선임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형사재판 담당판사(재판장 및 단독판사를 포함한다) 중 2인을 배석판사로 하여 구성하고, (2) 지방법원지원에서는 지원장을 재판장으로 하고 형사재판 담당판사(재판장 및 단독판사를 포함한다) 중 2인을 배석판사로 하여 구성한다(예규 제5조 제1항). 그리고 (3) 제1심 단독사건은 위에 규정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이 담당한다. 다만, 단독 지원에서는 지원장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예규 제5조 제2항).

2) 변화

특별재판부 구성은 2006년의 동 예규의 개정[122]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졌다. 즉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공석일 경우, 형사사건을 전담하지 아니하는 선임부장판사가 특정형사사건을 담당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선임부장판사가 특정형사사건 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예규 제5조 제1항 1호), 전국에서 단독지원이 모두 해소되었으므로, 단독지원의 경우 지원장이 특정형사사건을 담당하도록 한 예규 제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였다(예규 제5조 제2항 단서 삭제).

한편 2007년의 동 예규의 개정[123]을 통해 특별재판부 재배당 예외 규정이 마련되었다. 즉 당시 예규에 따르면, 사건배당 주관자는 이른바 전관변호사가 선임되기만 하면

121) 형사 제1,2심 사건(신청사건 중 구속적부심사청구 및 보석청구사건을 포함) 및 감호 제1,2심 사건에 한한다(예규 제1조).
122) 재판예규 제1093호 (2006.08.22. 개정, 2006.08.23. 시행)
123) 재판예규 제1126호 (2007.03.28. 개정, 2007.03.28. 시행)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을 특정형사부로 재배당하여야 하는데, 전관변호사와 특정형사부 사이에 연고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재배당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현행 예규에 따라 재배당된 사건을 다시 재배당한 사례도 있었다.[124]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배당주관자가 전관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받더라도 특정형사부 법관과 전관변호사 사이에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등 재배당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예규 제4조 제2항 단서 신설).

3) 폐지

2008년 3월의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의 개정에 따라[125]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재형 95-3)」이 폐지되면서 특별재판부도 폐지되었다. 다만, 종래의 내용은 "제척사유 등으로 인한 배당의 특례" 가운데 하나로 규정되게 된다. 즉,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겸임, 직무대리, 파견 등의 경우 실제로 근무한 법원)에 형사 제1, 2심 사건(신청사건 중 구속적부심사청구 및 보석청구사건 포함) 및 치료감호 제1, 2심 사건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사건의 변호인이 법무법인일 때에는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된 경우도 포함)한 경우 그 변호사와 당해 법원에서 최근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법관이 재판장인 재판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었다(당시 예규 제10조의3 제2항).

그리고 2012년 3월 동 예규 개정[126]으로 위의 내용도 완전히 삭제되었다. 2011년 개정 변호사법[127]에 사건수임제한제도(법 제31조)가 도입되면서[128] 그 수임제한 변호사의 범위가 동 예규상의 특정변호사의 범위보다 광범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당시 예규 제10조의3 제2항 삭제).[129]

---

124) 재판예규 제1126호 (2007.03.28. 개정) 개정 이유 참조.
125) 재판예규 제1212호 (2008.3.20. 개정, 2008.4.1. 시행)
126) 재판예규 제1383호 (2012.3.7. 개정・시행)
127) 법률 제10627호 (2011.05.17. 개정・시행)
128) 상세한 내용은 후술 참조 바람.
129) 위의 재판예규 제1383호 (2012.3.7. 개정・시행) 개정이유 참조.

다. 「법관윤리강령」 제정(1995년)

1995년 6월에 제정된 「법관윤리강령」[130]은 법관의 청렴성 및 공정성의 유지의무 등 추상적 규정(당시 강령 제4조) 외에도 "법관은 재판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 밖에서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등과 면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면담의 금지도 규정하였다(당시 강령 제9조, 현행 강령 제4조 제4항).

동 강령은 1998년 6월 전부개정[131]을 통해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경제적 행위제한 규정이 추가되었다(강령 제6조).

라. 「검사윤리강령」 제정(1998년)

1998년 12월에 제정된 「검사윤리강령」[132]에서도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관계인과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하도록 규정하였다(당시 강령 제8조).

마. 대한변호사협회의 '감찰위원' 제도 도입(1998년)

대한변호사협회는 -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을 계기로 1998년 5월 「윤리위원회규정」(1997.12.15. 제정, 1998.5.25. 개정)의 개정을 통해 - 각 지방변호사회 단위로 적정수의 감찰위원을 두도록 하고(윤리위원회규정 제9조 제1항), 감찰위원은 매달 1회 이상 관내 소속변호사들의 사건수임실태와 변호사윤리규칙 위반사항을 조사·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윤리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133]

감찰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소속변호사들에게 매월 사건수임과 관련

130) 대법원규칙 제1374호 (1995.6.23. 제정, 1995.7.1. 시행)
131) 대법원규칙 제1544호 (1998.6.11. 전부개정·시행)
132) 법무부훈령 제404호 (1998.12.29. 제정, 1999.1.1. 시행)
133) 모성준·서용성·최유나,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61면.

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윤리위원회규정 제10조 제2항), 또한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소속변호사들의 수임사건수, 사건명, 사무직원명단 등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윤리위원회규정 제10조 제2항). 관내 소속변호사는 감찰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윤리위원회규정 제10조 제2항).

동 제도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134]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해당 변호사들 중 전관 출신 변호사가 많았고, 이들이 수입자료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았고, 협조의무 불이행이나 허위보고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미하여 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135]

바. 「변호사법」 전면개정(2000년)

상술한 바와 같이,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전관의 사건수임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이러한 전관의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2000년 1월 전부개정된 「변호사법」[136]에는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변호사회를 통한 소속 변호사의 감독강화 및 사건수임의 투명화를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다.[137] 특히 재판·수사기관 직원들과 변호사와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하여 법조공무원의 사건소개를 금지하고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 선전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하여 사건브로커이용 변호사 등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호사·사무직원의 사건유치목적의 수사

---

134) 2000년도 기사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00년 2월) 2일에 2천년을 맞아 새로운 감찰위원 24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감찰위원(서울회 12명은 추후 위촉)은 지난해에 비해 4명이 증원된 것으로 각 지방회별로 1-4명을 윤리위원장이 협회장에게 추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위촉한 것이다. 이들 감찰위원들은 금년 한해동안 각 소속회원들의 사건수임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감찰하여 대한변협에 보고서를 내면 변협은 이를 토대로 조사하여 징계결정을 내리게 된다."(법률신문, 2000-02-11.)(대한변협, 2천년도 감찰위원 24명 위촉)(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129)(2019.11.01. 확인).

135) 모성준·서용성·최유나,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61면.

136) 법률 제6207호 (2000.01.28. 전부개정, 2000.07.29. 시행). 이 개정법률은 – 상술한 - 1998년 12월의 이용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1075호, 1998.05.15. 제안)과 1999년 2월의 정부안(의안번호 제51839호, 1999.02.26. 제안)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장안(대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의안번호 제152496호, 1999.12.17. 제안).

137) 헌법재판소 2013.5.30. 선고 2011헌마131 결정 참조.

기관 등의 출입을 금지시켰다.[138]

1) 법조공무원 등의 사건 소개금지 제도

법조공무원 등의 사건 소개금지 제도는 두 가지로 형태로 규정되었다.

(1)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재판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소속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법 제36조).[139][140]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는 관련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 사건을 소개받은 의뢰인은 사건소개 공무원이 당해 사건의 재판이나 수사에도 영향력을 끼쳐 줄 것으로 기대·요구하게 되며, 사건소개를 한 공무원은 그 소개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동료 공무원에게 그 사건의 선처를 부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사건소개를 받은 변호사는 사건소개를 한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보답으로 금품을 제공할 개연성을 야기하는 구조를 갖는다.[141]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142]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으로 한정되며(예를 들어, 대검찰청에 근무 중인 공무원은 대검찰청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소개 등을 할 수 없다), 당사자나 관계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143]

이를 위반한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현행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이들 공무원으로부터 당사자를 소개·알선을 받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으나, 그 변호사가 수임에 관하여 소개

---

138) 위 법률 제6207호(2000.01.28. 개정)의 개정 내용 참조.

139) 다만, 사건 또는 사무의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법 제36조 단서).

140) 이 경우 변호사는 "법원·수사기관 등의 공무원으로부터 해당기관의 사건을 소개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변호사윤리장전 제40조).

141) 법률신문 2018-08-20(정형근, 변호사법 조문해설(제36조))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45818)(2019.10.25. 확인)

142)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이란, ① '재판기관'은 헌법재판소,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각급 법원, 군사법원법에 따른 각급 법원을 말하고, ② '수사기관'은 검찰,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찰이다(변호사법시행령 제8조 참조).

143) 위의 법률신문 2018-08-20 참조.

등의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법 제109조 제2항)(후술 참조).

⑵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소개 금지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법 제37조 제1항).

이것은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사건당사자 및 변호사 등과 접촉할 기회가 많고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사건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이들의 의견을 중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들이 사건브로커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144]

여기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①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또는 ② 위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를 말한다(법 제37조 제2항). 따라서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은 현재 취급하는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취급한 사건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한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13조 제2호). 이들로부터 당사자를 소개·알선을 받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으나, 그 변호사가 수임에 관하여 소개 등의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법 제109조 제2항)(후술 참조).

2) 연고관계 등 선전금지제도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등 사적인 관계를 적시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144) 법제사법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임승관), 변호사법개정법률안(1999.2.26. 정부제출안) 검토보고(1999.3), 12면 참조(이 검토보고에서는 "사건당사자들이 사건수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혈연·지연 또는 학연이 있는 법원·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지인들로부터 얻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사건소개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측면에서 수긍이 가는 점도 없지 않으나 다소 현실과 괴리된 입법조치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다).

것으로 선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법 제30조).[145] 변호사가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적시하면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판 또는 수사업무의 공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146]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고 징계처분만 가능할 뿐이다(법 제91조 제2항).

'연고관계 등 선전금지제도'는 그대로 이어져 현행에 이르고 있다. 다만, 2007년 1월 변호사법 개정[147]으로 - 법조윤리협의회가 신설되면서 -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연고관계 등 선전금지 규정(법 제30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특정변호사에게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법 제89조의5 제2항).[148]

3) 변호사의 사건브로커 이용금지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조브로커 이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법 제34조 제2항 및 제109조 제2호 신설).

이 규정은 - 상술한 바와 같이 -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등에서 이른바 '사건브로커'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처벌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

145)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제4항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46) 정형근, 법조윤리강의, 2018, 88면.
147) 법률 제8271호 (2007.1.26. 개정, 2007.7.27. 시행)
148) 이에 관한 제재는, 2007년 규정 당시에는 수임자료·처리결과의 미제출과 거짓자료 제출 행위에 대하여 모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나(당시 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2013년 법 개정(법률 제11825호, 2013.5.28. 개정·시행) 으로 수임자료·처리결과의 미제출과 거짓자료 제출 행위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후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

4) 사건유치 목적의 법원 등 출입금지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 · 수사기관 · 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법 제35조).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이는 사건수임과 관련한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과 관련공무원들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다.[149]

5) 의무위반과 제재

이상의 내용에 대한 제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관련 변호사에 대한 제재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 의무위반행위와 제재

위반행위	제재	근거조항(변호사법)
재판 · 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 공무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호사: 제재규정 없음** *** 다만 금품 등의 제공 · 약속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 법 제109조 제2항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소개 금지	**소개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변호사: 제재규정 없음** *** 다만 금품 등의 제공 · 약속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113조 제2호 - 법 제109조 제2항
연고관계 선전금지	**제재규정 없음(징계만 가능)**	법 제91조 제2항
변호사의 사건브로커 이용 금지	**사건브로커에게 금품 등의 제공 · 약속을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09조 제2호
사건유치 목적의 법원등 출입금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149) 법제사법위원회(수석전문위원 임승관), 변호사법개정법률안(1999.2.26. 정부제출안) 검토보고(1999.3), 12면.

3. 입법적 시도

1990년대 후반에는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법조비리(전관예우)를 예방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제출되기 시작하였다. 즉 1998년 및 1999년에 아래와 같이 총 3건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고 이것은 - 상술한 바와 같이 - 2000년 1월의 개정 「변호사법」[150]에 반영되었다.

[표 5-2] 1998-1999년 변호사법 개정안

의안번호	제안자 (대표자)	제안일자	주요내용
151075	이용삼의원	1998.12.28. (대안반영 폐기)	- 사건수임을 위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직원의 법원 · 경찰청 등에 대한 출입금지 - 재판 · 수사 · 교정 ·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사건소개행위 금지 - 변호사에 대한 징계규정 및 법정형의 강화
151219	정부	1998.10.09. (1999.02.26. 철회)	- 비리 판 · 검사의 변호사 등록제한 - 법조브로커 및 브로커 이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강화: 5년/1천만원 → 7년/5천만원 - 재판 또는 수사업무 종사 공무원의 사건 알선금지 -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정보 제공의무 신설
151839	정부	1999.02.26. (대안반영 폐기)	- 비리 판 · 검사의 변호사 등록제한 - 재판 또는 수사업무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 선전금지 - 법조브로커 및 브로커 이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강화: 5년/1천만원 → 7년/5천만원 - 재판 또는 수사업무 종사 공무원의 사건 소개금지 -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정보 제공의무 신설

4. 사법개혁 논의

그 동안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1980년대 후반의 정치적 민주화의 결과 1990년대에 이르러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개혁요구가 거세졌고, 이에 따라 1990년대에는 일련의 위원회가 만들어져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었다.[151]

150) 법률 제6207호 (2000.01.28. 전부개정, 2000.07.29. 시행)
15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2006.12., 25면.

가. 사법제도발전위원회(1993년) 및 세계화추진위원회(1995년)

1993.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1993.11.10.~1994.2.26.)는 - 대법원장이 위촉한 법조인, 법학교수, 언론인 등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 총 26개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그 안건들은 판사의 업무경감, 판사의 양성과 보호, 판사의 전문화, 자체 강제력의 확보 등 모두 판사의 재판업무에 관련된 것이거나 사법부 내부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었다.[152]

한편 1995.1월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1995.1.21.~1998.4.15.)를 발족하여 -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53개의 세계화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였고 – 여러 분과 가운데 한 분과로서 사법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법조인 수의 확대(사법시험 합격자수 증원) 이외에 로스쿨 도입 방안, 변호사 보수의 적정화, 공익법무관 제도 및 공공변호사 제도 등을 통한 법률복지의 확충, 법관임용방법의 개선 및 전문화, 법조인의 자질 향상과 직역 확대,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처 등 사법개혁 주제 전반에 대한 주요 의제를 논의하였으나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에 대한 것은 다루지 못하였다.[153]

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년)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직접적인 의제로 다룬 위원회는 1999.5월에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발족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5.7.~1999.12.30.)는 – 위원장과 법조계·학계·언론계·여성계·시민단체·재계 등 사회 각계에서

---

152) 26개의 심의안건: 고등법원 지부의 설치, 법관회의의 입법화, 상설간이법원의 설치, 대법원의 예산안 요구권, 법원경찰의 창설, 대법원의 법률안제출권, 법관임용자격의 강화, 부판사제도의 도입, 행정사건의 심급구조, 특허소송의 심급구조, 상고제도의 개선,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전문법원의 설치, 서울시내 합의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서울 민·형사지방법원의 통합, 사법정책연구원의 설치, 등기·호적청의 설치, 사법보좌관제도, 법관인사위원회 제도,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법관직급제도, 지역별 법관임용제, 사법연수원제도의 개선, 원로법조인력의 활용방안, 법원모욕행위에 대한 제재, 제1심의 구조조정, 민사 항소심의 구조조정(심희기, "1990년대의 사법제도개혁의 동향과 전망", 인권과 정의 제308호(2002), 3면; 권성, "사법개혁의 방향과 문제점", 서울대학교 법학 제35권 제1호(1994.5), 2면).

15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2006.12., 26면; 국가기록원 자료(http://theme.archives.go.kr/next/organ/organBasicInfo.do?code=OG0027444;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845&pageFlag=) 참조(2019.10.28. 확인).

선정된 위원 18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었고 - 법조비리 근절,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 마련,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법조의 선진화·국제화,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법학교육의 정상화 등 6개 부분, 34개 안건에 대하여 연구·검토가 이루어져 최종건의안이 마련되었다.[154]

이 가운데 법조비리 근절과 관련하여서는,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1997년)과 대전 법조비리사건(1999년)을 거치면서 전관예우 문제가 법조비리의 핵심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후 일정 기간 최종 근무기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비리법조인에 대한 징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였다.[155]

그러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방안은 위헌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당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156]

[표 5-3]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법조비리 근절방안(1999.12)

구분	과제	개선방안	비고
1	전관예우 근절방안	**o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후 최종 근무기관의 형사사건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함**	제도개선
2	비리법조인에 대한 징계강화	**o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개방: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변호사와 비법조인을 동수로 하거나 비법조인이 다수가 되도록 함**	제도개선
		o 변호사 윤리규정: 변호사 윤리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변호사 단체에 권고	운영개선
3	법조브로커 근절방안	**o 법무부의 변호사법 개정안[157]에 포함된 다음의 내용을 위원회의 법조브로커 근절방안으로 채택함** **- 변호사 안내제도 도입 및 변호사 광고 허용** **- 비위 전력자의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 제한** **-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를 통한 비리제도 유도** **- 브로커 이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 **-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 제도 도입 등 징계처분 내용 강화** **-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사건유치 목적 법원 및 검찰청 출입금지**	제도개선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 대통령 자문위원회 보고서, 2000, 509면

154)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 대통령 자문위원회 보고서, 2000, 10~11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2006.12., 26면.
155)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 대통령 자문위원회 보고서, 2000, 441~445면.
15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2006.12., 26면.
157) 상술한 의안번호 제51839호 (1999.02.26. 제안). 동 내용은 2000년 변호사법 개정(법률 제6207호)에 반영되었다(상술한 내용 참조).

제4절 | 노무현 정부(2003~2008년)

1. 서론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법개혁위원회(2003)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5)의 활동을 통해 법조인의 윤리의식 제고 및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기초작업에 기반하여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비롯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루지기 시작하였다.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관련하여 2007년에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법조윤리협의회 설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의무 신설,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금지 등의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 내용은 후의 이명박 정부의 제도개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가. 사법개혁위원회(2003~2004년)

2003년에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활동하게 된 "사법개혁위원회"(2003.10.28. ~ 2004.12.27.)는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 법조인의 양성 및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 등 사법개혁 주제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여 2004년 말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가운데 법조인의 윤리의식 제고 및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국 단위의 법조윤리협의기구(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의 설립, 전관(법관 · 검사 ·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사건에 관한 처리결과 등의 신고의무, 법관 및 검사의 면담 절차 강화, 변호사 징계절차의 정비, 선임계 미제출 변호 금지 등의 개선방안 도입을 제안하였다.[158]

158)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2004.12.31.), 60-66면.

〈요약〉

10. 법조윤리의 확립

(1)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

o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고, 전국적인 법조윤리 실태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법조윤리협의기구(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의 설립이 필요

o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결정과 건의, 법조윤리의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법조윤리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강구(단, 징계청원, 고소·고발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은 갖지 아니함),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어야 함

(2) 전관예우의 의혹 불식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방안

o 이른바 전관예우의 의혹을 불식하고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한 감시체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o 이를 위하여, 법관(대법관 포함)·검사·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2년 간 형사사건 및 교통사고·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수임경위 및 처리결과에 관한 자료를 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변호사회는 이를 취합, 정리하여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며, 법원 및 검찰은 수임사건에 관한 처리 결과 등을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위법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 또는 징계를 의뢰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o 아울러 중앙법조윤리협의회의 감시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법조윤리협의회 내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3) 불구속재판의 확대

o (생략)

(4) 법관 및 검사의 윤리의식의 강화

o (생략)

(5) 기피·회피 제도의 적극 활용

o 변호사와 법관 사이에 최근 일정기간 동일한 합의부에서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정한 재판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기피·회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이를 위하여 각 법원별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피·회피 사유를 구체화,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

(6) 법관 및 검사의 면담 절차 강화

o 변호사가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법관을 면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의 허가를 받아 면담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면담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그 상대방에게 고지하여 상대방도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o 그 외에 변호사의 검사 면담절차 등에 관하여도 연구·검토가 필요함

(7) 변호사 징계절차 정비

o (생략)

(8) 선임계 미제출 변호 금지

o 내사, 수사 중이거나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 내지 변론활동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내사사건의 경우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

임료를 받는 경우도 있음

o 내사, 수사 중이거나 재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예외 없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도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면 반드시 선임계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9) 소개금지 규정의 홍보

o 수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변호사를 소개하는 경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아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변호사법 규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브로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2004.12.31.), 60~66면

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5~2006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사법개혁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5.1.1.~2006.12.31.)는 제6차 본위원회(2005.09.12.)에서 중앙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의 징계사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대상사건의 범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조윤리 확립 방안"(의안 제13호)을 의결하였다.[159]

여기에서 의결된 내용은 2006년 3월 정부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127호, 2006.03.29. 제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것은 2007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이어졌다(후술 참조).

〈주요 의결내용 (요약)〉

□ 변호사법

(1) 징계혐의자에 대한 자료제출 등(제11조의2)

o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관, 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징계혐의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퇴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등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자료 및 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제29조의2)

o 변호사는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다.

(3) 변호사의 연수(제85조) (생략)

159)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2006.12., 280면

160) 보다 상세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하), 2006.12., 177-

(4) 중앙법조윤리협의회(제88조 내지 제89조의3)

o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조윤리 실태 분석 및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의뢰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5) 퇴직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제89조의4 내지 6)

o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에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가 된 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사건 중 형사사건(내사사건 포함), 교통사고 ·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피해자를 위하여 수임한 경우에 한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소속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변호사회는 퇴직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 등을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퇴직변호사나 특정변호사에게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변호사 징계규정 정비(제91조, 제92조의2, 제97조의2,3,4, 제98조, 제100조)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2006.12., 280~282면[160]

3. 제도 도입

가.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의결 (2006년, 대법원)

1)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은 -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근거하여 - 추상적 · 보편적 특성을 가진 「법관윤리강령」(2006년 제정)[161]을 구체화하여 법관에게 좀 더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16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은 2006년 권고의견 제1호를 시작으로 2016년 권고의견 제11호까지 의결되었다.[163] 이 가운데 권고의견 제1호가 "법관이 외부인

193면(의안 제13호(법조윤리 확립 방안)) 참조 바람.

161) 1995.6.23. 제정 (대법원규칙 제1374호, 1995.7.1. 시행).

162) 대법원 보도자료(2016-12-23)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11호 의결", 2면 참조.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6〉에서 검색가능(2019. 10.21. 확인)

163)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2006) / 권고의견 제2호 "법관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2007) / 권고의견 제3호 "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2009) / 권고의견 제4호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2009) /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2006.11.05.).

2) 내용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제1호(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는 소송관계인과의 개인적 · 비공식적인 만남 · 접촉 금지, 소송관계인이 될 가능성이 큰 사람 및 사건의 종결 직후의 소송관계인과의 접촉 회피, 타인의 분쟁에 관한 직접적 중재 · 조정 회피, 타인의 분쟁 해결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164]

⑴ 법관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 내지 이해관계자 및 그 사건의 대리인 및 변호인(이하 '소송관계인'이리 함)과 개인적 · 비공식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법관은 공식모임 내지 단체모임, 예를 들어 학술모임, 토론회, 경조사 등에서 소송관계인을 만나는 경우에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⑵ 법관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소송관계인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담당할 사건의 소송관계인이 될 가능성이 큰 사람과는 접촉도 삼가야 한다. 또한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도 그 사건의 성격상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그 소송관계인을 사건의 종결 직후에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⑶ 법관은 타인으로부터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받더라도 이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법관은 직무수행을 제외하고는 타인의 분쟁에 관하여 직접 중재 내지 조정을 하는 행위를 회피하여야 한다. 또한 법관은 타인의 부탁을 받고 검찰과 경찰 또는 다른 법관에게 자신의 신분 내지 직위를 이용한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도 피하여야 한다.

⑷ 법관이 타인으로부터 법률적 조언 또는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는 경우 무색하게 법률적 조언을 해 주거나 법조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스스로 나서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문제인 경우 등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신중히 행동할 필요가 있다.

※ 자료: 한인섭 외, 위의 책, 444면, 455~456면; 위의 이글루스 2015-03-10.

할 때 유의할 사항"(2010) / 권고의견 제6호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2011) /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2012) / 권고의견 제8호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2013) /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2)"(2014) / 권고의견 제10호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2015) / 권고의견 제11호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2016). (자료: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233&gubun=6)(2019.10.14. 확인)

164) 한인섭 · 한상희 · 김재원 · 이상수 · 김희수 · 김인회 · 정한중 · 이전오, 『법조윤리』, 박영사, 2017, 444면, 455~456면; 이글루스 2015-03-10(법관이 법정 밖에서 법률적 조언을 해도 되는가? - 법조윤리의 문제) (http://egloos.zum.com/ajdajfjd2/v/1109938)(2019.10.14. 확인) 참조

나. 양형기준제도 도입(2007년, 법원조직법 개정)

양형에서의 편차발생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전관예우 문제이고, 이러한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 양형기준제의 도입이 주요한 화두가 되었다.[165]

양형기준제도의 도입은 – 상술한 –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로 본격화되었다(2004년). 사법개혁위원회는 법관별 양형 격차를 줄이고 양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량화가 가능하고 정형적인 형사사건에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양형인자를 추출하여 분석한 다음,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참고적 양형기준제의 정립과 양형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양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2004.12.13. 사법개혁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건의문 의결).[166] 이를 이어 받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제8차 본위원회(2005.11.21.)에서 양형자료 조사 제도 도입, 참고적 양형기준제 도입 및 양형위원회 설치 등의 양형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형제도의 개선방안"(의안 제16호)을 의결하였다.[16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 양형기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정부안)이 논의를 거쳐 2006년 4월에 국회에 제출되었고,[168] 2006년 12월에 국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2006.12.22.).

개정「법원조직법」[169]에서는 양형위원회의 설치·구성(법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 신설), 양형기준의 설정 및 공개(법 제81조의6 신설 및 부칙 제2항), 양형기준의 권고적 효력 부여(법 제81조의7 신설) 등을 규정하여 양형기준제도가 도입·시행되었다.

2019년 10월 현재 총 41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다.[170]

---

165) 김재봉,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검찰청 용역보고서(2013), 88면; 양형위원회,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 제1차 공개토론회(2008.6.16.) 자료집, 4~5면; 조선일보 2011-02-08 ([기고] 전관예우 없애려면 구속·양형기준 정립부터(이영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08/2011020802277.html)(2019.10.02. 확인) 등 참조

166)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2004.12.31.), 51~52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2006.12., 225면.

16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2006.12., 226~229면; 동,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하), 2006.12., 247-256면 참조.

168) 의안번호 제174220호 (2006.04.10. 제안)

169) 법률 제8270호 (2007.1.26. 개정, 2007.4.27. 시행)

다.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2007년)

2007년 변호사법 개정법률[171]은 – 특히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된 내용은 - 2006년 3월의 정부제출안(의안번호 제74127호, 2006.03.29. 제안)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 정부제출안은 상술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1) 법조윤리협의회 설치와 기능강화

⑴ 법조윤리협의회 설치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분석,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설기관이다(법 제88조).[172] 즉 윤리협의회는 ①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②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③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④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법 제89조), 특히 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변호사 등으로부터 수임자료 등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등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89조의4 제3항, 후술 참조).

이를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규정하였다(당시 법 제89조 제2항).

---

170) 현행 양형기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바람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171) 법률 제8271호 (2007.01.26. 일부개정, 2007.07.27. 시행). 이 개정법률은 2006년 3월의 이성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4053호, 2016.03.16. 제안), 2006년 5월의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4441호, 2006.05.30. 제안), 2006년 3월의 정부제출안(의안번호: 74127호, 2006.03.29. 제안)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장안(대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의안번호 제175796호, 2006.12.21. 제안).

172) 2006년 3월의 정부제출안(의안번호 제74127호, 2006.03.29. 제안) 제안이유 참조.

⑵ 제도변화

① 2013년 개정

2013년 5월 변호사법 개정법률[173]은 -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요청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그 업무처리결과의 국민에 대한 공개를 위하여 -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에 한정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를 관계 기관에 부과하고(법 제89조 제2항 2문),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법 제89조의9 제1항),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는 법조윤리위원회로부터 수임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9조의9 제2항).[174]

그리고 법조윤리협의회의 사실조회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117조 제3항 제2호).

② 2017년 개정

2017년 3월 변호사법 개정법률[175]에서는 - 더 나아가 -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한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법 제89조 제2항 1문 후단).

이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의 - 사실조회·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 협의회의 '출석요구'나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법 제117조 제3항 제2호 개정).

---

173) 법률 제11825호 (2013.05.28. 개정·시행)
174) 이에 관하여는 후술 참조.
175) 법률 제14584호 (2017.3.14. 개정·시행)

[표 5-4] 법조윤리협의회 규정 변화

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2007.01.26. 개정)	현행 변호사법 (법률 제11825호, 2013.5.28. 개정)	현행 변호사법 (법률 제14584호, 2017.3.14. 개정)
제89조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 및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제89조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좌동)	**제89조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좌동)
② 윤리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자료제출·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⑶ 현행제도

① 구성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법 제89조의2), 협의회에는 3인의 간사와 사무기구를 둔다(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법 제89조의3 제1항 및 제2항)).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89조의3 제4항). 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법 제89조의10, 2017.3.14. 법률개정으로 신설).

② 권한

윤리협의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 업무수행"(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제한되어 있다(법 제89조 제2항 전단).

한편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89조 제2항 후단). 그러나 이러한 현장 출입·조사권 행사는 - 관계기관 전반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한정된다(법 제89조 제2항 후단). 출입·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법 제89조 제3항).[176]

③ 의무

윤리협의회는 매년 업무수행(법 제89조 제1항)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89조의9 제1항). 이 규정에 의해 윤리협의회가 매년 수행하는 전관예

176) 사실조회,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제18조의5에 규정되어 있다.

우 근절을 위한 활동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상황이 국회에 보고된다.

또한 윤리협의회는 – 비밀유지의무(법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받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법 제89조의4 제3항) 및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법 제89조의5 제2항)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89조의9 제2항). 다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의 경우에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로 한정하고 있고, ⓑ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함)으로 한정하고 있다(법 제89조의9 제2항 제1호 및 제2호).

[표 5-5]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방해 등과 제재

위반행위	제재	근거조항
법조윤리협의회의 사실조회, 자료제출 · 출석요구,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징계**	– 변호사법 제117조 제3항 제2호 –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의무

⑴ 제도 도입

공직퇴임변호사(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의무"가 신설되었다(당시 법 제89조의4 신설). 즉,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법 제89조의4 제1항~제3항), 윤리협의회는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목록을 관할 법원·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각 기관의 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현황 또는 처리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89조의6). 그리고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

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징계신청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변호사법 제89조의4 내지 제89조의6 신설).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고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당시 법 제91조, 제117조 제1항 제2호).

이것은 법관, 검사 등 공직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로 인한 사법 불신을 불식하고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규제라 할 수 있다.[177][178]

[표 5-6]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의무 규정 변화

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2007.01.26. 개정)	현행 변호사법 (법률 제15974호, 2018.12.18. 개정 · 시행)
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를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3.2.〉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7) 법률 제8271호 (2007.01.26. 일부개정, 2007.07.27. 시행) 개정이유 참조

178) 수임자료 제출의무는 - 특정 변호사의 브로커 고용을 통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하여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에게도 부과되었다(법 제89조의5 등 참조).

[표 5-6] (계속)

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2007.01.26. 개정)	현행 변호사법 (법률 제15974호, 2018.12.18. 개정 · 시행)
제89조의6 (수임사건 처리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목록을 관할 법원·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현황 또는 처리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의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이나 처리 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89조의7는 제89조의8로 이동 〈2011.5.17〉]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6. (생략) 7. 제89조의4제1항 · 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⑥ (생략)	**제117조(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 · 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7., 2013.5.28.〉 1.~7. (생략) 8. 제89조의4제1항 · 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생략)

⑵ 제도 변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2013년 5월 법 개정[179]으로 두 가지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첫째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제외대상자로 '재판연구관'이 추가되었다(법 제31조 제3항 개정).[180][181] 2007년 규정 당시에는 "공직퇴임변호사"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179) 법률 제11825호 (2013.5.28. 개정 · 시행)

180) **변호사법 제31조**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 ·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라고 규정하고, 여기에서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자만 제외하고 있었다(당시 법 제89조의4 제1항).

둘째는, 제재 규정의 변화이다. 2007년 규정 당시에는 수임자료·처리결과의 미제출과 거짓자료 제출 행위에 대하여 모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당시 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2013년 법 개정으로 수임자료·처리결과의 미제출과 거짓자료 제출 행위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후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182]

⑶ 현행 제도

① 수임자료 제출의무자

수임자료 제출의무자는 "공직퇴임변호사"이다. 공직퇴임변호사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법 제31조 제3항). "장기복무 군법무관"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자가 군법무관 시보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을 복무하고 전역한 자를 말한다(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등 일반 행정부처 출신 변호사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183]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81) 2011년 5월 변호사법 개정(법률 제10627호, 2011.5.17. 개정)으로 종래 법 제89조의4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던 공직퇴임변호사 개념 규정이 제31조 제3항으로 이동되었다.

182) 2019년 5월의 금태섭 의원 대표발의안(변호사법 개정안, 의안번호 제20496호, 2019.05.17. 제안)에서는,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변호인선임서 없이 변호하더라도 처벌이 너무 경미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있고(안 제112조제4호의2 신설),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협회에 제출하지 않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13조제8호 신설).

18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그 위원장은 정무직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소속변호사로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은 수임 사건으로서 수임자료 제출대상에 해당한다(법 제89조의4 제2항).[184]

② 수임자료 제출 대상사건

수임자료 제출 대상사건은 수임한 사건 모두이다. 상술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개정안(2006년)에서는 수임자료 제출 대상사건을 (a) 형사사건(내사사건 포함), (b) 교통사고·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피해자를 위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한한다), (c)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사건 등으로 제한하여 제출하였으나,[185] 개정법률에서는 제한없이 모든 대상사건에 대하여 수임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금지는 '재판'과 '수사'에 한정되어 있다(변호사법 제29조의2).

③ 수임자료 제출 시기

수임자료 제출 시기는 2년간 매 6개월마다이다. 즉 공직퇴임변호사는 2년 동안에 (a)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b)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89조의4 제1항, 법시행령 제20조의11 제1항).

④ 수임자료 제출 절차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 자료를 2년간 매 6개월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변호사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위의 제출시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86] 그리고 윤리협의회는 자료 제출받은 즉시 그 사건 목록을

공무원에 해당한다(법 제8조 등 참조). 또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및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의 경우에도 - 각 특별법에 따라 -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 또는 직원 등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한변호사협회, 공지사항(2019-01-02) "공직퇴임자의 유의사항" 2면 참조)
(http://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page=1&seq=9143&types=1)(2019.11.08. 확인).

184) 대한변호사협회, 위의 공지사항(2019-01-02), 1~3면 참조.

18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하), 2006.12., 186면.

186)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

관할 법원·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각 기관의 장은 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이나 처리 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89조의4, 제89조의7, 법시행령 제20조의11 제4항 참조).

[표 5-7]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의무위반과 제제

위반행위	제재	근거조항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징계**	- 변호사법 제117조 제1항 -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징계**	- 변호사법 제117조 제2항 제8호 -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3)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금지 제도

(1) 제도 도입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 포함)에 대하여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금지 제도"가 되입되었다(당시 법 제29조의2 신설, 제57조·제58조의16·제58조의30 개정).

당시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 또는 대리활동을 하고 대가를 수수하거나 내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이른바 전화변론 등의 행위는 전관예우의 통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187]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 2007년 신설 당시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규정도 함께 마련되었다(법 제117조 제2호의2).

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법 제89조의4 제4항).

187) 정형근, 법조윤리강의, 2018, 84~85면 참조.

[표 5-8]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금지 규정 변화

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2007.1.26. 개정, 2007.7.27. 시행)	현행 변호사법 (법률 제15974호, 2018.12.18. 개정 · 시행)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계속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제11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2. (생략) 2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 또는 대리한 자 3.~7. (생략) ②~⑥ (생략)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7. (생략)

⑵ 제도 변화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는 전관예우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수임사건 미신고로 인한 조세포탈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에 2017년 3월 법개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 또는 대리하는 경우 – 종래 과태료 부과규정은 삭제하고 -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제재규정이 강화되었다(법 제113조 제4호)[188]

⑶ 현행 제도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2007년 동조 신설한 때와 동일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금지는 '재판'(변호사법 제29조의2 제1호)과 '수사'(변호사법 제29조의2 제2호)에 한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행정심판 사건에서의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대리행위는 동 제도의 규제대상이 아니다.[189]

---

188) 법률 제14584호 (2017.03.14. 일부개정, 2017.03.14. 시행)(개정이유 참조)
189) 정현근, 위의 책, 85면.

한편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금지 제도"는 - 변호사법 제29조의2 외에도 -「변호사윤리장전」(2017.02.27. 개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윤리장전 제23조 제1항),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윤리장전 제23조 제1항).

또한「대한변호사협회 회칙」(2019.05.28. 개정)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 5-9] 변호인선임서 미제출과 제재

법령/규정 위반		제재	근거조항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 대리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5항 위반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징계**	-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 -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4. 입법적 시도

이 시기 동안에도 전관예우 대책으로서 변호사법 개정안이 6건 제출되었다. 이 가운데 2006년 정부안은 - 상술한 - 2007년 1월의 개정「변호사법」에 반영되었고, 그 밖의 개정법률안은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표 5-10] 2003-2007년 변호사법 개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인	제안일자	주요내용
162479	최용규의원	2003.07.26. (임기만료 폐기)	- 법원 · 검찰소속 공무원의 변호사 소개 ·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법원 · 검찰소속 공무원에 대한 법정형과 사건을 직접 담당하거나 그 지휘계통에 있는 법원 · 검찰공무원에 대한 법정형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1년/1천만원)
170462	양승조의원	2004.09.16. (임기만료 폐기)	- 판사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2년간 최종 근무한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표 5-10] (계속)

의안번호	대표발의인	제안일자	주요내용
174127	정부	2006.03.29. (대안반영 폐기)	-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변호사 진출 제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등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요청하고 이를 참조하여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함 -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법조윤리협의기구 설립 -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 의무화
175696	김동철의원	2006.12.12. (임기만료 폐기)	- 변호사 수임계약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 -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보수의 상한은 심급, 사물관할 및 공판 횟수 등을 고려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금지 - 수임료 상한과 성공보수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76760	임종인의원	2007.06.04. (2007.06.15. 철회)	- 최근 3년간 퇴직한 판사의 변호사 개업 여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퇴임 전 2년 이내 근무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는 비율이 약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07년 4월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이상이 전관예우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임 - 퇴직한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이 담당하게 될 사건의 수임을 2년 동안 제한함(안 제31조제4호 신설)
176868	임종인의원	2007.06.15. (임기만료 폐기)	(상동)

제5절 | 이명박 정부(2008~2013년)

1. 서론

이명박 정부 때에는 - 이전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위원회 등의 논의를 기반으로 - 법조일원화를 위한 근거규정이 만들어졌고(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일명 "전관예우방지법"(사건수임제한제도 도입)과 고위공직자의 활동내역 제출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공직윤리법 개정을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되기도 하였다.

2. 제도 도입

가. 재배당제도 강화 (2008년, 대법원 예규 개정)

상술한 바와 같이 2008년 3월의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의 개정으로,[190] "제척사유 등으로 인한 배당의 특례" 가운데 하나로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겸임, 직무대리, 파견 등의 경우 실제로 근무한 법원)에 형사 제1, 2심 사건(신청사건 중 구속적부심사청구 및 보석청구사건 포함) 및 치료감호 제1, 2심 사건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사건의 변호인이 법무법인일 때에는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된 경우도 포함)한 경우 그 변호사와 당해 법원에서 최근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법관이 재판장인 재판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었다(당시 예규 제10조의3 제2항).[191]

나.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

우리나라의 높은 법관의 중도퇴직률은 전관예우 시비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법관의 중도퇴직을 막기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경력 있는 변호사를 판사로 임명하여 오랜 기간 근무를 하는 방식의 도입방안으로서 법조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92][193] 법조일원화는 평생법관으로 근무하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 전관변호사 발생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194]

법조일원화는 - 상술한 -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로 본격화되었다(2004년). 사법개

---

190) 재판예규 제1212호 (2008.3.20. 개정, 2008.4.1. 시행). 이에 따라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한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재형 95-3)」가 폐지되었다.

191) 이 내용은 2012년 3월 동 예규 개정(재판예규 제1383호 (2012.3.7. 개정 · 시행))으로 삭제되었다. 2011년 개정 변호사법(법률 제10627호 (2011.05.17. 개정 · 시행))에 사건수임제한제도(법 제31조)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당시 예규 제10조의3 제2항 삭제).

19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2006.12., 155면.

193) 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여 법조인양성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바뀌었고, 변호사 대량 배출로 변호사의 저변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만큼 판·검사 임용제도도 그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법률신문 2010-02-22(조용식, 법조일원화와 전관예우에 대한 단상))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51383)(2019.12.25. 확인).

194) 중앙일보 2013-03-13(양승태, 법조일원화 정착되면 전관예우 해결)
(https://news.joins.com/article/10927265) (2019.10.21. 확인)

혁위원회는 법관 임용에 있어서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지향하여, 모든 법관은 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험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단계적 시행방안을 건의하였다(2004.7.6. 사법개혁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건의문 의결).[195]

이후 2010년에는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제1기: 2009.7.24.~2010.6.30.)는 전면적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토대 마련 등 새로운 법관임용제도의 필요성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였고, 국회 법사위의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 소위원회"(2009.3.9. 구성안 의결)에서는 법조일원화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196]

결국 2011년 7월 개정 「법원조직법」[197]에서는 -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는 아니지만 - 종래 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구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되어 있던 것을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라고 개정하였다(개정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다.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2011년)

제18대 국회(2008~2012)는 2010년 2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 2010.2.18.~2011.6.30.)를 구성하여 검찰, 법원, 변호사 등 법조 분야 전반의 사법제도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198]

---

195)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2004.12.31.), 13~15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2006.12., 154~159면.

196) 위의 법률신문 2010-02-22: 대법원 보도자료 2013-07-25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보도자료)(〈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6〉에서 검색 가능(2019.10.21. 확인), 2면; 법률신문 2009-02-23(국회 법사위,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 구성)(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45552)(2019.10.21. 확인) 참조.

197) 법률 제10861호 (2011.7.18. 개정, 2011.9.1. 시행). 동 개정법률은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544호, 2009.01.14. 제안)과 여상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953호, 2010.03.24. 제안) 등을 심사한 결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있는 사법부의 인사제도에 관한 부분을 먼저 의결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안(의안번호 제12490호, 2011.06.30.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198)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20개 심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재정신청 제도 개선, 청와대 근무 검사 복직 제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법무부 탈(脫)검찰화, 법원의 검찰측 증거개시 결정 실효성 확보 등, 검사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및 영상녹화물 관련, 검사윤리 및 감찰 강화, 피의사실 공표, 대통령 사면권 남용 억제, 퇴직 판검사 형사사건수임제한, 무변촌 개업 변호사 국가지원, 징계 관련 판검사 변호사 등록 제한, 출국금

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11년 5월 종래 7건의 변호사 관련 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여 2011년 5월에 「변호사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199] 동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제도(일명 "전관예우방지법")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의 변호사 아닌 고위공직자의 취업 현황 통보제도가 도입되었다.

1) 사건수임제한제도(일명 "전관예우 방지법") 도입

(1) 도입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퇴직 전 1년부터 최종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사건수임제한제도(일명 "전관예우방지법")가 도입되었다(법 제31조 제3항~제5항 신설).

〈변호사법(법률 제10627호, 2011.5.17. 개정·시행)〉

제31조(수임제한) ①~② (생략)

③ 법관, 검사, 군법무관(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군복무는 제외한다),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 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

지 영장제 및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사건 등 성공보수 금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확대, 노동법원 설치, 로스쿨 졸업생 실무수습 6개월 의무화, 양형기준, 영장항고제 등(참여연대 입법의견서)(https://www.peoplepower21.org/Petition/751795)(2019.10.28. 확인) 참조.

199) 법률 제10627호 (2011.05.17. 일부개정·시행). 이 개정법률은 2008년 6월 김동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00037호, 2008.03.17. 제안), 2010년 3월 손범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07945호, 2010.03.2. 제안), 2011년 3월 홍준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11293호, 2011.03.24. 제안) 등 7건에 대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안"(대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의안번호 제1811659호, 2011.04.29. 제안).

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1973년에는 공직퇴임자의 "개업지 제한제도"의 도입이 있었고, 그 때로부터 약 40여년이 지난 2011년에는 공직퇴임자의 "사건수임제한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공직퇴임자의 사건수임제한제도는 - 공직퇴임자의 "개업지 제한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제한의 적정성 침해, 과잉금지 위배, 평등원칙 위배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989년)[200]을 고려하여 지역적 제한이 아닌 – 사무를 일정범위로 제한한 것이다.

위의 제도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2016.3.2.)에 따라 – 2016년 3월 변호사법 개정[201]으로 법 제31조 제4항 제1호에 "또는「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 추가된 것 이외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⑵ 내용

① 수임제한 대상자

수임제한 대상자는 "공직퇴임변호사", 즉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다. 여기에서 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 ·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법 제31조 제3항).[202]

②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은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다(법 제31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제5항).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

200) 상술한 헌법재판소 1989.11.20. 선고 89헌가102 결정 참조.
201) 법률 제14056호 (2016.3.2. 타법개정, 2016.7.1. 시행)
202)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의 개념에 대하여는 상술한 내용(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의무) 참조 바람.

지 아니한 국가기관이나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제5항).

한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지만(법 제31조 제3항), 그 밖의 경우, 예를 들어,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검찰청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는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본다(동법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참조 바람). 따라서, 예를 들어, 대법관으로 퇴직한 변호사는 대법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대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지만, 고등법원이나 중앙지방법원(또는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 등의 사건수임은 가능하다.[203]

③ 수임제한 기간

사건 수임제한 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이다(법 제31조 제3항).

④ 수임제한 사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무원 ·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경우에는 퇴임 후 기간에 상관없이 사건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퇴임자의 사건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은 사건, 즉 "직무상 취급하지 않은 (퇴직 전의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건"이라 할 수 있다.[204]

⑤ 수임제한 범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등"[205]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b)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203) 정형근, 법조윤리강의, 2018, 212~213면 참조.
204) 정형근, 법조윤리강의, 2018, 214면 참조.
205)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법 제31조 제4항 제1호)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c)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법 제31조 제4항 제1호~제4호).

⑥ 예외

공직퇴임자의 사건수임제한제도는 (a)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b)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법 제31조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31조 제3항 단서).

"공익목적의 수임"이란 Ⓐ 국선변호 또는 국선대리, Ⓑ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 Ⓒ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 위의 Ⓐ~Ⓒ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동법시행령 제7조의3).

(3) 제재

공직퇴임자의 사건수임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206][207] 다만,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법 제91조 제2항 제1호).

2) 고위공직자의 법무법인 활동내역 제출제도

(1) 도입

변호사가 아닌 일정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이

206) 본 개정법률에 (대안)반영된 - 상술한 - 2008년 6월 김동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00037호)에서는 수임제한 의무(법관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퇴직 전 3년의 기간 중 최근 1년 이상 근무한 법원 또는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한다. 안 제31조 제3항)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벌을 규정하고 있었다(안 제113조 제2호). 2011년 3월 홍준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11293호, 2011.03.24. 제안)도 마찬가지로 형벌규정을 두고 있었다(안 제31조 제4항, 제113조 제2호).

207) 그러나, 예를 들어, 공직퇴임변호사가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법 제113조 제1항 제5호).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제89조의6 제1항 내지 제4항 신설). 그리고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9조의6 제5항).

〈변호사법(법률 제10627호, 2011.5.17. 개정 · 시행)〉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이란 퇴직공직자가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은 법무법인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 · 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 · 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에 몸담으면서 쌓아왔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임 이후 법무법인 등에 고문 등으로 영입되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고위공직자의 이러한 취업이후의 활동은 퇴직 이전에 근무한 기관 등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전관예우 폐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등은 변호사 아닌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현황 및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208]

위의 제도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2016.3.2.)에 따라 - 2016년 3월 변호사법

208) 위의 개정법률(법률 제10627호, 2011.05.17. 일부개정 · 시행) 제안 이유 참조.

개정[209]으로 법 제89조의6 제1항에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 추가된 것 이외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⑵ 내용

① 적용대상자

법무법인 등의 활동내역 제출의무 대상자는 -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다(법 제89조의6 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의13).

② 활동내역 제출의무자

퇴직공직자의 취업시 명단 및 업무내역서 제출의무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다(법 제89조의6 제1항). 또한 법무법인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도 이러한 의무를 갖는다(법 제89조의6 제3항).

③ 활동내역 제출 발생시기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제출의 경우에는, 취업 한 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89조의6 제1항). "취업"이란 퇴직공직자가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법 제89조의6 제2항).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의 경우에는,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210]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9) 법률 제14056호 (2016.3.2. 타법개정, 2016.7.1. 시행)

210)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89조의6 제6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①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의 의뢰인 및 변호사 등 소속원에게 제공한 자문·고문 내역(서면의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그 개요), ② 퇴직공직자의 보수, ③ 업무내역서의 작성 책임변호사 등 이고, 위의 '자문·고문 내역'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동법시행령 제20조의15 제1항 및 제2항).

⑶ 제재

법무법인 등의 퇴직공직자 취업명단이나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위반(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법 제91조 제2항 제1호).

라. 취업제한제도 강화(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정부는 2011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 회의에서 논의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에서 정부는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211] 2011년 7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212]은 이러한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213]

1) 취업제한제도 강화

⑴ 강화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확대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 외에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등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까지 확대하였으며, 사외이사, 비상근 자문 또는 고문 등의 직위에 취업하는 것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였다(법 제17조 개정). 그리고 임의취업자에 대한 제재규정(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신설하였다(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직 판사·검사는 퇴임 후 2년간 연매출 150억 원 이상의 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게 되었다(당시 법 제17조 제1항, 당시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

21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1-06-03)(정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 1면.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8236)(2019.10.21. 확인)

212) 법률 제10982호 (2011.07.29. 일부개정, 2012.07.01. 시행)

21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1-07-26)(전관예우 근절방안'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면.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8345)(2019.10.21. 확인)

[표 5-11] 취업제한제도 강화 내용(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구 분	개정 이전	2011년 개정(강화)
업무관련성 판단기간	퇴직전 3년간	퇴직전 5년간
취업심사 대상업체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외형거래가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자격증 유무 여부와 상관없이 국무총리, 장 · 차관 등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법무법인 등에 취업 가능
비상임직 취업제한	-	사외이사, 고문 및 자문위원 등도 취업심사대상자로 명시
임의취업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행정안전부, 위의 보도자료(2011-7-26), 7면.

⑵ 개정

2014년 12월의 공직자윤리법의 개정[214]을 통해 다시 한번 취업제한제도는 강화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15]

첫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1년을 연장하였다(법 제17조 제1항).

둘째, 취업제한기관으로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 인허가 · 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대학설립 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 · 경영하는 사립대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비영리법인,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추가하였다(법 제17조 제1항 제7호~제11호 신설).

셋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 시 2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 고위직(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였다(법 제17조 제3항 신설).

넷째,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고위직 퇴직자는 취업심사

214) 법률 제12946호 (2014.12.30. 개정 · 시행)
215) 위의 법률 제12946호 (2014.12.30. 개정 · 시행)의 주요 내용 참조.

를 받도록 하였다(법 제17조 제7항).

다섯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법 제19조의3 신설).

여섯째,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법 제29조).[216]

⑶ 현행 내용

① 취업제한 대상자

취업제한 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다(법 제3조, 법 제17조 제1항).

② 제한 대상인 '취업'의 범위

취업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이다(법 제17조 제4항).

③ 취업제한 기간

퇴직일부터 3년간이다(법 제17조 제1항).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해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업제한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법 제19조 제3항).[217]

④ 제한 기준

취업제한기관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

216) 한편,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법 제17조 제6항 단서 삭제).

217) 다만, 해당 소송을 통하여 해임 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이 진행된다(법 제19조 제3항 단서).

부서업무 기준 및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재정보조, 인 · 허가, 검사 · 감사, 조세부과 · 징수, 계약, 법령상 감독, 사건수사 및 그 밖에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 등에 관계된 업무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8호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32조). 그리고 법무법인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법 제17조 제2항 각호(제1호~제8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 등은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17조 제5항).

[표 5-12] 취업심사대상자 구분

구분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부서업무 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대상	• 2급 이상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특정기관 1급 포함)	• 3급 이하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직원
밀접한 관련성 해당 업무	재정보조, 인 · 허가, 검사 · 감사, 조세부과 · 징수, 계약, 법령상 감독, 사건수사 및 그 밖에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 등에 관계된 업무 등(법 제17조 제2항)	

※ 인사혁신처, 재직 · 퇴직 공직자를 위한 공직윤리 실천가이드북, 2018.12., 39면

⑤ **취업제한기관**

취업제한기관은 일정한 규모 · 범위에 해당하는 영리사기업체, 협회,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 인허가 규제 ·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과 그 설립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그 설립법인, 사회복지 법인 등이다(법 제1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3조).[218]

⑶ 취업제한 예외

취업제한에는 두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첫째, 취업제한 대상자인 경우에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단서).[219]

---

218) 인사혁신처장은 취업제한기관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31일(협회의 경우에는 6월 30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33조 제5항).

219)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동

둘째,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0조 제1항)가 아닌 취업심사 대상자 중에 특정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동종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법 제17조 제7항). 예를 들어, 고위직 판사·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다.

⑷ **제재**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취업심사)을 받아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그리고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1호~제9호)된다고 판단한 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2항).[220]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임의취업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0조 제3항 제2호).

그리고 국가기관의 장 등은 임의취업자에 대한 취업심사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위반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이에 대하여 해당인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법 제19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호), 해당인인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법 제29조 제1호).

2) 업무취급제한제도 도입

⑴ **도입**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일정한 업무를 퇴직 후에 영구히 취급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법 제18조의2 제1항). 그리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1급 이상 고

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1호~제9호)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제4항).

220) 국가기관 등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9조의2 제1항). 이를 통해 임의취업 등을 적발해 낼 수 있게 된다.

위공직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1년간 업무활동내역 보고의무를 부과하였다(법 제18조의2 제2항, 제18조의3).

[표 5-13] 업무취급제한제도 내용과 제재

구 분	주요 내용(제18조의2)	제재
(영구제한)	**- 본인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 취급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1업무제한)	**- (적용대상)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 (장 · 차관, 1급 이상 공무원 등)** **- (제한대상) 퇴직전 1년간 근무기관이 취급하는 일정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급 금지, 업무활동내역 보고의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안전부, 상술한 보도자료(2011-7-26), 6면.

⑵ **개정**

2014년 12월의 공직자윤리법의 개정[221]을 통해 업무취급제한제도는 강화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22]

첫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소속했던 기관이 본인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법 제18조의2 제2항), 업무활동내역 보고의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다("1+1업무제한" → "2+2업무제한", 법 제18조의3 제1항)

둘째, 업무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법 제29조).

⑶ **현행 내용**

① **제한대상자 등**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 제한대상 업무, 제한기간,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221) 법률 제12946호 (2014.12.30. 개정 · 시행)
222) 위의 법률 제12946호 (2014.12.30. 개정 · 시행)의 주요 내용 참조.

[표 5-14] 업무취급 제한대상자와 내용

구분	본인 처리업무 취급 제한	기관 처리업무 취급 제한
대상자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등)
제한대상 업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제한기간	영구제한	퇴직 후 2년간
근거규정	법 제18조의2 제1항	법 제18조의2 제2항

※ 법 제18조의2 제1항 · 제2항 정리

② **예외**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인 경우에도,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법 제18조의2 제3항).

③ **업무내역서 제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8조의3 제1항).

④ **제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법 제29조 제2호),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0조 제1항).

그리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0조 제3항 제1호).

3. 정책적 시도

가. 입법적 노력

이명박 정부 시기(제18대, 제19대 국회)에 전관예우 대책으로서 변호사법 개정안이 6건 제출되었다. 이 가운데 3건의 발의안은 - 상술한 - 2011년 5월의 「변호사법」 개정에 반영되었다.

[표 5-15] 2008-2011년 변호사법 개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인	제안일자	주요내용
1800037	김동철의원	2008.06.17. (대안반영 폐기)	- 변호사 수임계약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 법관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퇴직 전 3년의 기간 중 최근 1년 이상 근무한 법원 또는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보수의 상한은 심급, 사물관할 및 공판 횟수 등을 고려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금지 - 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를 위반하여 보수를 수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공받은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1806360	이주영의원	2009.10.27. (임기만료 폐기)	-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의 위법혐의를 발견할 경우 수사의뢰를 지방검찰 검사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의 장이 수사하도록 함 - 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개시신청 대상자들이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에 응할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89조의4제4항 및 제97조의4제4항).
1807945	손범규의원	2010.03.23. (대안반영 폐기)	- 변호사 등이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수임료의 기준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 -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또는 검찰청이 관할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
1811067	이은재의원	2011.03.10. (임기만료 폐기)	-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사건의 건수, 수임액, 수임과정, 승소율 등의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89조의4 제1항 및 제3항)

[표 5-15] (계속)

의안번호	대표발의인	제안일자	주요내용
1811211	홍준표의원	2011.03.18. (2011.03.24. 철회)	- 판사 · 검사 · 군법무관 ·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함(안 제31조제4호 신설).
1811293	홍준표의원	2011.03.24. (대안반영 폐기)	(상 동)

나. 정부정책

정부는 2011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 · 발표하였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법무부가 마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 이었다.[223]

1)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행정안전부 ·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24]

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직윤리제도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사전에 제한하는데만 초점을 두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전관예우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전관예우의 실질적인 제한이 가능한 퇴직후 행위제한제도(1+1 업무제한제도: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퇴직후 1년간 취급 금지")를 새로이 도입한다.

⑵ 전관예우 근절 등 공직윤리 실천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실시한다.

⑶ 인허가, 면허, 감독 등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전관예우 관행 유발 법령 · 제도를 정비한다.

---

22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1-06-03)(정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 1면.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8236)(2019.10.21. 확인)

224) 위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1-06-03)(첨부자료) "[별지1]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행안부 · 권익위)", 1~11면 참조.

2)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

법무부가 마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25]

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 상술한 - 개정 변호사법[226]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령을 통한 수임제한 범위와 보고대상자 구체화, '공직퇴임변호사 전관예우 신고센터' 설치, 법조윤리협의회의 전관예우 감독 기능 강화,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강화, 고위직 퇴임 변호사 선임사건 철저 감독 등을 실시한다.

⑵ 형사사건 처리 기준의 객관화·세분화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유리한 재량권 행사 우려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기대심리를 차단한다(검찰 사건처리기준 세분화, 예측가능한 양형기준 마련 및 영장항고제 도입 추진, 정상감경 요건 구체화 등).

⑶ 전관예우 예방을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교육·홍보 및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한다.

⑷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전담반으로 지정하여 법조, 금융, 조세, 공정거래, 국방·조달, 교육, 지자체 등 국민들이 전관예우가 많이 존재한다고 보는 공직 분야에서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를 엄단한다.

제6절 | 박근혜 정부(2013~2016년)

1. 서론

가. 개요

박근혜 정부(2013.2~2016.12)에도 - 이명박 정부에 이어 - 변호사법 개정(2013.5)을 통한 전관변호사 수임내역 국회보고제도 도입, 공직윤리법 개정(2014.12)을 통한 취업제한제도 등의 강화, 전화 변론 등의 금지(2016.9) 등의 지속적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

225) 위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1-06-03)(첨부자료) "[별지2]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법무부)", 12~20면 참조.

226) 법률 제10627호 (2011.05.17. 일부개정·시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홍○○의 전관비리 사건〉과 〈최○○ 전관비리 사건〉이 또 밝혀지게 되었다.

이들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다양한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내놓게 되고, 국회에서도 수많은 변호사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나. 홍○○의 전관비리(몰래변론) 사건 (2016년)

1) 사건 처리

2016년 4월에 정○○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변호사 최○○ 간의 수임료를 둘러싼 분쟁이 불거지면서 정○○의 전방위적 법조 로비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227] 특히 정○○ 원정도박 사건을 수임한 홍○○ 변호사(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끝으로 2011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가 검찰 측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수사하게 되었다(2016.04.28.). 홍○○ 변호사가 수임한 정○○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일련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고 이것은 정○○의 변호인 홍○○에 대한 검찰의 '전관예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228]

홍○○ 변호사는 2016.06.20.에 구속기소되었고, 검찰은 피고인 홍○○ 변호사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5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하였다(2016.11.18.).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징역 3년의 실형과 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다(2017.01.09.). 제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였고(2017.06.16.),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2년,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되었다(2017.11.09.)

---

227) 2016년 4월말경 정○○가 상습 도박으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최○○ 변호사 상해 혐의로 피소되면서 보석 대가로 약속한 20억 수임료가 성공보수금 또는 착수금인지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어서 정○○의 "8인의 로비리스트 명단"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 게이트"가 본격화되었다. 이 8인 중에는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 법조브로커 이○○, 정○○의 친형, 현직 K 부장판사, 성형외과 의사 L씨,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3명의 거론되었다(참여연대 홈페이지(https://www.peoplepower21.org/CaseDB/1510821)(2019.10.21. 확인); 중앙일보 2016-06-24 (檢, 정운호 '로비 리스트 8인' 의혹 계속 수사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0217184)(2019.10.21. 확인).

228) 위의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s://www.peoplepower21.org/CaseDB/1510821) 참조(2019.10.21. 확인)

⑴ 사건개요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명품브랜드 사업')에 대한 서울시 감사 및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서울메트로 임직원과 그 상위·감독 기관인 서울시청, 시의회, 감사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고,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정○○의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 관련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수임을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총 34억 5,636만원을 누락해 15억 5,314만원을 탈세함으로써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을 한 혐의이다.[229]

⑵ 제1심[230]

제1심은 피고인 홍○○에게 명품브랜드 사업 및 상습도박 관련 변호사법위반, 조세포탈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하였다.

① 명품브랜드 사업 관련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 측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은 피고인이 서울메트로 임직원과 그 상위, 감독 기관인 서울시청, 시의회, 감사원 등의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탁을 하여 서울메트로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명품브랜드 사업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에서 또는 그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취지 또는 대가성을 인식하였다.

② 상습도박 관련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3억 원에는 단순히 변호인으로서의 적법한 변론활동에 따른 노무 제공의 대가를 넘어서,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로서 수사책임자 등 검찰관계자에게 개인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가 있는 검찰의 고위간부 내지 수사책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청탁 명목의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청탁 명목은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

③ 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지방세기본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호사

2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9. 선고 2016고합588, 2016고합718(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6.16. 선고 2016노417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참조.
2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9. 선고 2016고합588, 2016고합718(병합) 판결.

로 개업하여 활동한 4년 동안 50건이 넘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받은 수임료 합계 약 32억 원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여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약 2억원 조세포탈액에 대하여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음).[231]

⑶ **제2심**[232]

제2심은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홍○○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홍○○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 수사 관련 변호사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명품브랜드 사업 관련 변호사법위반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 측으로부터 "명품브랜드 사업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② 상습도박 사건 수사 관련 변호사법위반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6.경 정○○에게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깊은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하여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3억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③ 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지방세기본법위반)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다. 다만 공소사실의 전제가 된 누락 매출액의 일부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인정된 누락 매출액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포탈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이다(피고인 A의 경우 다시 산정한 2014년도의 각 포탈세액의 합계가 5억 원 미만이어서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죄도 무죄).[233]

⑷ **대법원**[234]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2년,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되었다.

---

231) 이상의 내용은 위의 2016고합588 · 2016고합718(병합) 판결문을 정리한 것임.
232) 서울고등법원 2017.6.16. 선고 2016노4172 판결.
233) 이상의 내용은 2016노4172 판결문을 정리한 것임.
234)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2) 홍○○변호사의 몰래 변론 사건에서 확인된 전관예우 작동의 구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활동기간: 2017.12.12. ~ 2019.5.31.)는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몰래 변론한 홍○○ 변호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2019년 4월 -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 홍○○ 몰래 변론 사건에서 확인된 전관예우 작동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235]

[표 5-16] 전관예우 작동 구조

구분	구조	내용
1	**수사 관계자와 연고 있는 검찰 전관 변호사 선임**	•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던 정○○이 검찰 고위직(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수사 관계자와 연고(같은 검찰청 근무, 친분 등)가 있어, 그 영향력을 활용해 형사사건 무마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임 • 홍○○ 변호사 또한 수사·결재·지휘검사 등 수사 관계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자신이 그들과 연고가 있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과시하여 사건을 수임함
2	**전관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거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지급**	• 의뢰인의 궁박한 처지, 수사 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사건 무마에 대한 의뢰인의 기대,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의 경력 과시 등이 결합돼 거액의 착수금과 성공 보수가 약정됨(3억원) • 통상 착수금과 함께 성공보수 약정도 함께 체결되는데, 그 지급조건은 불기소, 약식기소, 불구속기소, 무죄 등의 결과 도출에 따라 세분화 되어 책정됨 • 결국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등 수사무마의 정도에 따라 거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는 사건 내용에 따른 법률적 대응보다는 약정한 성공보수의 결과 달성에만 집중하게 됨
3	**몰래 변론의 내용은 수사 무마 시도 및 허위 진술 준비**	• 홍○○ 변호사는 수사검사, 결재검사 등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연고관계(같은 검찰청 근무, 학연 지연 등 친분)가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모집하여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활용하였음 • 홍○○ 변호사는 선임계 제출 없이 정○○ 상습도박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직접 만나,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정○○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희망사항을 전달하였음. • 홍○○는 몰래 변론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기초로 향후 검찰 조사에 대비, "마카오에는 도박이 아닌 네이처리퍼블릭 짝퉁 제품 단속을 위해 간 것"이라는 허위 진술을 만들어 내는 등 정○○가 도박 혐의를 부인해도 검찰이 인정해줄 만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했음.
4	**거액 수임료 탈세와 근거자료 폐기, 자금세탁**	• 홍○○는 몰래 변론으로 수수한 거액의 선임료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였음. • 또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이나 수표로 선임료를 받은 뒤 관련 장부를 폐기하고 자금세탁까지 거쳐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탈세 방법을 동원하였음

※ 위의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보도자료(2019-04-17) 3~5면.

235)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보도자료(2019-04-17)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1~5면.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123&call_from=rsslink)(2019.10.25. 확인)

다. 최○○의 전관비리 사건 (2016년)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 사건〉의 정○○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2016년에 제1심에서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부장판사 출신의 최○○ 변호사(2014년까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개업)가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다. 당시 정○○는 석방을 조건으로 최○○ 변호사에게 50억 원을 건넸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고, 최○○ 변호사는 이후 30억 원을 정○○ 대표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정 대표는 2016년 4월 12일 구치소를 찾아온 최○○ 변호사와 나머지 돈도 돌려달라며 다투다 폭행 시비가 일었고, 이후 구명로비 의혹 사건이 드러났다.

2016년 5월에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2015년 12월~2016년 3월 정○○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로부터 각 50억원씩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제1심은 최○○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하였고(2017.01.05.),[236] 제2심도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2017.07.21.).[237]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하였다(2017.12.22.).[238]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5년6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 43억 1천250만원을 선고하였다(2018.07.19.).[239] 이에 대해 피고인이 재상고하였지만, 대법원(재상고심)이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천250만원)이 확정되었다(2018.10.25.).[240][241]

---

2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5. 선고 2016고합505, 2016고합890(병합) 판결.
237) 서울고등법원 2017.7.21. 선고 2017노203 판결.
238)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2127 판결.
239) 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8노2 판결.
240)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12630 판결.
241) 〈최○○의 전관비리 사건〉의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SBS 뉴스 2016-05-10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여성 변호사 전격 체포)

2. 제도 도입

가. 전관변호사 수임내역 국회 보고제도 등 도입 (2013년, 변호사법 개정)

2007년 변호사법 개정[242]을 통해 법조비리를 조사하고 법조윤리를 정비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운영 중이나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고, 업무처리결과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243]

이에 2013년 5월 변호사법 개정법률[244]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에 한정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를 관계 기관에 부과하고(법 제89조 제2항 2문),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법 제89조의9 제1항),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는 법조윤리위원회로부터 수임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9조의9 제2항).

이러한 법조윤리협의회의 사실조회나 자료제출을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117조 제3항 제2호).[245]

나. 「변호사윤리장전」 전면개정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은 - 변호사법과 함께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근거가 되는 규약으로서 - 1962년 6월 30일에 선포되어(전문, 강령 5항, 본문 6장 52조), 1973년, 1993년,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6470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2019.12.10. 확인);
연합뉴스 2017-01-05 ('100억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1심에서 징역 6년) https://www.yna.co.kr/view/AKR20170105070400004)(2019.12.10. 확인);
연합뉴스 2018-10-25 (대법, '100억 부당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81025055951004)(2019.12.10. 확인);
동아일보 2016-05-13 ('수임료 100억' 최유정 변호사 구속)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513/78071197/1)(2019.10.31. 확인)

242) 법률 제8271호 (2007.01.26. 개정, 2007.07.27. 시행)

243) 법률 제11825호 (2013.05.28. 개정・시행) 제안이유 참조.

244) 법률 제11825호 (2013.05.28. 개정・시행). 이 개정 법률은 2013년 2월의 정갑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03891호, 2013.02.27. 제안)과 2013년 3월의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04307호, 2013.03.28. 제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장안(대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의안번호 제1904723호, 2013.04.29. 제안).

245) 이상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는 상술 참조.

1995년, 2000년에 개정되었다.[246]

변호사윤리장전은 그 동안 전관예우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 2000년 개정 이후 14년 만에 이뤄진 - 2014년 개정(2014.02.24. 전문개정)에서는 영향력 행사 금지(장정 제38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장정 제39조), 공무원으로부터의 사건 소개 금지(장정 제40조)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247]

변호사윤리장정 (2014.02.24. 개정)

제38조[영향력 행사 금지] 변호사는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 변호사는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 및 병원 등에 직접 출입하거나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0조 [공무원으로부터의 사건 소개 금지] 변호사는 법원, 수사기관 등의 공무원으로부터 해당기관의 사건을 소개받지 아니한다.

다. 취업제한제도 및 업무취급제한 제도강화 (2014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2014년 12월의 개정 공직자윤리법[248]에 의해 취업제한제도 및 업무취급제한 제도가 보다 강화되었다.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 연장(2년 → 3년), 취업제한기관 확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관련성의 범위확대, 변호사의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고위직 퇴직자의 취업심사 대상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공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1년 징역/1천만원 벌금 → 2년 징역/2천만원 벌금) 등이 있었다.

업무취급제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업무제한 기간 연장("1+1업무제한" → "2+2업무제한"), 업무활동내역 보고의무 기간 연장(1년 → 2년), 업무취급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1년 징역/1천만원 벌금 → 2년 징역/2천만원 벌금) 등이 있었다.[249]

---

246) 법률저널 2014-02-25 (변호사 직업윤리 강화된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5); 대한변협신문 2014-05-04 ([기획기사] 변호사윤리장전의 어제와 오늘-1(박형연))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4)(2019.11.1. 확인)

247) 이 내용은 현행 「변호사윤리장정」(최종개정 2017.02.27.)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48) 법률 제12946호 (2014.12.30. 개정 · 시행)

249) 이상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는 상술한 내용 참조.

라.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2)" 의결 (2014년, 대법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 2006년 11월의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2006.11.05.)[250]에 이어서 - 2014년 8월에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2)"을 의결하였다(2014.8.21.).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와의 접촉이나 교류를 피하여야 한다.

(2) 외부인사로부터 법관의 독립성이나 청렴성,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법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외부인사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을 금지하며, 그러한 의심을 받을만한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를 피해야 한다.

(3) 평소 개인적으로 교류하던 외부인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의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재배당 요구를 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51]

마. "최고위직 법관·검사의 변호사 등록·개업 제한 제도" 실시(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대법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퇴직공직자에 대한 개업신고를 반려하여 사실상 개업을 제한하고 있다.[252]

즉 대한변협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4대 최고위직 전관(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직 전관이 변호사 영리업보다는 공익

---

250) 이에 관하여는 상술한 내용 참조바람

251) 대법원 보도자료(2014-08-21) (지역법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6〉에서 검색가능)(2019. 10.15. 확인), 5면;
중앙일보 2014-08-22 (대법 공직자윤리위 "법관, 외부인사와 개인적 교류도 조심")
(https://news.joins.com/article/15605716)(2019.10.15. 확인).

252) 윤동욱,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록·개업 제한에 찬성하며",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대한변호사회, 2019.04.30.) 자료집, 15면 참조.

활동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253]

o 2015년 3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 철회 권고 성명발표(2015.03.19.)[254]
o 2015년 12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서한 발송(2015.12.04.)[255]
o 2016년 4월 신영철 전 대법관 개업시도 중단 촉구 성명 발표(2016.4.6.)[256]
o 2017년 2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변호사 개업 신고 철회 권고 성명발표(2015.02.14.)[257]
o 2017년 7월 김현웅 전 장관의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2017.07.24.)[258]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관련한 내부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였지만, 내부 이견의 문제로 대신에 최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하지 않고 공익활동에 전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59]

현재, 이에 대한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리 헌법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 후술하는 바와 같이 -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에 관한 다양한 변호사법개정법률안이 제안되고 있다.[260]

바. 「법조인 윤리선언」 선포 (2015년, 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협의회 2015년 11월 25일에(엘타워 매리골드홀)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법조인윤리선언"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법조인윤리선언"은 법조계의

253)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2017.07.24.)(김현웅 전 장관의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http://koreanbar.or.kr/pages/news/list.asp?types=3〉에서 검색가능)(2019.10.21. 확인); 중앙일보 2017-12-06(김진태 前검찰총장, 퇴임 2년 만에 변호사 활동 재개) (https://news.joins.com/article/22182086)(2019.10.30. 확인) 참조.
254)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2015.03.19.)(퇴임 대법관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http://koreanbar.or.kr/pages/news/list.asp?types=3〉에서 검색가능)(2019.10.21. 확인)
255)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2015.12.04.)(김진태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서한 발송) (〈http://koreanbar.or.kr/pages/news/list.asp?types=3〉에서 검색가능)(2019.10.21. 확인)
256)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2016.04.07.)(신영철 전 대법관은 개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http://koreanbar.or.kr/pages/news/list.asp?types=3〉에서 검색가능)(2019.10.21. 확인)
257)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2017.02.14.)(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하라) (〈http://koreanbar.or.kr/pages/news/list.asp?types=3〉에서 검색가능)(2019.10.21. 확인)
258) 위의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2017.07.24.) 참조.
259) 동아일보(2017-05-16)(변협, 前 법무장관-檢총장 변호사개업 자제 권고) (http://www.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date=20170516&gid=84376593) (2019.10.30. 확인)
260)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 상술한 - 대한변호사회의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2019.04.30.) 자료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 할 수 공식적인 윤리규범이라 할 수 있다.[261]

2014년 3월부터 실무회의를 시작하여 마련한 "법조인윤리선언"은 전문과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262] 이 가운데 "우리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경력과 개인적 인연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가 전관예우와 관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조인윤리선언

우리는 법조인으로서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법조인 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나아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이 최고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한다.
둘째, 우리는 법의 정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일체의 부정을 배격한다.
셋째,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 전체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넷째, 우리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경력과 개인적 인연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우리는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성의와 정성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여섯째, 우리는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힘쓰며, 윤리규범을 철저히 준수한다.

사. 기일 외 진술 등 부적법한 소송금지 규정 마련 (2016년,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 개정)

1) 「민사소송규칙」 개정[263]

민사소송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일 외 진술 등 부적법한 소송행위 금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264]

즉 당사자나 대리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규칙 제17조의2

261) 쿠키뉴스 2015-11-24 (법조계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생긴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27346)(2019.10.30. 확인)
262) 뉴스1 2015-11-24(법조윤리협, 25일 '법조인윤리선언' 선포식)
(http://news1.kr/articles/?2496815)(2019.10.21. 확인)
263) 대법원규칙 제2675호 (2016.09.06. 개정・시행)
264) 대법원규칙 제2675호 (2016.09.06. 개정・시행)

제1항 신설), 재판장은 이를 어긴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규칙 제17조의2 제2항 신설).

2) 「형사소송규칙」 개정[265]

민사소송규칙의 개정과 함께 형사소송규칙도 동일하게 개정되었다.[266]

즉 소송관계인은 심문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규칙 제177조의2 제1항 신설), 재판장은 이를 어긴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규칙 제177조의2 제2항 신설)

아. 권고의견 제11호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 의결 (2016년, 대법원)[267]

1) 내용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 2006년 11월의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2006.11.05.), 2014년 8월에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2)"의 의결(2014.8.21.)[268]에 이어서 – 2016년 11월에 권고의견 제11호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을 의결하였다(2016.11.21.).

최근 변호사나 법조브로커가 재판부에 대하여 전화변론 또는 청탁을 시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법관들에게 법정 외 의사소통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동일한 논란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법관 스스로도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법정 외 의사소통을 자제하는

---

265) 대법원규칙 제2678호(2016.09.06. 개정 시행)
266) 위의 대법원규칙 제2678호 개정 내용 참조
267) 대법원 보도자료(2016-12-23),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11호 의결"(2016.11.21.), 2면.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6〉검색가능)(2019.10.21. 확인)
268) 이에 관하여는 상술한 내용 참조바람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권고의견을 공표하였다.[269] 권고의견 제11호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시도받는 경우 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뿐만 아니라 법관이 재판진행을 위해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 다음과 같은 - 행동지침을 담고 있다.[270]

> ⑴ 법관은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소송관계인(당사자, 이해관계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과 개인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소송관계인이 구체적 사건에 관한 논의와 처리 등 모든 의사소통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정 외에서의 의사소통 및 그 시도는 제한되어야 한다.
>
> ⑵ 소송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법관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체 및 내용을 불문하고 즉시 이를 거절하고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접촉 등, 구체적 사건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접촉이나 의사소통 또는 그 시도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 ⑶ 위와 같은 법정 외에서의 접촉이나 의사소통 또는 그 시도가 구체적 사건의 사실상 · 법률상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등으로 상대방 소송관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상대방 소송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관은 상대방 소송관계인에게 그러한 접촉 등이 있었던 사실과 그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건에 관한 내용 등을 알려줌으로써, 상대방 소송관계인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⑷ 법정 외 의사소통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법관으로서도 이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관이 기일 외에서 소송관계인과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쌍방 소송관계인 모두와 동시에 의사소통을 하고, 불가피하게 일방 소송관계인과 의사소통을 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 소송관계인에게도 그 내용을 법령상 정해진 방법 등으로 알려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대법원 보도자료(2016-12-23),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11호 의결"(2016.11.21.), 6~7면.

2) 의미

소송관계인과의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의 면담 · 접촉 등 제한(법관윤리강령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4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호(2006년) 및 제9호(2014년), 민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의2)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이 시도되는 사례가 근절되지는 않아 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논의와 처리 등 모든 의사소

269) 위의 대법원 보도자료(2016-12-23), 3면.
270) 위의 대법원 보도자료(2016-12-23), 3면.

통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정 외에서의 의사소통 및 그 시도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271]

3. 정책적 노력

가. 대법원: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2016.6)

2016년 6월 대법원은 - 상술한 - 〈최○○ 전관비리 사건〉에서 법관 출신 최○○ 변호사가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음을 내세워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을 계기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2016.06.16.). 대법원 사건배당 제도 개선, 이른바 '법정 외 변론' 등의 포괄적 금지 명문화, '통화 녹음' 등을 통한 부당한 전화변론 근절, 가칭 '부당변론신고센터' 개설,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 정비 노력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272]

1) 대법원 사건배당 제도 개선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에 맞춰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자 상고사건의 최종 배당시기를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이후'(=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 경과 후)로 변경하였는데(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제12조),[273] 여기에서 더 나아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한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가 2018.08.01.부터 시행 중인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방안'의 각급 법원별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2) 이른바 '법정 외 변론' 등의 포괄적 금지 명문화
법정 외 변론, 전화변론, 몰래변론 등 상대방 참여 없는 기일 외에서의 일방적 의견전달 금지 원칙을 대법원규칙으로 명문화하기로 한다.

3) '통화 녹음' 등을 통한 부당한 전화변론 근절 방안
외부 전화는 법관 부속실에서 발신자의 신원과 용건을 확인하도록 사전통제절차를 정비하고, 통화를 연결할 때도 발신자에게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린 후 법관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한다.

4) 가칭 '부당변론신고센터' 개설
전화변론, 몰래변론, 선임계 미제출 변론 등 부적절한 의견전달 시도에 대해 법관이 손쉽게 신고할

271) 위의 대법원 보도자료(2016-12-23), 5~6면 참조.
272) 이하 내용은 대법원 보도자료(2016-06-16.)(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qnum=1139)(2019.11.08. 확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원행정처는 필요한 경우 부당변론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지하거나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5)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 정비 노력
연고관계를 선전하거나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 의견으로 제시한다.

※ 위의 대법원 보도자료(2016-06-16.)(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나. 대검찰청

1)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 발표(2016.8. 대검찰청)

〈홍○○ 전관비리 사건〉에서 전·현직 검사장의 잇따른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내부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개혁방안을 2016년 8월 발표하였다(2016.08.31.)[274] 이 개혁방안은 〈표 5-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조비리 근절방안과 내부청렴 강화방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 5-17] 대검찰청 개혁방안(2018.6)

법조비리 근절방안	내부청렴 강화방안
o 법조비리에 대한 상시 집중단속	o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 도입 및 감찰위원회 역할 강화
o 내부연계 법조비리 철저 감시	o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o 선임서 미제출 변론 전면금지	o 특정부서 근무자에 대한 주식거래 금지
o 일선청에 변론 관리대장 비치·기록	o 승진대상 검찰간부의 재산형성과정 심층심사
o 변호사의 검찰청 출입등록	o 실명·익명신고 등 내부제보 시스템 활성화
-	o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내실화

※ 대검찰청, 위의 보도자료(2016-08-31), 2~7면(정리)

273) 이것은 2015년 11월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내규 제457호, 2015.11.24. 개정, 2015.12.07. 시행)으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것임

274) 대검찰청, 보도자료(2016-08-31)(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 시행) (http://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2019.10. 21. 확인), 4면 참조; 법률신문 2016-09-05 (선임계 미제출 변론 전면금지… 내부감찰도 강화)(2019.10. 21.확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2939)(2019.10. 21. 확인).

전관비리 대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책은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론에 대한 대책이다. 선임서 미제출 변론을 전면 금지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변론하는 경우 선임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임서 미제출 변론으로 확인된 경우 감찰담당 검사에게 신고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협에 징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별 검사실(수사과, 조사과 등 수사부서 포함)에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전화 및 방문에 의한 구두변론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하는 경우에 검찰공무원은 사전에 면담일시를 지정하고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275]

〈법조비리 근절방안〉(일부)

□ 선임서 미제출 변론 전면금지

- 선임서 제출 확인
  - 변호사가 변론하는 경우 선임서 제출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선임서 미제출 변론은 일체 불허
  - 선임서 제출 여부의 즉시 확인이 어려운 전화변론의 경우, 해당 변호사에게 선임서 제출 사실을 확인한 후 변론 청취
- 선임서 미제출 변론에 대한 신고
  - 선임서 미제출 변론으로 확인된 경우 감찰담당 검사에게 신고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협에 징계 신청

□ 일선청에 변론 관리대장 비치 · 기록

- 법원과 달리 공개된 변론공간이 없고 신병처리 등 긴급성을 요하는 수사단계에서는 선임서가 제출된 전화변론, 방문변론을 허용
- 개별 검사실(수사과, 조사과 등 수사부서 포함)에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전화 및 방문에 의한 구두변론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
- 변호인 성명, 죄명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변론유형, 변론취지 등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는 양식 마련

□ 변호사의 검찰청 출입등록

-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하는 경우, 검찰공무원은 사전에 면담일시를 지정하고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
- 일반 민원인과 동일하게 변호사도 출입증을 발급받고 지정된 검사실만 출입 가능

※ 대검찰청, 위의 보도자료(2016-08-31), 3~4면.

275) 대검찰청, 위의 보도자료(2016-08-31), 3~4면 참조.

2)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 제정(2016. 대검찰청)

위의 2016년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대검찰청, 2016.08.31.)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와 같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형사사건을 몰래변론 하던 관행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 대검찰청에서는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2016.9.19. 제정・시행)을 제정・시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2조, 변호사법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 선임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사의 변론은 금지하여야 하고(지침 제3조 제1항), 검찰공무원은 선임서 제출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전화변론이 있는 때에는 해당 변호사에게 선임서 제출 여부를 묻고 선임서를 제출하였다고 대답하는 경우 변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지침 제3조 제2항). 그리고 검찰공무원은 선임서 미제출 변론이 확인된 경우 이를 선임서 미제출변론 신고서에 기재하여 소속청 감찰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지침 제3조 제3항).[276]

이 밖에도 일선청 검사실마다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마련해 선임서가 제출된 변호사의 전화변론과 방문, 구두변론 사실과 취지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토록 하였다. 그리고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할 때에는 사전에 면담 일시를 지정하고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한 뒤 일반 민원인과 같이 출입증을 받도록 하였다.[277]

제7절 | 문재인 정부(2017~현 재)

1. 서론

문재인 정부에서는 변호사법 개정(2017년)을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권 강화(현장조사권 부여) 및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에 대한 제재 강화(형벌부과)가

276) 대검찰청, 위의 보도자료(2016-08-31), 4면 참조.
277) 중앙일보 2016-09-19 (검찰, '주식거래・몰래변론' 금지 지침 오늘부터 시행) (https://news.joins.com/article/20606462)(2019.10. 21. 확인).

이루어졌다.

그리고 법조개혁의 일환으로서 대법원(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은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발표하였고(2018년), 법무부(검찰과거사위원회)는 "전관변호사 몰래변론 근절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2019년).

2. 제도 개선: 변호사법 개정(2017년)

가. 법조윤리협의회의 현장조사권 부여

2017년 3월 개정 변호사법[278]을 통해 -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한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9조 제2항 1문 후단 신설).

법조윤리협의회의 '출석요구'나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117조제3항 제2호 개정).

나.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에 대한 제재 강화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종래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2)를 부과였던 것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하여 제재가 강화되었다(법 제113조 제4호)[279]

278) 법률 제14584호 (2017.3.14. 개정·시행)
279) 법률 제14584호 (2017.03.14. 일부개정, 2017.03.14. 시행)(개정이유 참조)

3. 정책적 시도

가. 대법원: "전관예우 근절방안" 의결(사법발전위원회, 2018년)

1) 배경

대법원은 그 산하에 사법제도 개혁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사법발전위원회"라 함)를 2018년 3월 16일에 발족하였다(활동기간: 2018.3.16.~2018.12.31).[280][281]

사법발전위원회의 4대 개혁과제[282] 가운데 하나가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이다.

2) "전관예우 근절방안" 의결

사법발전위원회는 제12차 회의(2018.12.4.)에서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다.[283]

> o 재판부 및 소송대리인의 연고관계 진술의무 도입
> o 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 도입
> o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 수임자료 제출 범위 확대
> o 수임제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도입
> o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및 법조브로커 신고센터 각 설치, 운영
> o 중립적 감독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의 예산 및 인력의 확충, 조직의 독립성 강화

---

280)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 제2769호, 2018.1.31. 제정・시행)

281) 대법원 보도자료(2018-02-27)(「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2면.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6〉검색가능)(2019.10.21. 확인)

282) ①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②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③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④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2조 제1호~제4호).

283) 대법원 보도자료(2018-12-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전관예우 근절방안" 의결), 1면.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6〉검색가능)(2019.10.21. 확인)

[건의문]

1. 전관예우 문제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관예우의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관예우 및 연고주의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기존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2. 전관변호사 발생방지 및 활동제한 방안

가. 법관의 퇴직 시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연장하고, 수임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임제한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전관변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법관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3. 중립적 감독기구 권한 강화 방안

가.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립적 감독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조사권한을 실질화하는 등 법조윤리협의회의 권한 및 기능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법조윤리협의회에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및 법조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 예산 및 인력의 확충, 조직의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법조윤리협의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나.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등 법조 기관들은 전관예우와 연고주의의 문화가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임을 직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강구하여 새로운 법조문화의 정착에 서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4.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

가. 국민들과 법조직역종사자들이 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재판의 절차에서의 혜택도 전관예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재판부 및 소송대리인의 연고관계 진술의무와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현행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의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하여 재판부 구성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재판부는 공개된 법정에서의 변론에 의해서만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입증 및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충실한 심리를 함으로써 재판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증거신청의 채부에 관하여 그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기일 진행 등 공평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하여 재판진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미연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 위의 보도자료(2018-12-4), 2~4면

나. 법무부: "전관변호사 몰래변론 근절 제도개선" 권고(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2019년)

1) 배경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설치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활동기간: 2017.12.12. ~ 2019.5.31.)[284][285]는 2018년 11월에 '몰래 변론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결정하고 이후 관련 수사 및 공판기록을 검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전관 변호사 징계 자료, 서울중앙지검 사건처분 자료, 관련 논문, 언론 기사 등을 검토하였고(특히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정○○ 상습도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며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 2019년 4월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286]

〈'몰래 변론 사건'이 조사대상사건으로 선정된 이유〉[287]

- o 이른바 전관예우는 국민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 특히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나 내사 중인 형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몰래 변론' 관행은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유형이자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혀 왔음. 전관 변호사의 몰래 변론은 수임자료가 남지 않아 변호사협회의 감독을 피하고 탈세의 온상이 될 뿐더러 고액 수임료를 감당하기 힘든 대다수 국민을 차별하는 위헌적인 불법 행위임
- o 위원회는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 제출 없이 검찰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하며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보고 몰래 변론의 실태와 실제 검찰수사에 미친 영향을 조사,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포괄적인 조사를 권고함

---

284)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법무부훈령 제1127호 (2017.12.12. 제정 · 시행) 참조.

285)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①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되어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선정 및 진상조사, ②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 심의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 ③ (조사 결과에 따른)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위 규정 제5조 제1항). '조사대상 사건'은 재심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등이다(위 규정 제6조 제1항).

286)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보도자료(2019-04-17)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1~2면.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123&call_from=rsslink)(2019.10.25. 확인)

287)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의 보도자료(2019-04-17), 1~2면.

2) 몰래변론 조사결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최근 10년 간(2009.1.1.~2018.8.20.)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몰래 변론 관련 징계처분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 등에 총 126건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66건 55명의 전관 변호사를 징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제명 2건(1명), 정직 8건(6명), 과태료 50건(42명), 견책 6건(6명) 등이다(〈표 5-18〉 참조).[288]

[표 5-18] 검사출신 전관변호사의 몰래변론 관련 징계처분 현황

단위: 건

접수	징계처분 등				
	합계	제명	정직	견책	과태료
126건	66 (55명)	2 (1명)	8 (6명)	6 (6명)	50 (42명)

※ 1. 조사기간: 2009.1.1.~2018.8.20.
2. 자료: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의 보도자료(2019-04-17), 2면.

과태료 처분 사례를 보면, '전화변론' 등 몰래 변론으로 수사 실무자나 지휘라인에 영향력을 미치는 전관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289]

3) 제도 개선 권고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와 함께 - 상술한 - 〈홍○○ 몰래 변론 사건에서 확인된 전관예우 작동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검찰의 과오를 지적하면서 현행 검찰의 '형사사건 변론기록' 제도 개선, 몰래 변론 연루 검사 감찰 및 징계 강화, 수사검사 외 상부 지휘검사에 대한 변론제도 개선, 사건 분리 처분시 미처분 부분 누락 방지 대책 마련 등 몰래변론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290]

---

288)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의 보도자료(2019-04-17), 2면.

289) 위의 보도자료(2019-04-17), 2~3면(이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인천지검 검사장과 수원지검 검사장을 지낸 A 및 B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을 상대로 몰래 변론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각각 과태료 300만원과 200만원 처분이 이루어졌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C변호사는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학교 길병원 횡령사건 등과 관련, 검찰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10억5,000만원을 수수했다가 적발"되었다).

290) 위의 보도자료(2019-04-17), 7~8면.

[표 5-19] 제도개선권고(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2019)

구분	내 용
현행 검찰의 "형사사건 변론기록" 제도 개선[291]	**검찰 형사 사건에 관한 기본 정보를 온라인 등을 통해 충실히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직접 변론의 필요성 축소)**
	검찰청 출입기록과 연계한 변론기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변론기록 작성 누락 방지 대책 마련
	개인 연락처를 통한 변론도 기록할 것을 명시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몰래 변론 연루 검사 감찰 및 징계 강화	**수사 · 지휘검사의 몰래 변론 허용, 변론기록 미작성 또는 허위작성 등에 관하여 감찰 강화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 조치**
수사검사 외 상부 지휘검사에 대한 변론제도 개선[292]	**상부 지휘 검사에 대한 변론에 관해서는 지휘 검사를 만나 변론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론을 허용**
	허용 사유, 변론 내용, 변론 후 수사검사 등 하위 검사에 대한 지시 유무 및 지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함
사건 분리 처분시 미처분 부분 누락 방지 대책 마련	**여러 명의 피의자나 여러 개의 피의사실이 있는 사건에서 일부분을 분리하여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를 남겨 두는 경우, 미처분 사건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미처분 사건에 새 사건번호를 부여하거나 형사관리 시스템상 미처분 사건 알림, 경고 기능을 도입하는 등 미처분 누락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의 보도자료(2019-04-17), 7~8면.

제8절 | 소 결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70여년간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입법적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91) 검찰은 2016. 9. 19.부터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을 통해 몰래변론 불허, 변론내용 기록 의무화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나, 기록의 진실성, 완결성 등에 문제 제기가 있음(위의 보도자료(2019-04-17), 7면).

292) 전관 변호사가 수사 실무자는 물론 지휘 라인의 고위직 검사를 만나 변론하면서 수사와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검찰 처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위의 보도자료(2019-04-17), 7~8면).

[표 5-20]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변천

구분	내 용	비고
정부수립~노태우 정부 (1948~1993년)	**(1973.01) 개업지 제한제도 도입(변호사법)**	(1989.11) 위헌결정
김영삼~김대중 정부 (1993~2003년)	**(1993.06) 변호사 · 검사의 법관면담절차 제도 마련(대법원 지침)**	(2006.10) 강화
	(1995.07) "특별재판부" 운영(대법원 예규)	(2008.03) 특별재판부 폐지
	(1995.06) 법관윤리강령 제정	(1998.06) 전부개정
	(1998.12) 검사윤리강령 제정	
	(1998.05) 대한변호사협회의 '감찰위원' 제도 도입	
	(1999.1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전관예우 근절방안(제도개선) 권고	
	(2000.01) 변호사법 전면개정 **- 법조공무원 등의 사건 소개금지**	
	- 연고관계 등 선전금지	
	- 변호사의 사건브로커 이용금지	
	- 사건유치 목적의 법원등 출입금지	
	(1997)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적발 **(1999) 대전 법조비리사건 적발**	
노무현 정부 (2003~2008년)	**(2004.04) 사법개혁위원회의 법조비리 근절 방안(제도개선) 권고**	
	(2006.1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법조윤리 확립 방안 의결	
	(2006.11)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의결(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2006.12) 양형기준제도 도입(법원조직법)	
	(2007.01) 변호사법 개정 **- 법조윤리협의회 설치와 기능강화**	(2013.05)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요청권 강화 (2017.03) 법조윤리협의회의 현장조사권 부여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의무	(2013.05) 제재 강화
	-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금지	(2017.03) 제재 강화
이명박 정부 (2008~2013년)	**(2008.03) 재배당제도 강화(대법원 예규)**	
	(2011.05) 변호사법 개정 **- 사건수임제한제도 도입 (일명 "전관예우방지법")**	
	- 고위공직자의 법무법인 활동내역 제출	
	(2011.07)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법원조직법)	

[표 5-20] (계속)

구분	내 용	비고
이명박 정부 (2008~2013년)	(2011.07) 공직자윤리법 개정 - 취업제한제도 강화	(2014.12) 취업제한제도 강화
	- 업무취급제한제도 도입	(2014.12) 업무취급제한제도 강화
	(2011.06) 전관예우 근절방안 발표(정부)	
박근혜 정부 (2013~2016년)	(2013.05) 전관변호사 수임내역 국회 보고제도	
	(2014.02) 변호사윤리장전 전면개정	
	(2014.08)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2)" 의결(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2014.12) 공직자윤리법 개정 - 취업제한제도 강화(취업제한 기간 연장, 취업제한기관 확대 등) - 업무취급제한제도 강화(업무활동내역 보고의무 기간연장, 제재 강화 등)	
	(2015.03) "최고위직 법관 · 검사의 변호사 등록 · 개업 제한 제도" 실시(대한변호사협회)	(근거규정 없음)
	(2015.11) 「법조인 윤리선언」 선포 (법조윤리협의회)	
	(2016.06)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발표(대법원)	
	(2016.08)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 발표(대검찰청)	
	(2016.08)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 제정 (대검찰청)	
	(2016.09) 기일 외 진술 등 부적법한 소송금지 규정 마련(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 개정)	
	(2016.11) 권고의견 제11호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 의결(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2106) 홍○○의 전관비리(몰래변론) 사건 적발 (2016) 최○○의 전관비리 사건 적발	
문재인 정부 (2017~현 재)	(2017.03) 변호사법 개정 - 법조윤리협의회의 현장조사권 부여	
	-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에 대한 제재 강화	
	(2018.12) "전관예우 근절방안" 의결(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2019.05) "전관변호사 몰래변론 근절 제도개선" 권고(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사실 전관비리에 대한 문제인식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적 개선노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 국민적 요구와 함께 눈부신 경제발전에 따라 사법시장 규모도 커지기 시작하면서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의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입법적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 2016년 〈정○○ 게이트〉에 나타난 바와 같이 – 전관예우 문제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상황이다.

전관예우 문제는 대법원, 법무부(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전관비리 근절대책은 주로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나 대검찰청 차원에서 – 직접적으로 – 전관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 제정(대검찰청, 2016.08), "전관변호사 몰래변론 근절 제도개선" 권고(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2019.05) 등 일부에 불과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293][294] 형사절차 단계별로 보았을 때 재판절차 단계보다는 수사단계(검찰수사단계, 구속관련 재판,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전관예우가 더 많다는 인식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법무부(대검찰청)의 보다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청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93) 이 연구보고서의 제3장 제3절 3. 및 제4장 제3절 3. 참조 바람.

294) 이와 유사한 결과는 2018년의 한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법원행정처 발주 용역연구 보고서), 2018.9., 46면, 155면 등 참조).

최근 입법 동향 정밀 분석 (19-20대 국회 입법안)

임 정 호

제6장

최근 입법 동향 정밀 분석 (19-20대 국회 입법안)

제1절 | 연구의 목적

이와 같은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대법관 출신 공직퇴임변호사 예우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일반적인 변호사의 대법원에서의 심리불속행[295] 기각률은 40%임에 반하여, 대법관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6.6%에 불과하다는 점을 볼 때 이들 전직 대법관 출신 공직퇴임변호사들이 상고심을 대리한 사건은 다른 일반적인 변호사의 경우에 비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당하는 비율이 6분의1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296]

이와 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정치권 내에

2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7050&efYd=20091102#0000 2019. 8. 30. 최종검색)

296) 박지윤 기자, "전관예우 '몸통'은 전대법관", 서울신문 2007. 8. 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808001010) (2019. 4. 10. 최종검색)

서도 주목해오고 있었다. 일례로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제1당의 당내 경선 후보 캠프에서도 전관예우 근절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바가 있었다.[297] 전관예우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해온 정치권에서는 그간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추구해왔다.

이하에서는 그간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온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대책의 변천사 중에서도 특히 제19대 국회 이후 최근의 동향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입법동향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제2절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동향 전반

1. 입법방식: 규제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후술할 바와 같이, 이하에서는 제19대 국회 이후 변호사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중에서도 특히 전관예우 방지대책과 관련성있는 개정안을 -또는 제정안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안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관예우 방지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 정도의 경향성을 가질 것으로 미리 예상할 수 있다.

첫째, 규제강화 방식의 입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전관출신 변호사, 즉 공직퇴임변호사 등에 대하여 부담시키는 일정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강화를 통하여 공직퇴임변호사가 전관으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이는 후술할 변호사법 개정안들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의 전반적 경향이다.

둘째,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입법도 있을 수 있다. 전관예우라고 하면, -그 개념정의를 단일하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겠으나- 공직퇴임변호사가 전직 법관이

297) 신종철 기자, "이재명, 법조계 전관예우 퇴출…'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 공약", 로이슈 2017. 2. 12.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70212183401973930201_12 2019. 4. 10. 최종검색)

나 검사였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형성된 인간관계나 직무상 경험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여받는 금전적 이익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의 향유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술한 규제방식이 아닌, 다른 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전관예우를 공직퇴임변호사 혹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될 자가 사전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예를 들어 의안번호 1915154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298]의 경우도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전관예우를 포기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시니어 판사제도 내지 시니어 법관제도[299] 역시 이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하에서 살펴볼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법률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그 경향성 역시 함께 살펴볼 것이다.

2. 범위

그동안 국회에서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이러한 입법활동은 주로 변호사법 개정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관예우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관 출신 법조인, 즉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특혜 부여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는 변호사로 재직·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한 규제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변호사에 대한 관련 법령인 변호사법 개정 작업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입법활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변호사법의 개정작업만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미래에 발생할 전관예우의 사전적 차단 내지 예방을 위하여, 현직의 법관에 대한, 혹은 법관임용 대상자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 방안 역시 생각해볼 수 있기

29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2019. 7. 5. 최종검색)
299) 시니어 판사제도로 기재할 것인지 혹은 시니어 법관제도로 기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예를 들어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관련 보고서의 경우, 이를 '시니어판사 제도'로 기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모성준 · 서용성 · 최유나,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년, 6면.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공직퇴임변호사로 재직하고 근무하면서 수임행위를 행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핵심을 벗어나기는 힘든 것 역시 현실일 것이다. 또한 현실에서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활동은 여전히 주로 변호사법 개정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법에 대한 다양한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제안된 바 있는 법률안들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먼저 검토해보도록 한다. 아무래도 법조계의 전관예우로 인한 폐해라고 하는 것은, 전직 법관이나 검사가 공직에서 퇴임하여 민간업계에서 변호사로 수임행위 등을 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변호사에 대한 규제들을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작업을 통한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변호사법 개정안 이외 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및 제정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9년 7월 5일 기준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을 행한 관련 개정안 및 제정안을 살펴보았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제3절 | 변호사법 개정안

1. 개관

여기에서는 우리 국회에서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19대 국회(2012년~2016년) 및 제20대 국회(2016년~2020년)에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 중 특히 전관예우 방지대책과 연관성이 있는 개정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해 기간 중 발의된 전체 변호사법 개정안들 중에서도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 내지 제재 방안이 포함된 개정안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2년 제19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발의 주체에 관계없이- 의원입법안과 정부입

법안 및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방식으로 발의된 전관예우 방지 차원의 변호사법 개정안 전체를 살펴보면, 의안번호 1902634, 의안번호 1903891, 의안번호 1904307, 의안번호 1904437, 의안번호 1904723, 의안번호 1909703, 의안번호 1914006, 의안번호 1911717, 의안번호 1911759, 의안번호 1917050, 의안번호 1917079, 의안번호 1917080, 의안번호 2000139, 의안번호 2000157, 의안번호 2000984, 의안번호 2000985, 의안번호 2001209, 의안번호 2001518, 의안번호 2001555, 의안번호 2002307, 의안번호 2002727, 의안번호 2003927, 의안번호 2004694, 의안번호 2005623, 의안번호 2005745, 의안번호 2007413, 의안번호 2007856, 의안번호 2008519, 의안번호 2010262, 의안번호 2012426, 의안번호 2020242, 의안번호 2020496이 여기에 해당한다.[300]

한편 이 중에서도 발의된 이후 실제 통과된 개정안은 위 개정안들 중에서도 의안번호 1904723 및 의안번호 2005745가 이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이들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의 규제 방법 내지 제한방법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누어 검토를 해보도록 한다.

[표 6-1] 19대·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 중 전관예우 방지 대책 관련 개정안

연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의결일	의결결과	내용	항목분류
19대 국회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1	1902634	강창일 의원	2012. 11.16.	2016. 05.29.	임기만료 폐기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시 시민단체 추천인 3명 이상 위원 포함**[301]	윤리협의회 구성
2	1903891	정갑윤 의원	2013. 02.27.	2013. 04.30.	대안반영 폐기	**1. 수임사건 건수·수임액 보고(변호사→지방변호사회→대한변협·법무부장관)**[302]	(보고)의무
						2. 자료제출요구를 위해 보다 명백한 근거 규정 마련(법조윤리협의회→국회)[303]	자료제출
						3. 징계처분 내용을 각 변호사정보란에 상시 게시[304]	정보공개
						4. 법조윤리협의회 조사 위해 당사자의 자료제출/직접출석 요구, 불응시 과태료 처분[305]	윤리협의회 권한/처벌
3	1904307	이춘석 의원	2013. 03.28.	2013. 04.30.	대안반영 폐기	**1. 사실조회·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 부과(관계기관 및 단체→국회)**[306]	자료제출
						2. 매년 운영상황 보고 의무 및 전관예우 여부 확인 자료 제출 의무 부과(법조윤리협의회→국회)[307]	(보고)의무/자료제출

30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2019. 7. 5. 최종검색)
30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J2B1X1T1

연번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의결일	의결 결과	내용	항목분류
4	1904 437	박영선 의원	2013. 04.08.	2016. 05.29.	임기만료 폐기	1. 공직퇴임변호사 제출 수임자료에 건별 수임료 포함, 자료관리·보관의무·자료제출 의무 규정[308]	자료제출
						2.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 공익적 사유 존재시 자료제출 의무 부과[309]	자료제출
						3. 개인정보보호 등 사유를 제외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명단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 회의록 국회 제출[310]	정보공개
5	1904 723	법제사법 위원장	2013. 04.29.	2013. 04.30.	원안가결	1. 사실조회·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 부과, 불응시 과태료 부과[311]	자료제출/ 처벌
						2.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상황의 국회 보고,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시 자료제출 의무 부과[312]	(보고)의무 /자료제출
						3. 공직퇴임변호사·특정 변호사 수임자료를 허위 자료로 제출시 과태료 상향 조정[313]	자료제출/ 처벌
6	1909 703	서기호 의원	2014. 03.13.	2016. 05.29.	임기만료 폐기	1. 재판기관·수사기관 공무원 본인 취급 사건 담당 변호사를 근무지 이외에서 만난 때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보고의무 부과[314]	(보고)의무
						2. 위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315]	처벌
7	1911 717	김관영 의원	2014. 09.16.	2016. 05.29.	임기만료 폐기	1. 공직퇴임변호사의 법원·검찰청 등 관련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 연장[316]	수임행위제한 (기간)
						2. 위를 위반시 형사처벌[317]	처벌
8	1911 759	임내현 의원	2014. 09.19.	2016. 05.29.	임기만료 폐기	1. 수임제한 대상에 재판연구원 포함[318]	수임행위제한 (대상)
						2. 위를 위반시 형벌처벌[319]	처벌
9	1914 006	서기호 의원	2015. 02.16.	2016. 05.29.	임기만료 폐기	1. 전직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후 5년간 변호사 2명 이상 법률사무소 개설 금지[320]	수임행위제한 (대상&기간)
						2. 전직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후 3년간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금지, 그 외 사건 다른 변호사와 공동 수임 금지[321]	수임행위제한 (대상&기간)
10	1917 050	임내현 의원	2015. 10.05.	2016. 05.29.	임기만료 폐기	인사청문회 및 국정조사, 국정감사 위해 자료제출 요구시 이에 응할 의무 부과(법조윤리협의회→국회)[322]	자료제출
11	1917 079	서기호 의원	2015. 10.06.	2016. 05.29.	임기만료 폐기	1. 정당한 사유없이 변호사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강화(1년 이하 징역형/1천만원 이하 벌금형)[323]	수임행위제한 (방법)/처벌
						2. 변호사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 등 처벌시 관련 범죄수익 몰수·추징[324]	수임행위제한 (방법)/처벌
12	1917 080	이춘석 의원	2015. 10.07.	2016. 05.29.	임기만료 폐기	1.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시 국회의장 지명·위촉 4명,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협회장 각 2명, 총 10명[325]	윤리협의회 구성
						2. 변호사자격 소지자 한정 국회전담 자료제출업무 수행 관리관 공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배치[326]	윤리협의회 구성

연번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의결일	의결 결과	내용	항목분류
						3. 독립성 확보 위해 법조윤리협의회 및 사무기구에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으로부터의 직원 파견금지를 원칙으로 함[327]	윤리협의회 구성
						4. 공직퇴임변호사 제출 수임자료를 법률로 규정, 수임자료에 수임액 포함 시킴[328]	자료제출
						5. 인사청문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요구시 공직퇴임변호사, 특정 변호사, 변호사 아닌 공직퇴직자 제출할 자료 범위 확대,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329]	자료제출/처벌
20대 국회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13	2000139	노웅래 의원	2016.06.08.	2017.02.20. 회의	계류 중	1. 정당한 사유없이 변호사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 제재강화(1년 이하 징역형/1천만 원 이하 벌금형)[330]	수임행위제한(방법)/처벌
						2. 변호사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 등 처벌시 범죄수익 몰수·추징[331]	수임행위제한(방법)/처벌
14	2000157	주광덕 위원	2016.06.09.	2017.02.20. 회의	계류 중	1. 정당한 사유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강화(1년 이하 징역형/1천만 원 이하 벌금형)[332]	수임행위제한(방법)/처벌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퇴임변호사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사건 관련 수임자료, 처리결과 미제출시 1년 이하 징역형/1천만 원 이하 벌금형[333]	자료제출/처벌
						3. 변호사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 등 처벌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334]	수임행위제한(방법)/처벌
15	2000984	김동철 의원	2016.07.19.	2016.11.08. 회의	계류 중	1.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의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 수임금지, 수임료 등 대가 수령금지, 위반시 7년 이하 징역형/5천만 원 이하 벌금형[335]	수임행위제한(대상)/처벌
						2.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 대통령령으로 규정, 성공보수 금지, 위반시 2년 이하 징역형/제공금액 5배 상당 금액 벌금형[336]	보수제한/처벌
16	2000985	송영길 의원	2016.07.19.	2016.11.08. 회의	계류 중	1.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 처벌규정 마련[337]	(기록)의무
						2.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연장(1년→2년)[338]	수임행위제한(기간)
						3. 수임제한 위반하여 사건 수임 공직퇴임변호사, 소개·알선·유인한 재판기관·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처벌기준 강화[339]	수임행위제한(방법)/처벌
						4. 전관예우 통한 공직퇴임변호사의 금품 수수시 가액 따른 가중처벌[340]	수임행위제한(방법)/처벌
17	2001209	권은희 의원	2016.07.26.	2017.02.20. 회의	계류 중	1.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 퇴임 변호사의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후 3년간 당해 국가기관 처리 사건 수임금지[341]	수임행위제한(대상&기간)
						2. 법조윤리협의회는 징계개시 신청·수사의뢰 등 업무수행 위한 필요 성 인정시 변호사사무실 등	윤리협의회 권한/처벌

연번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의결일	의결 결과	내용	항목분류
						출입·현장조사 가능,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시 과태료 부과[342]	
						3. 현장조사 범위 및 시기 등 필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343]	윤리협의회 권한
						4. 지방변호사회에 공직퇴임변호사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의 사건번호, 사무요지, 건별 수임료 등 자료 제출[344]	자료제출
						5.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퇴임변호사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사건 관련 수임자료·처리결과 미제출시 1년 이하 징역형/1천만 원 이하 벌금형[345]	자료제출/ 처벌
						6. 공직퇴임변호사 퇴직 전 1년부터 퇴직시까지 근무한 국가기관 처리 사건을 퇴직 후 3년내 수임시 1년 이하 징역형/1천만 원 이하 벌금형[346]	수임행위제한 (대상&기간)
						7. 변호사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 등 처벌시 범죄수익 몰수·추징[347]	수임행위제한 (방법)/처벌
18	2001 518	이재정 의원	2016. 08.10.	2016. 11.22. 회의	계류 중	1.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시 국회 소관 상임위 3명 추천, 시민단체 4명 이상 추천[348]	법조윤리 협의회 구성
						2. 공직퇴임변호사 제출 수임자료에 자문사건 포함[349]	자료제출
						3.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 제출 자료에 수임사무요지 포함[350]	자료제출
19	2001 555	표창원 의원	2016. 08.11.	2017. 02.20. 회의	계류 중	1. 수임제한기간 연장(퇴직전 1년, 퇴직후 1년간 퇴직국가기관 처리 사건 수임 금지→각 2년)[351]	수임행위제한 (기간)
						2.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상태 변호행위시 현행 과태료 처분→3년 이하 징역형/2천만 원 이하 벌금형[352]	수임행위제한 (방법)/처벌
						3.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 수익 몰수·추징[353]	수임행위제한 (방법)/처벌
20	2002 307	권성동 의원	2016. 09.13.	2017. 02.20. 회의	계류 중	1. 재판·수사업무 종사 공무원의 직무상 관련있는 사건수임 관련 소개·알선시 3년 이하 징역형/2천만 원 이하 벌금형[354]	수임행위제한 (방법)/처벌
						2. 정당한 사유없이 변호사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 등 1년 이하 징역형/1천만 원 이하 벌금형[355]	수임행위제한 (방법)/처벌
						3. 재판·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본인 근무 기관 취급 중인 사건수임 관련 소개·알선 등 1년 이하 징역형/1천만 원 이하 벌금형[356]	수임행위제한 (방법)/처벌
21	2002 727	이찬열 의원	2016. 10.19.	2016. 11.22. 회의	계류 중	변호사의 법관, 검사 등 법적 친족관계 있는 공무원 처리 사건 수임 금지[357]	수임행위제한 (대상)
22	2003 927	주승용 의원	2016. 11.29.	2017. 02.23. 회의	계류 중	변호사, 사무직원의 사건 수임 목적 재판·수사업무 종사 공무원과의 친족관계, 지연·학연·공직근무 연고 등 기타 사적 관계 표출하며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행위 금지[358]	수임행위제한 (방법)

연번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의결일	의결 결과	내용	항목분류
23	2004694	이춘석 의원	2016.12.28.	2017.02.28. 회의	계류 중	1. 국회의장 지명·위촉 4명,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협회장 각 2명, 총 10명으로 법조윤리협의회 구성[359]	법조윤리 협의회 구성
						2. 변호사자격 소지자 한정 국회전담 자료제출업무 수행 관리관 공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배치[360]	법조윤리 협의회 구성
						3. 독립성 확보 위해 법조윤리협의회 및 사무기구의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으로부터 직원 파견 금지 원칙[361]	법조윤리 협의회 구성
						4.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 변호사 제출 수임자료 등 기재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 수임자료에 수임액 포함[362]	자료제출
						5. 국정감사 위해 국회 요구시 법조윤리협의회 자료제출의무 부과, 국회 제출 자료 범위 확대,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363]	자료제출/ 처벌
24	2005623	홍의락 의원	2017.02.14.	2017.08.29. 회의	계류 중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금지[364]	보수제한
25	2005745	법제사법 위원장	2017.02.23.	2017.02.23.	원안가결	1.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법조윤리협의회의 사실조회, 자료제출, 직접출석, 진술요구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시 법조윤리협의회 소속 직원의 현장조사 실시[365]	법조윤리 협의회 권한
						2. 법조윤리협의회 위원·간사·사무직원으로 비공무원도 직무상 행위 관련 형법 등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366]	처벌
						3.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 위반한 변호, 대리시 1년 이하 징역형/1천만 원 이하 벌금형[367]	수임행위제한 (방법)/처벌
						4. 정당한 이유없이 법조윤리협의회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368]	법조윤리 협의회 권한
26	2007413	정성호 의원	2017.06.15.	2017.11.23. 회의	계류 중	1. 탄핵·징계처분으로 파면·제명된 자 결격 기간 연장(5년→7년)[369]	징계
						2. 징계 강화(3년 이하 정직→5년 이하 정직)[370]	징계
						3.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의결 거쳐 법무부장관 인가받아 대한변협회장이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하게 함[371]	징계
						4. 영구제명 징계 사유를 변호사 직무 관련 금고 이상 형 선고·확정된 경우(2회→1회)[372]	징계
						5. 징계사유 발생후 휴업·폐업한 자도 징계 대상에 포함시킴[373]	징계
						6. 대한변협·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자격: 10년 이상 재직 판·검사, 10년 이상 개업 중인 변호사로 함[374]	징계

연번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의결일	의결 결과	내용	항목분류
						7. 징계청구 시효 조정[375]	징계
27	2007 856	박광온 의원	2017. 07.10.	2017. 07.11. 법사위 회부	계류 중	1. 공직퇴임변호사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 연장(퇴직일로부터 1년→3년)/위반시 형사처벌[376]	수임행위제한 (대상&기간)/ 처벌
						2. 위를 위반한 변호사 소속 법인도 벌금[377]	처벌
						3.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 수익 몰수·추징[378]	수임행위제한 (방법)/처벌
28	2008 519	박영선 의원	2017. 08.16.	2017. 11.23. 회의	계류 중	1. 공직퇴임변호사 개업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 5년간 내부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 존부 확인서 제출 의무화, 미제출시 등록신청 거부[379]	등록신청절차
						2.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도과시까지 등록치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보는 규정 삭제[380]	등록신청절차
						3. 전직 대법관 등 퇴직일로부터 2년간 변호사등록신청 금지, 전직 대법관의 대법원의 사건을 수임 영구히 금지[381]	등록신청절차 /수임행위제한 (대상 &기간)
						4. 전직 대법관 등 등록신청 제한 기간중 사법연수원·법무연수원 근무법전원 교수, 민사조정법상 상임조정위원 등 근무 조치[382]	등록신청절차
						5. 고등법원 부장판사·지검장 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퇴직까지 근무한 해당 기관 사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 금지[383]	수임행위제한 (대상&기간)
29	2010 262	곽상도 의원	2017. 11.21.	2019. 01.10. 회의	계류 중	공직퇴임변호사의 근무 기관 취급 중인 사건·사무 수임하여 당해 업무 종사 공무원과 면담·정보통신망 등 이용 연락시, 면담 내용 등 장부에 기재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 제출[384]	보고(의무)
30	2012 426	권칠승 의원	2018. 03.09.	2018. 09.20. 법사위 상정	계류 중	1. 대법원장·대법관 출신 변호사 개업시 퇴직시부터 5년간 변호사 2명 이상 법률사무소 개설 금지, 법무법인 등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로 될 수 없게 함[385]	수임행위제한 (대상&기간)
						2. 대법원장·대법관직 출신 변호사 개업시 퇴직시부터 3년간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금지, 그 외 사건 다른 변호사와 공동 수임 금지[386]	수임행위제한 (대상&기간)
31	2020 242	유성엽 의원	2019. 05.08.	2019. 05.09. 법사위 회부	계류 중	1.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연장[387]	수임행위제한 (기간)
						2.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관련 대한변협 감독기능 강화[388]	수임감독
						3. 변호사 보수를 대한변협 기준에 따르도록 함[389]	보수제한
						4. 형사사건 성공보수 전면 금지[390]	보수제한
						5. 위를 위반시 벌칙 부과[391]	처벌

연번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의결일	의결 결과	내용	항목분류
32	2020 496	금태섭 의원	2019. 05.17.	2019. 03.14. 회의	계류 중	1.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연장(퇴직전 1년, 퇴직후 1년→퇴직전 2년, 퇴직후 2년)[392]	수임행위제한 (기간)
						2. 공직퇴임변호사 소속 지방변호사회 제출 수임자료에 사건번호·수임액 포함[393]	자료제출
						3. 법조윤리협의회 산하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 설치[394]	법조윤리 협의회 권한
						4.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시 현행 과태료 처분→3년 이하 징역형/2천만 원 이하 벌금형[395]	수임행위제한 (방법)/처벌
						5.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미제출시 1년 이하 징역형/1천만 원 이하 벌금형[396]	자료제출/ 처벌
						6.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 수익 몰수·추징[397]	수임행위제한 (방법)/처벌

J6P1S7X1J3H4X8K4A0D4 2019. 7. 5. 최종검색)

30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O3D0I2N2M7J1T5T0T2G2K0Y0M2P3 2019. 7. 5. 최종검색)

30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O3D0I2N2M7J1T5T0T2G2K0Y0M2P3 2019. 7. 5. 최종검색)

30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O3D0I2N2M7J1T5T0T2G2K0Y0M2P3 2019. 7. 5. 최종검색)

30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O3D0I2N2M7J1T5T0T2G2K0Y0M2P3 2019. 7. 5. 최종검색)

30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G3L0G3M2Z8T1G5E0A1C3R6D7J1X2 2019. 7. 5. 최종검색)

30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G3L0G3M2Z8T1G5E0A1C3R6D7J1X2 2019. 7. 5. 최종검색)

30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I3O0N4J0Z8Y1W7U4M2M4X8G0G7B1 2019. 7. 5. 최종검색)

30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I3O0N4J0Z8Y1W7U4M2M4X8G0G7B1 2019. 7. 5. 최종검색)

31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I3O0N4J0Z8Y1W7U4M2M4X8G0G7B1 2019. 7. 5. 최종검색)

31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Q3J0U4L2P6Q1M8R3M0K1S3I1V1Z6 2019. 7. 5. 최종검색)

31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Q3J0U4L2P6Q1M8R3M0K1S3I1V1Z6 2019. 7. 5. 최종검색)

31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Q3J0U4L2P6Q1M8R3M0K1S3I1V1Z6 2019. 7. 5. 최종검색)

31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J4T0W3S1Y3N1Y3U4S8G3Z6G6Y2P9 2019. 7. 5. 최종검색)

31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J4T0W3S1Y3N1Y3U4S8G3Z6G6Y2P9 2019. 7. 5. 최종검색)

31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S4J0I9S1B6

E1O7P0Y8V4L9S9R2B1 2019. 7. 5. 최종검색)
31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S4J0I9S1B6E1O7P0Y8V4L9S9R2B1 2019. 7. 5. 최종검색)
31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F4S0K9I1P9A1I4Q3T8N3F2H1L2M2 2019. 7. 5. 최종검색)
31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F4S0K9I1P9A1I4Q3T8N3F2H1L2M2 2019. 7. 5. 최종검색)
32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W5Y0U2O1O6T1K4E1L2V1D7I1D8K7 2019. 7. 5. 최종검색)
32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W5Y0U2O1O6T1K4E1L2V1D7I1D8K7 2019. 7. 5. 최종검색)
32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Y5A1L0D0V5R1C4M1H6R3Z6G8O8K5 2019. 7. 5. 최종검색)
32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D5Q1Q0Z0Z6D1J7M5F8B4B7A4L3W9 2019. 7. 5. 최종검색)
32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D5Q1Q0Z0Z6D1J7M5F8B4B7A4L3W9 2019. 7. 5. 최종검색)
32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L5U1B0T0I7K0T9E2B4Q5D3C4N8D1 2019. 7. 5. 최종검색)
32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L5U1B0T0I7K0T9E2B4Q5D3C4N8D1 2019. 7. 5. 최종검색)
32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L5U1B0T0I7K0T9E2B4Q5D3C4N8D1 2019. 7. 5. 최종검색)
32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L5U1B0T0I7K0T9E2B4Q5D3C4N8D1 2019. 7. 5. 최종검색)
32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L5U1B0T0I7K0T9E2B4Q5D3C4N8D1 2019. 7. 5. 최종검색)
33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O6O0R6Q0G8U1Z2K0Z8K0F5P4I1L2 2019. 7. 5. 최종검색)
33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O6O0R6Q0G8U1Z2K0Z8K0F5P4I1L2 2019. 7. 5. 최종검색)
33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V6S0H6W0J9W1J0P5N5D2S5Y5A5U1 2019. 7. 5. 최종검색)
33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V6S0H6W0J9W1J0P5N5D2S5Y5A5U1 2019. 7. 5. 최종검색)
33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V6S0H6W0J9W1J0P5N5D2S5Y5A5U1 2019. 7. 5. 최종검색)
33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S6N0U7C1V9D1F5R5P9F4A2J5J3H5 2019. 7. 5. 최종검색)
33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S6N0U7C1V9D1F5R5P9F4A2J5J3H5 2019. 7. 5. 최종검색)
33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E6U0J7Z1P9J1P6U2Y0L4T3O5S5V3 2019. 7. 5. 최종검색)
33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E6U0J7Z1P9J1P6U2Y0L4T3O5S5V3 2019. 7. 5. 최종검색)
33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E6U0J7Z1P9J1P6U2Y0L4T3O5S5V3 2019. 7. 5. 최종검색)

34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E6U0J7Z1P9J1P6U2Y0L4T3O5S5V3 2019. 7. 5. 최종검색)
34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M6H0W7T2G6O1N6D3R6V4S4U4U5E5 2019. 7. 5. 최종검색)
34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M6H0W7T2G6O1N6D3R6V4S4U4U5E5 2019. 7. 5. 최종검색)
34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M6H0W7T2G6O1N6D3R6V4S4U4U5E5 2019. 7. 5. 최종검색)
34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M6H0W7T2G6O1N6D3R6V4S4U4U5E5 2019. 7. 5. 최종검색)
34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M6H0W7T2G6O1N6D3R6V4S4U4U5E5 2019. 7. 5. 최종검색)
34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M6H0W7T2G6O1N6D3R6V4S4U4U5E5 2019. 7. 5. 최종검색)
34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M6H0W7T2G6O1N6D3R6V4S4U4U5E5 2019. 7. 5. 최종검색)
34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V6I0I8Q1U0U1L7Z1W9T4V3Z1F6G6 2019. 7. 5. 최종검색)
34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V6I0I8Q1U0U1L7Z1W9T4V3Z1F6G6 2019. 7. 5. 최종검색)
35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V6I0I8Q1U0U1L7Z1W9T4V3Z1F6G6 2019. 7. 5. 최종검색)
35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O6I0U8G1J1U1H7V5C2Q2I1R0F6P7 2019. 7. 5. 최종검색)
35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O6I0U8G1J1U1H7V5C2Q2I1R0F6P7 2019. 7. 5. 최종검색)
35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O6I0U8G1J1U1H7V5C2Q2I1R0F6P7 2019. 7. 5. 최종검색)
35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U6P0W9D1P3C1T5K3N9C4I3X5B4H2 2019. 7. 5. 최종검색)
35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U6P0W9D1P3C1T5K3N9C4I3X5B4H2 2019. 7. 5. 최종검색)
35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U6P0W9D1P3C1T5K3N9C4I3X5B4H2 2019. 7. 5. 최종검색)
35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G6M1L0S1E9T1U8A5C9I5C6A1A2Y5 2019. 7. 5. 최종검색)
35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Y6N1H1R2C9D1G1S1M7D5W8G0Z8B6 2019. 7. 5. 최종검색)
35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X6B1T2H2D8D1Y8V0E4U1Y9O2T8Y8 2019. 7. 5. 최종검색)
36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X6B1T2H2D8D1Y8V0E4U1Y9O2T8Y8 2019. 7. 5. 최종검색)
36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X6B1T2H2D8D1Y8V0E4U1Y9O2T8Y8 2019. 7. 5. 최종검색)
36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X6B1T2H2D8D1Y8V0E4U1Y9O2T8Y8 2019. 7. 5. 최종검색)
36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X6B1T2H2

D8D1Y8V0E4U1Y9O2T8Y8 2019. 7. 5. 최종검색)
36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R7Q0Y2O1D4M1B6V0C0D3R4R0B4U4 2019. 7. 5. 최종검색)
36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S7E0H2Y2S0X1Y8Q3J1P3K8K2A5S5 2019. 7. 5. 최종검색)
36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S7E0H2Y2S0X1Y8Q3J1P3K8K2A5S5 2019. 7. 5. 최종검색)
36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S7E0H2Y2S0X1Y8Q3J1P3K8K2A5S5 2019. 7. 5. 최종검색)
36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S7E0H2Y2S0X1Y8Q3J1P3K8K2A5S5 2019. 7. 5. 최종검색)
36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K7C0T6Z1E5V1V6T5J5Z1C2V0Q0U9 2019. 7. 5. 최종검색)
37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K7C0T6Z1E5V1V6T5J5Z1C2V0Q0U9 2019. 7. 5. 최종검색)
37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K7C0T6Z1E5V1V6T5J5Z1C2V0Q0U9 2019. 7. 5. 최종검색)
37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K7C0T6Z1E5V1V6T5J5Z1C2V0Q0U9 2019. 7. 5. 최종검색)
37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K7C0T6Z1E5V1V6T5J5Z1C2V0Q0U9 2019. 7. 5. 최종검색)
37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K7C0T6Z1E5V1V6T5J5Z1C2V0Q0U9 2019. 7. 5. 최종검색)
37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K7C0T6Z1E5V1V6T5J5Z1C2V0Q0U9 2019. 7. 5. 최종검색)
37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C7F0H7Q1K0M1E1L0O0Y3O0B0G0Z9 2019. 7. 5. 최종검색)
37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C7F0H7Q1K0M1E1L0O0Y3O0B0G0Z9 2019. 7. 5. 최종검색)
37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C7F0H7Q1K0M1E1L0O0Y3O0B0G0Z9 2019. 7. 5. 최종검색)
37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T7N0T8G1F6Q1U0S1V3D1U7K4F2U7 2019. 7. 5. 최종검색)
38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T7N0T8G1F6Q1U0S1V3D1U7K4F2U7 2019. 7. 5. 최종검색)
38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T7N0T8G1F6Q1U0S1V3D1U7K4F2U7 2019. 7. 5. 최종검색)
38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T7N0T8G1F6Q1U0S1V3D1U7K4F2U7 2019. 7. 5. 최종검색)
38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T7N0T8G1F6Q1U0S1V3D1U7K4F2U7 2019. 7. 5. 최종검색)
38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A7L1P1Y2O1C1W4V4Z5D3S4N9B7W7 2019. 7. 5. 최종검색)
38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X8H0L3B0N9X1S6U5K0F1O4N0W5F5 2019. 7. 5. 최종검색)
38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X8H0L3B0N9X1S6U5K0F1O4N0W5F5 2019. 7. 5. 최종검색)

2. 분류 방법

첫째, 각 의원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의한 변호사법의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항목들을 키워드별로 분류하였는바, 그 결과 총 11개의 항목분류가 도출 가능하였다.

둘째, 실제 개정안에 있어서 전술한 11개 항목분류가 등장하는 횟수를 모두 표기함으로써(하나의 개정안에서 해당 항목분류에 2회 이상 해당하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 괄호 안에 해당 횟수를 병기), 어느 항목이 중점적으로 개정안으로 발의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이를 통하여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 전체적인 변호사법 개정 동향을 알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셋째, 발의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개정안을 연번으로 치환하였다. 이 결과 전관예우 방지대책으로 볼 수 있는 총 32개의 변호사법 개정안(연번)을 열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위 전관예우 방지 대책과 관련있는 전술한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

38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A9N0E5O0N8O1Q4A3Y5W0L1Y0H8B6 2019. 7. 5. 최종검색)
38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A9N0E5O0N8O1Q4A3Y5W0L1Y0H8B6 2019. 7. 5. 최종검색)
38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A9N0E5O0N8O1Q4A3Y5W0L1Y0H8B6 2019. 7. 5. 최종검색)
39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A9N0E5O0N8O1Q4A3Y5W0L1Y0H8B6 2019. 7. 5. 최종검색)
39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A9N0E5O0N8O1Q4A3Y5W0L1Y0H8B6 2019. 7. 5. 최종검색)
39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U9W0V5O1Q7H1I6R5V6F3W0S8V0D0 2019. 7. 5. 최종검색)
39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U9W0V5O1Q7H1I6R5V6F3W0S8V0D0 2019. 7. 5. 최종검색)
39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U9W0V5O1Q7H1I6R5V6F3W0S8V0D0 2019. 7. 5. 최종검색)
39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U9W0V5O1Q7H1I6R5V6F3W0S8V0D0 2019. 7. 5. 최종검색)
39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U9W0V5O1Q7H1I6R5V6F3W0S8V0D0 2019. 7. 5. 최종검색)
39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U9W0V5O1Q7H1I6R5V6F3W0S8V0D0 2019. 7. 5. 최종검색)

[표 6-2]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관예우 방지 대책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의 분류

호	항목분류	19대 국회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20대 국회 (2016년 5월 30일 – 현재)	
1	법조윤리협의회 구성	1, 12(3)	4회	18, 23(3)	4회
2	기록/보고 의무	2, 3, 5, 6	4회	16, 29	2회
3	자료 제출	2, 3(2), 4(2), 5(3), 10, 12(2)	11회	14, 17(2), 18(2), 23(2), 32(2)	9회
4	정보 공개	2, 4	2회	–	0회
5	법조윤리협의회 권한	2	1회	17(2), 25(2), 32	5회
6	수임행위 제한 (기간/대상/방법)	7, 8, 9(2), 11(2)	6회	13(2), 14(2), 15, 16(3), 17(3), 19(3), 20(3), 21, 22, 25, 27(2), 28(2), 30(2), 31, 32(3)	30회
7	형사처벌	2, 5(2), 6, 7, 8, 11(2), 12	9회	13(2), 14(3), 15(2), 16(2), 17(3), 19(2), 20(3), 23, 25(2), 27(3), 31, 32(3)	27회
8	징계	–	0회	26(7)	7회
9	보수 제한	–	0회	15, 24, 25, 31(2)	5회
10	등록신청 절차	–	0회	28(4)	4회
11	수임 감독	–	0회	31	1회
합계	총 11개 항목		37회		94회

3. 분류 결과

제19대 국회의 경우, '자료제출'과 '형사처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관예우 방지 대책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이 주를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전술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연번 5(의안번호 1904723)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공교롭게도 전관예우 방지 대책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류를 이룬 바 있는 '자료제출'과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양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과 '수임행위 제한'에 관한 개정안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20대 국회의 경우, '수임행위 제한'과 '형사처벌'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도 '수임행위 제한' 항목은, 그 행위태양이 기간과 대상 및 행위 등을 포괄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 특히나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제재라는 측면에서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징계' 항목에 해당하는 개정안들과 합산할 경우 그 수가 더욱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즉 전반적으로, 전관예우 방지 대책 차원에서 '수임행위 제한'은 물론 '형사처벌' 및 '징계'를 포함하는 제재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건대,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기본적인 경향은, 자료제출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동법상의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에 있어서의 기간과 대상 그리고 그 밖의 행위에 이르기까지 보다 폭넓은 제한을 도입하고자 하는 흐름이 엿보인다. 그리고 다수의 개정안들은, 관련 규제 사항 위반 시 기존의 행정제재를 형사제재로 변경하려 하거나, 혹은 기존의 형사제재보다 가중된 형사제재로 변경하려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수임행위 제한에 따른 유형분류

전술한 바와 같이, 그간의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보면, 동법의 개정을 통하여 특히 수임행위의 제한과 관련된 개정안들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와 같은 제한을 통하여, 특정한 장소에서의 개업을 제한하려 하거나, 특정한 기간 내지 시기에의 개업을 제한하려 하거나, 특정한 방법 내지 수단을 활용한 수임행위를 제한하려 하거나, 혹은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한 수임행위를 제한하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수임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첫째, 전관출신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지 제한 등 장소적 제한, 둘째, 변호사 개업 시기 등 시간적 제한, 그리고 셋째, 변호사 업무수행에 있어서 수임방법이나 수임조건 등 행위적 제한, 또한 넷째, 수임대상을 제한하는 방식을 통한 대상적 제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나누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는 전관예우 방지와 관련성있는 전술한 변호사법 개정안들 중에서도, 가장 주된 개정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임행위 제한과 관련있는 개정안들을 골라서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첫째, 전관출신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장소적 제한, 둘째, 개업시기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적 제한, 셋째, 수임의 방법 내지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방법적 제한, 넷째, 수임대상 관련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대상적 제한으로 나누어서 이에 해당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가. 장소적 제한

우선 위 개정안 유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들 중 수임행위 관련 장소적 제한 방식의 법안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시 말하자면, 적어도 제19대 국회 및 제20대 국회에서 이른바 개업지 제한과 같은 방식의 장소적 제한을 추구하는 개정안이 제안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아마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1989년 당시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398]으로 인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정을 하게 한다. 아래의 표를 통하여 과거 개업지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표 6-3]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판례집 1, 329 [위헌].[399]
[심판대상]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1982.12.31. 법률 제3594호)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경찰공무원의 재직기간이 통산하여 15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의 개업신고 전 2년 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개업할 수 없다. 다만, 정년으로 퇴직하거나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00]
[결정요지] "1.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호사로 개업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차별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개업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어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2항에 각 위반된다. 2. 변호사법 제10조 제3항은 독립하여 존속할 의미가 없으므로 같은 법조 제2항과 아울러 헌법 위반으로 인정된다."[401]

398) 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판례집 1, 329 [위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ths/pr/selectThsPr0101List.do;jsessionid=c5019V1oJwE3SxxAuv1Vs20hFPe6eh2H2WYOjWGls9VTkNKuy3P1WiIaDUlBYswQ.cosearch_servlet_engine1 2019. 8. 13. 최종검색)

399) 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판례집 1, 329 [위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시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전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 규정을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 등을 근거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의 경우, 전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으로서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이면서 동시에 당해 전관 출신 변호사의 (최근) 2년 이내 근무 지역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퇴직시로부터의 개업을 3년간 금지한 규정(만)을 위헌결정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당시의 변호사법이 추구한 개업지 제한, 즉 전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장소적 제한은 전체 전관 출신 변호사가 아닌 특정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타겟으로 설정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관으로서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전관 출신 변호사에 대하여서만 동법 규정이 장소적 제한을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직기간 15년을 기준으로 그 미만인 자와 그 이상인 자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차별이 가해진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측에 해당하는 당시 법무부는 이른바 중견판사 및 중견검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02]

또한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변호사법의 개업지에 대한 규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공익 실현이라는 입법취지의 실현에 있어서 선택된 수단의 합목적성이 결여된 점 및 그 정도에 있어서의 과잉으로 인한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언급했다는 점[403]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http://search.ccourt.go.kr/ths/pr/selectThsPr0101List.do;jsessionid=c5019V1oJwE3SxxAuv1Vs20hFPe6eh2H2WYOjWGls9VTkNKuy3P1WiIaDUlBYswQ.cosearch_servlet_engine1 2019. 8. 13. 최종검색)

400) 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판례집 1, 329 [위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ths/pr/selectThsPr0101List.do;jsessionid=c5019V1oJwE3SxxAuv1Vs20hFPe6eh2H2WYOjWGls9VTkNKuy3P1WiIaDUlBYswQ.cosearch_servlet_engine1 2019. 8. 13. 최종검색)

401) 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판례집 1, 329 [위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ths/pr/selectThsPr0101List.do;jsessionid=c5019V1oJwE3SxxAuv1Vs20hFPe6eh2H2WYOjWGls9VTkNKuy3P1WiIaDUlBYswQ.cosearch_servlet_engine1 2019. 8. 13. 최종검색)

402) 박형연 변호사, "[변협의 숨은 역사(33)] 전관변호사 개업제한의 역사(2)", 대한변협신문, 2016. 2. 1.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5 2019. 8. 13. 최종검색)

403) 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판례집 1, 329 [위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ths/pr/selectThsPr0101List.do;jsessionid=c5019V1oJwE3SxxAuv

위헌결정을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전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 자체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즉 어디까지나 개업지 제한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기간만큼을 재직한 바 있는 전직 법관 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 위헌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개업지 제한이라는 장소적 제한방식을 취함에 있어서, 수임행위의 주체가 될 자를 한정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자면, 오히려 이와 달리 전관 출신 변호사 전반에 대한 총체적 수준의 개업지 제한이 설정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결론 또는 위헌결정의 근거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이와 대비하기 위하여, -장소적 제한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현행 변호사법상의 수임행위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6-4] 변호사법 제31조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1항 및 제2항 "생략"
제3항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 ·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404]
제4항 및 제5항 "생략"

오해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이 규정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된 바 있는 전술한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의 개업지 제한 내지 장소적 제한방식과는 매우 다른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수임행위에 있어서 퇴직 전 1년과 퇴직 후 1년이라는 시간적 제한과 함께, 근무한 국가기관의 처리 사건이라는 대상적 제한을

1Vs20hFPe6eh2H2WYOjWGls9VTkNKuy3P1WiIaDUlBYswQ.cosearch_servlet_engine1 2019. 8. 13. 최종검색)

40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0000 2019. 8. 30. 최종검색)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자면, 개업 내지 개업 장소에 있어서의 시간적 제한이 아닌, 수임대상 사건에 있어서의 시간적 제한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동 규정을 개업지 제한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행 변호사법에 이르기까지, 공직퇴임변호사라고 불리는 전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개업지 제한과 같은 장소적 제한을 통한 전관예우 방지 대책은 적어도 현행 법률규정을 통하여 구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법 개정안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을 통한 규제 방안은 더 이상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는- 추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개업지 제한 방식을 포함하는 장소적 제한을 통한 전관예우 방지 대책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하여 발의되지 않고 있다.

대신 후술할 바와 같이, 장소적 제한을 제외한 그 외 수임행위 자체에 대한 제한, 즉 시간적 제한이나 방법적 제한, 그리고 대상적 제한을 통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려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그 외 수임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 방식의 강화 역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도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나. 시간적 제한

1) 내용

개정안 유형 중 시간적 제한 방식의 법안 유형에는 다음의 개정안들이 해당한다. 의안번호 1911717, 의안번호 1914006, 의안번호 2000985, 의안번호 2001209, 의안번호 2001555, 의안번호 2007856, 의안번호 2008519, 의안번호 2012426, 의안번호 2020242, 의안번호 2020496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이와 같은 수임행위에 대한 제한 중 특히 시간적 제한을 직접 표명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 규정을 다시 살펴보도록 한다.

[표 6-5]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 규정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405]

제19대 국회의 경우, 예를 들어 전술한 의안번호 1911717은 법관 출신 등 공직퇴임변호사의 법원이나 검찰청 등 관련 국가기관 사건의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었으며, 의안번호 1914006의 경우도 이러한 공직퇴임변호사 중에서도 특히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하여는 개업 후 5년간 특히 2명 이상의 법률사무소의 개업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개업 후 3년간 대법원 사건의 수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등 개업에 있어서의 시간적 제한을 규정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20대 국회의 경우, 예를 들어 전술한 의안번호 2000985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자체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고, 의안번호 2001209의 경우 특정 국가기관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에 한하여 퇴직 전 특정 기간 및 퇴직 후 특정 기간 동안 당해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전술한 의안번호 2001555의 경우 역시 기존의 수임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의안번호 2007856의 경우 이를 3년으로 더욱 장기로 연장하려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전술한 의안번호 2008519의 경우 이와 같은 기간 연장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 이외에도 특히 대법관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에는 대법원 사건에 한하여 수임제한을 영구하게 하려는 것,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및 지검장 이상의 직에 있던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퇴직시까지 근무한 해당 기관 사건에 한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40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0000 2019. 8. 30. 최종검색)

그리고 전술한 의안번호 2012426의 경우도 이러한 개정안들과 같은 맥락에서, 대법관 이상의 직에 있던 공직퇴임변호사에 한하여는 퇴직 후 3년간 대법원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전술한 의안번호 2020242의 경우에도 역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임행위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기간에 대한 제한, 즉 시간적 제한을 통하여 전관예우 방지를 추구한 것으로 여겨진다.

2) 문제점: 전관예우의 '유효기간'에 따른 구별 필요성

그러나 이와 같이 특정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통한 시간적 제한이 과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규제 방식은 마치 특정 기간 동안의 수임의 제한 내지 개업의 제한을 통하여 전관예우에 있어서 이른바 전관의 '유효기간'을 경과시키게 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관예우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고찰해야 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선행연구 등에서 이에 대한 검증이 행해진 바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전관예우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검증은 사실상 생략된 채 특정한 기간으로 연장하여 규정해나가는 방식의 규제에 있어서 그 효과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3) 전관예우의 '유효기간'에 따른 공직퇴임변호사(수임 주체) 및 대상 사건(수임 객체)의 구별 필요성

만약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유효기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전관예우에 있어서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무의미하여 오히려 거의 항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또는 적어도 특정 지위 이상의 고위 법관 또는 검사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에 한하여서는 이와 같은 '유효기간'이 무의미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시간적 제한을 규정할 것인지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차라리- 전술한 개정안들 중 특히 대법관 이상의 직에 있던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하여 대법원 사건의 수임을 영구히 제한한

의안번호 2008519를 참고하여 반영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우선적으로 규제에 있어서 수임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는 공직퇴임변호사를 기준으로 한 전관예우의 '유효기간' 구별이 선행될 필요성이 발생해버리고 말 것으로 보인다. 즉 전관예우의 '유효기간'이 가장 길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대법관 이상의 직에 있던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만약에 그 기간을 무한한 것으로 간주해야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보다 하위직에 있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등 법원장 출신 공직퇴임변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공직퇴임변호사, 단독판사 출신 공직퇴임변호사, 평판사 출신 공직퇴임변호사 등에 대하여 각각의 전관예우 '유효기간'에 대한 상세한 구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술한 바와 같이 규제에 있어서 수임행위의 주체라는 측면으로 공직퇴임변호사를 먼저 고려하고 나면, 이번에는 후술할 수임행위의 객체라는 측면에서 수임행위의 대상이 될 사건에 대한 구별이 또 다시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전술한 의안번호 2008519를 참고해보면, 당해 개정안에서는 대법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바 있는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수임행위의 객체 내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사건을 영구하게 수임하지 못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대법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공직퇴임변호사, 즉 대법관 또는 대법원장이었던 공직퇴임변호사가 공직 퇴임 이후에도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끼치는 영향이 이와 같이 막대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법원보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끼칠 영향이 더 작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아마도 하급법원에 해당하는 법원의 사건에 대하여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대하여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비하여 적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대단히 희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본다.

결국 이를 종합한다면, 수임행위와 관련한 시간적 제한의 설정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첫째, 수임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는 공직퇴임변호사 자체에 대한 구별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둘째, 수임행위의 객체에 해당하는 사건 등 대상에 대한 구별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다. 방법적 제한

1) 의의

개정안 유형 중 수임방법이나 수임조건 등 수임행위에 있어서 특히 방법적 제한 방식의 법안 유형에는 다음의 개정안들이 해당한다. 의안번호 1917079, 의안번호 2000139, 의안번호 2000157, 의안번호 2000985, 의안번호 2001209, 의안번호 2001555, 의안번호 2002307, 의안번호 2003927, 의안번호 2005745, 의안번호 2007856, 의안번호 2020496이 이에 해당한다.

후술할 바와 같이, 이러한 개정안들에서는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의 강화를 규정하려는 개정안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외에도 전술한 의안번호 2000985와 같이 전관예우를 통한 금품수수행위시 당해 금품의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규정하려는 개정안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주된 흐름: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이 중에서도 특히 개정안들의 주류를 이루는 내용은 바로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전반적 제재강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를 통하여 전술한 의안번호 1917079, 의안번호 2000139, 의안번호 2000157, 의안번호 2001209, 2001555, 의안번호 2002307, 의안번호 2007856, 의안번호 2020496 등은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던지 혹은 이러한 변호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 대하여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들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그간 공직퇴임변호사들에 대한 전관예우로 자주 지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행위들-예를 들어 공직퇴임변호사에 의한 이른바 전화변론[406] 등-에 대한 직접적이면서 강화된 제재를 명문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전술한 바와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의안번호 2005745의 경우, 이와 같은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행위

406) 이승윤 기자,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자료 미제출 시 형사처벌'" 입법 추진, 법률신문, 2019. 5. 17.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3102 2019. 8. 23. 최종검색)

에 대하여 상한 1년의 징역형 또는 상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난점: 규제 대상 행위에 대한 파악 내지 발각의 낮은 가능성

이러한 수임행위에 있어서 방법적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제한 내지 규율대상이 될 위반행위 자체를 즉시적으로 발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반대로 전술한 장소적 제한이나 시간적 제한, 그리고 후술할 대상적 제한은 모두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적으로 발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방법적 제한과 관련한 규제의 경우, 당해 규제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를 즉시적으로 발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대단히 힘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선임계 작성 없는 전화변론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를 실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 등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혹은 다른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내지 수사가 행해질 경우 이에 수반한 강제처분에 의하여 발각이 가능할 여지가 존재할 뿐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수임행위에 있어서 방법적 제한이 과연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4) 일반예방효과 강화의 고려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이른바 전화변론과 같은 변칙적인 로비행위를 포함하는- 선임계 작성 없는 변론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는 일반예방효과 강화 차원에서라도, 변호사법상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방법적 제한의 하나로 함께 활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당해 제재대상 행위의 파악 내지 발각 가능성이 낮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 크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에 대한 높은 강도의 제재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또한 비록 파악 내지 발각 가능성이 낮다고 하여도, 제재의 정도를 높게 규정하게 되면, 당해 위반행위를 -제재를 감수하면서- 저지를 가능성이 적게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 것은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보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라. 대상적 제한

1) 의의

대상적 제한은 자칫 전술한 장소적 제한과의 구별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는 점이 있을 수 있다. 전술한 장소적 제한이라고 하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행위에 있어서 개업지와 같은 제한을 생각하면 된다. 이에 비하여 여기에서 소개할 대상적 제한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할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즉 수임행위의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제한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개정안 유형 중 먼저 기술한 바 있는 장소적 제한, 시간적 제한, 방법적 제한 이외에도 대상적 제한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법안 유형에는 다음의 개정안들이 해당한다. 의안번호 1911759, 의안번호 1914006, 의안번호 2000984, 의안번호 2001209, 의안번호 2002727, 의안번호 2007856, 의안번호 2008519, 의안번호 2012426, 의안번호 2020242가 이에 해당한다.

2) 특정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및 강화된 시간적 제한의 결합

예를 들어 전술한 의안번호 1914006 및 의안번호 2012426의 경우는, 전직 대법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공직퇴임변호사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특정기간(3년) 동안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퇴직 직전의 근무지인 대법원 사건에 한정하여 현행 변호사법상의 시간적 제한을 연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즉 대법원 사건에 대한 강화된 시간적 제한이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대상적 제한과 시간적 제한을 결합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전술한 의안번호 2008519의 경우, 특히 대법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공직퇴임변호사가 대법원 사건에 한하여 영구히 수임할 수 없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를 통하여, 대법원 사건에 한정된 영구한 수임제한이라는 매우 강화된 수임행위에 있어서의 대상적 제한을 창출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술한 의안번호 2008519는 여기에 더하여,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직에 있던 공직퇴임변호사 및 지검장 이상의 직에 있던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퇴직까지 근무한 바 있는 해당 기관의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사항을 기존의 수임제한에 더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없던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대상적 제한을 덧붙이려 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임명시 인사청문회 등으로 인하여 언론은 물론 일반인의 주목을 받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에 그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고위 법관 인사 내지 검찰 고위급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법원장급에 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및 검사장 이상의 직에 있던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하여 수임행위에 있어서의 대상적 제한은 물론 더욱 강화된 시간적 제한을 함께 규정하려 하였다는 점에서는 실효적 규제를 추구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제19대 및 제20대에서는 특정한 고위 법관 또는 검사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수임대상에 대한 제한과 함께 강화된 시간적 제한을 추구하는 개정안이 적지 않게 발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5. 수임행위 제한 이외의 방식에 따른 제한 방법

가. 제재 관련 규정 및 법조윤리협의회

전술한 바와 같이,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는 위 수임행위 제한 방식 이외에도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 및 권한에 대한 개정이나 기록/보고의무 및 자료제출 내지 정보공개에 대한 개정, 형사처벌 및 징계에 대한 개정, 수임으로 인한 보수제한에 대한 개정, 등록신청절차에 대한 개정, 그리고 비록 소수이지만 수임감독에 대한 개정 등 수임행위 제한 이외의 방식에 따른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에서도 특히 형사처벌 내지 징계 등 제재의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다수임은 전술한 바와 같으며, 그 외에도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 및 권한에 대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이 역시 주목할 만하다.

나.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한 제한: 구성의 개선 및 권한의 강화

다만 이와 같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 및 권한에 대한 개선책 등이 담긴 개정안이 과연 변호사법의 개정을 통한 전관예우 방지대책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는 결국 제재방안과의 유기적 연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며, 이를 위하여는 전술한 형사처벌 내지 징계 강화와 같은 개정안과 그 궤가 함께 되어야만 개정안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한 제한 내지 규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종의 자율규제 시스템 내지 내부통제 시스템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한계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고려한다면, 전술된 바 있는 전관예우 방지대책과 관련있는 우리나라 제20대 국회의 변호사법 개정안들 중에서도, 특히 전술한 바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형식으로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의안번호 2005745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 법안의 경우 법조윤리협의회의 권한 및 구성의 개선을 규정하려 함과 동시에 관련 의무의 위반시 제재를 신설 내지 강화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확보를 제고한 측면이 크다고 평가될만하다.

6. 소결: 규제강화 입법방식 경향의 지속

제19대 국회 이후 변호사법 개정안들 중 전관예우 방지와 관련성이 있는 개정안들에 대한 검토를 행한 결과, 거의 예외없이 규제강화 방식을 통하여 전관예우 방지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호사법 개정안에서 채용된 규제강화 방식에는, 전술한 수임행위 제한에 있어서 시간적 제한, 방법적 제한, 대상적 제한이 주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의 개선을 통한 규제강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호사법을 통한 전관예우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그 강도의 차이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장 강한 규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바로 전관출신 변호사, 즉 공직퇴임변호사의 변호사 등록 자체를 전면적·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즉 이른

바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채 행하는 일체의 개업행위는 물론 취업행위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방식을 따라 입법을 행하는 것의 당·부당은 별론으로 하고, 사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가능성은 물론이고, 당해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능성 역시 제기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예측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둘째, 중간 강도의 규제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즉 공직퇴임변호사의 변호사 등록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되, 법정에서의 송무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을 취한다는 것은, 반대로 자문행위를 금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역시 자문행위에 한정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좁게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셋째, 가장 약한 강도의 규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변호사법 및 개정전 변호사법이 취하고 있는 수임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규제라고 생각된다. 즉 개정전 변호사법이 규정한 바 있는 개업지 제한과 같은 장소적 제한은 물론이고, 현행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시간적 제한, 대상적 제한, 방법적 제한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수임행위와 관련된 규제방식 역시 각각 규제의 강도에 있어서 차이를 갖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장소적 제한을 다시 규정한다고 가정해보면, 개업이 제한될 지역의 범위를 얼마나 크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규제의 강도는 달라질 것이다. 또한 시간적 제한 역시 기간의 정함을 달리하여 얼마든지 규제의 강도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전관예우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규제 강도의 조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정책적 대안: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제4절 | 공직자윤리법

1. 개관

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정: 반사적 효과

변호사법 개정안 외에도, 전관예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의 제·개정 작업이 있어 이를 검토해볼만하다.

이중에서도 특히 공직자윤리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를 등록의무자(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라고 규정하면서[407], 다시 이들 등록의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직자윤리법 그 자체가 공직퇴임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공직자의 윤리준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하여 공직윤리의 제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술한 변호사법과 함께- 공직퇴임변호사를 포함하는 퇴임 공직자 전반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라는 반사적 효과를 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양한 규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특히 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

---

407)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를 통하여 법관과 검사를 이러한 등록의무자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 후 취업제한(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408] 등 다양한 의무가 이들 공직퇴임변호사에게 부담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408)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및 제2호 "생략")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7호~제11호 "생략")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담된 의무의 이행을 통하여, 전관예우의 방지라는 반사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이러한 등록의무자에게 취업제한의무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면서, 동법 단서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취업제한의무의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409] 그런데 동법

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409)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및 제2호 "생략")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7호~제11호 "생략")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

제17조 제1항 본문의 이러한 취업제한의 의무부과에 있어서는, 의무부과 대상자인 법관 및 검사를 포함하는 등록의무자의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410]이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기관이나

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410)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및 제2호 "생략")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7호~제11호 "생략")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

업체 혹은 업무 등을 동법 제1호부터 제8호에 이르기까지 직접 열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411]

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411)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및 제2호 "생략")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7호~제11호 "생략")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동법 제3호에 법무법인 등이 직접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동법상의 규정으로 인하여, 동법 역시 -전술한 변호사법과 함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법률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후술할 바와 같이, 동법에 대한 다양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시기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직후라는 점이다. 이는 당시 사건의 발생원인 내지는 사건 발생 이후 참사 발생의 원인 및 사고 원인 규명에 있어서의 장애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소관 부처 출신 퇴직 공무원 혹은 관련 공공기관 출신 퇴직자 등이 퇴직 이후 사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에 취업한 후 일종의 로비 창구로 활용되어 온 점이 사고의 원인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원인 규명을 곤란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412]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공무원의 퇴직 이후 취업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동법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의 필요성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대두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전반에 대한 퇴직 이후 취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법관 또는 검사의 퇴직 이후 취업과 관련한 강화된 제한 역시 -일종의 반사적 효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관예우의 방지 효과가 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 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412) 곽영식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피아' 적폐 여전", 노컷뉴스, 2018. 10. 11. (https://www. nocutnews.co.kr/news/5043553 2019. 7. 29. 최종검색); 우경희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피아' 건재 "해수부 퇴직자 산하기관 독식", 머니투데이, 2017. 10. 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100809427635466&outlink=1&ref=http%3A%2F1%2Fsearch.naver.com 2019. 7. 29. 최종검색)

[표 6-6] 공직자윤리법 중 전관예우 방지 관련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413] 제1호 내지 제4호 "생략" 5. "법관 및 검사"[414] 제6호 내지 제13호 "생략" ② "삭제"[415]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16] 제1호 및 제2호 "생략"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417] 제4호 내지 제11호 "생략"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418] 제1호 내지 제6호 "생략"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419]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4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421] 제1호 내지 제4호 "생략"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422] ④ "생략"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423]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424]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25]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26] 1.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427] 제2호 및 제3호 "생략"

따라서 이와 같은 공직퇴임변호사를 포함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특히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동법상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전관예우 방지대책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제19대 국회 및 제20대 국회 관련 개정안

이러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중 제19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 회기 중 발의된 전관예우 방지대책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1900530, 의안번호 1902690, 의안번호 1904130, 의안번호 1904656, 의안번호 1907123, 의안번호

4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4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4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4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4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4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4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4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4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4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4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4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4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4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4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1908614, 의안번호 1910591, 의안번호 1910688, 의안번호 1910734, 의안번호 1910803, 의안번호 1910836, 의안번호 1910838, 의안번호 1910896, 의안번호 1910954, 의안번호 1911133, 의안번호 1912375, 의안번호 1912928, 의안번호 2002133, 의안번호 2005957, 의안번호 2007242, 의안번호 2008461, 의안번호 2011167, 의안번호 2021126이 이에 해당하는 개정안이다.[428]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직자윤리법상 전관예우 방지와 관련성이 있는 개정안들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표 6-7] 19대·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중 전관예우 방지 대책 관련 개정안

연번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의결일	의결결과	내 용	항목 분류
19대 국회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1	1900530	신장용 의원	2012. 07.05.	2014. 12.09.	대안반영 폐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퇴직전 업무 밀접 관련 사기업체 등 재취업금지 기간 연장(2년 → 3년)[429]	기간
2	1902690	전순옥 의원	2012. 11.21.	2014. 12.09.	대안반영 폐기	1. 취업제한 여부 확인·취업승인 심사결과 홈페이지 공개[430]	정보공개
						2. 위 사항을 통계화, 매년 국회에 보고 의무화[431]	의무 부과
3	1904130	진선미 의원	2013. 03.19.	2014. 12.09.	대안반영 폐기	1. 업무관련성 상관없이 사기업체 등 취업하려는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432]	절차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433]	제한 대상
4	1904656	이언주 의원	2013. 04.25.	2014. 12.09.	대안반영 폐기	1. 정무직공무원 퇴직후 3년간 재산변동 신고의무[434]	의무 부과
						2. 퇴직시부터 2년, 퇴직전 5년 소속 부서 업무 밀접 관련 사기업체 취업 제한, 예외사항 불인정[435]	기간/제한 대상
						3. 정무직공무원 퇴직전 2년부터 퇴직시까지 근무 기관이 새로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퇴직시부터 2년간 취급 제한[436]	기간 (취급제한)
5	1907123	김동철 의원	2013. 10.04.	2014. 12.09.	대안반영 폐기	1. 취업제한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437]	구성
						2. 자료제출요구(취업제한 심사위원회 → 취업심사대상자/관련 기관 또는 사기업체 등 장)[438]	자료제출
6	1908614	김관영 의원	2013. 12.18.	2014. 12.09.	대안반영 폐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기한 수정(정기국회 등 → 정기회 등 개회전까지)[439]	자료제출
7	1910591	이찬열 의원	2014. 05.13.	2014. 12.09.	대안반영 폐기	1. 취업제한 기간 연장(퇴직후 2년, 퇴직전 5년 → 퇴직후 3년, 퇴직전 5년)[440]	기간
						2. 업무취급 제한 기간 연장(1년 → 2년)[441]	기간 (취급제한)

42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2019. 7. 5. 최종검색)

연번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의결일	의결결과	내 용	항목 분류
8	1910688	김제남 의원	2014. 05.20.	2014. 12.09.	대안반영 폐기	1. 퇴직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 → 퇴직전 5년 동안 소속 기관 업무로 확대, 취업제한 기간 퇴직 후 2년 → 3년 조정[442]	업무 관련 범위/기간
						2.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443]	제한대상
						3. 취업제한 여부 확인·취업승인 심사결과 주기적 공개의무[444]	의무 부과
						4. 법정형 상향 조정(1년 이하 징역형/1천만 원 이하 벌금형 → 3년 이하 징역형/3천만 원 이하 벌금형)[445]	처벌강화
9	1910734	정청래 의원	2014. 05.26.	2014. 12.09.	대안반영 폐기	1. 취업제한 여부 확인·취업승인 관련 사항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제외하고 공직자윤리위원가 일괄 심사[446]	절차
						2. 취업제한 기간 연장(2년 → 3년),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447]	기간/제한 대상
						3. 취업제한 여부 확인·취업승인심사 완료시 심사결과 공개[448]	정보 공개
10	1910803	민병두 의원	2014. 06.05.	2014. 12.09.	대안반영 폐기	1.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시 국회 추천, 시민단체 추천[449]	구성
						2. 취업제한 기간 연장/대상 확대[450]	기간/제한 대상
						3. 취업제한 여부 확인·취업승인 심사결과 공개의무[451]	정보 공개
						4. 퇴직 공직자 취업 이력 10년간 공시[452]	
						5.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없이 사기업체 등 취업시 연금지급정지, 연금수급권 제한[453]	처벌 강화
						6. 취업제한 등 관련 위반 행위과태료 부과[454]	
11	1910836	전정희 의원	2014. 06.11.	2014. 12.09.	대안반영 폐기	취업제한 기간 연장(2년 → 3년)/퇴직전 소속 부서 업무 → 퇴직전 소속 기관 업무[455]	기간/업무 관련 범위
12	1910838	정희수 의원	2014. 06.11.	2014. 12.09.	대안반영 폐기	취업제한 기간 연장(2년 → 5년)[456]	기간
13	1910896	전순옥 의원	2014. 06.18.	2014. 12.09.	대안반영 폐기	취업제한 기간 연장(2년 → 10년)[457]	기간
14	1910954	정 부	2014. 06.23.	2014. 12.09.	대안반영 폐기	1. 취업제한 기간 연장(2년 → 3년)/소속 부서 업무 → 소속 기관 업무[458]	기간/업무 관련 범위
						2. 취업제한 기관 확대(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종합병원, 법인, 비영리법인 추가)[459]	제한 대상
						3. 취업심사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지정 사이트 공개/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제출요청권 강화[460]	정보공개 /자료제출
						4. 고위공직자 퇴직시 10년간 매년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 현황 조사 후 공시[461]	정보 공개

연번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의결일	의결결과	내 용	항목 분류
						5. 고위공직자 퇴직후 10년간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시 1개월 이내에 퇴직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의무, 신고받은 소속기관장은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통보의무[462]	의무 부과
15	1911133	김기준 의원	2014. 07.14.	2014. 12.09.	대안반영 폐기	1. 취업심사대상자 취업 현황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463]	정보 공개
						2. 국회 등 요구시 사기업체 등 취업 취업심사대상자 명단 제출[464]	
16	1912375	진영 의원	2014. 11.07.	2014. 12.09.	대안반영 폐기	1. 취업제한 기간 연장(2년 → 3년)/소속 부서 업무 → 소속 기관 업무[465]	기간/업무 관련 범위
						2. 취업제한 기관 확대[466]	제한 대상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 규정 삭제[467]	
						4. 업무 취급제한 대상자 확대/대상기간 연장(1년 → 2년)[468]	기간
						5. 취업제한 여부 확인·취업승인 심사결과 지체 없이 지정 인터넷 사이트 공개[469]	정보 공개
						6.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시 5년 간 매년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 여부 조사후 취업 이력 공시[470]	
						7. 취업심사대상자 퇴직후 5년간 취업제한 기관 취업시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1개월 이내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부과(1천만 이하)[471]	의무 부과 /처벌강화
17	1912928	안전행정 위원장	2014. 12.	2014. 12.09.	원안 가결	1. 정치자금 수입·지출 위한 예금 별도 구분[472] 2. 취업제한 기간 연장(2년 → 3년)[473] 3. 취업제한 기관 확대(공직유관단체, 종합병원 개설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의 비영리법인)[474] 4. 업무관련성 범위를 '기관의 업무'로 확대[475] 5.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라도 재산공개대상 고위직 퇴직자에게 취업심사 받을 의무부과[476] 6.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심사 결과 공개[477] 7.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하여 10년간 매년 취업제한 기관 취업 현황 인터넷 사이트 공시하고,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후 10년간 취업제한 기관 취업시 소속했던 기관장에게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 신고의무[478] 8.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전 2년 전부터 소속 기관이 본인 취업 사기업체 등 관련 처리 업무를 퇴직후 2년간 취급금지[479] 9.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전' 등까지로 규정[480]	*상기 연번 1~16까지 법안의 주요 내용이 본 개정안에 반영됨

연번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의결일	의결결과	내 용	항목 분류
						10.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시 벌칙 강화(2년 이하 징역형/2천만 원 이하 벌금형)[481]	
20대 국회 (2016년 5월 30일 – 현재)							
18	2002133	김해영 의원	2016. 09.05.	2019. 07.18. 회의	계류 중	1.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조정(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을 국회추천)[482]	구성
						2. 취업제한 심사결과 공개 충실히 함[483]	정보공개
19	2005957	유민봉 의원	2017. 03.03.	2019. 07.18. 회의	계류 중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 취업제한 여부확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임의 취업 방지[484]	절차
20	2007242	제윤경 의원	2017. 06.07.	2017. 11.23. 회의	계류 중	1. 취업제한 기간 연장(3년 → 5년)[485]	기간
						2.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범위에 취업제한 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 영향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486]	절1차
						3. 취업대상자 심사시 퇴직공직자 권리의 불합리한 제한 금지 규정 삭제[487]	
						4. 취업승인 요건을 시행령 아닌 법률에 규정[488]	입법
						5.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제한기간 연장(2년 → 5년)[489]	기간
						6.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 기관에의 취업여부 확인기간을 퇴직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490]	
						7.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없이 취업한 자, 관련 서류 조작·허위제출하여 취업승인 받은 자를 처벌[491]	처벌 강화
21	2008461	황주홍 의원	2017. 08.09.	2019. 07.18. 회의	계류 중	1.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모든 공직유관단체 포함[492]	제한대상
						2. 취업승인 기준을 법률이 직접 규정[493]	입법
						3. 공직윤리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 위주로 함[494]	구성
22	2011167	권은희 의원	2017. 12.29.	2019. 07.18. 회의	계류 중	1.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시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 추천하는 4인 포함[495]	구성
						2.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취업승인 등 심사시 심사사항 관련 구체적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관리[496]	자료 관리
						3.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취업심사 완료시 심사결과 인터넷 사이트 공개[497]	정보 공개
23	2011126	정 부	2017. 12.29.	2019. 07.18. 회의	계류 중	1. 공직자 보유주식 관리 강화[498] 2. 공직자 재산심사 강화[499] 3. 공직자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500]	의무 부과
						4. 방위산업 분야 등 취업제한 기관 추가[501]	제한대상
						5.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신고방식 등 개선(제3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가능, 소속기관장의 해당 제3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 가능)[502]	입법

42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X2K0Z7Z0I5A1K6E4N1O2M8S2W5T5 2019. 7. 5. 최종검색)
43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2M1F1D2M1V1M4X2N7S5F6H0M8F9 2019. 7. 5. 최종검색)
43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2M1F1D2M1V1M4X2N7S5F6H0M8F9 2019. 7. 5. 최종검색)
43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C3J0Y3Z1Q9Q1O6B0Z8H1Y8J1B5A3 2019. 7. 5. 최종검색)
43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C3J0Y3Z1Q9Q1O6B0Z8H1Y8J1B5A3 2019. 7. 5. 최종검색)
43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F3N0D4D2U5Q1B5K5Y6M2F2O0H4V3 2019. 7. 5. 최종검색)
43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F3N0D4D2U5Q1B5K5Y6M2F2O0H4V3 2019. 7. 5. 최종검색)
43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F3N0D4D2U5Q1B5K5Y6M2F2O0H4V3 2019. 7. 5. 최종검색)
43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F3F1Y0E0K4Q1T1C5S8T1M5V7G6S8 2019. 7. 5. 최종검색)
43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F3F1Y0E0K4Q1T1C5S8T1M5V7G6S8 2019. 7. 5. 최종검색)
43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I3K1B2A1L8V1U5F1L5B5F1I0H1R3 2019. 7. 5. 최종검색)
44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H4Q0V5X1T3V1O7E1L5Q5R8G1M6J8 2019. 7. 5. 최종검색)
44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H4Q0V5X1T3V1O7E1L5Q5R8G1M6J8 2019. 7. 5. 최종검색)
44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K4E0R5I2R0Y1K8W1S5C4Y4D6I3P4 2019. 7. 5. 최종검색)
44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K4E0R5I2R0Y1K8W1S5C4Y4D6I3P4 2019. 7. 5. 최종검색)
44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K4E0R5I2R0Y1K8W1S5C4Y4D6I3P4 2019. 7. 5. 최종검색)
44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K4E0R5I2R0Y1K8W1S5C4Y4D6I3P4 2019. 7. 5. 최종검색)
44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U4F0P5R2D6R1X7Z3A6A5M3Q2Y0E3 2019. 7. 5. 최종검색)
44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U4F0P5R2D6R1X7Z3A6A5M3Q2Y0E3 2019. 7. 5. 최종검색)
44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U4F0P5R2D6R1X7Z3A6A5M3Q2Y0E3 2019. 7. 5. 최종검색)
44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L4R0M6I0M5F1N1Y3X3D0R0N1Z0A3 2019. 7. 5. 최종검색)
45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L4R0M6I0M5F1N1Y3X3D0R0N1Z0A3 2019. 7. 5. 최종검색)
45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L4R0M6I0M5F1N1Y3X3D0R0N1Z0A3 2019. 7. 5. 최종검색)
45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L4R0M6I0

M5F1N1Y3X3D0R0N1Z0A3 2019. 7. 5. 최종검색)
45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L4R0M6I0M5F1N1Y3X3D0R0N1Z0A3 2019. 7. 5. 최종검색)
45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L4R0M6I0M5F1N1Y3X3D0R0N1Z0A3 2019. 7. 5. 최종검색)
45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C4S0Q6K1T1F1E1E3X2B5Z4U5F4C5 2019. 7. 5. 최종검색)
45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V4R0V6V1E1S1Z3Q3L3R0E3W2V0J5 2019. 7. 5. 최종검색)
45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L4P0W6O1L8T1Q1A1Q3B0X9I2W3C8 2019. 7. 5. 최종검색)
45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R1M4E0P6H2J3O1S4C4D9D0S4F9C9M6 2019. 7. 5. 최종검색)
45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R1M4E0P6H2J3O1S4C4D9D0S4F9C9M6 2019. 7. 5. 최종검색)
46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R1M4E0P6H2J3O1S4C4D9D0S4F9C9M6 2019. 7. 5. 최종검색)
46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R1M4E0P6H2J3O1S4C4D9D0S4F9C9M6 2019. 7. 5. 최종검색)
46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R1M4E0P6H2J3O1S4C4D9D0S4F9C9M6 2019. 7. 5. 최종검색)
46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N4E0Z7P1Y4L1P0Y1G9I3I9C2R7O2 2019. 7. 5. 최종검색)
46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N4E0Z7P1Y4L1P0Y1G9I3I9C2R7O2 2019. 7. 5. 최종검색)
46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H4Z1E1R0S7W1X8Y0Q2Y2P5M1Z9G8 2019. 7. 5. 최종검색)
46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H4Z1E1R0S7W1X8Y0Q2Y2P5M1Z9G8 2019. 7. 5. 최종검색)
46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H4Z1E1R0S7W1X8Y0Q2Y2P5M1Z9G8 2019. 7. 5. 최종검색)
46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H4Z1E1R0S7W1X8Y0Q2Y2P5M1Z9G8 2019. 7. 5. 최종검색)
46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H4Z1E1R0S7W1X8Y0Q2Y2P5M1Z9G8 2019. 7. 5. 최종검색)
47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H4Z1E1R0S7W1X8Y0Q2Y2P5M1Z9G8 2019. 7. 5. 최종검색)
47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H4Z1E1R0S7W1X8Y0Q2Y2P5M1Z9G8 2019. 7. 5. 최종검색)
47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L4C1E1H1V3X2S0Z5F5M1D3Q5H2W6 2019. 7. 5. 최종검색)
47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L4C1E1H1V3X2S0Z5F5M1D3Q5H2W6 2019. 7. 5. 최종검색)
47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L4C1E1H1V3X2S0Z5F5M1D3Q5H2W6 2019. 7. 5. 최종검색)
47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L4C1E1H1V3X2S0Z5F5M1D3Q5H2W6 2019. 7. 5. 최종검색)

47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L4C1E1H1V3X2S0Z5F5M1D3Q5H2W6 2019. 7. 5. 최종검색)
47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L4C1E1H1V3X2S0Z5F5M1D3Q5H2W6 2019. 7. 5. 최종검색)
47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L4C1E1H1V3X2S0Z5F5M1D3Q5H2W6 2019. 7. 5. 최종검색)
47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L4C1E1H1V3X2S0Z5F5M1D3Q5H2W6 2019. 7. 5. 최종검색)
48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L4C1E1H1V3X2S0Z5F5M1D3Q5H2W6 2019. 7. 5. 최종검색)
48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L4C1E1H1V3X2S0Z5F5M1D3Q5H2W6 2019. 7. 5. 최종검색)
48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D6Y0G9U0V5V1C2U3K5G4K9S0K5F2 2019. 7. 5. 최종검색)
48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D6Y0G9U0V5V1C2U3K5G4K9S0K5F2 2019. 7. 5. 최종검색)
48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H7Y0H3I0V3E1P0R2F6H4K8W9H7H1 2019. 7. 5. 최종검색)
48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N7C0I6J0C7L1F7W4D5R1L7N1F8I6 2019. 7. 5. 최종검색)
48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N7C0I6J0C7L1F7W4D5R1L7N1F8I6 2019. 7. 5. 최종검색)
48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N7C0I6J0C7L1F7W4D5R1L7N1F8I6 2019. 7. 5. 최종검색)
48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N7C0I6J0C7L1F7W4D5R1L7N1F8I6 2019. 7. 5. 최종검색)
48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N7C0I6J0C7L1F7W4D5R1L7N1F8I6 2019. 7. 5. 최종검색)
49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N7C0I6J0C7L1F7W4D5R1L7N1F8I6 2019. 7. 5. 최종검색)
49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N7C0I6J0C7L1F7W4D5R1L7N1F8I6 2019. 7. 5. 최종검색)
49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T7J0G8O0Z9U1T7W5K1A1B0E9K2B1 2019. 7. 5. 최종검색)
49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T7J0G8O0Z9U1T7W5K1A1B0E9K2B1 2019. 7. 5. 최종검색)
49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T7J0G8O0Z9U1T7W5K1A1B0E9K2B1 2019. 7. 5. 최종검색)
49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A7W1Z2J2M9J1L7W5Q2G4F0L6U6A9 2019. 7. 5. 최종검색)
49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A7W1Z2J2M9J1L7W5Q2G4F0L6U6A9 2019. 7. 5. 최종검색)
49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A7W1Z2J2M9J1L7W5Q2G4F0L6U6A9 2019. 7. 5. 최종검색)
49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R1P7S1A2K2Z9J1Z3B5U9I1B4Y0Q2H5 2019. 7. 5. 최종검색)
49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R1P7S1A2K2

2. 분류 방법

[표 6-8]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관예우 방지 대책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분류

번호	항목분류	19대 국회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20대 국회 2016년 5월 30일 – 현재)	
1	기간	1, 4(2), 7(2), 8, 9, 10, 11, 12, 13, 14, 16(2)	14회	20(3)	3회
2	정보공개	2, 9, 10(2), 14(2), 15(2), 16(2)	10회	18, 22	2회
3	의무 부과	2, 4, 8, 14, 16	5회	23(3)	3회
4	절차	3, 9	2회	19, 20(2)	3회
5	제한대상	3, 4, 8, 9, 10, 14, 16(2)	8회	21, 23	2회
6	구성	5, 10	2회	18, 21, 22	3회
7	자료제출	5, 6, 14	3회	–	0회
8	업무관련범위	8, 11, 14, 16	4회	–	0회
9	처벌강화	8, 10(2),16	4회	20	1회
10	입법[503]	–	0회	20, 21, 23	3회
11	자료관리	–	0회	22	1회
합계	총 11개 항목		52회		21회

첫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방향 및 개정에 있어서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초적인 양적 조사를 진행해보았다. 양적 조사의 방법으로는 먼저 해당 국회 회기 중 각 의원 및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항목들을 키워드별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 총 11개의 항목분류가 가능하였다.

둘째, 실제 개정안에 있어서 전술한 11개 항목분류가 등장하는 횟수를 모두 표기함으로써(하나의 개정안에서 해당 항목분류에 2회 이상 해당하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

Z9J1Z3B5U9I1B4Y0Q2H5 2019. 7. 5. 최종검색)

50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R1P7S1A2K2 Z9J1Z3B5U9I1B4Y0Q2H5 2019. 7. 5. 최종검색)

50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R1P7S1A2K2 Z9J1Z3B5U9I1B4Y0Q2H5 2019. 7. 5. 최종검색)

50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R1P7S1A2K2 Z9J1Z3B5U9I1B4Y0Q2H5 2019. 7. 5. 최종검색)

503) 항목분류상 '입법'은, 전에 없던 제도의 창설 혹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있던 제도의 법률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밝혀둠.

괄호 안에 해당 횟수를 병기), 어느 항목이 중점적으로 개정안으로 발의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전체적인 개정 동향을 알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셋째, 편의상 이하에서는 발의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회기 내 발의된 전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연번으로 치환하였다.

3. 분류 결과

우선 제19대 국회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기존의 취업제한의 기간 연장과 취업제한해당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미승인 심사결과 공개 관련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입법개정안이 주를 이루었다고 판단되며, 2014년 12월 9일, 유사하였던 입법안들을 정리한 전술한 의안번호 1912928(안전행정위원장 발의)이 가결되었다.

다음으로 제20대 국회에서는, 특히 취업제한 기간 연장이나 그 취업승인 심사결과 공개 관련 개정안이 입법에 있어서 실질적 반영이 이루어진 이후, 관련 개정안의 발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대신에, 취업과 관련하여 자료제출과 업무관련범위 항목을 제외한 개정안들이 비교적 고르게 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한 조치라는 것이, 비단 변호사법상의 공직퇴임변호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퇴직공무원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치라는 점을 첨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특히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퇴임변호사를 포함하는- 퇴직공무원 전반의 재취업과 관련한 제한 규정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매우 빈번하게 발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한 번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동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하여 미치는 전관예우 방지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퇴직공무원 전반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효과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4. 경향성: 취업제한 기간 연장에의 치중

제19대 국회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 중 전관예우 방지와 관련성이 있는 개정안들에 대한 검토를 행한 결과, -변호사법 개정안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의 예외없이 규제강화 방식을 통하여 전관예우 방지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과 함께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및 취업승인의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등으로, 사전적 통제 위주의 규제강화를 통하여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퇴직공무원의 퇴직후 취업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들이,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집중적으로 발의되었던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동법의 개정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대부분 시간적 제한의 확장을 통한 규제 강화에 치중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5. 한계와 대책: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취소 규정과의 균형 모색

그러면서도 전술한 동법 제17조 제1항의 취업제한 기간 관련 규제 사항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동법 제29조 제1호에 따라 여전히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형사적 제재가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현행 변호사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결격사유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현행 변호사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변호사 자격의 등록취소를 행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6-9]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취소 관련 규정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취소 및 결격사유	
제18조 (등록 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504] 제1호 "생략"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05] 제3호 내지 제4호 "생략" ②~⑤ "생략"
제5조 (변호사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506]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07]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08]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09] 제4호 내지 제10호 "생략"

즉 현행 변호사법 제5조의 변호사 결격사유로 직접 규정되어 있는 형사적 제재는 어디까지나 금고 이상의 형벌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29조가 동법 제17조 제1항 취업제한 기간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29조 제1호와 관련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취소를 통한 제재의 유효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동법 제29조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는 방안을 일견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동법의 적용 대상자가 오로지 공직퇴임변호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무원 전반이라는 점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후술할 정책적 대안에서는 동법 규정에서 벌금형을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방안보다는, 퇴직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공직퇴임변호사에 한정하여 당해 위반행위시 벌금형이 적용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제1안).

문제는 이와 같은 제1안의 개선방안을 취할 경우라고 한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적용대상인 퇴직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공직퇴임변호사에 한정하여 전술한 위반행위에 한정하여 다시 벌금형의 적용가능성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규정형식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위와 달리, 공직자윤리법 규정 대신 변호사법의 전술한 등록취소 사유 내지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를 행하는 방안 역시 별도의 대안으로 검토해보도록 할 것이다(제2안). 즉 전술한 현행 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는 형사적 제재로 금고

50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J18:0 2019. 8. 30. 최종검색)
50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J18:0 2019. 8. 30. 최종검색)
50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J18:0 2019. 8. 30. 최종검색)
50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J18:0 2019. 8. 30. 최종검색)
50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J18:0 2019. 8. 30. 최종검색)
50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J18:0 2019. 8. 30. 최종검색)

이상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공직자윤리법상 특정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이 선고되는 등의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결격사유에 포섭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510]

즉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과 변호사법 규정을 직접 개정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정책적 대안: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에서 보다 상세히 후술하도록 한다.

제5절 |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1. 의의

또한 의안번호 1915154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511]의 경우도, 법률안의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전관예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전관예우의 방지 방식은, 후술할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점에 있어서 전술한 변호사법상의 규제나 공직자윤리법상의 규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의원입법안 형태로 2015. 5. 15. 발의된 바 있는 의안번호 1915154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512]은 대법원장,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이 법관직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가 될 경우 높은 확률로 전관예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510) 굳이 말하자면, 이와 같은 방식은 선출공직자의 당선무효사유와 관련하여, 특히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로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402&efYd=20190801#J264:0 2019. 8. 30. 최종검색)

51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C5Z0V5L1Q5E1F5D4V4S1F7O2H6V4 2019. 7. 5. 최종검색)

51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C5Z0V5L1Q5E1F5D4V4S1F7O2H6V4 2019. 7. 5. 최종검색)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관예우를 사전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예우 내지 지원사항을 규정하려 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즉 동 제정안은 이러한 고위 법관들이 법관직에서 퇴직한 이후 로펌 변호사로 취업하는 등 영리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아닌 공익활동을 하게 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퇴직 고위 법관이 일반적인 영리추구 활동이 아닌 공익활동에 매진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위 법관의 법관직 퇴직 이후 로펌 취업 내지 개업 의욕을 떨어뜨려서, 전관예우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동 제정안의 경우, 다른 법률의 개정안들이 전관예우 방지목적으로 공직퇴임변호사들에 대하여 규제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일정한 페널티를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일정한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 제정안이 선택한 이와 같은 전관예우의 사전적 예방 방안은, 일종의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측면을 볼 때, 최근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시니어 판사제도 내지 시니어 법관제도[513]와 사실상 그 맥락을 달리 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2. 내용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연구하는 본 연구보고서의 취지에 맞추어, 이와 같은 동 제정안의 전체 내용 중 특히 전관예우 방지 대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동 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먼저 동 제정안은 공익활동에 종사할 위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으로 공익활동 지원금(동 제정안 제3조[514])을 규정하면서, 이에 더하여 인력 측면의

513) 시니어 판사제도로 기재할 것인지 혹은 시니어 법관제도로 기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예를 들어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관련 보고서의 경우, 이를 '시니어판사 제도'로 기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모성준 · 서용성 · 최유나,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년, 6면.

지원 및 부대비용측면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기타 지원(동 제정안 제4조[515])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금전적 지원 및 인력 지원을 통하여,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하여 충분한 예우를 보장하여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 추구를 통한 전관예우 효과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위 전직 고위 법관들이 수행할 공익활동으로 공익목적의 수임행위(동 제정안 제5조 제5항[516])와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및 기타 법률사무(동 제정안 제5조 제6항[517])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이 제한적인 공익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우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전관예우를 차단하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동 제정안은 이와 같은 공익활동을 수행할 전직 고위 법관들이 전술한 공익활동 지원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연금의 지급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동 제정안 제7조[518])에 특징이 있다. 공익활동 수행 전직 고위 법관에 대하여 정부재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을 고려할 때, 연금의 지급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일각으로부터 금전적 혜택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규정된 제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한계

그러나 동 제정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관예우 방지와 관련하여, 적용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및 연금지급에 대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51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C5Z0V5L1Q5E1F5D4V4S1F7O2H6V4 2019. 7. 5. 최종검색)
51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C5Z0V5L1Q5E1F5D4V4S1F7O2H6V4 2019. 7. 5. 최종검색)
51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C5Z0V5L1Q5E1F5D4V4S1F7O2H6V4 2019. 7. 5. 최종검색)
51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C5Z0V5L1Q5E1F5D4V4S1F7O2H6V4 2019. 7. 5. 최종검색)
51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C5Z0V5L1Q5E1F5D4V4S1F7O2H6V4 2019. 7. 5. 최종검색)

가. 좁은 범위의 적용대상자

우선 제정안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법관이,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 및 전직 헌법재판소장과 전직 헌법재판관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동 제정안 제2조[519])에서 필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일반적인 전관예우라는 문제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보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방안이라고 본다. 공직퇴임변호사들 중에서도 특히 법관에 한정하면서, 그 중에서도 전직 대법관 이상이었던 자 및 전직 헌법재판관 이상이었던 자만을 동 제정안의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활동 수행을 통하여 전관예우의 차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극히 적은 수에 그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른바 전관이라고 불리는 공직퇴임변호사들 중에서도, 특히 최고위 법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 및 전직 헌법재판소장과 전직 헌법재판관을 그 적용대상인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필요최소한의 제한 내지 규제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직 대법관 이상이었던 자 및 전직 헌법재판관 이상이었던 자인 공직퇴임변호사라고 한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수가 극히 적다는 점으로 인하여 법조계 종사자 및 언론은 물론이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인식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다수인의 인식 범위 내에 있는 최고위급 공직퇴임변호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법조계 종사자 등 동료 집단 및 언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식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정도의 행동의 제약이 따르는 이와 같은 극소수의 최고위급 공직퇴임변호사에 한정하여 동 제정안의 적용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적어도 전관예우 방지의 목적달성에는 한계가 따른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동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고위 법관 내지 고위 검사-예를 들어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검사장 등-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전관예우 방지가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

51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C5Z0V5L1Q5E1F5D4V4S1F7O2H6V4 2019. 7. 5. 최종검색)

나. 연금지급의 제한

또한 연금 지급에 있어서의 제한에 대하여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장래의 수령을 예정하고 당사자의 급여에서 일정액이 재직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공제되어 적립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연금은 예우라는 측면에서 제공된 지원금과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즉 '금전'이라는 측면에 지나치게 주목한 나머지, 지원금과 연금을 중복적인 혜택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이와 같은 연금지급의 규제는, 공익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전관예우에 대한 자발적 포기로 인한- 금전적 이익의 감소라는 측면을 볼 때,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즉 공익활동 수행에 따른 지원금 지급 액수에 따라 연금지급액의 부분적 감액 등을 그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전관예우 방지 대책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이러한 연금의 지급 금지 규정은 전직 고위 법관의 공익활동 수행을 통한 전관예우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걸림돌로 여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4. 소결: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특징

동 제정안은 전술한 제19대 국회 이후의 변호사법 개정안들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과는 매우 상반된 방식을 통하여 전관예우 방지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공익활동 수행을 선택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급 이상의- 공직퇴임변호사에게는 전관예우를 대체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전관예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동 제정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점에서, 동 제정안이 선택한 이와 같은 전관예우의 사전적 예방 방안은, 일종의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측면을 볼 때, 최근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시니어 판사제도 내지 시니어 법관제도[520]와 유사한 맥락의 것으로 여겨짐은 전술한 바와 같다.

---

520) 시니어 판사제도로 기재할 것인지 혹은 시니어 법관제도로 기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예를 들어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관련 보고서의 경우, 이를 '시니어판사 제도'로 기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모성준 · 서용성 · 최유나,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년, 6면.

이러한 이익제공을 통하여, 공직퇴임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자의로 포기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제19대 국회 및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이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규제강화 방식과는 정반대 방향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공직퇴임변호사 입장에서 이와 같은 인센티브가 전관예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적지 않다고 인식된다면, 전관예우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강화 방식에 비하여 보다 발전된 통제방식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동 제정안이 그야말로 '안'에 그치고 말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방식의 효과성과 규제강화 방식에 대한 비교우위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제로 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따른다.

제6절 | 소위 후관예우 방지 목적 법률안

1. 의의

한편 이와 정반대의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안들도 있어서, 비교 차원에서라도 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즉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 목적의 법률안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위 후관예우라 함은 법관이 과거 자신이 소속되었던 법무법인 등 로펌이 수임한 사건을 재판할 때의 불공정 시비 문제[521]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자면, 변호사 출신 법관이 자신이 소속되었던 법무법인 등 로펌에게 유리한 판결이나 결정 혹은 그 밖의 재판진행절차에 있어서 특혜를 부여하는 등 예우하는 문제를 편의상 후관예우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후관예우는 전관예우와 정반대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관이나

521) 이승윤 기자, ""신규임용 판사, 3분의 2가 로펌 출신…'후관예우' 우려"", 법률신문 2019. 3. 15.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555 2019. 6. 19. 최종검색)

검사 출신인 변호사를 함께 근무한 후배나 동료 등이 판결, 결정, 재판진행절차, 강제처분절차 등에 있어서의 특혜를 통하여 우대하는 것이 전관예우라고 요약할 수 있다면, 후관예우는 정반대로 변호사 출신인 법관이 자신이 소속되었던 로펌을 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혜부여라는 측면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가 정반대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관련 법률안

가. 의의

이러한 후관예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으로는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의안번호 2019203[522]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의안번호 2019204[523]가 이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

나. 내용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의안번호 2019203의 경우는, 법조일원화 정책의 시행에 따라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법관이 과거 자신이 재직한 바 있는 로펌 또는 기업에서 퇴직한지 3년의 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당해 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법안이다.[524]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의안번호 2019204의 경우도, 전술한 의안번호 2019203과 동일한 내용을 역시 민사소송법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이다.[525]

---

52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M9H0D3U1U4L1Z4H2B8K5A2M3H0M3 2019. 7. 5. 최종검색)
52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D9T0S3Y1J4L1I4S3X3B5Y9B0E0V4 2019. 7. 5. 최종검색)
52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M9H0D3U1U4L1Z4H2B8K5A2M3H0M3 2019. 7. 5. 최종검색)
52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D9T0S3Y1J4L1I4S3X3B5Y9B0E0V4 2019. 7. 5. 최종검색)

다. 한계

전술한 법안들 중, 전관예우 방지차원에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들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의 경우는 대부분 전관출신 변호사의 수임행위를 제한하거나, 혹은 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는데 치중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전관예우와 대칭이 되는 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된 위 두 법안들의 경우는, 자신이 재직한 바 있었던 로펌이나 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력법관에게 특정한 시간적 제한 하에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즉 이들 두 개정안에서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규제의 핵심 역시 어디까지나 시간적 제한의 설정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미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살펴보면서 기술한 바와 같은- 장소적 제한, 대상적 제한, 방법적 제한 등 다른 제한에 대한 설정이 아직까지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제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할 수 있는 위하력 내지 억제력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시간적 제한에 더하여 전술한 방법적 제한 등에 대하여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제7절 | 종합

이상과 같이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는 전관예우 방지대책과 관련있는 법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표 6-10]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관예우 방지대책 관련 법안의 경향성

법안 제목	경향성/특징	비고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시간적 제한 연장 중심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공직퇴임변호사 등에 대한 시간적 제한 연장 중심	-

[표 6-10] (계속)

법안 제목	경향성/특징	비고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최고위급 법관 출신 공직퇴임변호사 한정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전관예우 포기 유도	-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경력법관에 대한 시간적 규제 설정	전관예우에 상응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 목적 법안

첫째, 변호사법 개정안의 경우 수임행위의 제한과 관련하여, 주로 수임행위에 있어서 시간적 제한을 늘리거나 당해 제한과 관련된 제재를 강화하는 맥락에서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 외 수임행위에 있어서 대상적 제한이나 방법적 제한과 관련된 법안들도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둘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경우 주로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시간적 제한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발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이 발의된 주된 목적이 법조비리와 관련된 전관예우 방지대책에만 제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역시 전술한 바와 같다.

셋째, 최고위급 법관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예우를 통하여 공직퇴임변호사가 누릴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사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유도하는 법안도 일부 발의된 바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의 경우, 법관과 검사 중에서도 특히 법관, 그리고 법관 중에서도 특히 최고위급 법관 출신 공직퇴임변호사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넷째, 전관예우 방지대책에 상응하는 측면이 있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대책도 일부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어디까지나 전술한 시간적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대상적 제한 내지 방법적 제한과 함께 보다 입체적으로 구조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전관예우 관련 해외 입법례 검토

이천현·임정호

제7장

전관예우 관련 해외 입법례 검토

제1절 | 영미법계 국가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영미법계 국가에 있어서 전관예우 방지대책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대조되는 영미법계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 중 가장 대표적인 국가들인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간략히 검토해보도록 한다.

1. 미국

가. 의의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전관예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은 로스쿨 시스템을 통하여 양성된 법조인이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일반화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르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거친 법률실무가들은 대체로 첫째, 로펌에 입사하여 송무 또는 자문을 행하는 변호사가 되거나 일반 기업에 입사하여 사내 변호사(in house counsel)가 된다. 또는 둘째, 주나 연방의 검사가 될 수도 있다. 혹은 셋째, 로스쿨 교수로 임용되어 학계에 남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넷째, 법원에서 법관의 재판과 관련하여 리서치 등을 행하는 재판연구관, 즉 law clerk이 되기도 한다. 또한 다섯째, 드물지 않게 별 다른 경력 없이 곧바로 단독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대다수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을 행한 후, 로펌에 입사하거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예상이나 인식과 달리 과연 법관 출신 변호사 혹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수임행위 등에 있어서 전관예우를 누리는 것이 과연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독특한 법문화의 존재로 인하여 애초부터 전관예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나. 초점의 차이

우리나라에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굳이- 우리나라에서의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 내지 유사성이 있는 이슈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려고 한다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과연 미국에서는 법관직에 평생 머무를 수 있는지 여부, 즉 법관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법관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규제책의 필요성이 애초부터 문제시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전관예우와 상응하는 문제로, 과연 미국에서는 법관 퇴직 이후 변호사 업무 복귀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전술된 바와 같이 이른바 전화변론 등 변칙적 변론행위 방지를 위하여 수임행위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상의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문제로, 법관과 소송당사자측간 접촉 또는 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법관과 소송 당사자측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법관과 소송당사자측간 인간관계의 존부로 인한 법관의 결격사유와 같은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제가 비단 공직퇴임변호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를 편의를 위하여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 7-1] 법관 관련 우리나라와 미국의 초점 차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이한 초점		
우리나라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미국	법관직의 종신적 수행 가능성	
	퇴직 법관의 변호사 업무 복귀 가능성	
	법관과 소송 당사자측간 접촉·관계에 대한 규제 가능성	법관과 소송 당사자측간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규제
		법관과 소송 당사자측간 인적 관계에 따른 결격사유

이하에서는 위 세 가지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하나씩 행하도록 한다.

다. 법관직의 지속 가능성: 연방 및 주의 이원적 구조

1) 연방 차원의 상황

미국의 법관직에 대하여는, 마치 모든 법관이 종신직인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과연 이러한 인식 내지 선입견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미국에서의 법관직에 대하여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의 차원으로 양분하여 검토를 행할 필요가 있다.

연방의 경우, 이른바 종신직인 연방판사들이 분명 존재한다. 관련 규정이 미연방헌법 제3조에 직접 규정[526]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Article Ⅲ Judge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에는 미연방대법원 재판관(U.S. Supreme Court), 미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재판관, 미연방지방법원 내지 제1심 법원(U.S. District Court) 법관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527] 이들 법관들은 모두 미국 대통령에 의하여 후보로 지명되고 있으며, 미연방상원의 청문회를 거쳐야만 한다.[528] 따라서 이러한 미연방법

526) 미연방헌법 제3조 제1항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대법원에, 그리고 연방의회가 임의로 제정·설치하는 하급법원에 속한다.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 정기에 보수를 받고 그 보수는 재임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이상윤, 영미법, 박영사, 1999년, 593면.

527) United States Courts (https://www.uscourts.gov/faqs-federal-judges 2019 9. 16. 최종검색)

원 소속의 법관 혹은 재판관이라고 하면 종신직이라는 것에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2) 개별 주 차원의 상황

⑴ 의의

그러나 주 법원 소속의 판사들에 관하여는 이와 별개의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주 법원 소속의 판사들의 경우, 임기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출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529] 그러므로 종신직이 아닌 판사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신직이 아닌 주 법원 소속의 임기제 판사 혹은 선출직 판사의 경우라고 한다면, 임기 종료 등으로 퇴직하게 된 이후 변호사 개업 내지 변호사 취업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⑵ 정년을 직접 규정하는 경우

주 법원 소속의 판사들에 대하여 특정한 연령을 정년퇴임 의무 연령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우선 70세를 정년퇴임 의무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알래스카, 애리조나, 코네티컷, 플로리다,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주리,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와이오밍이 해당된다.[530]

다음으로 72세를 정년퇴임 의무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가 해당된다.[531]

한편 74세를 정년퇴임 의무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도 워싱턴디씨가 해당된다.[532]

---

528) United States Courts (https://www.uscourts.gov/faqs-federal-judges 2019 9. 16. 최종검색)

529) 차성안,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사법신뢰의 회복방안-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 심포지엄, 2019. 6. 20. 60면.

530)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http://www.judicialselection.us/judicial_selection/methods/selection_of_judges.cfm?state= 2019. 9. 16. 최종검색)

531)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http://www.judicialselection.us/judicial_selection/methods/selection_of_judges.cfm?state= 2019. 9. 16. 최종검색)

532)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http://www.judicialselection.us/judicial_selection/metho

마지막으로 75세를 정년퇴임 의무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디애나(단, 주 대법원 및 주 항소법원 한정), 오래건, 유타, 워싱턴(단, 주 대법원 및 주 제1심법원 한정)이 해당된다.[533]

⑶ 임용가능 최고 연령의 한계를 규정하는 경우

이와 달리 주 법원 소속의 판사들에 대하여 특정한 연령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임용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우선 70세 이하를 임용가능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앨라배마, 캔자스,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가 해당된다.[534]

다음으로 72세 이하를 임용가능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해당된다.[535]

마지막으로 74세 이하를 임용가능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텍사스가 해당된다.[536]

⑷ 임기만 규정하는 경우

정년이나 임용가능 최고 연령을 규정하지 않고, 임기만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칸소,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조지아, 아이다호, 일리노이,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이 해당된다.[537]

⑸ 검토

전술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ds/selection_of_judges.cfm?state= 2019. 9. 16. 최종검색)

533)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http://www.judicialselection.us/judicial_selection/methods/selection_of_judges.cfm?state= 2019. 9. 16. 최종검색)

534)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http://www.judicialselection.us/judicial_selection/methods/selection_of_judges.cfm?state= 2019. 9. 16. 최종검색)

535)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http://www.judicialselection.us/judicial_selection/methods/selection_of_judges.cfm?state= 2019. 9. 16. 최종검색)

536)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http://www.judicialselection.us/judicial_selection/methods/selection_of_judges.cfm?state= 2019. 9. 16. 최종검색)

537)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http://www.judicialselection.us/judicial_selection/methods/selection_of_judges.cfm?state= 2019. 9. 16. 최종검색)

[표 7-2] 미국 주 법원의 법관의 연령 제한 관련

미국 주 법원 법관 정년·임용가능 최고 연령·임기 현황 (50개 주 및 워싱턴 디씨)	
정년 규정	70세 알래스카 등 15개 주
	72세 콜로라도 등 2개 주
	74세 워싱턴 디씨(개별 주는 아니나 독립된 별개 사법부 보유) 1개
	75세 인디애나 등 4개 주
임용가능한 최고 연령만 규정	70세 이하 앨라배마 등 6개 주
	72세 이하 아이오와 등 2개 주
	74세 이하 텍사스 1개 주
임기만 규정	아칸소 등 20개 주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개별 주의 상황을 살펴보면, 연방과는 달리 종신직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예를 찾아 볼 수는 없고, 다만 정년을 직접 규정하거나, 임용가능 최고 연령을 규정하거나, 임기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법관들의 경우 퇴직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라. 법관 퇴직 이후 변호사 업무 복귀 가능성

1) 연방 차원의 상황

우선 전술한 연방 법원 소속 법관들인 종신직의 Article Ⅲ Judge에 해당하는 법관들에 대하여는, 비록 이러한 법관들이 자의로 퇴직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변호사 업무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538] 또한 이와 같은 종신직에 해당하는 연방 법원 소속 법관들이 퇴직 이후 변호사 업무로 돌아가는 경우도 상당한 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539]

538) Mary L. Clark, *JUDICIAL RETIREMENT AND RETURN TO PRACTICE*, 60 Cath. U. L. Rev. 841, 864 (2011). (https://scholarship.law.edu/cgi/viewcontent.cgi?article=3252&context=lawreview 2019. 9. 18. 최종검색)

539) Mary L. Clark, *JUDICIAL RETIREMENT AND RETURN TO PRACTICE*, 60 Cath. U. L. Rev. 841, 864 (2011). (https://scholarship.law.edu/cgi/viewcontent.cgi?article=3252&context=lawreview 2019. 9. 18. 최종검색)

2) 주 차원의 상황

개별 주 소속 법관들의 퇴직 이후 변호사 업무 복귀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주는 직접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540] 전술한 바와 같이, 종신직인 연방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물론 임기가 정해져 있는 등 종신직에 해당하지 않는 주 법원 소속 법관들의 경우에 대하여 퇴직 이후 변호사 업무 복귀의 전면적인 금지와 같은 규제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 법관과 소송당사자측간 접촉 및 관계에 따른 규제

1) 소송사건에 있어서의 법관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제한

미국에서도 변호사나 소송당사자 일방이 법관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하여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541]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선입견의 야기 내지 조장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법관은 원칙적으로 소송 사건의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 또는 당해 당사자의 변호인과의 의사소통을, 타방 당사자 또는 타방 당사자의 변호인 부재 하에서 행할 수 없다고 한다.[542]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관은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혹은 임박한 사안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법관 자신에게로의 의사소통을 다른 당사자 또는 변호인 부재 상태에서는 개시, 허용, 혹은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재 미국 변호사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모범규정례의 하나이다(Model Code of Judicial

---

540) Mary L. Clark, *JUDICIAL RETIREMENT AND RETURN TO PRACTICE*, 60 Cath. U. L. Rev. 841, 868 (2011). (https://scholarship.law.edu/cgi/viewcontent.cgi?article=3252&context=lawreview 2019. 9. 18. 최종검색)

541) Ann Lousin, *THE NEW EX PARTE COMMUNICATIONS RULE IN ILLINOIS: A STEP FORWARD?*, 19 Loy. U. Chi. L. J. 1031, 1031 (1988). (https://lawecommons.luc.edu/cgi/viewcontent.cgi?referer=http://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2&cad=rja&uact=8&ved=2ahUKEwi63f2NnNnkAhWPwZQKHSMSArcQFjABegQIABAC&url=http%3A%2F%2Flawecommons.luc.edu%2Fcgi%2Fviewcontent.cgi%3Farticle%3D1799%26context%3Dluclj&usg=AOvVaw1d1fWUtHd1HVNxGuWYBYqm&httpsredir=1&article=1799&context=luclj 2019. 9. 18. 최종검색)

542)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wex/ex_parte 2019. 9. 23. 최종검색)

Conduct: Canon 2, Rule 2.9: Ex Parte Communications).[543]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전화변론 등 수임행위 내지 변론행위에 있어서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규율하는데 활용될 여지가 있는 규정례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연방법원 역시 전술한 미국 변호사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모범규정례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즉 소송 사건의 일방 당사자 측의 부재상태에서 다른 당사자 측과의 의사소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Canon 3: A Judge Should Perform the Duties of the Office Fairly, Impartially and Diligently (A)(4)).[544] 따라서 연방법관의 경우, 소송 사건의 일방 당사자의 변호인과의 배타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보인다.

2) 소송사건에 있어서의 법관 결격사유

한 법관 그 자신 또는 배우자 등이 사건 당사자는 물론 변호인 등과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 당해 법관의 재판에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미국 변호사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모범규정례의 하나이다(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Canon 2, Rule 2.11: Disqualification).[545] 물론 이와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미연방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서(28 U.S.C. § 455)[546],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바.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전관 출신 변호사는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전관 출신 변호사의 업무 복귀 자체를 전면적으로

543) American Bar Association (https://www.americanbar.org/groups/professional_responsibility/publications/model_code_of_judicial_conduct/model_code_of_judicial_conduct_canon_2/rule2_9expartecommunications/ 2019. 9. 16. 최종검색)

544) United States Courts (https://www.uscourts.gov/judges-judgeships/code-conduct-united-states-judges#d 2019. 9. 16. 최종검색)

545) American Bar Association (https://www.americanbar.org/groups/professional_responsibility/publications/model_code_of_judicial_conduct/model_code_of_judicial_conduct_canon_2/rule2_11disqualification/ 2019. 9. 16. 최종검색)

546) Justia US Law (https://law.justia.com/codes/us/2016/title-28/part-i/chapter-21/sec.-455/ 2019. 9. 18. 최종검색)

금지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 사건에 있어서의 법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는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변호사에 의한 변칙적인 변론행위 혹은 인연에 기초한 선입견의 조장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2. 영국

가. 법관 퇴직 이후 변호사 업무 재개 가능성

영국의 경우, 비록 명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으로 임용되는 자는 퇴직 이후 변호사 업무로 복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547][548] 이는 영국에서의 오랜 '전통(convention)'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법관 수급에 있어서 걸림돌 내지 장애물로 인식되어 개선의 대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549]

즉 특정한 성문법 규정을 통하여 법관 퇴직 이후의 변호사 업무 재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표현 그대로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이와 같은 '전통'이 확립되게 된 이유로는, 법관으로 임용되기로 한 자라고 하면, 그러한 자는 이미 법률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자이며, 또한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기반으로 장기간 법관으로 복무하기로 한 자라는 점이 중시된 것이라고 한다.[550]

---

547) 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 (https://www.judicialappointments.gov.uk/025-circuit-judge-terms-and-conditions 2019. 9. 18. 최종검색)

548) All About Law (https://www.allaboutlaw.co.uk/stage/becoming-a-lawyer/how-to-become-a-judge 2019. 9. 18. 최종검색)

549)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7th Report of Session 2017–19 Judicial Appointments: follow-up", the Authority of the House of Lords, 2017, p.14.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1719/ldselect/ldconst/32/32.pdf 2019. 9. 18. 최종검색)

550)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7th Report of Session 2017–19 Judicial Appointments: follow-up", the Authority of the House of Lords, 2017, p.14.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1719/ldselect/ldconst/32/32.pdf 2019. 9. 18. 최종검색)

나. 법관 정년퇴임 연령의 획일화: 70세 정년 설정

한편 영국에서는 '1993년 제정 법관 연금 및 은퇴에 관한 법률(The Judicial Pensions and Retirement Act 1993)'에 의하여 대법원부터 하급법원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법관에 대하여(The Judicial Pensions and Retirement Act 1993, Schedule 5)[551] 그 정년퇴임 연령을 70세로 규정하게 되었다(The Judicial Pensions and Retirement Act 1993, Section 26).[552] 이와 같은 동일한 정년퇴임 연령의 도입 이유로 '일관성(consistency)'의 확보가 제시되었다고 한다.[553]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정년퇴임 연령은, 법관 수급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적절하다고 영국 의회의 보고서에 의하여 평가된 바도 있다.[554]

다. 검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영국의 경우 모든 법관에 대하여 70세 정년퇴임 연령이 보장되고 있으며, 법관으로 임용된 자는 법관 퇴직 이후 변호사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는 전술한 영국의 '전통'으로 확립된 개념이라고 함을 전술한 바와 같이 살펴보았다. 따라서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따로 논할 바는 없다고 여겨진다.

---

551)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3/8 2019. 9. 18. 최종검색)
552)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3/8 2019. 9. 18. 최종검색)
553)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7th Report of Session 2017-19 Judicial Appointments: follow-up", the Authority of the House of Lords, 2017, p.14.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1719/ldselect/ldconst/32/32.pdf 2019. 9. 18. 최종검색)
554)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7th Report of Session 2017-19 Judicial Appointments: follow-up", the Authority of the House of Lords, 2017, p.16.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1719/ldselect/ldconst/32/32.pdf 2019. 9. 18. 최종검색)

제2절 | 시니어 법관제도

1. 의의

전술한 영미법계 국가들 중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검토한 결과, 적어도 이들 나라의 법관으로 임용된 법조인들의 경우 법관직을 그만 둔 이후 변호사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시니어 법관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행하여 과연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방지 대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미국 연방 차원의 시니어법관

가. 의의

미국 연방법전의 경우, 명시적으로 법률규정의 타이틀에 시니어법관(senior jud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일부 규정(28 U.S.C. § 294. Assignment of retired Justices or judges to active duty)의 문언 중에 시니어법관이 규정된 경우가 있다.[555]

특히 미국 연방법전이 전술한 종신직 연방 법관(전술한 Article Ⅲ Judge)의 자발적 퇴직이후 법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저 'Retirement in Senior Status'(28 U.S.C § 371. Retirement on salary; retirement in senior status)[556]라고 불리는 요건을 퇴직 이후 급여 수령 관련 요건 등과 함께 열거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 가능하다. 즉 미국 연방에 있어서의 시니어법관과 관련된 요건은 미국 연방법전에서 기술하고 있는 종신직 연방법관의 퇴직과 관련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즉 어디까지나 그 전제가, 종신직을 보장받고 있는 연방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요건 하에 퇴직을 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555)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294 2019. 9. 23. 최종검색)

556)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371 2019. 9. 23. 최종검색)

퇴직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금전적 보수 및 직원과 사무실 제공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28 U.S.C § 371)[557]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미국 연방 차원의 시니어법관이 되기 위한 요건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나. 요건

1) 연령 및 재직기간 요건

전술한 미국 연방법전 28 U.S.C. § 371 (c)는 종신직을 보장받고 있는 연방 법관이 퇴직을 하기 위하여는, 연령과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65세 법관의 경우 재직기간 15년, 66세 법관의 경우 재직기간 14년, 67세 법관의 경우 재직기간 13년, 68세 법관의 경우 재직기간 12년, 69세 법관의 경우 재직기간 11년, 70세 법관의 경우 재직기간 10년을 충족시킨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8 U.S.C. § 371 (c)).[558]

즉 간단히 말하자면, 종신직인 연방 법관(전술한 Article Ⅲ Judge)의 현재 연령과 재직기간의 합이 80(년)이 되는 경우에 동 법률규정에서 말하는 퇴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종신직이라는 예우 내지 대우가 보장되는 지위인 만큼, 자발적 퇴직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정량적인 요소가 요건 내지 기준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직무 수행 요건

전술한 연방 법원 소속 법관이 시니어법관이 되기 위하여 퇴직을 함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열거할 요건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8 U.S.C. §371(e)(1)).[559] 이를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앞선 1년 동안에, 법정에서의 재판참여를 포함하는 재판업무 부담이 평균적인

---

557)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371 2019. 9. 23. 최종검색)

558)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371 2019. 9. 23. 최종검색)

559)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371 2019. 9. 23. 최종검색)

현직 법관이 3개월 동안 수행하였을 유사한 업무량과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의 업무량을 수행해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8 U.S.C. §371(e)(1)(A)).[560]

또는 앞선 1년 동안에, 법정에서의 재판참여를 포함하지 않는 실질적인 법원 내 의무로 배당받은 바 있는 조정 관련 업무, 신청에 대한 결정 관련 업무, 구두변론없이 행해진 사건에 대한 결정문 작성 관련 업무, 그리고 사법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8 U.S.C. §371(e)(1)(B)).[561]

또는 앞선 1년 동안에, 법원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있거나 혹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를 위한 실질적인 사법행정 관련 의무를 수행해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371(e)(1)(D)).[562]

다. 지명 및 배정

특히 퇴직한 연방 대법원 소속 재판관 또는 대법원장이 시니어법관이 되려고 하는 경우라면, 대법원장에 의하여 시니어법관으로 지명된 후 배정되어야 한다(28 U.S.C. § 294(a)).[563] 그리고 퇴직한 연방 항소법원 소속 법관 또는 연방 제1심법원 소속 법관이 시니어법관이 되려고 하는 경우라면, 당해 항소법원 법원장 또는 연방 사법위원회에 의하여 시니어법관으로 지명된 후 배정되어야 한다(28 U.S.C. § 294(c)).[564]

이와 같은 지명 및 배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퇴직 법관이 시니어법관이 되어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28 U.S.C. § 294(e)).[565]

---

560)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371 2019. 9. 23. 최종검색)
561)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371 2019. 9. 23. 최종검색)
562)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371 2019. 9. 23. 최종검색)
563)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294 2019. 9. 23. 최종검색)
564)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294 2019. 9. 23. 최종검색)
565)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294 2019. 9. 23. 최종검색)

라. 효과

위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법관은 기존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본인이 지원하고 실제 행할 수 있는 재판업무를 배당받아 행하게 되는 것이다(28 U.S.C. § 294(b)).[566]

연방 법원의 시니어법관은 급여 전체를 보장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하고, 75%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며, 다만 2명 이상의 로클럭 및 1명의 비서, 그리고 업무용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다량의 재판업무를 수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567]

마. 한계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연방 법원 소속 법관의 시니어법관으로의 전향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 요건으로는 연령 및 재직기간 요건과 함께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요건이 함께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전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전술된 바와 같이- 미국 연방 법원 소속 법관(전술한 Article Ⅲ Judge)이 종신직이라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종신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전술한 연령 및 재직기간 요건에 있어서도, 연령과 재직기간의 합계가 80(년)으로 규정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 미국 연방 법원과 달리 애초에 법관의 신분이 종신직이 아닌 것은 물론이며, 또한 최초 법관 임용시 연령이 -비록 법조일원화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 법원 소속 법관들에 비하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임용한 법조경력 5년의 신임법관 중 사법시험 출신 신입법관의 평균 연령이 35.5세였음[568]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재직 중인 법관의 평균 연령은 2017년 기준으로 42.6세라고 하는 점[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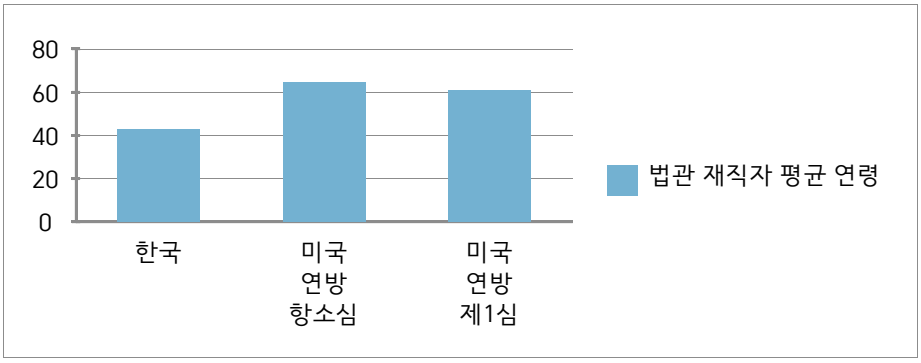
566)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294 2019. 9. 23. 최종검색)
567) USLEGAL.COM (https://definitions.uslegal.com/s/senior-judge/ 2019. 9. 23. 최종검색)
568) 이상연 기자, "'법조경력 5년' 신입법관 36명 신원을 분석해보니...", 법률저널, 2018. 11. 2.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05 2019. 9. 26. 최종검색)

역시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연방 법원 소속 법관(전술한 Article Ⅲ Judge)의 경우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연방항소심 법원 소속 법관은 평균 연령이 64.7세, 임용 당시 평균 연령은 50.6세라고 한다.[570] 또한 연방 제1심법원 소속 법관은 평균 연령이 60.8세, 임용 당시 평균 연령은 50.0세라고 한다.[571]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7-1] 2017년 기준 한국 법관과 미국 연방 법원 소속 법관 중 재직자 평균 연령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연방 법원 소속 법관과 달리 법관에 대하여 종신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년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 최초 임용 연령 및 평균 연령 역시 당해 제도를 현재 연방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 비하여 모두 낮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당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한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

569) 강현중 원장(사법정책연구원), "왜 시니어판사 제도인가", 법률신문, 2018. 11. 22.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48528 2019. 9. 26. 최종검색)

570) Barry J. McMillion, "U.S. Circuit and District Court Judges: Profile of Select Characteristics", CRS Repor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ugust 1, 2017, p.11. (https://fas.org/sgp/crs/misc/R43426.pdf 2019. 9. 26. 최종검색)

571) Barry J. McMillion, "U.S. Circuit and District Court Judges: Profile of Select Characteristics", CRS Repor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ugust 1, 2017, p.23. (https://fas.org/sgp/crs/misc/R43426.pdf 2019. 9. 26. 최종검색)

3. 우리나라의 현행 원로법관 제도와의 구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법관 중에서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는 있다(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3).[572] 따라서 이 제도를 전술한 미국 연방 법원 소속 시니어법관과 비교하려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로법관제는 -법적근거와는 별론으로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운용의 면에 있어서 법관 정년에 도달하지는 아니한- 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 법관들이 법원장 등 고위직을 역임한 이후, 시·군법원 또는 지방법원 제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다시금 맡게 되는 것[573]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아래에서 원로법관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7-3] 현행 원로법관의 법적근거

법관인사규칙[시행 2018. 10. 8.] [대법원규칙 제2807호, 2018. 10. 8., 일부개정] 제11조의3(원로법관)[574]	
지명권자 및 원로법관의 경력요건	①"대법원장은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다."[575]
심의절차	②"제1항에 따라 원로법관을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576]
기타	③"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577]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년제도의 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 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제1기 원로법관 중에서 법관 정년을 마치고 퇴임한 사례[578]를 통해

57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756&efYd=20181008#0000 2019. 8. 30. 최종검색)
573) 손현수 기자,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시·군법원 원로법관' 임용 희망", 법률신문 2019. 1. 1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050&kind=AA&fbclid=IwAR10RwGTzcqNRvxUnHSz6oIcYzITBOdCpwYyAt03HAivHawqIQqF8cvLomg 2019. 10. 11. 최종검색)
57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756&efYd=20181008#0000 2019. 8. 30. 최종검색)
57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756&efYd=20181008#0000 2019. 8. 30. 최종검색)
57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756&efYd=20181008#0000 2019. 8. 30. 최종검색)
57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756&efYd=20181008#0000 2019. 8. 30. 최종검색)

서도, 이는 충분히 확인 가능한 점이라고 본다. 즉 우리나라의 현행 원로법관 제도는 정년 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술한 미국의 연방 법원에서의 시니어법관과는 전체적인 맥락상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4. 검토

편의를 위하여, 이미 살펴 본 우리나라와 미국에 있어서 퇴직 법관을 포함하는 법관과 변호사 관련 초점의 차이를 전술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다시 살펴보도록 하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표 7-4] 법관과 변호사 관련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이슈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이슈		
우리나라	법관출신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미국	연방 법원 소속 법관직의 종신적 수행 및 시니어법관	
	퇴직 법관의 변호사 업무 복귀 가능성	
	법관과 소송 당사자측간 접촉·관계에 대한 규제	법관과 소송 당사자측간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규제
		법관과 소송 당사자측간 인적 관계에 따른 결격사유

미국 연방 법원의 법관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한 연령(65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 일정한 재직기간(연령과 재직기간의 합이 80에 해당해야 함)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경감된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시니어법관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조일원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미국 연방 법원과 우리나라 법원의 법관 임용에 있어서의 연령에 있어서의 현저한 차이, 그리고 재직 중인 법관의 평균 연령에 있어서의 상당한 차이를 고려할 때, 있는 그대로 수용 내지 도입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발생 가능한 법관 인력 구조에 있어서의 문제도 미리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시니어법관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법원 내에서 재판업무의 분장 내지는 인력 구조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578) 이후연 기자, "1호 퇴임 원로법관 쓴소리 "사법개혁, 국민 위한 건가"", 중앙일보 2019. 1. 29. (https://news.joins.com/article/23330535 2019. 10. 11. 최종검색)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579]

다시 말하자면, 경감된 재판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시니어법관직을 선택하게 되는 법관들이 단기간 급증하게 되면서 발생 가능한 인력 구조 관련 문제를 경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일정 연령 이하의 법관에게로 업무가 편중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인력 구조 관련 문제 및 재판 업무의 편중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3절 | 독일의 관련 법률

1. 서론

독일은 - 연방국가로서 - 대법원을 제외하고 각 주별로 법관을 채용하고 있고, 따라서 법관은 순환보직이란 개념이 없이 일정한 곳에서 장기 근무를 하고, 평생법관제가 정착되어 있어서 판사가 변호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시스템 환경 하에서 독일에서는 전관예우가 근본적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580]

2. 법률규정

독일에서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이라 할 수는 없지만 - 업무제한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상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연방공무원법」(BBG)과 「공무원신분법」(BeamtStG)에서이다.

---

579) USLEGAL.COM (https://definitions.uslegal.com/s/senior-judge/ 2019. 9. 23. 최종검색)

580) pub조선 2017-07-11("전관예우가 끼어들 틈이 없는 독일의 판사와 변호사 제도(김승열 변호사)") (https://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nNewsNumb=20170725334&nidx=25335)(2019.10.31. 확인); 세계일보 2018-11-07('전관예우'한국엔 있고 독일은 없는 이유는?)(https://news.v.daum.net/v/20181107092042942)(2019.10.31. 확인); 조홍준,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에 관하여",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 자료집(대한변호사협회, 2019.4.30.), 65면.

가. 연방공무원법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 BBG)은 – 연방공무원의 임명, 진급, 파견, 공무원관계의 종료, 공무원의 법적 지위(의무와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105조에서 연방의 퇴직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 일정기간 재임 중 담당했던 5년간의 직무활동과 관련된 영리활동 등은 직무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05조 제1항 제1문). 퇴직 후 영리활동 금지기간은 정년(67세)[581] 퇴직 후에는 3년 동안이고, 그 밖의 퇴직의 경우에는 5년 동안이다. 정년 이전에 퇴임한 경우에는 직무상의 활동 성과의 남용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다.[582]

동 규정은 – 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z: DRiG) 제46에 따라 – 전직 연방법관에게도 적용된다.[583][584]

연방공무원법(BBG)

제105조(공무원관계 종료 후의 신고의무) ① 퇴직공무원 및 연금을 받는 전직공무원은 영리활동이나 공적 직무 이외의 그 밖의 일로서 공무원관계의 종료 직전 마지막 5년간의 직무상 활동과 관련이 있고, 그로 인해 직무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를 시작하기 전에 문서 또는 전자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는 공무원이 일반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 3년, 그 밖의 경우에는 공무원관계의 종료 후 5년이 된 때에 소멸한다. 제1문 및 제2문은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전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② 영리활동이나 그 밖의 일은 이로 인하여 직무상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우려되는 한 금지될 수 있다. 금지는 신고의무의 소멸 시까지 발령될 수 있고, 금지의 요건이 더 짧은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권한은 마지막 최고 직무관청에 있다. 최고 직무관청은 그 권한을 하위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 번역은 이유봉 외, 위의 연구용역보고서(2014년), 59면 참조(부분 수정)

연방퇴직공무원이 신고·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직무위반(Dienstvergehen)이 되어(연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 제3호), 「연방징계법」(Bundesdisziplinargesetz: BDG)」 제84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에 따라 연금의 감액(Kürzung des

581) 공무원의 정년은 67세이다(연방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582) 이유봉·최유·김정현·김은정·이경희·홍기원·김혜련, 행위제한제도 해외사례 파악 및 제도도입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인사혁신처 연구용역보고서(2014년), 66면 참조.

583) 「법관법」 제46조(연방공무원법의 적용) 이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연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특별규정까지 연방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관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

584) 이유봉 외, 위의 연구용역보고서(2014년), 63면 참조.

Ruhegehalts)이나 연금의 박탈(Aberkennung des Ruhegehalts) 조치가 가능하다(연방징계법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제12조 참조).[585] 연금감액은 연금 수급자의 월 연금의 최대 5분의1 까지 최대 3년까지 감액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나. 공무원신분법

「공무원신분법」(Beamtenstatusgesetz: BeamtStG)[586]은 – 각 주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의 관계, 관계해지, 법적 지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상술한 연방공무원법상의 규정(제105조)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각 주의 퇴직공무원 등은 재임 기간 내의 직무상 활동과 관련이 있는 영리활동 등은 - 직무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영리활동이나 그 밖의 업무수행은 그로 인해 직무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이러한 금지는 공무원 관계가 종료 된 후 5년이 경과되면 종료된다(공무원신분법 제41조).[587]

동 규정은 – 법관법(DRiG) 제71조에 따라 – 전직 주법관에게도 적용된다.[588][589]

공무원신분법(BeamtStG)

제41조(공무원관계 종료 후의 활동) 퇴직공무원 및 연금을 받는 전직공무원은 영리활동이나 공적 직무 이외의 그 밖의 업무의 수행으로서 주법에 따라 정해진 재직 기간 내의 직무상 활동과 관련이 있고, 그로 인해 직무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영리활동이나 그 밖의 업무수행은 그로 인해 직무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그 금지는 공무원 관계가 종료 된 후 5년이 경과되면 종료된다.

---

585) 한국법제연구원, 위의 연구용역보고서(2014년), 68면 참조.

586) 이 법률의 공식명은 「각 주 공무원의 신분상 권리의 규제를 위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des Statusrechts der Beamtinnen und Beamten in den Ländern)이다. 원문은 독일 연방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gesetze-im-internet.de/beamtstg/)참조(2019.10.31. 확인).

587) [사례 소개] 코브렌츠 변호사법원(Anwaltsgerichtshof)의 결정(Anwaltsgerichtshof Koblenz, Beschluss vom 3.3.2010, 2 AGH 13/09, Tz. 28, 3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상위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사가 변호사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관점에서 공직 인접성에 근거해 변호사의 독립성이 국가에 구속됨으로 인해 침해되었거나 의뢰인 측면에서 의무충돌의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신청을 거절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유봉 외, 위의 연구용역보고서(2014년), 70면에서 원용함).

588) 「법관법」 제71조(공무원신분법의 적용) 이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공무원신분법상의 규정은 특별규정까지 주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관의 신분권에도 적용된다.

589) 이유봉 외, 위의 연구용역보고서(2014년), 63면 참조.

퇴직공무원이 신고·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직무위반(Dienstvergehen)이 되어(공무원신분법 제47조 제2항)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베를린의 「징계법」(Disziplinargesetz: DiszG)」 제5조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유형으로서 – 연방징계법과 동일하게 - 연금감액과 연금박탈을 규정하고 있다(베를린 징계법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제12조 참조).[590]

3.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행동강령」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행동강령」(Verhaltensleitlinien für Richterinnen und Richter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2017)을 마련하여, 2017년 11월에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 16명이 모두 서명하였다.[591]

동 행동강령은 전문과 총 16개의 항목(16개 항목은 ① 일반원칙, ② 비판결 활동, ③ 퇴임 후의 활동, ④ 행동강령의 지속적 개발 등 4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판관의 임기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의 활동에 대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재판관의 퇴임 후 활동과 관련한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판관은 임기가 종료된 후 재임기간 동안에 연방헌법재판소에 계류되었거나 그러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활동하지 못한다. 의견서 제출, 변호인이나 보좌인, 법정 출석 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제14항목).

둘째, 재판관은 퇴임 후 1년 동안에는 자신이 담당했던 부서의 사건영역에서의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자문활동, 의견서 작성, 법정출석 등이 금지된다. 그리고 재판관은 재임 기간 동안 지득한 내부 지식을 부적절하게 활용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제15항목).

---

590) 독일 베를린주 홈페이지 (http://gesetze.berlin.de/jportal/?quelle=jlink&query=DiszG+BE+Inhaltsverzeichnis&psml=bsbeprod.psml&max=true)(2019.10.31. 확인)

59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DE/Richter/Verhaltensleitlinie/Verhaltensleitlinien_node.html)(201910.31. 확인)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행동강령

(Verhaltensleitlinien für Richterinnen und Richter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전문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기 중 및 임기가 종료된 후의 행동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의 헌법기관으로서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

Ⅰ. 일반 원칙

1.~7. (생략)

Ⅱ. 비판결 활동

8.~12. (생략)

Ⅲ. 퇴임 후 활동

13.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재판소의 업무에 관한 발언과 행동을 자제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14.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기가 종료된 후 재임기간 동안에 연방헌법재판소에 계류되었거나 그러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활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변호인이나 보좌인을 맡지 않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15.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퇴임 후 1년 동안에는 자신이 담당했던 부서의 사건영역에서 어떠한 자문활동도 수행하지 않으며,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또한 재판관은 연방헌법재판소를 대표하지도 않는다. 재판관은 내부 지식을 부적절하게 활용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Ⅳ. 행동강령의 지속적 개발

16. (생략)

칼스루에, 2017년 11월

제4절 | 일본

1. 서론

일본에서는 법관이나 검사가 퇴임하면 통상적으로 공증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592] 또한 정년보장[593] 및 상당한 급여 보장 제도를 통해

592) 일본 「공증인법」(公証人法)(明治四十一年 法律第五十三号, 최종개정: 平成二三年六月二四日法律

전관예우 때문에 판결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관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94] 판사의 경우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595]

2. 법률규정

일본에서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이라 할 수는 없지만 - 업무제한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상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변호사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이다.

가. 변호사법

일본 「변호사법」(弁護士法)[596] 제25조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로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징계만 가능할 뿐이다(변호사법 제56조 제1항).

第七四号)에 따르면, 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 이상 공증인 견습으로 실지수습을 행한 자가 공증인으로 임명되거나(법 제12조 제1항), ② 재판관(간이재판소의 판사는 제외), 검찰관(부검사는 제외)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③ 다년간 법률실무에 종사하여 법 제13조에 준하는 학식경험을 가진 자로서 정령에 정하는 심의회 등(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기관를 말한다)의 전형을 거친 자는 시험 및 실지수습을 거치지 않고서 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다(법 제13조, 제14조).

593) 일본 「재판소법」(裁判所法)에는 각 정년을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70세,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재판관은 65세, 간이법원 재판관은 70세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50조).

594) 이율,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록 및 개업 제한 방안 – 법원, 검찰 최고위직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필요성 방법에 관하여", 「법원, 검찰 최고위직 등록 및 개업 제한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대한변호사협회, 2017.6.15.,), 17면; 조홍준,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에 관하여",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 자료집(대한변호사협회, 2019.4.30.), 65~66면. 위의 조홍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소위 전관예우라는 것이 문헌이나 법조계 내부를 통틀어 찾아 볼 수 없고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전언도 한국 내의 상황을 신기하게 바라볼 정도이다."(위의 자료집, 66면).

595) 모성준・서용성・최유나,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329면.

596) 1949년 법률 제205호 (최종개정: 2015.9.11. 공포 (2015년 법률 제66호)).

변호사법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사건)

제25조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건은 그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 및 제9호의 사건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5.~9. (생략)

(특정한 사건에 대한 업무의 제한)

제30조의18 변호사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에 규정하는 사건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5. 제25조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자가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

나. 「국가공무원법」상의 퇴직 후 취업에 대한 제한

1) 서론

현행 일본 「국가공무원법」(国家公務員法)[597]에서는 퇴직공직자의 퇴직 후의 일정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직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취업후 행위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007년 「국가공무원법」개정 전에는, 퇴직공무원이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 담당 직무와 관련된 영리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직무관련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나(구법 제103조 제2항, 취업제한 제도), 2007년 법 개정으로 퇴직 전 구직 및 퇴직 후의 영향력 행사행위에 대한 행위제한규제 방식으로 중심이 바뀌었다.[598]

[표 7-5] 일본 국가공무원법상의 취업·행위규제

대상	규제	내용
현직 공무원	다른 임직원 등의 재취업 의뢰 등 규제	공무원이 영리기업 등에 대하여, 1. 다른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해당 영리기업 또는 그 자법인에 재취업시킬 목적으로 ① 해당 임직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② 재취업하고자 하는 지위에 관한 정보제공을 의뢰하는 행위 2. 다른 임직원 등을 해당 자를 해당 영리기업 또는 그 자법인에 재취업시킬 것을 요구 · 의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법 제106조의2 제1항)

597) 1947년 법률 제120호 (최종개정: 2019.6.14. 공포 (2019년 법률 제37호)).
598) 이유봉 외, 위의 연구용역보고서(2014년), 81면 참조.

[표 7-5] (계속)

대상	규제	내용
현직 공무원	재직 중의 구직활동 규제	공무원이 이해관계 기업 등[599]에 대하여 1. 퇴직 후에 해당 이해관계 기업 또는 자법인에 재취업할 목적으로 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② 재취업하고자 하는 지위에 관한 정보제공을 의뢰하는 행위 2. 재취업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법 제106조의3 제1항)
퇴직 공무원	재취업자에 의한 의뢰 등의 규제	재취업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압박금지(법 제106조의4)

※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참조(https://www5.cao.go.jp/kanshi/gaiyou.html)(2019.11.05. 확인)

현행 퇴직공무원의 취업·행위제한 규제는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① 다른 직원·전직원의 재취업 의뢰·정보제공 등 규제(법 제106조의2), ② 재직 중인 직원에 의한 이해관계기업 등에 대한 구직활동 규제(법 제106조의3), ③ 재취업자(퇴직공직자)에 의한 전 직장에 대한 압박규제(법 제106조의4).[600]

이하에서는 – 연구 범위상 - "퇴직공직자의 부정청탁 행위 규제"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601]

2) 퇴직공직자의 전직장에 대한 압박행위 규제

(1) 업무제한

"재취업자에 의한 의뢰 등의 규제" 즉 퇴직공직자의 부정청탁 행위 규제는 3가지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① "2+5 업무제한"

공무원이었던 자가 영리기업 등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직 전 5년간 재직했던 국 등의 조직에 속하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해당 영리기업 등과의 계약 등 사무에 있어서 퇴직 전 5년간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퇴직 후 2년간 직무상의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의뢰하는 것은 금지된다(법 제106조의4 제1항).

만약, 재취업자 가운데 퇴직한 날 5년 전 이전에 부장이나 과장 직위[602]에 있었던

599) 영리기업 등 가운데 직원의 직무에 이해관계를 갖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00)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참조(https://www5.cao.go.jp/kanshi/gaiyou.html)(2019.11.05. 확인).
601)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유봉 외, 위의 연구용역보고서(2014년), 71면 이하 참조 바람.

자의 경우에는 부장이나 과장으로 재직했던 기간도 추가적으로 규제대상 기간이 된다(제106조의4 제2항).

②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업무제한

재취업자 가운데 장관, 사무차관, 사무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603]에 있었던 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가지고 재직했던 기간에 속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 계약 등 사무에 대하여 당해 재직 기관 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퇴직 후 2년간 직무상의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의뢰하는 것은 금지된다(법 제106조의4 제3항).

③ 영구제한

재취업자는 재직했던 당시에 스스로 결정한 계약이나 처분에 있어서 해당 영리기업 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재직했던 행정기관 등에 속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 직무상의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의뢰하는 것은 기한에 상관없이 금지된다(법 제106조의4 제4항).

[표 7-6] 퇴직공직자의 행위규제

구분	적용대상	내용
2+5 업무제한	모든 퇴직공무원(재취업자)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제한 * 퇴직 5년전 이전에 부장 · 과장 직위에 있었던 자의 경우에는 당해 기간도 포함(5년+그 이전의 부장등 복무 기간)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업무제한	고위직 퇴직공무원(장관, 사무차관, 사무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	퇴직 후 2년간 당해 재직 기관 관할에 속하는 사무 전체에 대한 업무제한
영구제한	모든 퇴직공무원(재취업자)	재직했던 당시에 스스로 결정한 계약 등에 대한 영구 행위제한

※ 일본 공무원법 제106조의4

(2) 예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106조의4 제5항).

602) 국가행정조직법 제21조 제1항에 의함
603) 국가행정조직법 제6조,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또는 정령에 정하는 것에 의함

- o 시험, 검사, 검정 기타 행정상의 사무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한 행정청에 의한 지정, 등록, 위탁 등과 관련된 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o 행정청에 대한 권리 혹은 의무를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나 국가 등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
- o 허가 · 인가 신청이나 일정한 신고(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7호)를 하는 경우
- o 법령에 따른 입찰 또는 경매의 절차에 따라 매매, 대차, 청부 기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o 법령의 규정에 의해 또는 관행으로서 공개되거나 공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o 재취직자가 임직원에 대해 계약 등 사무에 관해 직무상의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의뢰함으로써 공무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야 함)[604]

⑶ 신고의무

공무원은 재취업자로부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요구 또는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재취업 등 감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06조의4 제9항).

⑷ 제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 행정기관 등에 속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 계약 등 사무에 관해 직무상의 행위를 하도록 또는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의뢰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13조 제1호).

⑸ 동 규정의 한계

국가공무원법상의 취업 · 행위제한 규정은, 예를 들어 검사출신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법관출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관 및 기타 재판소 직원"은 특별직 국가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3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5항).[605] 이들에게는 「재판소법」(裁判所法)이 적용된다.

---

604) 총리대신의 승인권한은 '재취업감시위원회'에 위임되어 있고, 또한 재취업감시위원회는 이 권한을 '재취업등감시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106조의4 제6항 및 제7항).

605) 모성준 · 서용성 · 최유나,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323~324면; 이유봉 외, 위의 연구용역보고서(2014년), 80면.

「국가공무원법」(일본)

(재취업자에 의한 의뢰 등의 규제)

제16조의4 ① 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직 후에 영리기업 등의 지위에 오른 자(퇴직수당 통산 예정직원이었던 자로서 계속해서 퇴직수당 통산 법인의 지위에 오른 자(이하 "퇴직수당 통산 이직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재취업자"라 한다)는 이직 전 5년간 재직했던 국(局) 등 조직에 속하는 임직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 행정집행법인 또는 도도부현(都道府県)과 해당 영리기업 등이나 그 자법인 간에 체결되는 매매, 대차, 청부 기타 계약 또는 해당 영리기업 등이나 자법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처분에 관한 사무(이하 "계약 등 사무"이라 한다)에 있어서 이직 전 5년간의 직무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이직 후 2년간 직무상의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의뢰해서는 아니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재취업자 가운데, 국가행정조직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장이나 과장의 직 또는 이들에 준하는 직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직에 이직한 날의 5년 전의 날보다 이전에 있었던 자는 해당 직에 있었을 때에 재직하던 국 등 조직에 속하는 임직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계약 등 사무에 있어서 이직한 날의 5년 전의 날보다 이전의 직무(해당 직에 올랐을 때의 직무에 한한다)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이직 후 2년간 직무상의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의뢰해서는 아니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재취업자 가운데, 국가행정조직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장관, 동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무차관, 동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무국장 또는 국장의 직이나 이들에 준하는 직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직을 맡은 자는 해당 직에 있었을 때에 재직했던 부성(府省)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국가기관, 행정집행법인 또는 도도부현 경찰(이하 "국장 등으로서의 재직기간"이라 한다)에 속한 임직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계약 등 사무에 있어서 국장 등으로서의 재직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이직 후 2년간 직무상의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의뢰해서는 아니된다.

④ 전 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재취업자는 재직했던 부성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국가 기관, 행정집행법인 또는 도도부현 경찰(이하 본 항에서는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속한 임직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 행정집행법인 또는 도도부현과 영리기업 등(해당 재취업자가 현재 그 자리에 올라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나 그 자법인 간의 계약에 있어서 해당 행정기관 등에서 그 체결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한 사안 또는 해당 행정기관 등에 의한 해당 영리기업 등이나 그 자법인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처분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한 사안에 관하여 직무상의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의뢰해서는 아니된다.

⑤~⑨ (생략)

제5절 | 소 결

영미법계 국가이든 대륙법계 국가이든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전관예우 혹은 전관비리 문제가 발생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우선 영국의 경우, 명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법관으로 임용되는 자는

퇴직 이후 변호사 업무로 복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전통을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으며, 70세로 법관의 정년퇴임 연령이 획일화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대다수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을 행한 후, 로펌에 입사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지 않지만, 전관출신 변호사가 일정 부분 존재하기는 한다. 다만, 그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 사건에 있어 법관에 대한 일반적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변호사에 의한 변칙적인 변론행위 혹은 인연에 기초한 선입견의 조장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일본에서도 전관예우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독일에서는 연방제 국가로서의 법관임용제도의 특성과 함께 법관의 평생법관제 정착으로 판사가 변호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법관이나 검사가 퇴임하면 통상적으로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문화, 정년보장, 상당한 급여 보장제도 등을 바탕으로 전관예우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독일과 일본에서도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법률로서 일정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이해충돌방지라는 표제 하에서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한 간접적인 규제기제로 작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적, 사법적 체계를 바탕으로 전관예우 문제가 전혀 혹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부터 어떠한 시사점을 얻기 어렵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시사 받을 수 있는 것은 판사나 검사들에 대한 정년보장과 급여보장을 통해서 이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론 및 정책 제언

황지태·이천현·임정호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 요약 및 결론적 논의

1. 전반적인 요약

가. 연구개요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조비리에 관한 2년차 연구과제 중 두 번째 연구로,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실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관예우 현상의 실태 파악 조사연구 방법으로는, 변호사들과 소승의뢰인들(변호사 선임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일부 심층면접 조사 포함)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관비리에 관한 직간접적인 경험은 물론, 전관변호사의 수임료에 관한 정보, 의뢰인들의 전관 선호 정도, 전관예우 방지책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관비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의 변천사를 다루고, 가장 최근의 국회에서의 입법 동향을 상세히 다루었으며, 미국과 영국,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입법례에서 참조하기도 하였다.

나. 선행 조사연구 검토 결과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특히 전관비리가 실재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의 양은 많지 않지만, 그 연구영역은 매우 광범위할 수 있다. 전관비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재판, 경찰수사, 검찰수사,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 발생단계 및 특혜의 존재 검증, 수임건수 및 수임료 조사 등의 조사대상)이 다양하고, 방법론(설문조사, 심층면접, 판결문 분석, 보석이나 구속 관련 자료 분석 등)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연구양이긴 하나,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을 어느 정도 검증한 연구들은 존재해도 그것의 존재를 간접적인 수준에서라도 부정할 증거를 보여주는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전관예우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고 중요한 조사연구 결과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연구 영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실증조사 연구의 양이 부족하여, 전관예우 현상의 존재를 여러 영역에서 좀 더 충분히 확증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 조사 연구는 방법론적 수월성으로 인해 판사가 개입하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고, 검사가 개입하는 영역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데,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연구들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 의뢰인 대상 조사결과 요약

① 의뢰인들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높은 선호도 : 2018년 법조브로커 실태조사에서 의뢰인들이 선임했던 판검사출신 변호사는 47.4%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0.1%로 나타났다. 2018년도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판검사출신 변호사는 15%에 불과하다. 모집단에서 15%에 지나지 않는 판검사출신 변호사가 의뢰인 표본에서는 약 50%로 나타났다는 것은 의뢰인들이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매우 선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수임건수가 기타 변호사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② 의뢰인들이 보고한 전관변호사의 평균 수임료 : 평균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판검사출신 변호사만 되어도 연수원출신 변호사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으며, 퇴임 1년 이내의 고위직 출신 전관변호사들의 경우엔, 연수원출신 변호사들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의뢰인 조사를 종합해 보면, 전관변호사들은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에 비해 평균적인 수준에서 수임건수가 많고, 기본 수임료가 비싸며, 추가수입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결합하면,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평균 수입과 기타 변호사들의 평균 수입 사이에는 매우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라. 변호사 대상 조사결과 요약

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사례 경험률 : 최근 10년 내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21.8%, 5년 내는 20.6%, 1년 이내에 경험했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5.6%였다. 변호사 시장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여성 변호사, 젊은 변호사, 비전관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경험률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변호사들의 불만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② 전관예우 관행의 형사사건 비중 :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경험은 주로 형사사건(72.5%)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형사사건 중에서는 재판 단계(1,2,3심 합쳐서 34.2%)보다는 검찰 수사단계(51.9%) 등 재판 전 단계에서 더 많이 경험되었다고 한다. 조사 및 연구의 방법론적 수월성 때문에 선행조사연구들에서 전관예우 현상은 많은 경우에 판사출신 변호사의 영역에서 연구되어 오곤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증이 어려운 검사출신 변호사의 영역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으나, 이 결과는 형사사건에서의 전관예우 관행과 검사출신 전관변호사의 질적·양적 비중도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 현행 변호사법 수임제한 1년 규정 연장에 관한 의견 : 설문 참여 변호사의 70.8%는 현행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 연장 기간은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마.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변천사 요약

①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70여 년 간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입법적 노력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전관비리에 대한 문제인식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적 개선 노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 국민적 요구와 함께 눈부신 경제발전에 따른 사법시장 규모도 커지기 시작하면서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② 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입법적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 2016년 〈정○○ 게이트〉에 나타난 바와 같이 – 전관예우 문제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상황이다.

③ 전관예우 문제는 대법원, 법무부(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관비리 근절대책은 주로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법무부(대검찰청)의 보다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청되는 상황이라 할만하다.

바. 최근 입법동향 정밀결과 요약: 최근 법안들의 경향성

① 변호사법 개정안의 경우 수임행위의 제한과 관련하여, 주로 수임행위에 있어서 시간적 제한을 늘리거나 당해 제한과 관련된 제재를 강화하는 맥락에서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 외 수임행위에 있어서 대상적 제한이나 방법적 제한과 관련된 법안들도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②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경우 주로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시간적 제한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발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이 전관예우 방지대책에만 제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최고위급 법관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예우를 통하여 공직퇴임변호사가 누릴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사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유도하는 법안도 일부 발의된 바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④ 전관예우 방지대책에 상응하는 측면이 있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대책도 일부 발의된 바 있다. 이 역시 시간적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대상적 제한 내지 방법적 제한과 함께 보다 입체적으로 구조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사. 관련 해외 입법례 검토 요약

①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은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사법적 체계를 바탕으로 전관예우 문제가 전혀 혹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어떠한 시사점을 얻기 어렵다.

②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시사 받을 수 있는 것은 판사나 검사들에 대한 정년보장과 급여보장을 통해서 이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사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한 결론적 논의

가. 전관예우의 존재와 심각성에 관한 판단

선행 조사연구에 대한 참조 및 본 조사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전관예우 혹은 전관비리 현상은 존재하며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전관변호사들은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에 비해 평균적인 수준에서 ① 수임건수가 많고, ② 기본 수임료가 비싸며, ③ 추가수입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 확인이 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수임건수와 수임료 등의 차이는, 일부의 판검사들 혹은 일부의 인사들이 주장하듯이, 전관변호사에 대한 예우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법조브로커에게 속아서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편견과 기만의 효과도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영향력은 부수적이라고 판단된다.

혹시라도, 편견과 기만의 효과에 의해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어리석게도 전관변호사들을 찾아가서 더 많은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면, 실제 전관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를 해서 그것을 적극 홍보하여 의뢰인들을 계몽하는 정책이라도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적극적 제도 개선 노력의 필요

선행 조사연구에 대한 참조, 본 조사연구의 결과,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의

변천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전관예우가 좀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영역은 형사소송 영역 및 검사들의 활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관비리 근절대책은 주로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에 법무부(대검찰청)의 보다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청되는 상황이라 할만하다.

재판까지 가지 않는 단계에서 주로 승부가 나는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전관 효과는 주로 검사들의 기소재량권과 관련하여 발생한다고 사료된다. 판결은 판결문에 분명한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불기소 결정은 불분명한 이유로도 내려질 수 있다. 이것이 검사출신 전관변호사들의 위력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제2절 | 정책적 제언

1. 의의

전관예우 방지대책이 입법화되어 있는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현행 규정 및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이하에서는 전관예우의 효과성있는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 법령이 향후 개정되어야 할 전반적 방향을 검토하도록 한다.

화이트칼라 계층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직업으로 변호사 등 법조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특히 공직퇴임변호사라고 한다면 법관 혹은 검사를 거친 변호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도의 법적 지식은 물론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지적 능력 및 교양수준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직퇴임변호사라고 하면, 적어도 자신의 법령위반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 제재로 인한 이해득실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득실의 계산에 따른 억제의 효과를 고려하면, 강도 높은 제재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이러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전관예우에 대한 사전적 통제 차원에서라도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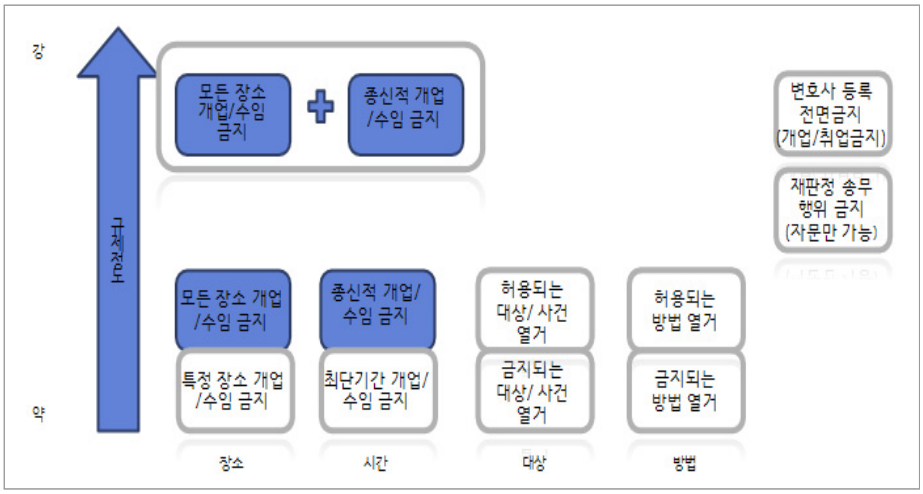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여,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특히 제재의 강화 측면을 주안점에 둔다는 점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2. 법률의 개정 방향: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가. 변호사법의 개정 방향

변호사법을 통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규제를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규제강도에 따라 총괄하여 나누어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해볼 수 있다.

[그림 8-1] 규제정도에 따른 전관예우 방지 방법 분류



위 그림에서, 우선 가장 그 강도가 높은 수준의 규제라 할 수 있는 공직퇴임변호사의 변호사 등록 전면 금지를 우리 법이 규정한 바는 없다. 다만 전술한 영국의 법관의 경우 관련 법률 규정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종의 전통으로 퇴직법관이 변호사 업무를 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본 바는 있다.

또한 재판정에서의 송무 관련 행위를 일체 금지하되 자문만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역시 매우 높은 정도의 규제라 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규제를 취한

전례는 없다. 또한 이와 같은 규제 역시 사실상 전면적인 변호사 업무의 금지 못지 않은 수준의 높은 강도의 규제라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규제의 방법을 장소, 시간, 대상, 방법에 따라 나누어 보면, 우선 모든 장소에서의 개업이나 수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과 종신적인 개업 내지 수임을 금지하는 방법을 함께 취하게 될 경우, 변호사 등록의 전면적 금지와 사실상 그 정도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극단적으로 높은 강도의 규제를 변호사법이 취하게 될 경우를 가정해보면, 당연히 직업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권 전반에 대한 침해가 문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의 규제는 본 연구에서 강구할 합리적 규제는 아닐 것이다. 그간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는 관련 개정안을 전술한 바와 같이 검토해본 결과, 규제의 정도는 낮은 수준일 것이지만 수임행위에 있어서 특정한 제한을 직접 열거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타당할 것이다.

나.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필요성

현행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는 조세 포탈목적 또는 수임제한 등 회피목적으로 재판 중인 사건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있어서 동법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606] 이 규정은 비단 공직퇴임변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관예우 관련 수임행위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방법적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임서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현재의 형사처벌의 수준을 보다 높이는 것이, 전관예우 관련 수범자에 대한 위하 내지 억제 방안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60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J109:0 2019. 8. 30. 최종검색)

다. 수임자료제출 위반행위자 및 법무법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하여, 현행 변호사법은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행위와 관련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당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변호사법 제117조[607]).

즉 현행 변호사법상 수임자료제출 등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각종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8-1] 변호사법상 수임자료제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변호사법 제117조(과태료)	
제1항	"제89조의4 제1항[608]·제2항[609] 및 제89조의5 제2항[610]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611]
제2항~제4항	"생략"

따라서 전관예우 방지대책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는- 방법적 제한의 정도를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처벌의 중대성 내지 엄격한 처벌을 통하여 수범자인 공직

60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J109:0 2019. 8. 30. 최종검색)

608) 변호사법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J109:0 2019. 8. 30. 최종검색)

609) 변호사법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J109:0 2019. 8. 30. 최종검색)

610) 변호사법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2항·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J109:0 2019. 8. 30. 최종검색)

6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J109:0 2019. 8. 30. 최종검색)

퇴임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관련 사전적 억제를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제출 등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변호사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하여 현행 변호사법 제112조의 벌칙규정에 제8호를 신설하여 제89조의4 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거나 이를 병과하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표 8-2] 변호사법상 수임자료제출 등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의무불이행의 처벌 방안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612]	
제1호 내지 제7호	"생략"
제8호(안)	8(안). 제89조의4 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 제2항을 위반한 자

이에 더하여, 둘째, 이와 같은 의무불이행에 있어서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등 이른바 로펌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다음의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며, 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8-3] 변호사법상 로펌에 대한 처벌

변호사법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제1항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13]
제2항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14]

6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J109:0 2019. 8. 30. 최종검색)

6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

만약 전술한 공직퇴임변호사의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수임자료 제출 등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변호사법에 직접 규정하게 될 경우라고 한다면, 위 동법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규정에 대한 보완 작업 역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전술한 제출의무 등 공직퇴임변호사의 의무위반행위시, 당해 변호사가 소속하고 있는 법무법인 등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51조"에 더하여 "제89조의4 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 제2항"을 함께 규정하는 방법을 통해 법무법인 등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당해 벌금형의 액수를 상향조정할 필요성도 제기하는 바이다. 즉 다음과 같은 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본다.

[표 8-4] 변호사법상 로펌에 대한 처벌 방안

변호사법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제1항 현행 규정 및 개정(안) 비교	
현행 규정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15]
개정(안)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 제89조의4 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 제2항을 위반하면 0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의무 위반 관련 변호사 자격제재 현실화 필요

공직퇴임변호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한 위하로 작용할 수 있는 제재로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조정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라는 전문직으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상당한 위하가 될 수 있는 변호사 자격 정지 및 자격 상실이 부가적 제재를 넘어서 주된 제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변호사법 제5조의 변호사 결격사유로 직접 규정되어 있는 형사적 제재는 어디까지나 금고 이상의 형벌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현행 공직자윤리

#J109:0 2019. 8. 30. 최종검색)

6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J109:0 2019. 8. 30. 최종검색)

6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0000 2019. 8. 30. 최종검색)

법 제29조가 동법 제17조 제1항 취업제한 기간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29조 제1호와 관련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취소를 통한 제재의 유효성 확보 차원에서, 동법 제29조의 법정형들 중에서 특히 벌금형을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동법의 적용 대상자가 오로지 공직퇴임변호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공무원 전반이라는 점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동법 규정에서 벌금형을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방안보다는, 퇴직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공직퇴임변호사에 한정하여 당해 위반행위시 벌금형이 적용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제1안). 물론 제1안은 어디까지나 변호사법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의 벌칙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1안의 개선방안을 취할 경우라고 한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대상인 퇴직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공직퇴임변호사에 한정하여 전술한 위반행위에 한정하여 다시 벌금형의 적용가능성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평등의 원칙 위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제1안과 달리, 공직자윤리법 규정 대신 변호사법의 전술한 등록취소 사유 내지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를 행하는 방안 역시 별도의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제2안). 즉 전술한 현행 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는 형사적 제재로 금고 이상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공직자윤리법상 취업금지 관련 규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이 선고되는 등의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결격사유에 포섭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616]

---

616) 굳이 말하자면, 이와 같은 방식은 선출공직자의 당선무효사유와 관련하여, 특히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로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402&efYd=20190801#J264:0 2019. 8. 30. 최종검색)

[표 8-5] 변호사 자격 관련 제재 개정 방안

변호사 등록 취소 관련 규정 개정 방안	
제1안	제2안
공직자윤리법 제29조 개정(안)	변호사법 제5조 개정(안)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안).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이 규정하는 공직퇴임변호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617]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3-1(안).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29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호 내지 제10호 "생략"

그러나 제1안의 경우, 다른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 중에서도 유달리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만을 따로 떼어내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법정형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우선 입법방식에 있어서 매우 어색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또한 다른 퇴직공무원과 달리 공직퇴임변호사에 한정하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역시 높아 보인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의 수범자가 법관과 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하는 퇴직공무원임은 분명하나, 이러한 퇴직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사전심사를 통한 승인절차 등을 포함하는 각종의 규제 위반에 대하여 다른 퇴직공무원에 비하여 보다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즉 퇴직 이후 취업제한 기간 및 취업제한 기관, 그리고 취업제한에 대한 예외로 사전 승인을 위한 심사에 대하여 무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법률의 수범자들이 바로 이들 공직퇴임변호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공직퇴임변호사에 한정하여 다른 퇴직공무원에 비하여 보다 중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제2안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1안을 통한 대안모색

6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12&efYd=20181218#0000 2019. 8. 30. 최종검색)

은 후술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에서 함께 논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마.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 추가 필요성

변호사법상 제재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공직퇴임변호사라고 하면, 적어도 법률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직퇴임변호사에게 변호사법상 전관예우 관련 제재의 존재 여부에 대한 주의의 환기는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적 억제로 그 효과를 발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즉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개업 또는 취업 이전 단계에서, 법조윤리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법상 수임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인식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절차가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인식 내지 주의의 환기를 위한 절차를 통해, 해당 위반행위의 발각 가능성은 물론 처벌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고지하여 이를 인식하게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규범의 수범자인 공직퇴임변호사라는 직업적 특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인식 개선 목적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적 억제를 가져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바. 공직자윤리법 취업 제한에 있어서 시간적 제한의 장기화 필요성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그간의 지속적 개정 작업을 거쳐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바 있는 부서 내지 기관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618])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동 규정에서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6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직접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술한 의안번호 2007242[619]와 같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퇴직일로부터 5년간 퇴직 전 5년간으로 시간적 제한을 강화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 공직자윤리법 관련 변호사 등록 취소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변호사법상의 변호사 등록 취소 관련 규정의 적용을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취업제한 기간 관련 위반행위를 범하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하여 벌금형을 배제하는 방식의 입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표 8-6]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한 전관예우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한 변호사 등록 취소를 통한 제재 강화 방안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공직자윤리법 제29조 개정(안)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20]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21] 1.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622] 제2호 내지 제3호 "생략" 4(안).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이 규정하는 공직퇴임변호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위와 같이 공직자윤리법을 직접 개정하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61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N7C0I6J0C7L1F7W4D5R1L7N1F8I6 2019. 7. 5. 최종검색)

6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6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6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01&efYd=20170726#0000 2019. 8. 30. 최종검색)

아. 법률 제·개정 외의 정책 제언: 통계적 정책검증 수단 확보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정책 역시도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수정 및 정책의 효과성 검증 역시도 실증자료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연구방법뿐만 아니라 본고에서 소개하였던 선행 조사연구들에서 사용된 연구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전관예우 현상의 존재와 심각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판결과 관련한 자료, 기소/불기소와 관련된 자료 등 법원과 검찰이 소유한 대규모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전관효과의 존재와 그 변화 추이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다. 단, 이 때 분석이 용이해지려면, 변호사에 관한 정보(전관여부, 전관 퇴임시기와 퇴임시 직위 등에 관한 정보)가 형사사법포털(KICS)에 통계적으로 입력되어야 한다. 그러한 입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관예우 방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 현상의 추이 파악을 통한 정책 검증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논문·자료집·연보 등]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법원행정처.

권 성, 1994, "특집: 사법개혁과 법조양성 : 제1주제 발표논문 : 사법제도개혁의 방향과 문제점", 서울대학교 법학, 35권 1호

김재봉, 2013,『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검찰청 용역보고서.

노회찬, 2006a, "노회찬의원 보도자료: 대구지역 전관변호사 사건 수임률, 일반변호사의 14배에 달해", 2006년 10월 19일자.

_____, 2006b, "노회찬의원 보도자료: 부산·울산·창원 '향판', 변호사로 떼돈 벌고 다시 법원으로 복귀하고", 2006년 10월 20일자.

_____, 2006c, "노회찬의원 보도자료: 광주·전주·제주 '향판', 형사사건 싹쓸이하고 다시 법원으로 등장", 2006년 10월 24일자.

_____, 2016a,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성산) 노회찬 보도자료: 광주 지역 향판 출신 전관 변호사 수임사건 241건 분석 결과 발표", 2016년 10월 6일자.

_____, 2016b,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성산) 노회찬 보도자료: 부산·창원지역 및 대구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수임사건 판결문 161건 분석결과 공개", 2016년 10월 11일자.

대한변호사회, 2019,『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 2019년 4월 30일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 자료집.

모성준 · 서용성 · 최유나, 2018,『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사법감시센터, 2003,『김대중 정부 5년 검찰백서』, 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위원회, 2004,『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0,『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대통령 자문위원회 보고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2019,『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2019년 6월 20일 사법정책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 심포지엄 자료집.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a,『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_____, 2006b,『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심희기, 2002, "1990년대의 사법제도개혁의 동향과 전망",『인권과 정의』제308호

양형위원회, 2008,『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2008년 6월 16일 양형위원회 제1차 공개토론회 자료집.

윤동욱, 2019,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록·개업 제한에 찬성하며", 2019년 4월 30일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 자료집.

은종환·정광호, 2016,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유형의 탐색: Q-Methodology를 중심으로",『행정논총』제53권 제2호

이상윤, 1999,『영미법』, 박영사.

이유봉 · 최유 · 김정현 · 김은정 · 이경희 · 홍기원 · 김혜련, 2014,『행위제한제도 해외사례 파악 및 제도도입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인사혁신처 연구용역보고서.

이 율, 2017,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록 및 개업 제한 방안 – 법원, 검찰 최고위직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필요성 방법에 관하여", 2017년 6월 15일 법원, 검찰 최고위직 등록 및 개업 제한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이지은·홍석민, 2014, "판사와 변호인 간 사회적 자본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형사정책』제26권 제3호

인사혁신처, 2018,『재직 · 퇴직 공직자를 위한 공직윤리 실천가이드북』, 인사혁신처

정형근, 2018,『법조윤리강의』, 박영사.

조홍준, 2019,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에 관하여", 2019년 4월 30일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 자료집.

차성안, 2019,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2019년 6월 20일 사법정책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 심포지엄 자료집.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총괄분과위원회, 2018,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안".

최인섭·황지태, 2007,『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Ⅰ): [1] 사법개

혁과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인섭 · 한상희 · 김재원 · 이상수 · 김희수 · 김인회 · 정한중 · 이전오, 2017,『법조윤리』, 박영사.

홍두승, 1993,『社會調査分析』, 다산출판사.

황지태, 2007,『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Ⅰ): [2] 사법개혁의 방향과 중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황지태·김경찬·서울시립대학교, 2016,『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연구총서.

황지태·김정연·정지혜·강우예, 2018,『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Ⅰ): 브로커형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해외문헌 단행본·논문·자료집·연보 등]

Ann Lousin, 1988, "The New *Ex Parte* Communications Rule in Illinois: A Step Forward?", *vol.19 Issue3 Loy. U. Chi. L. J. 1031, Spring 1988 Illinois Judicial Conference Symposium.* https://lawecommons.luc.edu/cgi/viewcontent.cgi?referer=http://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2&cad=rja&uact=8&ved=2ahUKEwi63f2NnNnkAhWPwZQKHSMSArcQFjABegQIABAC&url=http%3A%2F%2Flawecommons.luc.edu%2Fcgi%2Fviewcontent.cgi%3Farticle%3D1799%26context%3Dluclj&usg=AOvVaw1d1fWUtHd1HVNxGuWYBYqm&httpsredir=1&article=1799&context=luclj, 최종검색 2019. 9. 18.

Barry J. McMillion, 2017, "U.S. Circuit and District Court Judges: Profile of Select Characteristics", CRS Repor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ugust 1.*, https://fas.org/sgp/crs/misc/R43426.pdf, 최종검색 2019. 9. 26.

Hansoo Choi, 2014, *Essays on Business Groups and the Judiciary in South Korea*, a doctoral thesis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House of Lords, 2017, "Select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7th Report of Session 2017-19 Judicial Appointments: follow-up", *the Authority of the House of Lords*.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1719/ldselect/ldconst/32/32.pdf, 최종검색 2019. 9. 18.

Mary L. Clark, 2011, Judicial Retirement and Return to Practice, *vol. 60 Issue 4 Cath. U. L. Rev.* 841.
https://scholarship.law.edu/cgi/viewcontent.cgi?article=3252&context=lawreview, 최종검색 2019. 9. 18.

[국내정보 신문기사·인터넷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최종검색 2019. 10. 20.

국민뉴스, 김경희·주재한, 2016.8.9. "① 반복되는 법조비리 일취월장 10년새 2배…입으로 말로만 '척결'",
http://www.kookminnews.com/news/view.php?idx=12418&mcode=m7mass27) 최종검색 2019.10.2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회법안검색,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최종검색 2019. 10. 23.

김동철, 2006.11.1., "국회의원 김동철 보도자료: 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대법원",
http://www.kdc2000.com/bbs/list.html?table=bbs_2&idxno=17171&page=31&total=764&sc_area=&sc_word=, 최종검색 2019.10.21.

네이버 연합뉴스, 김계연, 2013.6.11., "변호사 80% 전관예우 관행 안 없어진다",
https://news.naver.com/main/tool/print.nhn?oid=001&aid=0006308124, 최종검색 2019.10.18.

노컷뉴스, 곽영식, 2018.10.11.,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피아' 적폐 여전",
https://www.nocutnews.co.kr/news/5043553, 최종검색 2019. 7. 29.

뉴스1, 김수완, 2015.11.24., "법조윤리협, 25일 '법조인윤리선언' 선포식",
http://news1.kr/articles/?2496815, 최종검색 2019.10.21.

대검찰청 보도자료, 2016.8.31.,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 시행",

http://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 최종검색 2019.10.21.

대법원 보도자료, 2013.7.25.,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6, 검색가능, 최종검색 2019.10.21.

_____, 2014.8.21., "지역법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6에서 검색가능, 최종검색 2019.10.15.

_____, 2016.6.16.,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qnum=1139, 최종검색 2019.11.08

_____, 2016.12.23.,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11호 의결",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6검색가능, 최종검색 2019.10.21.

_____, 2018.2.27.,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6검색가능, 최종검색 2019.10.21.

_____, 2018.12.4.,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전관예우 근절방안" 의결",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6검색가능, 최종검색 2019.10.21.

대한변협신문, 박형연, 2014.5.4., "[기획기사] 변호사윤리장전의 어제와 오늘-1",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4, 최종검색 2019.11.1.

_____, 박형연. 2016. 2. 1., "[변협의 숨은 역사(33)] 전관변호사 개업제한의 역사(2)",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5, 최종검색 2019.10.21.

대한변호사협회 공지사항, 2019.1.2., "공직퇴임자의 유의사항", http://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page=1&seq=9143&ty

pes=1, 최종검색 2019.11.08.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 2015.12.4., "김진태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서한 발송", http://koreanbar.or.kr/pages/news/list.asp?types=3에서 검색가능, 최종검색 2019.10.21.

_____, 2017.7.24., "김현웅 전 장관의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http://koreanbar.or.kr/pages/news/list.asp?types=3에서 검색가능, 최종검색 2019.10.21.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2015.3.19., "퇴임 대법관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http://koreanbar.or.kr/pages/news/list.asp?types=3에서 검색가능, 최종검색 2019.10.21.

_____, 2016.4.7., "신영철 전 대법관은 개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http://koreanbar.or.kr/pages/news/list.asp?types=3에서 검색가능, 최종검색 2019.10.21.

_____, 2017.2.14.,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하라", http://koreanbar.or.kr/pages/news/list.asp?types=3에서 검색가능, 최종검색 2019.10.21.

대한변호사협회 회원현황자료, http://www.koreanbar.or.kr/pages/introduce/stat.asp, 최종검색 2019. 11. 1.

동아일보, 장관석·배석준, 2016.5.13., "'수임료 100억' 최유정 변호사 구속",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513/78071197/1, 최종검색 2019.10.31.

_____, 권오혁, 2017.5.16., "변협, 前 법무장관-檢총장 변호사개업 자제 권고", http://www.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date=20170516&gid=84376593, 최종검색 2019.10.30.

_____, 이호재, 2019.4.22., "전관예우 실태 첫 객관적 분석... 통계자료 A4 70만장 분량",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22/95158685/1, 최종검색 2019.11.8.

_____, 이호재·김예지, 2019.4.23., "대법관 출신 7명이 상고심 275건 수임... 2명은 일주일에 1건 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23/95176248/1, 최종검색

2019.10.20.

로이슈, 신종철, 2017.2.12., “이재명, 법조계 전관예우 퇴출…‘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 공약”,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70212183401973930201_12, 최종검색 2019.4.10.

머니투데이, 이병욱, 2015.3.26., “하창우 변협 회장 ‘전직 대법관 도장값 3000만원 폭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32611148270676, 최종검색 2019.11.11.

머니투데이, 우경희, 2017. 10. 8.,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피아’ 건재 “해수부 퇴직자 산하기관 독식”,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100809427635466&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최종검색 2019.7.29.

법률신문, 신연수, 2000.2.11., “대한변협, 2천년도 감찰위원 24명 위촉”,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129, 최종검색 2019.11.01.

_____, 정성윤, 2000.9.1., “(법조포커스) 의정부법조비리사건 2년10개월만에 종지부”,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799, 최종검색 2019.10.24.

_____, 조용식, 2010.2.22., “(법조광장) 법조일원화와 전관예우에 대한 단상”,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51383, 최종검색 2019. 12. 10.

_____, 권용태, 2009.2.23., “국회 법사위,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 구성”,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45552, 최종검색 2019.10.21.

_____, 박미영, 2016.9.5., “선임계 미제출 변론 전면금지… 내부감찰도 강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2939, 최종검색 2019. 10. 21.

_____, 정형근, 2018.8.20., “변호사법 조문해설 50.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45818, 최종검색 2019. 10. 25.

_____, 강현중, 2018.11.22., "(법조광장)왜 시니어판사 제도인가",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48528, 최종검색 2019. 9. 26.

_____, 손현수, 2019.1.11.,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시·군법원 원로법관' 임용 희망",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050&kind=AA&fbclid=IwAR10RwGTzcqNRvxUnHSz6oIcYzITBOdCpwYyAt03HAivHawqIQqF8cvLomg, 최종검색 2019. 10. 11.

_____, 이승윤, 2019.3.15., ""신규임용 판사, 3분의 2가 로펌 출신...'후관예우' 우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555, 최종검색 2019.6.19.

_____, 이승윤, 2019.5.17.,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자료 미제출 시 형사처벌' 입법 추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3102, 최종검색 2019.8.23.

법률저널, 이성진, 2014.2.25., "변호사 직업윤리 강화된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5, 최종검색 2019. 12. 10.

_____, 이상연, 2018.11.2., "'법조경력 5년' 신입법관 36명 신원을 분석해보니...",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05, 최종검색 2019. 9. 26.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보도자료, 2019.4.17.,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123&call_from=rsslink, 최종검색 2019.10.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 (http://www.law.go.kr, 최종검색 2019. 8. 30.

서울신문, 박지윤, 2007.8.8., "전관예우 '몸통'은 전대법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808001010, 최종검색 2019.4.10.

_____, 1999.2.2."수사발표문 요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90202004005) 최종검색 2019.10.24.

세계일보, 박진영, 2018.11.7., "'전관예우'한국엔 있고 독일은 없는 이유는?", https://news.v.daum.net/v/20181107092042942, 최종검색 2019.10.31.

아주경제, 2014.8.18., "변호사 89.5% 전관예우 여전히 존재", https://www.ajunews.com/view/20140818141040120, 최종검색 2019.10.18.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최종검색 2019.12.10.

연합뉴스, 황재하, 2017.1.5., "'100억원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1심에서 징역 6년", https://www.yna.co.kr/view/AKR20170105070400004, 최종검색 2019.12.10.

연합뉴스, 임순현, 2018.10.25., "대법, '100억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81025055951004, 최종검색 2019.12.10.

위클리비즈조선, 이위재, 2013.12.14., "전관 변호사 쓸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 15% 높아지고, 실형 2년 줄어든다", http://weekly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3/2013121301841.html, 최종검색 2019.6.26.

이글루스 2015-03-10., "법관이 법정 밖에서 법률적 조언을 해도 되는가? - 법조윤리의 문제", http://egloos.zum.com/ajdajfjd2/v/1109938), 최종검색 2019.10.14.

임병수, 1998, "법제처 50년의 발자취", 『법제』, 1998년 8월호. http://www.moleg.go.kr/knowledge/publication/monthlyPublicationSrch?mpbLegPstSeq=129655, 최종검색 2019.10.23.

월간조선, 김성동, 2000.07.,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李宗基 변호사는 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나, 언론의 보도와 판결 사이의 괴리는 누구 책임인가",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0007100073, 최종검색 2019.10.24.

조선일보, 이위재, 2013.12.14., "전관 변호사 쓸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 15% 높아지고, 실형 2년 줄어든다", http://weekly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3/2013121301841.html, 최종검색 2019. 6. 26.

_____, 이영란, 2011.2.8., "[기고] 전관예우 없애려면 구속·양형기준 정립부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08/2011020802277.

html, 최종검색 2019.10.02.
중앙일보, 1972.10.18.,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비상 국무회의서 헌법조항 일부 수행| 개헌안 11월27일 내 국민 투표 회부”,
https://news.joins.com/article/1332760, 최종검색 2019.10.21.
_____, 이석봉·김방현, 1999. 1. 30., “이종기 변호사 기소까지”,
https://news.joins.com/article/3748698, 최종검색 2019.10.24.
_____, 신정원, 2013.3.13., “양승태 "법조일원화 정착되면 전관예우 해결"”,
https://news.joins.com/article/10927265, 최종검색 2019.10.21.
_____, 천정인, 2014.8.22., “대법 공직자윤리위 “법관, 외부인사와 개인적 교류도 조심””,
https://news.joins.com/article/15605716, 최종검색 2019.10.15.
_____, 김준모, 2016.6.24., “檢, 정운호 ‘로비 리스트 8인’ 의혹 계속 수사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0217184, 최종검색 2019.10.21.
_____, 김승모, 2016.9.19., “검찰, ‘주식거래 · 몰래변론’ 금지 지침 오늘부터 시행”,
https://news.joins.com/article/20606462, 최종검색 2019.10. 21.
_____, 이혜원, 2017.12.6., “김진태 前검찰총장, 퇴임 2년 만에 변호사 활동 재개”,
https://news.joins.com/article/22182086, 최종검색 2019.10.30.
_____, 이후연, 2019. 1. 29., “1호 퇴임 원로법관 쓴소리 “사법개혁, 국민 위한 건가””,
https://news.joins.com/article/23330535 최종검색 2019. 10. 11.
참여연대 홈페이지, 그 사건 그 검사DB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https://www.peoplepower21.org/CaseDB/1510821, 최종검색 2019.10.21.
_____, 입법자료 “[입법의견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심의안건 20가지〉에 대한 의견서”,
https://www.peoplepower21.org/Petition/751795, 최종검색 2019.10.28.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최종검색 2019.10.20.
쿠키뉴스, 김현섭, 2015.11.24., “법조계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생긴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27346, 최종검색 2019.10.30.
한겨레 1993.6.8., 15면 “변호사등 판사실 출입제한 전국법원에 확대 실시키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publishDate=1993-06-08&officeId=00028&pageNo=15, 최종검색 2019.12.1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1.6.3., “정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8236, 최종검색 2019.10.21.

_____, 2011.7.26., "전관예우 근절방안'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8345, 최종검색 2019.10.2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헌법재판정보 검색, http://search.ccourt.go.kr/ths/pr/selectThsPr0101List.do;jsessionid=c5019V1oJwE3SxxAuv1Vs20hFPe6eh2H2WYOjWGls9VTkNKuy3P1WiIaDUlBYswQ.cosearch_servlet_engine1, 최종검색 2019. 8. 13.

SBS 뉴스, 정준형, 2016.5.10.,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여성 변호사 전격 체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6470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최종검색 2019.12.10.

pub조선, 김승열, 2017.7.11., "전관예우가 끼어들 틈이 없는 독일의 판사와 변호사 제도", https://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nNewsNumb=20170725334&nidx=25335, 최종검색 2019.10.31.

[해외정보 신문기사·인터넷 자료]

독일 베를린주 홈페이지, http://gesetze.berlin.de/jportal/?quelle=jlink&query=DiszG+BE+Inhaltsverzeichnis&psml=bsbeprod.psml&max=true, 최종검색 2019.10.31.

독일 연방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amtstg, 최종검색 2019.10.3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DE/Richter/Verhaltensleitlinie/Verhaltensleitlinien_node.html, 최종검색 201910.31.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s://www5.cao.go.jp/kanshi/gaiyou.html, 최종검색 2019. 11.05.

All About Law,

https://www.allaboutlaw.co.uk/stage/becoming-a-lawyer/how-to-become-a-judge, 최종검색 2019. 9. 18.

American Bar Association, https://www.americanbar.org/groups/professional_responsibility/publications/model_code_of_judicial_conduct, 최종검색 2019. 9. 16.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미국법령검색,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 최종검색 2019.9.23.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미국 법률용어검색, https://www.law.cornell.edu/wex, 최종검색 2019.9.23.

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 https://www.judicialappointments.gov.uk/025-circuit-judge-terms-and-conditions, 최종검색 2019. 9. 18.

Justia US Law, 미국법령검색, https://law.justia.com, 최종검색 2019. 9. 18.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3/8 최종검색 2019. 9. 18.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http://www.judicialselection.us/judicial_selection/methods/selection_of_judges.cfm?state=, 최종검색 2019. 9. 16.

USLEGAL.COM, https://definitions.uslegal.com/s/senior-judge/, 최종검색 2019. 9. 23.

United States Courts, 미연방법원 관련 검색, https://www.uscourts.gov, 최종검색 2019. 9. 16.

Abstract

Study on Actual Situations and Countermeasures of Unlawful Practices of Law (II)

Focusing on the Reality of Corruption Committed by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and Its Countermeasures

Hwang, Ji-tae (KIC, Research Fellow)
Lee, Cheon-hyeon (KIC, Senior Research Fellow)
Lim, Jung-ho (KIC, Associate Research Fellow)
Shin, Dong-Joon (KMOU, Professor)

1. Introduction

1) This study is the second report in a series on the unlawful practice of law in South Korea. It investigates the unlawful practices that incumbent prosecutors or judges grant private requests from their retired seniors, called "jeon-gwan ye-u" and discusses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preferential treatment of the attorneys who retired from public office. This study continues and complements the previous report on the corruption and unlawful practices in the legal profession.

2) We conducted online surveys of lawyers and client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former judges and prosecutors in Korean society. We also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ome of the participants. The surveys and interviews provide information on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of corruption involving attorneys retired from public office, those attorneys' fee, clients' preference for those attorneys, and opinions on how to control those unlawful

practices.

3) The section on countermeasures first describes the history of the systems designed to control unlawful practices involving former official attorneys. In addition, it discusses the most recent legislative tren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legislative cases in the U.S., U.K., Germany, and Japan.

2. Literature Review

1) There is a small number of empirical studies on preferential treatment of attorneys who were judges or prosecutors, and the number of studies confirming the existence of such phenomena are much smaller. The scope of potential research, however, is very wide because there are many different stages – trial, investigation, prosecution, review of warrant, bail, and etc – where corruption could happen, Moreover, we can find diverse research subjects and methods regarding these issues. Several studies identified some unlawful practices of preferential treatment, but few study proves, even indirectly, the nonexistence of such pract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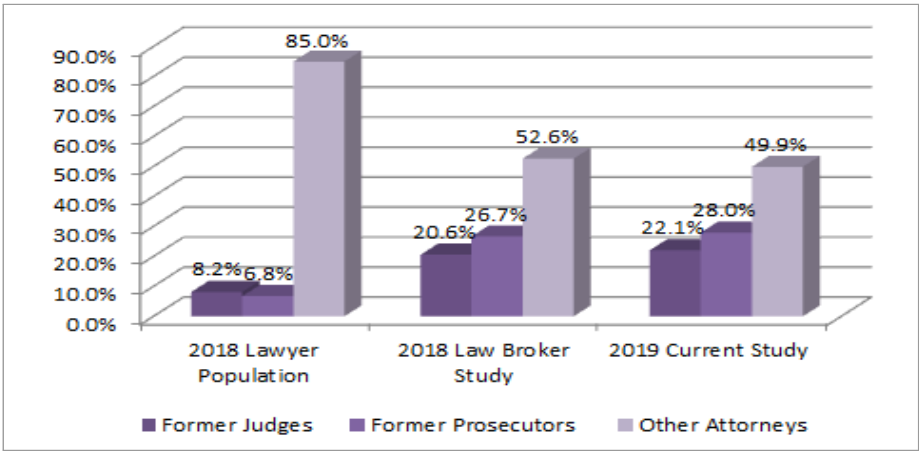
2) Some significant research findings show actual practices of the preferential treatment, but the amount of research is insufficient. Because it is relatively easy to research preferential treatment by judges, most previous studies are concentrated in this area while preferential treatment by prosecutors is largely neglected. We need to fill these gaps in the research area of preferential treatment of ex-official attorneys.

3. Summary of the Findings from the Client Survey

1) Clients' high preference for ex-official attorneys : The percentag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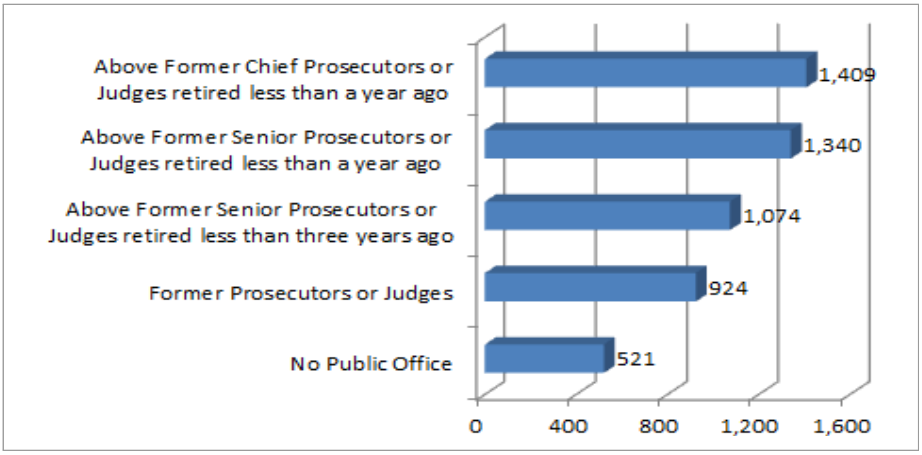
ex-official (former judges or prosecutors) attorney appointed by clients is 50.1%, and it was 47.4% in the 2018 Law Broker Study. The percentage of lawyers in the Korean Bar Association who were former judges or prosecutors is only 15%. In spite of this small portion of ex-official attorneys, the percentage reaches almost 50% in our client sample. This shows that clients highly prefer ex-official attorneys and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ex-official attorneys have more cases than other attorneys on average.

[Figure 1] Percentage difference of ex-official attorney between lawyer and sample of this study (see Chapter 3)



2) Ex-official attorneys' mean fee reported by clients : On average, attorneys who were prosecutors or judges had twice the amount of fees than those who did not hold public office. Those who were in high positions and retired less than a year ago had almost three times more fees than those who did not hold public office.

[Figure 2] Base fees categorized by the former offices attorney held (see Chapte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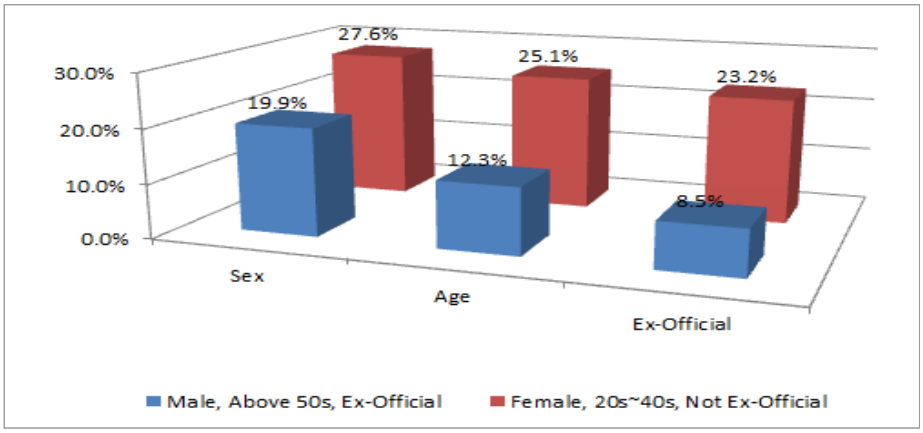


3) To summartze the client survey, we find ex-official attorneys had ① more cases, ② more fees, and ③ more extra earnings on average. We can easily infer from these three findings that there should be a great mean fee gap between ex-official attorneys and other attorneys.

4. Summary of the Findings from the Lawyer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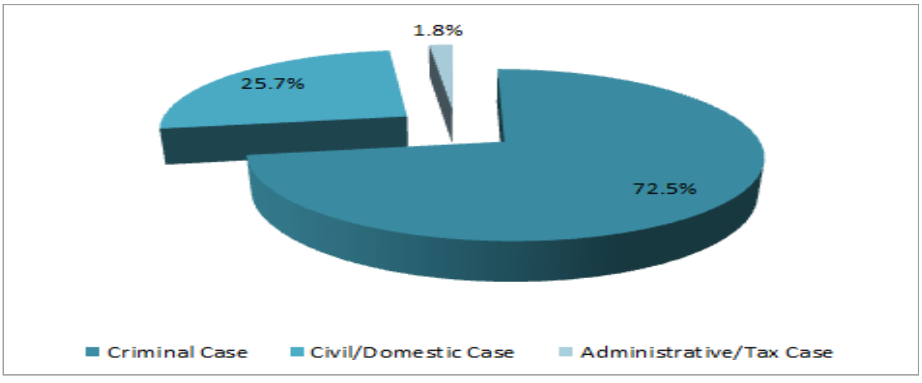
1) Experience of the preferential treatments of ex-official attorneys : The precentage of lawyers who report their experiences of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ex-official attorney in the last 10 years is 21.8%, 20.6% in the last five years, and 5.6% in the last year. Female lawyers, young lawyers, and lawyers who have not held public office, the number of which is increasing in the lawyer market, tend to experience more preferential treatment of ex-official attorneys. It is therefore likely that grievances against preferential treatment will be aggravated in the future.

[Figure 3] Experiences of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ex-official attorneys by lawyer's characteristics (See Chapter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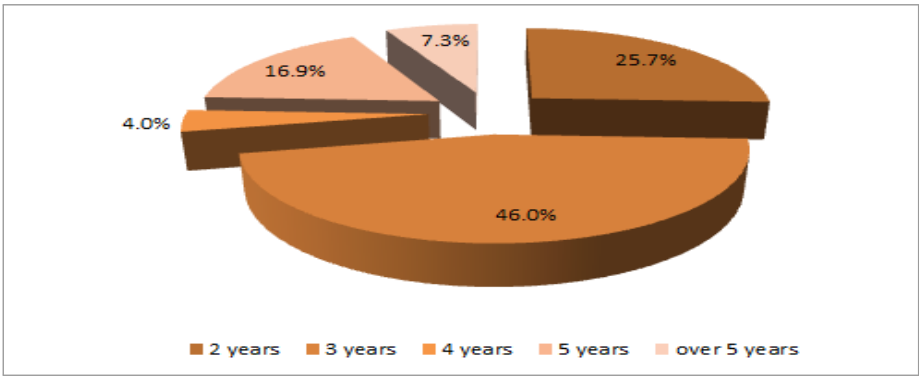
2) Proportion of Criminal Cases with Preferential Treatment : It turns out that lawyers experienced preferential treatment of ex-official attorneys primarily in criminal cases (72.5%). They also report that they experienced those special treatments more at the prosecutor investigation stage (51.9%) than the trial stage (34.2%). This finding reveals the prevalence of the unlawful practice in criminal cases and among attorneys who were former prosecutors.

[Figure 4] Type of cases where lawyers experience most recent preferential treatment (See Chapter 4)



3) Opinion on Extending the One Year Period of Restriction on Acceptance of Cases : The current Attorney-At-Law Act imposes restrictions on ex-official lawyer accepting cases for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he/she retired from office. 70.8% of lawyers in the sample respond that this one year restriction period should be extended, and 46% of them think that three years would be appropriate.

[Figure 5] Appropriate year for the restriction on acceptance of cases(See Chapter 4)



5. History of Countermeasures against the Unlawful Practices of Preferential Treatment

1) We explored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efforts to prevent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ex-official attorneys during the 70-year period after the government formation in 1948.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and serious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to eradicate the corruption started in the mid-1990s. The establishment of civilian government in the early 1990s provoked public demand for strong reforms of the entire justice system. Moreover,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also expanded the judicial market. These changes piqued great interest in the problem of unfair practices in which incumbent prosecutors or judges grant private requests from their retired seniors.

2) In spite of the various efforts to eradicate the unlawful practices, "jeon-gwan ye-u" is still prevalent, as evidenced by the 2016 "Jung Woon-ho Gate".

3) Even though the supreme court, the ministry of justice,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ould work together to solve the problem of "jeon-gwan ye-u", only the supreme court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have followed through with any countermeasure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should participate in these efforts more actively.

6. Recent Legislative Trend

【Table 1】 The legislation trend of countermeasure to "jeon-gwan ye-u" in the 19th and 20th National Assembly (see chapter 6)

title	characteristics	note
Partial Amendment of the Attorneys-at-Law Act	Extension of period restriction on ex-official attorneys	-
Partial Amendment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Bill for the Public Activities Support for The Forme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others	-
Bill for the Public Activities Support for The Forme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others	Inducing abandonment of "jeon-gwan ye-u" by incentives for the ex-official attorneys who were the former highest ranking judges	-
Partial Amendment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Criminal Procedure Act	Period restriction for career judges	Countermeasures against so-called "hu-gwan ye-u", preferential treatment of lawyers who are going to be judges.

1)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Attorneys-at-Law Act intends to extend the case-taking prohibition period and tighten the current sanctions. Other bills related to the restrictions on types and methods of case-taking continues to be

proposed.

2) Partial amendment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concentrates on the restriction of employment and the extension of the prohibition period. It must be noted that this restriction is not limited to the countermeasures against "jeon-gwan ye-u".

3) We identify some proposals of a bill that intends to induce the voluntary abandonment of "jeon-gwan ye-u" by providing special incentives for the ex-official attorneys who were the former highest ranking judges.

4) Some additional bills containing countermeasures against "hu-gwan ye-u" were also proposed. These bills also narrowly focus on the period restriction, so they need to consider other aspects of the issue.

7. Related Legislation Cases in Other Countries

1) The U.S., U.K., Germany, and Japan have different cultures and justice systems from ours and do not have such problems as "jeon-gwan ye-u." It is therefore difficult to perceive any implications from the legislation cases of theses countries.

2) What we can learn from these countries is the need for providing an environment that discourages judges and prosecutors from practicing law after retirement by guaranteeing retirement age and income.

8.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A. Conclusion from the Survey Findings

1) In summary of previous studies and current survey research, we conclude that "jeon-gwan ye-u,"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ex-official attorneys, exists and is serious problem. The attorneys who are newly retired from public offices take ① more cases, ② more fees, and ③ more extra charges than other attorneys on average.

2) The marked gaps in the number of cases taken and the amount of fees must be due to "jeon-gwan ye-u." It is hard to accept some judges' and prosecutors' argument that these abnormal differences are mainly due to clients' prejudice or deceits by law brokers. These are only secondary factors and those effects are only partial.

3) If it is true that clients pay more fees for ex-official attorneys even though there is no "jeon-gwan ye-u," we should empirically prove that there is no preferential treatment of ex-official attorneys and actively campaign to enlighten those would-be clients.

4) "Jeon-gwan ye-u" is more prevalent and likely to happen in criminal cases and in the activities of prosecutors. The supreme court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have however taken initiatives to formulate countermeasures against "jeon-gwan ye-u." We argue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should make more aggressiv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5)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the attorneys who were former prosecutors is substantially effective in pre-trial stages. This is mainly because prosecu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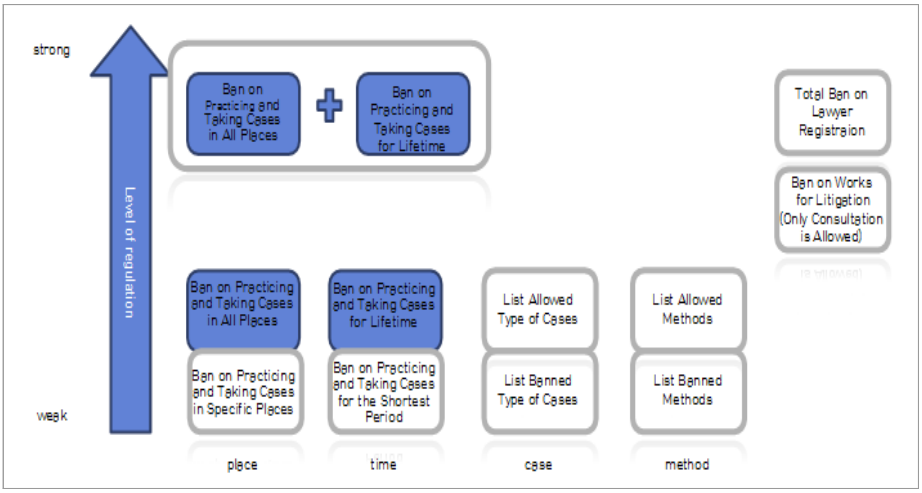
have a great deal of discretion in prosecuting. Reasoning of judgment is clearly revealed in writing. The decision not to prosecute, however, can be made for unclear reasons. This fact can be related to the leverage ex-prosecutor attorneys can exercise.

B. Some Suggestion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jeon-gwan ye-u"

1) There are several options to regulate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ex-official attorneys through the Attorneys-at-Law Act. These options can be organized by their severity of regulation as below.

In this figure, the arrow direction signifies strong regulations and the opposite arrow direction means the countermeasure can be realistically implemen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Figure 6] Countermeasures against "jeon-gwan ye-u" by the level of regulation (See Chapter 4)



2) Long-Term Measures: As in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the most fundamental countermeasure against "jeon-gwan ye-u" are to ban former judges

and prosecutors from practicing and taking cases on the premise that judges and prosecutors are guaranteed to work for their lifetime. There are, however, too many limitations and obstacles to implement them in the near future.

3) Short-Term Measures

① It is often discussed and not a new measure but listing specific restrictions on case-taking and strengthening penalties should be very effective.

② Every attorney-at-law shall be prohibited from defending or acting on behalf of his/her client without submitting a letter of designation of counsel or a letter of attorney to the relevant court or investigative agency. Lawyers strongly want to strengthen penalties for violating this regulation. It is hard to uncover the violations but still this measure is necessary measure to deter those unlawful practices.

③ An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shall submit retainer agreement data regarding cases that he/she has accepted and reports on case results. A person who violates this regulation shall be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To make this measure more effective and realistic, criminal penalties should be considered. Moreover, the sanctions on law firms need to be strengthened when associate ex-official attorneys violate the regulation.

④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triction on employment of retired public officials in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the violator should be sanctioned regarding the practicing certificat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lauses of the qualifications for attorneys-at-law in the Attorney-At-Law Act directly or the clauses in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to exclude monetary penalties only when ex-official attorneys violate the rules.

⑤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must play a larger rol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s in the Attorney-At-Law Act. It can provide some procedures such as mandatory courses on the Attorney-At-Law Act

for newly practicing ex-official lawyers regarding the sanctions for unlawful case-taking practices.

4)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①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sets the period restriction on the employment of retired public officials. He/she cannot be employ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time of his/her retirement by any institutions closely relevant to the duties of the department or agency with which he/she has been affiliated for five years before his/her retirement under the current Act. We may consider the extension of the three-years restriction period after retirement to five years.

② We can also consider the exclusion of a monetary penalty for violating the restriction on the employment of retired public officials to make the revocation of the registration clause in the Attorney-At-Law Act realistic and effective.

5) Other Suggestions; Evidence-Based Policy Making

Countermeasures against "Jeon-gwan ye-u" shoud be based on empirical evidence. We need to utilize the large data collected and stored by courts and prosecutor offices. To do so, information on lawyers' past positions should be entered into the Korean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KICS). This will have an effect of preventing "jeon-gwan ye-u" and be useful tool for evidence-based policy making.

부 록

부록1 |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전관예우 실태 조사 설문지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전관예우 실태 조사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조비리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관련 조사연구로 이른바 전관예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최근 실태와 관련된 경험 혹은 태도에 대해 변호사 선임 경험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문의처 연구주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 지 태 연구위원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SQ1. 다음 중 귀하께서 지금까지 한 번 이상 경험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 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해외여행 ☞ **설문 제외**
□② 보험금 청구 ☞ **설문 제외**
□③ 교통사고 ☞ **설문 제외**
□④ 복권당첨 ☞ **설문 제외**
□⑤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 **설문 제외**
□⑥ 성형수술 ☞ **설문 제외**
□⑦ 자치단체 민원제기 ☞ **설문 제외**
□⑧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SQ2. 귀하께서는 형사/민사/가사/행정 등의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SQ2]
□①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없다 ☞ **설문 제외**
□②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다
□③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다 없다 ☞ **설문 제외**

SQ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SQ3]
□① 남성 □② 여성

SQ4.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_____세) [SQ4]

SQ5. 귀하의 거주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SQ5]

□① 서울 □② 부산 □③ 인천 □④ 대구 □⑤ 대전 □⑥ 광주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남 □⑫ 충북
□⑬ 전남 □⑭ 전북 □⑮ 경남 □⑯ 경북 □⑰ 제주

우선 귀하께서 선임하신 변호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송 경험이 2회 이상일 경우, 가장 최근의 소송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까? [Q1][TQ1_5]

□① 형사사건 □② 민사사건(가사사건 포함)
□③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병행 □④ 행정사건(조세사건 포함)
□⑤ 기 타 ( )

문2. 위 사건은 대략 몇 년 전의 사건이었습니까? [Q2]

□① 1년 이내의 사건 □② 대략 2년-5년 전 사건
□③ 대략 6년-10년 전 사건 □④ 10년 이상 지난 사건

문3. 당시 귀하께서는 어떤 경로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셨습니까? [Q3][TQ3_8]

□① 신문, 광고, 간판 등을 보고
□② 가족, 친지의 소개
□③ 친구, 지인의 소개
□④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의 소개
□⑤ 사건과 관련하여 만난 경찰의 소개
□⑥ 사건과 관련하여 만난 검찰청 직원, 법원 직원, 교정 공무원 등의 소개
□⑦ 각종 (법률 관련) 상담기관의 소개
□⑧ 기타 (구체적으로_____)

문4. 귀하께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할 때,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판사 혹은 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Q4]

□① 있다 ➡ 문4-1로 □② 없다 ➡ 문5로

문4-1 '전관변호사 제안'을 다음 중 어느 단계에서 받았습니까? (처음 제안 기준으로 하나만 답변) [Q4A][TQ4A_8]

□① 분쟁발생 후 소송제기 전 □② 경찰 조사
□③ 검찰 조사(영장청구 포함) □④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
□⑤ 1심 재판 □⑥ 항소심 재판
□⑦ 대법원 재판 □⑧ 기 타 ( )

문4-2 그와 같은 '전관변호사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까? [Q4B]

□① 예 □② 아니오

문5. 귀하께서 선임하신 변호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Q5]

□① 판사 출신 변호사 ➡ 문5-1로 □② 검사 출신 변호사 ➡ 문5-1로

□③ 판·검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 ➡ 문6으로 □④ 모름, 구별 못함 ➡ 문6으로

문5-1. (판검사출신 변호사 선임만 응답) 선임 변호사가 판·검사직을 퇴직한 후로 귀하의 변호사로 선임된 시기까지의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Q5A]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2년 이상 3년 미만 □④ 3년 이상 5년 미만

□⑤ 5년 이상 □⑥ 모르겠음

문5-2. (판검사출신 변호사 선임만 응답) 선임 변호사가 판·검사직을 퇴직했을 때의 직위는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Q5B]

□① 평판사, 평검사 □② 부장판사, 부장검사

□③ 검사장, 법원장 □④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또는 그 이상

□⑤ 모르겠음

문5-3. (판검사출신 변호사 선임만 응답) 선임 변호사의 퇴직 직전 근무한 지역과 귀하의 소송사건이 진행된 지역 사이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Q5C]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문5-4. (판검사출신 변호사 선임만 응답) 그 변호사가 흔히들 말하는 '전관변호사'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Q5D]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문5-5. (판검사출신 변호사 선임만 응답) 귀하의 소송은 '전관예우'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Q5E]

□① 그렇다 ➡ 문5-5-1로 □② 아니다 ➡ 문6으로 □③ 모르겠다 ➡ 문6으로

문5-5-1. (본인의 사건이 전관예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응답) 전관예우 혜택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Q5EA][TQ5EA_4]

□① 절차상 각종 편의(기일상의 편의 등)는 물론이고, 중요 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였다고 본다

□② 절차상의 편의를 받는 정도였으나, 중요 결정사항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다

□③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든 혜택은 보았다는 느낌이 든다

□④ 기타 ( )

문5-5-2. (본인의 사건이 전관예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응답) 귀하의 사건은 어느 단계에서 전관예우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Q5EB][TQ5EB_7]

□① 경찰 수사단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하는 단계 포함)

□② 검찰 수사단계(검사가 긴급체포하거나,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 포함)

□③ 구속 관련 재판(영장실질심사 혹은 구속전 피의자심문, 구속적부심, 보석)

□④ 민·형사 등 1, 2심 재판

□⑤ 민·형사 등 대법원 재판

□⑥ 헌법재판소 재판

□⑦ 기타 ( )

문6. 귀하께서 당시 소송사건의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수임료)는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Q6]

약 ( ) 만원

문7. 귀하께서 당시 소송사건의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수임료)는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수임료)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Q7]

□①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보다 낮은 수준 (저렴한 수준)
□②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 (보통 수준)
□③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 (다소 높은 수준)
□④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보다 매우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⑤ 모르겠음

문8. 귀하께서 선임하신 변호사는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까? [Q8]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문9. 귀하께서 선임하신 변호사는 친분이 있는 판사/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관련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Q9]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문10. 귀하께서는 당시 소송사건에서 공식적인 변호사보수 이외에 '법원 혹은 검찰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변호사 또는 소개자로부터 추가 비용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Q10]

□① 있다 ➡ 문10-1로 □② 없다 ➡ 문11로

문10-1. 위의 요구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Q10A]

□① 있다 ➡ 문10-1-1로 □② 없다 ➡ 문11로

문10-1-1. 귀하께서 추가로 지급한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약 ( ) 만원 [Q10AA]

문11. 귀하께서 선임하신 변호사의 사무실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Q11]

□① 단독 변호사(변호사 1인) 사무실 □② 2-5인 규모 변호사 사무실
□③ 6-19인 정도 규모의 변호사 사무실 □④ 20-99인 정도 규모 로펌
□⑤ 100인 이상의 대형 로펌 □⑥ 잘 모르겠음

문12. 귀하의 가족, 친척, 절친한 지인들 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그 외 사법기관 종사자(경찰, 법원 직원 등)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Q12]

□① 있다 ➡ 문12-1로 □② 없다 ➡ 문13으로

문12-1. 문12에서 응답한 사람의 직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Q12A_1]~[Q12A_7]

□① 판사 □② 검사
□③ 변호사 □④ 경찰
□⑤ 검찰직원 □⑥ 법원직원
□⑦ 교정공무원 등

다음으로는 전관변호사 및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문13. 귀하께서는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판사 혹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의 과정 또는 결과에서 혜택을 받는 현상, 즉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13]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문14. 귀하께서는 소송에서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14]

□① 매우 유리 □② 약간 유리 □③ 별 차이 없음 □④ 약간 불리 □⑤ 매우 불리

문15. 혹시라도 향후에 비슷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귀하께서는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Q15]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문16. 귀하께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전관예우 방지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Q16]

□① 매우 효과 있음 □② 대체로 효과 있음 □③ 별로 효과 없음 □④ 전혀 효과 없음

문17. 귀하께서는 전관예우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17]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18. 귀하께서는 멀지 않은 미래에 전관예우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Q18]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19. 귀하께서는 멀지 않은 미래에 전관예우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Q19]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끝으로 통계적 처리를 위해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G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중퇴 및 재학 포함) [GDQ1]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이하 □③ 대졸 이상

GDQ2. 귀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GDQ2][TGDQ2_12]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가정주부
□⑫ 기타(구체적으로:_____)

GDQ3. 귀댁의 한 달 평균 소득(세전 소득 기준)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GDQ3]

□① 200만원 미만
□② 200-400만원 미만
□③ 400-600만원 미만
□④ 600-800만원 미만
□⑤ 800-1000만원 미만
□⑥ 1000-1500만원 미만
□⑦ 1500만원 이상
□⑨ 모름/무응답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2 | 현직 변호사 대상 전관예우 실태조사 설문지

ID					

현직 변호사 대상 전관예우 실태조사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조비리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관련 조사연구로 이른바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최근 실태와 관련된 경험 혹은 태도에 대해 여러 변호사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문의처 연구주관 :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황지태연구위원 ☎ 02) 3460-5195
조사대행 : Trend리서치 김용수대표이사 ☎ 02) 3442-0604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 아래 표는 조사원이 적어 넣습니다.

SQ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SQ1]		
SQ2. 응답자 연령	만_____세 [SQ2_1]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SQ2_2]	
SQ3. 거주지[SQ3]	□① 서울 □② 부산 □③ 인천 □④ 대구 □⑤ 대전 □⑥ 광주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남 □⑫ 충북 □⑬ 전남 □⑭ 전북 □⑮ 경남 □⑯ 경북 □⑰ 제주		
면접원ID		면접원 이름	
조사일시	2019년 월 일	시부터 분간	
검증일시	2019년 월 일	검증 결과	

먼저 귀하의 법조 경력 및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무실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1. 귀하께서 법조계에 입문하시게 된 경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Q1]

□① 사법시험 합격 □② 변호사시험 합격
□③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④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⑤ 기 타 (_____)

문2. 귀하께서 위와 같은 시험에 합격하신 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 년도[Q2]

문3.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판사 혹은 검사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Q3]

□① 판사직 경험 있음 ➡ 문3-1로 □② 검사직 경험 있음 ➡ 문3-1로 □③ 해당 없음 ➡ 문4로

문3-1. 귀하께서 판·검사직을 퇴직하신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었습니까? [Q3_1]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2년 이상 3년 미만 □④ 3년 이상 5년 미만
□⑤ 5년 이상 10년 미만 □⑥ 10년 이상

문3-2. 귀하께서 판·검사직을 퇴직했을 때의 직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Q3_2]

□① 평판사, 평검사 □② 부장판사, 부장검사
□③ 검사장, 법원장 □④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또는 그 이상

문4. 변호사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 년 [Q4]

문5. 최근 5년간 수임하셨던 사건 중 형사사건은 대략 몇 % 정도였습니까? _____ % [Q5]

문6.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무실의 변호사는 본인 포함 모두 몇 분입니까? [Q6]

□① 1인 □② 2-3인
□③ 4-5인 □④ 6-9인
□⑤ 10-19인 □⑥ 20-49인
□⑦ 50-99인 □⑧ 100인 이상

문7. 귀하의 사무실 내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Q7]

□① 단독 개업 변호사
□② 공동 개업 변호사
□③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의 대표변호사 또는 구성원 변호사
□④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 소속 변호사
□⑤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⑥ 단독 또는 공동 개업 변호사 사무실에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
□⑦ 일반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상근변호사
□⑧ 국가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상근변호사
□⑨ 기타 (구체적으로_____)

다음은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일반적 의견 및 경험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문8. 귀하께서는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판사 혹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의 과정 또는 결과에서 혜택을 받는 현상, 즉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8]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문9. 귀하께서는 최근 10년 이내의 기간에 이른바 전관예우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Q9]

□① 있다 ➡ 문9-1로 □② 없다 ➡ 문10으로

문9-1. 가장 최근의 경험은 대략 몇 년 전이었습니까? [Q9_1]

□① 1년 이내 □② 1년 초과 2년 이내

□③ 2년 초과 5년 이내 □④ 5년 초과 10년 이내

문9-2.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경험하신 전관예우는 다음 보기 중 어떤 사건에서 발생하였습니까? [Q9_2]

□① 형사사건 □② 민사사건(가사사건 포함)

□③ 행정사건(조세사건 포함) □④ 기 타 ( )

문9-3.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경험하신 전관예우의 혜택은 다음 보기 중 어떤 수준에 해당됩니까? [Q9_3]

□① 절차상 각종 편의(기일상의 편의 등)는 물론이고, 중요 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② 절차상의 편의를 받는 정도였으나, 중요 결정사항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음

□③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든 혜택은 보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

□④ 기타 ( )

문9-4.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경험하신 전관예우의 혜택은 다음 보기 중 어떤 단계에 해당됩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Q9_4]

□① 경찰 수사단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하는 단계 포함)

□② 검찰 수사단계(검사가 긴급체포하거나,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 포함)

□③ 구속 관련 재판(영장실질심사 혹은 구속전 피의자심문, 구속적부심, 보석)

□④ 민·형사 등 1, 2심 재판

□⑤ 민·형사 등 대법원 재판

□⑥ 헌법재판소 재판

□⑦ 기타 ( )

문10. 귀하께서는 이른바 전관변호사가 받는 보수(수임료)는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수임료)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10]

□①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보다 낮은 수준 (저렴한 수준)

□②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 (보통 수준)

□③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 (다소 높은 수준)

□④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보다 매우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⑤ 모르겠음

문11. 귀하께서는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Q11]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문12. 귀하께서는 최근 5년 이내에 위와 같은 선임계 미제출 사례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Q12]
□① 있다 □② 없다

문13. 귀하께서는 "친분 있는 판사/검사 등에게 전화로 변론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Q13]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문14. 귀하께서는 최근 5년 이내에 위와 같은 전화변론 사례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Q14]
□① 있다 □② 없다

문15. 귀하께서는 "공식적인 변호사보수 이외에 '법원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변호사 또는 소개자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Q15]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문16. 귀하께서는 최근 5년 이내에 위와 같은 추가비용 사례를 직접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Q16]
□① 있다 □② 없다

문17.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소송에서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17]
□① 매우 유리 □② 약간 유리 □③ 별 차이 없음 □④ 약간 불리 □⑤ 매우 불리

문18. 위 문17과 유사한 질문을 소송 종류별로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각 유형의 소송에서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18_1] [Q18_2] [Q18_3] [Q18_4]

	[소송의 유형]	응답지				
문18-1.	형사소송	① 매우 유리	② 약간 유리	③ 별 차이 없음	④ 약간 불리	⑤ 매우 불리
문18-2.	민사소송	① 매우 유리	② 약간 유리	③ 별 차이 없음	④ 약간 불리	⑤ 매우 불리
문18-3.	가사소송	① 매우 유리	② 약간 유리	③ 별 차이 없음	④ 약간 불리	⑤ 매우 불리
문18-4.	행정소송(조세소송 포함)	① 매우 유리	② 약간 유리	③ 별 차이 없음	④ 약간 불리	⑤ 매우 불리

문19. 귀하께서는 의뢰인들이 전관변호사를 선호하는 정도가 다음 중 대체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Q19]
□① 선호 없음 □② 약간 선호 □③ 매우 선호

문20. 위 문19와 유사한 질문을 소송 종류별로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의뢰인들이 다음 각 유형의 소송에서 전관변호사를 선호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Q20_1] [Q20_2] [Q20_3] [Q20_4]

	[소송의 유형]	응답지		
문20-1.	형사소송	① 선호 없음	② 약간 선호	③ 매우 선호
문20-2.	민사소송	① 선호 없음	② 약간 선호	③ 매우 선호
문20-3.	가사소송	① 선호 없음	② 약간 선호	③ 매우 선호
문20-4.	행정소송(조세소송 포함)	① 선호 없음	② 약간 선호	③ 매우 선호

끝으로, 전관예우 예방 대책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문21. 귀하께서는 판검사가 개업하면 퇴직 전 근무지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하는 현 변호사법 규정(변호사법 제31조)이 전관예우 방지대책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21]

□① 매우 효과 있음 □② 대체로 효과 있음 □③ 별로 효과 없음 □④ 전혀 효과 없음

문22.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귀하께서는 판검사직 퇴직 후 수임제한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22]

□①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 문22-1로 □② 기간 연장이 필요없다 ➡ 문23으로

문22-1.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만 응답)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까?

□① 2년 □② 3년 □③ 4년 □④ 5년 □⑤ 5년 초과 [Q22_1]

문23. 귀하께서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존재와 그 기능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Q23]

□① 안다 ➡ 문23-1로 □② 모른다 ➡ 문24로

문23-1. 귀하께서는 현재까지 법조윤리협의회가 수행하는 일들이 전관예우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23_1]

□① 매우 효과 있음 □② 대체로 효과 있음 □③ 별로 효과 없음 □④ 전혀 효과 없음

문24. 귀하께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내 (광의의) 전관예우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Q24]

□① 안다 ➡ 문24-1로 □② 모른다 ➡ 문25로

문24-1. 귀하께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 중 전관예우와 관련될 수 있는 법들이 법조계 전관예우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24_1]

□① 매우 효과 있음 □② 대체로 효과 있음 □③ 별로 효과 없음 □④ 전혀 효과 없음

문25. 귀하께서는 원로법관제의 시행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Q25]

□① 안다 ➡ 문25-1로 □② 모른다 ➡ 문26으로

문25-1. 귀하께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로법관제가 전관예우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 있음 □② 대체로 효과 있음 □③ 별로 효과 없음 □④ 전혀 효과 없음 [Q25_1]

문26. 귀하께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전관예우 방지대책이 전반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Q26]

□① 매우 효과 있었음 □② 대체로 효과 있었음 □③ 별로 효과 없었음 □④ 전혀 효과 없었음

문27. 전관예우 방지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률 제·개정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27_1] [Q27_2] [Q27_3] [Q27_4] [Q27_5] [Q27_6] [Q27_7] [Q27_8]

	[규제의 유형]	응답지			
문27-1.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의 확대	① 매우 필요	② 대체로 필요	③ 대체로 불필요	④ 매우 불필요
문27-2.	수임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① 매우 필요	② 대체로 필요	③ 대체로 불필요	④ 매우 불필요
문27-3.	재판부와 소송대리인 연고관계 진술 의무 도입	① 매우 필요	② 대체로 필요	③ 대체로 불필요	④ 매우 불필요
문27-4.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확대 (수임료 등) 공개	① 매우 필요	② 대체로 필요	③ 대체로 불필요	④ 매우 불필요
문27-5.	선임계 미제출 변론, 전화변론 등 편법 강력 규제	① 매우 필요	② 대체로 필요	③ 대체로 불필요	④ 매우 불필요
문27-6.	퇴직전 판검사의 고위직 여부에 따른 차등적 규제	① 매우 필요	② 대체로 필요	③ 대체로 불필요	④ 매우 불필요
문27-7.	퇴직전 근무장소와 관련된 개업지의 장소적(개업지) 제한	① 매우 필요	② 대체로 필요	③ 대체로 불필요	④ 매우 불필요
문27-8.	법조계 이외 영역의 고위공직자 대형로펌 취업규제	① 매우 필요	② 대체로 필요	③ 대체로 불필요	④ 매우 불필요

문28. 전관예우 방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28_1] [Q28_2] [Q28_3] [Q28_4]

	[제도의 유형]	응답지			
문28-1.	정원 외 원로법관제도 도입 등 원로법관제도 보완·확대	① 매우 필요	② 대체로 필요	③ 대체로 불필요	④ 매우 불필요
문28-2.	원로법관제도에 준하는 퇴직 검사 관련 제도 도입	① 매우 필요	② 대체로 필요	③ 대체로 불필요	④ 매우 불필요
문28-3.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 강화	① 매우 필요	② 대체로 필요	③ 대체로 불필요	④ 매우 불필요
문28-4.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매우 필요	② 대체로 필요	③ 대체로 불필요	④ 매우 불필요

문29. 귀하께서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대책의 기본 방향 중 무엇이 가장 우선시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29]

□① 평생 법관제 혹은 평생 검사제 정착 □② 전관변호사 수임 제한 확대 및 위반 시 처벌강화
□③ 전관예우 감시 및 예방 기능의 확대 □④ 기 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총서 19-B-05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II) :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발　　행 | 2019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한 인 섭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10,000원
인　　쇄 |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I S B N | 979-11-89908-41-6 9333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함.